

# 인도 비즈니스가이드





## 집필진

분야	이름	소속
진출 검토, 회사 설립	김응기 대표	BTN-INSULO INDIA
투자 인센티브	박영환 부장	Invest India
노무, 법무, 인증	장재원 상무	Ernst & Young
세무, 회계, 구조조정	이영민 회계사	KPMG
금융	임도현 부지점장	신한은행
수출입, 통관	윤소연 관세사	KOTRA
물류	정민화 법인장	한솔 로지스틱스
지식재산권	유지혜 변호사	버드트리
CSR, ESG	권용우 회계사	Ernst & Young



# 목차

<b>1. 진출 검토</b> .....	<b>17</b>
<b>1-1. 투자 관련 제도 및 투자방식</b> .....	<b>17</b>
1-1-1. 외국인직접투자 정책(FDI Policy).....	17
1-1-2. 회사법(Company Act 2013).....	17
1-1-3. 한·인도 상호조약 .....	18
1-1-4. 수출입제도와 관련 인증제도 .....	19
1-1-5. 한국에서의 해외직접투자신고(외국환관리법) .....	19
1-1-6. 투자 방식.....	21
1-1-7. 선택 가능한 기업의 유형.....	21
<b>1-2. 비용 리스크 관리</b> .....	<b>23</b>
1-2-1. 법인세 등 조세 리스크.....	23
1-2-2. 인적자원과 인건비 리스크 .....	24
1-2-3. 임차료 등 간접 비용 리스크 .....	25
<b>1-3. 투자인센티브</b> .....	<b>27</b>
1-3-1. 업종별 인센티브.....	27
1-3-1-1. 화학 공업 (Chemical Sector).....	27
1-3-1-2. 자동차 부품 산업 (Auto Components Sector).....	28
1-3-1-3. 전기전자/IT 산업 (Electronics/IT Sector).....	28
1-3-1-4. 제약업 (Pharmaceuticals Sector).....	29
1-3-1-5. 섬유 산업 (Textile Sector).....	30
1-3-1-6. 식품 가공 산업 (Food Processing Sector) .....	31
1-3-1-7. 철강업 (Steel Sector) .....	32
1-3-1-8. 여행업 (Tourism Sector) .....	32

1-3-2. 지역별 인센티브.....	33
1-3-2-1. 하리아나주 .....	33
1-3-2-2. 우타르프라데시주.....	38
1-3-2-3. 편자브주 .....	41
1-3-2-4. 마하라슈트라주.....	42
1-3-2-5. 타밀나두주 .....	44
1-3-2-6. 안드라프라데시주.....	50
1-3-2-7. 케랄라주 .....	51
1-3-2-8. 텔랑가나주 .....	51
1-3-2-9. 웨스트벵갈주.....	52
<b>2. 회사 설립 .....</b>	<b>54</b>
<b>2-1. 외국인 투자 절차 .....</b>	<b>54</b>
2-1-1. 입지 선정.....	54
2-1-2. 회사 유형 결정 .....	55
2-1-3. 회사 구조 결정(주주 혹은 파트너 및 이사).....	55
2-1-4. 자본금 결정.....	57
2-1-5. 설립 대행사 선정 .....	57
<b>2-2. 회사 유형 별 이해 .....</b>	<b>58</b>
2-2-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58
2-2-2.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59
2-2-3. 지사(Branch Office) .....	61
2-2-4. 현지법인 .....	63
<b>2-3. 회사 설립 이후 필수적 절차 .....</b>	<b>67</b>
2-3-1. 1회 이사회 개최.....	67
2-3-2. 법인 계좌 개설 .....	67

2-3-3. 자본금 송금 및 해외투자 신고.....	68
2-3-4. 자본금 신고.....	68
2-3-5. GST 등록(통합상품서비스세).....	68
2-3-6. 사업개시 신고.....	68
2-3-7. 수출입 코드(IEC) 발급.....	69
2-3-8. 기타.....	69
<b>2-4. 회사설립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b>	<b>70</b>
<b>3. 회사운영.....</b>	<b>71</b>
<b>3-1. 세무.....</b>	<b>71</b>
3-1-1. 조세체계.....	71
3-1-1-1. 세목의 구성.....	71
3-1-1-2. 인도 과세당국의 구조.....	72
3-1-2. 소득세.....	73
3-1-2-1. 인도의 소득세 특징.....	73
3-1-2-2.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73
3-1-2-3. 진출형태에 따른 과세 상 취급.....	75
3-1-2-4. 소득세의 과세기간.....	75
3-1-2-5.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77
3-1-2-6. 소득세의 계산구조.....	77
3-1-2-7. 과세대상 소득.....	78
3-1-2-8. 사업소득금액 계산.....	78
3-1-2-9. 결손금 통산.....	84
3-1-2-10. 소득세의 세율.....	87
3-1-2-11. 최저한세.....	89
3-1-2-12. 신설 제조법인 등의 특례세율 적용.....	91

3-1-2-13. 소득세의 신고 .....	92
3-1-2-14. 중간예납 .....	94
3-1-2-15. 세무감사 (Tax Audit) .....	95
3-1-2-16. TDS .....	95
3-1-2-17. TCS .....	98
3-1-3. GST .....	100
3-1-3-1. GST 개요 .....	100
3-1-3-2. GST 과세대상 .....	101
3-1-3-3. GST 등록 .....	102
3-1-3-4. GST 등록 신청기한 및 필요정보 .....	104
3-1-3-5. 매입세액 공제 .....	105
3-1-3-6. GST 세율 .....	108
3-1-3-7. GST 신고 .....	108
3-1-3-8. 지연신고 시 가산금 등 .....	110
3-1-3-9. 간이과세제도 .....	110
3-1-3-10. 대리납부제도 .....	112
3-1-3-11. Input Service Distributor .....	115
3-1-4. 이전가격세제 .....	115
3-1-4-1. 이전가격세제 의의 .....	115
3-1-4-2. 적용대상 .....	116
3-1-4-3. 특수관계기업 .....	116
3-1-4-4.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	117
3-1-4-5. 이전가격 문서화 .....	119
3-1-4-6. 이전가격 문서화 미이행시 가산세 등 .....	120
3-1-4-7.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	121
3-1-5. 한-인도 조세조약 .....	123

3-1-5-1. 국제조세의 의의 .....	123
3-1-5-2. 한-인도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	123
3-1-5-3. 거주자 .....	124
3-1-5-4. 고정사업장 .....	125
3-1-5-5.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126
3-1-5-6. 간주 고정사업장 .....	127
3-1-5-7. 과세권의 배분 .....	129
3-1-5-8. 제한세율 .....	130
3-1-5-9. 이중과세의 제거 .....	130
3-1-5-10. 상호합의 절차 .....	131
3-1-5-11. 혜택의 제한 .....	132
3-1-5-12.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	133
3-1-6. 조세불복 .....	135
3-1-6-1. 조세불복 절차 .....	135
3-1-6-2. 심사청구 .....	135
3-1-6-3. 심판청구 .....	136
3-1-6-4. 조세소송 .....	137
<b>3-2. 회계 .....</b>	<b>138</b>
3-2-1. 회계법령 .....	138
3-2-1-1. 재무제표 작성 의무 .....	138
3-2-1-2. 회계장부의 보관 의무 .....	138
3-2-1-3. 회계연도 (Financial year) .....	138
3-2-1-4. 재무제표의 승인 .....	138
3-2-1-5. 기업등록국 재무제표 신고 .....	139
3-2-1-6. 증권거래위원회 재무제표 제출 .....	139
3-2-1-7. 재무제표 공시의무 .....	139

3-2-1-8. 외부감사 대상 .....	139
3-2-1-9. 감사인 선임 .....	140
3-2-1-10. 감사인 의무교체 규정.....	140
3-2-1-1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140
3-2-2. 회계기준 .....	141
3-2-2-1. 인도 회계기준의 구성.....	141
3-2-2-2. 회계기준 준수 의무.....	141
3-2-2-3. 인도의 IFRS 적용 .....	141
3-2-2-4. Ind AS 구성 .....	143
3-2-2-5. Ind AS 의무적용 대상.....	145
3-2-2-6. IGAAP 기준서.....	146
3-2-2-7. 중소기업의 IGAAP 적용특례 .....	148
3-2-2-8. 중소기업의 정의.....	148
3-2-3. 기타유의사항: GAAP 차이 .....	149
3-2-3-1. Ind AS vs IFRS .....	149
3-2-3-2. IGAAP vs IFRS.....	153
<b>3-3. 금융 .....</b>	<b>158</b>
3-3-1. 인도의 은행.....	158
3-3-2. 법인의 계좌 거래 .....	161
3-3-2-1. 예금의 종류.....	161
3-3-2-2. 법인의 계좌 개설.....	162
3-3-2-3. 서명권의 행사 방식 (Mode of Operation).....	165
3-3-2-4. 지점사무소(BO), 연락사무소(LO), 프로젝트사무소(PO)의 계좌 거래.....	166
3-3-2-5. 법인 계좌 개설 제한 .....	169
3-3-3. 외환 거래.....	171

3-3-3-1. 인도 법인의 자본금 송금 수취 .....	171
3-3-3-2. 수입 결제 .....	174
3-3-3-3. 수출 대금 회수 .....	182
3-3-3-4. 기타 송금 .....	184
3-3-4. 자금 조달 .....	187
3-3-4-1. 현지금융 (루피 자금 조달) .....	187
3-3-4-2. 역외금융 (ECB) .....	190
3-3-5. FAQ .....	194
<b>3-4. 노무 .....</b>	<b>198</b>
3-4-1. 인도 노동법제 개편 .....	198
3-4-1-1. 노동법 .....	198
3-4-1-2. 2021 년 인도 노동법제 개편 .....	199
3-4-2. 채용계약 .....	202
3-4-2-1. 근로계약의 체결 .....	203
3-4-2-2. 근로계약의 종료 .....	204
3-4-3. 임금 및 보험 .....	205
3-4-3-1. 최저임금 .....	205
3-4-3-2. 임금 지급 .....	205
3-4-3-3. 보너스 .....	207
3-4-3-4. 근로자 국가보험 .....	207
3-4-3-5. 연금 .....	208
3-4-3-6. 퇴직금 .....	208
3-4-3-7. 휴가수당 .....	209
3-4-4. 근무시간/휴식/휴가 .....	209
3-4-4-1. 근무 시간 .....	211

3-4-4-2. 초과근무 및 수당 .....	212
3-4-4-3. 휴가 .....	212
3-4-5. 취업규칙/징계/배상 .....	213
3-4-5-1. 내부 규정 작성 및 채택 .....	213
3-4-5-2. 규정의 효력 및 수정 .....	213
3-4-6. 노동조합 .....	214
3-4-7. 채용계약 해지 및 해고 .....	215
3-4-7-1. 해고 절차 .....	215
3-4-7-2. 해고 보상금 .....	216
<b>3-5. 법무 .....</b>	<b>217</b>
3-5-1. 인도 법률 체계 .....	217
3-5-1-1. 인도 헌법 .....	217
3-5-1-2. 입법절차 .....	218
3-5-1-3. 법률시스템 .....	219
3-5-2. 기업관련 법제 개요 .....	219
3-5-2-1. 회사법 .....	219
3-5-2-2. 유한책임파트너십법 .....	220
3-5-2-3. 증권거래위원회법 .....	220
3-5-2-4. 외환관리법 .....	221
3-5-2-5. 인도중앙은행법 .....	222
3-5-2-6. 경쟁법 .....	222
3-5-2-7. 환경 관련 법제 .....	223
3-5-2-8. 소비자보호법 .....	224
3-5-2-9. 산업(개발 및 규제)법 .....	224
3-5-2-10. 관세법 .....	224

3-5-2-11. 자금세탁방지법 .....	225
3-5-3. 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	225
3-5-3-1. 계약의 목적 .....	226
3-5-3-2. 표준문구 및 필수조항 .....	226
3-5-3-3. 출구전략 .....	227
3-5-3-4. 양해각서 .....	227
3-5-4. 소송 요건, 소송 기간 및 절차 .....	227
3-5-4-1. 사법제도 .....	227
3-5-4-2. 소송 준거법 및 관할권 .....	229
3-5-4-3.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	230
3-5-5. 소송 기간, 절차 및 비용 .....	231
3-5-5-1. 소송기간 .....	231
3-5-5-2. 소송절차 .....	232
3-5-5-3. 민사소송절차 .....	233
3-5-5-4. 잠정구제조치 .....	234
3-5-5-5. 피해구제 및 집행 .....	234
3-5-5-6. 항소 .....	234
3-5-5-7. 소송비용 .....	235
3-5-6. 소송 외 대체 분쟁해결방안 .....	235
3-5-6-1. 중재제도 및 중재조정법 .....	235
3-5-6-2. 중재협정 또는 계약서상 중재조항 .....	236
3-5-6-3. 중재인 선임 .....	237
3-5-6-4. 중재절차 .....	237
3-5-6-5.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	238
3-5-6-6. 중재판정 효력 및 집행 .....	239
3-5-6-7. 중재비용 .....	240

3-5-6-8. 그 외 대체분쟁해결수단.....	241
<b>3-6. 관세 및 통관 .....</b>	<b>242</b>
3-6-1. 인도의 무역 환경.....	242
3-6-1-1. 인도의 교역 현황.....	242
3-6-1-2. 한국과 인도의 교역 동향 .....	242
3-6-2. 인도의 무역 관리 제도.....	243
3-6-2-1. 수출입 정책.....	243
3-6-2-2. IEC(Import Export Code) .....	244
3-6-2-3. 대외무역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	244
3-6-3. 관세 실무.....	244
3-6-3-1. 인도 수입세율 구조.....	244
3-6-3-2. 수입물품 납부세액의 확인.....	245
3-6-3-3. 관세 환급 제도 .....	246
3-6-3-4. 관세 감면 제도.....	246
3-6-4. 통관 실무.....	248
3-6-4-1. 수입 준비 단계.....	248
3-6-4-2. 수입 전 단계.....	249
3-6-5. 한-인도 CEPA.....	251
3-6-5-1. 의의 .....	251
3-6-5-2. 활용 .....	252
3-6-5-3. CAROTAR 2020 .....	252
3-6-6. 수입 규제.....	252
3-6-6-1. 무역규제 동향.....	252
3-6-6-2. 무역규제 절차.....	253
3-6-6-3. 對 한국 무역규제 조치 .....	253

3-6-6-4. 수입 제한 · 금지 조치 현황 .....	255
<b>3-7. 인도 표준국(BIS) 인증 제도.....</b>	<b>257</b>
3-7-1. 인증 기관.....	257
3-7-2. 주요 관련 규정.....	258
3-7-3. 인증 적용 대상.....	258
3-7-3-1. 인증의 종류.....	258
3-7-3-2. 의무 인증 제도.....	261
3-7-4. 인증 요건, 절차 및 필수 서류 .....	261
3-7-4-1. 제품 인증.....	263
3-7-4-2. 외국제조업체 인증.....	263
3-7-4-3. 의무 인증.....	264
3-7-5. CDSCO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허가, 등록 및 면허 제도.....	266
3-7-5-1. 규제 기관.....	266
3-7-5-2. 주요 관련 규정.....	266
3-7-5-3. 인허가 적용 대상.....	267
3-7-5-4. 의약품 .....	267
3-7-5-5. 의료기기 .....	268
3-7-5-6. 화장품 .....	270
3-7-5-7. 인허가 요건, 절차 및 필수 서류.....	271
3-7-5-8. 의약품 .....	271
3-7-5-9. 의료기기 .....	272
3-7-5-10. 화장품.....	273
3-7-6. FSSAI 식품 등록 및 면허 제도 .....	276
3-7-6-1. 규제 기관.....	276
3-7-6-2. 주요 관련 규정.....	276

3-7-6-3. 인허가 적용 대상.....	278
3-7-6-4. 식품등록 (Registration) .....	278
3-7-6-5. 식품 면허 (Licensing) .....	279
3-7-6-6. 수입 면허 (Import Licensing) .....	280
3-7-6-7. 인허가 절차 .....	281
<b>3-8. 물류 .....</b>	<b>283</b>
3-8-1. 물류현황 .....	283
3-8-1-1. 인도 내 주요 항공 및 해상 Port.....	283
3-8-1-2. 해상 및 항공수입 Route 및 Leadtime .....	285
3-8-2. 수입물류 진행 전 준비 및 점검사항 .....	286
3-8-2-1. 수입 전 행정업무 준비사항 .....	286
3-8-2-2. 관계사 거래여부 사전확인.....	289
3-8-2-3. HS-Code 및 관세 사전검토 .....	294
3-8-3. 수입물류 실행.....	296
3-8-3-1. 선적서류 준비 및 포장 .....	296
3-8-3-2. 통관 시 필요서류 구비 (원산지 증명서 포함).....	297
3-8-3-3. 수입통관.....	300
3-8-3-4. 배송 .....	308
<b>3-9. 지식재산권 .....</b>	<b>309</b>
3-9-1. 개관.....	309
3-9-1-1.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 .....	309
3-9-1-2.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309
3-9-1-3. 인도 지식재산권 제도의 최근 개선 동향.....	310
3-9-1-4. 지식재산 관련 규정.....	311
3-9-1-5. 지식재산 유관 기관.....	312

3-9-2. 상표 .....	314
3-9-2-1. 개관 .....	314
3-9-2-2. 정의 및 보호범위 .....	315
3-9-2-3. 출원 및 등록 .....	315
3-9-2-4. 양도 및 이전 .....	319
3-9-2-5. 침해 시 대응방안 .....	319
3-9-2-6. 주요사례 .....	323
3-9-3. 특허 .....	325
3-9-3-1. 정의 및 보호범위 .....	326
3-9-3-2. 특허의 해외출원 .....	326
3-9-3-3. 요건 .....	326
3-9-3-4. 출원 및 등록 .....	328
3-9-3-5. 특허의 양도 및 이전 .....	333
3-9-3-6. 침해 시 대응방안 .....	333
3-9-3-7. 주요사례 .....	334
3-9-4. 디자인 .....	336
3-9-4-1. 정의 및 보호범위 .....	336
3-9-4-2. 요건 .....	337
3-9-4-3. 출원 및 등록 .....	337
3-9-4-4. 침해 시 대응방안 .....	339
3-9-4-5. 주요사례 .....	341
3-9-5. 저작권 .....	341
3-9-5-1. 정의 및 보호범위 .....	342
3-9-5-2. 저작자의 특별한 권리 .....	342
3-9-5-3. 등록 .....	342
3-9-5-4. 저작권의 양도 및 이전 .....	344

3-9-5-5. 침해 시 대응방안.....	344
3-9-5-6. 주요사례.....	347
3-9-6. 인도진출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유의점.....	348
3-9-6-1. 시장 조사 및 분석.....	348
3-9-6-2. 합작투자과 지식재산권.....	348
3-9-6-3. 실사(Due-Diligence).....	350
3-9-6-4. 지식재산 가치평가(Valuation).....	350
3-9-6-5. 인도 특허청의 업무 지연 및 법령과 절차 변경.....	351
<b>3-10. 인도 내 CSR 및 ESG 관련 가이드.....</b>	<b>352</b>
3-10-1. CSR 관련 준수사항.....	352
3-10-1-1. 인도의 CSR 이란?.....	352
3-10-1-2. 인도 CSR 규정의 법적 근거와 개정 과정.....	352
3-10-1-3. 회사법상 CSR 적용요건.....	353
3-10-1-4. CSR 지출의무요건.....	353
3-10-1-5. CSR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356
3-10-1-6. CSR 대상 항목으로 법률상 지정된 펀드 및 기관.....	357
3-10-2. CSR운영관리.....	358
3-10-2-1. CSR 운영관련 제반규정.....	358
3-10-2-2. CSR 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세).....	360
3-10-2-3. CSR 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GST).....	362
3-10-2-4. 유형별 CSR 형태 비교.....	362
3-10-3. 인도 ESG경영.....	365
3-10-3-1. ESG 경영이란?.....	365
3-10-3-2. 인도 회사법 상 ESG 관련 규정.....	365
3-10-3-3. 상장사 관련 규정.....	365

<b>4. 구조조정</b>	<b>367</b>
<b>4-1. 사업양도</b>	<b>367</b>
4-1-1. 사업양도의 의의	367
4-1-2. 인도소득세법 상 사업양도	367
4-1-3. 소득세법 상 사업양도 과세체계	368
4-1-4. GST의 과세제외	369
<b>4-2. 주식의 양도</b>	<b>370</b>
4-2-1. 주식양도거래의 소득세법 상 취급	370
4-2-2. 주식양도에 적용되는 세율	370
4-2-3. 주식양도의 GST상 취급	371
<b>4-3. 회사의 청산</b>	<b>372</b>
4-3-1. 자발적 청산	372
4-3-2. 자발적 청산 요건	372
4-3-3. 청산인	373
4-3-4. 청산사무계좌	373
4-3-5. 자발적 청산 절차	373
4-3-6. 채권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순위	375
4-3-7. 등록말소	376
4-3-8.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	376
4-3-9. 등록말소 신청 제한	376
4-3-10. 등록말소 신청서 제출	376
4-3-11. 회사에 의한 등록 말소 절차	377
4-3-12.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	377
<b>4-4. 휴면회사</b>	<b>378</b>
4-4-1. 휴면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	378

4-4-2. 휴면회사 신청 제한 .....	378
4-4-3. 휴면회사 신청 절차 .....	379
4-4-4. 휴면회사의 이점.....	379
4-4-5. 활성회사 전환 및 해산명령.....	379

# 1. 진출 검토

## 1-1. 투자 관련 제도 및 투자방식

### 1-1-1. 외국인직접투자 정책(FDI Policy)

인도진출 검토 단계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 사업 목적 등이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시장 가능성이 커도 외국인에게 직접투자로 개방된 것이 아니라면 검토의 기본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인도 연방정부는 외국인의 인도 내 직접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통상산업부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내 산업진흥국(DPIIT)에서 정책 규정(Consolidated FDI Policy Circular)으로 발표하고 매년 2월경 또는 수시로 개정 내용을 고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DPII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 FDI 정책은 2020년 발표된 버전(Consolidated FDI Policy Circular of 2020)이 최근 것으로 이 또한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니 참고하려는 외국인 직접투자정책 규정이 예전 것인지 현재 통용되는 것인지를 거듭 확인하고 인용하여야 한다. 인도의 대부분 공문서는 영어와 힌디어로 작성된다.

이 정책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 자격, 진출 회사의 형태, 각 산업별 허용범위 등이다. 예를 들면 인도 민간항공산업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FDI Policy 2020의 ‘Sector Specific Conditions on FDI’ 중 서비스 영역에서 ‘Civil Aviation’을 찾으면 기본 내용을 알 수 있다. 외국인에게 금지되어 있는 사업영역은 무엇인지, 허용되는 부분에서는 지분이 100%까지 허용되는지 아니면 외국인으로서 지분 상한선이 있는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승인도 자동승인인지 사전 투자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도 알 수 있다. 국방에 관련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 제조업의 경우는 100% 지분 취득이 가능하고 또한 별도의 투자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규모 투자인 경우 투자법인 설립 이후 산업 허가 등의 별도 절차가 추가로 요구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여부를 투자결정 이전에 검토 받기 위해서 자동승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자 심의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sup>1</sup>

유의하여야 할 점은 FDI 규정에서 사업분야가 허용된다고 하여도 개별 영업허가 등에서는 정책적 그리고 관습적 제약이나 조건이 추가될 수도 있고 지리적 입지 내에서도 업종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1-1-2. 회사법(Company Act 2013)

인도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회사법에 대한 사전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영 하는 중에도 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규

---

<sup>1</sup> 최근에는 FIFP(Foreign Investment Facilitation Portal)에서 신청과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칙에 대해서 직접 이해하지 않은 채 주변 전언에 의지하여 결정된 회사의 주요 내용이 사후에 걸림돌이 되어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된 사례가 주변에 없지 않다.

회사법은 회사의 형태, 회사 설립 절차, 이사 임명, 이사회 운영 등 기업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평가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정도 이 법이 정하고 있다. 식민지 점령국이었던 영국의 영향으로 법조문의 나라로 불리는 인도에선 법에서 정하지 않는 임의적인 공권력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다루지 않는다. 법과 규정에 의한 적용인데 문제는 그 내용이 방대하다는 것이다. 회사법 역시 전문 288페이지에 달한다.

인도엔 회사법이 독립된 법안으로 있다는 특징과 함께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라는 연방정부 부처가 있다.<sup>2</sup> 기업부 웹사이트에서 인도 내 설립된 모든 회사의 기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자본금, 임원, 회계감사보고일, 피소 여부 등이 확인 가능하다.

FDI 규정에 외국인이 인도에서 영위할 수 있는 회사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지만 인도 회사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세부 설명은 본 가이드의 2장 2절 회사 유형별 설립 절차에서 다루기로 한다.

### 1-1-3. 한·인도 상호조약

한국과 인도 양국 사이에 통상 관련한 주요 조약으로는 우선 자유무역협정인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sup>3</sup> 들 수 있다. 주된 내용은 상품과 서비스의 양국 교역에 적용되는 관세에 대한 면제 혹은 인하 협정이다.

다음으로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A)이라고도 불리는 조세협정이 있다.<sup>4</sup> 인도 내에서 발생되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은 이후 한국에서는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양국 정부는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서도 협정을 맺고 있다. 이 조약에는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진출이 아니라 한국 본사에 종속된 관계로 인도 진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에 따른 이해득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출 형태와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본사에 종속된 업무 외 타 기업과의 업무 확대를 계획한 진출목적이라면 진출 기업의 이름을 굳이 본사 이름과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책정하거나 주주와 이사진 구성에 본사와의 연결고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식의 결정으로 이전가격 과세 이슈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sup>5</sup> 조세회피 방지에 필요한 조세 정보 중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도 양국간에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고,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

---

<sup>2</sup> 기업부 : [www.mca.gov.in](http://www.mca.gov.in)

<sup>3</sup>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sup>4</sup> 개정된 법안으로 2016년 9월12일 발효

<sup>5</sup>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의 전문은 외교부 양자 조약 관련 정보에서 찾을 수 있다.

에 대한 징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추가했다.

#### 1-1-4. 수출입제도와 관련 인증제도

인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단계에서 법인을 설립한 직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인허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가 IEC(Importer Exporter Code)이다. 한국은 무역업 허가제가 1993년에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해졌으나 인도에서는 직접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선 IEC를 취득하여야 한다. 취득 요건은 그다지 까다롭지 않고 취득에 일주일 이내로 가능하다. 이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sup>6</sup>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수출입 라이선스(IEC)를 취득한 이후에도 모든 물품을 임의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 수입에는 FSSAI 라이선스가 요구되고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수입은 CDSCO(인도 중앙정부 약품 표준국)에 수입하려는 제품과 수입업체가 지정 등록되어야 가능하다. 철강을 비롯한 상당수 품목의 수입하는 경우엔 각 제품이 인도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표준청)에 등록되어야 하고 만약 등록되지 않았다면 수입에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인도 정부는 수입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수입 원자재 등에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인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제도 파악과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 1-1-5. 한국에서의 해외직접투자신고(외국환관리법)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에 자본 등을 직접적으로 투자할 때 이를 신고하고 허가를 취득하여야 정당한 송금 절차가 이루어진다. 한국 모기업의 주거래 은행지점이나 개인의 주거래 은행 지점을 통해 한국은행에 신고한다. 또한 매년 변동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는 신고 기일에 맞추어 은행의 고지에 따라 설립된 인도법인의 설립증명서와 재무제표 그리고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의 지분 변동은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자본금 송금이 외국환거래 은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송금 수단으로 진행되었을 때에는 KYC(Know Yourself Certificate) 미비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자본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

<sup>6</sup> <https://www.dgft.gov.in/CP/>: 직접 이 정부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 대행회사를 통하여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 그림 1-1-5-1.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별지 제 9-1 호 서식]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처리기간
신고인 (보고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서비스 무역업		
해외직접투자 내용	투자국명	인도	소재지	
	투자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권취득, <input type="checkbox"/> 대부투자		자금조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기자금, <input type="checkbox"/> 타
	투자종류	무역업	주요제품	식품, 농산물
	투자금액	INR 999,000	환출자금액	INR 990,000
	투자비율		결산월	
	투자목적	수출촉진		
	현지법인명 (영문)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보고)합니다. (총자본금 : INR000000000)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				
본신고조인: 첨부된 유의사항을 지필 것		신고번호		
위와 같이 신고(보고)되었음을 확인함		신고금액		
		유효기간		
년 월 일				
피신고(보고)기관 : 외국환은행 <b>신한은행(인)</b>				
(취급자명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포함)  
 2. 합작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계약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인의 대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에는 공인대외계약서  
 4. 해외투자목적물이 해외주식인 경우, 당해 해외주식의 가격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압축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계분류코드(9차)(5 자리) 및 업종명을 기재.  
 \* 총자금액에는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액면가액을 기재

해외투자신고 승인에 따라 자본금 송금이 이루어진 이후 사후조치로는 송금한 외국환은행 지점을 통하여 인도 법인 계좌로 송금된 자본금이 인도 중앙은행에 접수되었음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인도중앙은행에 자본금 신고를 증빙하는 문건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아래의 그림은 자본금의 신고가 중앙은행 자동시스템에 접수되었음을 알려주는 RBI 이메일 회신 내용이 담긴 문건이다.

### 그림 1-1-5-2. 인도중앙은행 자본금 도착 신고 자동 회신

marksman DIXIT CA <dixitca@ >

**Notification From Bank**

autoreply-firms@rbi.org.in <autoreply-firms@rbi.org.in> Thu, Feb 11, 2021 at 9:40 AM  
 To: INFO@sdccconsultings.com

Dear Sir/Madam,

Welcome to FIRMS – Foreign Investment Reporting and Management System:- RBI system for reporting of foreign investment In India.

Your Reporting form FCGPR0: ) is APPROVED with below comments

Remarks If Any: Name of the applicant: JONG, J ANG JERS, LEE JG. Name of the investee company: INDIA PRIVATE LIMITED. Date of issue of shares: 03 Feb 2021 Total amount of consideration in Rs: 220

### 1-1-6. 투자 방식

직접 투자진출에는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이른바 그린필드(Green Field) 전략과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의 브라운 필드(Brown Field) 전략이 있다. 투자 방식은 선택의 문제이지 진출 성공 여부를 결정 짓는 잣대가 아니다. 다만 지분 인수나 합작 투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은 경영 리스크이다. 진출 기업의 투자 목적이 한국에서의 앞선 경험을 현지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율적 경영을 펼치고 싶다면 의사 결정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sup>7</sup> 반대로 25% 지분을 가지고서도 경영 주체 대주주 파트너에게 의사결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영참여를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최근 인도에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을 상대로 협업 시너지 효과를 피하고자 한국에서와 인도에서의 지분 참여가 늘고 있다. 증자 또는 기존 주식 인수를 통한 참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 양수도가 주주의 소재지인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sup>8</sup> 혹은 한국인과 인도인(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모든 것이 인도의 외환거래규정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관계로 관련 신고와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세금 문제는 해당 전문가의 도움으로 절차와 문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

### 1-1-7. 선택 가능한 기업의 유형

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외국기업’ 신분을 지닌 지사(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프로젝트 오피스 등이 있고 ‘인도기업’인 공개회사(Public Company),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이 있다. 이외에도 1 인기업(One Person Company)과 소기업(Small Company)이 있지만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해서 취득할 수 있는 회사 형태가 아니기에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표 1-1-7-1. 설립 가능한 회사의 유형

외국 회사 (Foreign Company)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사(Branch Office)	
인도 회사	주식회사(Company)	공개회사(Public Company)

<sup>7</sup> 주주총회 의결권은 한국에서는 다수결 절대원칙이지만 인도에서는 76%이상의 지분이 있어야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이다. 25%지분을 가진 파트너에게는 증자 등 중요 경영 안전에 대해 거부권이 있다.

<sup>8</sup> 비거주자(Non-Resident: NR)와 인도 거주자(Indian Resident: IR)로 나누는데 NR은 NRI와 OCB(overseas Corporate Bodies)로 나누어진다.

(domestic Company)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외국 회사(Foreign Company)’와 ‘인도 회사(Domestic Company)’의 차이는 인도 내에서 ‘독립 법인의 형태’로 등록하느냐 아니냐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외국인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냐 아니면 인도인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냐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에 의해서 설립된 ‘인도 회사’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sup>9</sup> 제외하고는 인도인에 의해서, 혹은 인도인과 합작으로 만들어진 회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법인세(Income Tax)에서 ‘외국 회사’와 ‘인도 회사’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누어진다. 법인세 인하 정책 등으로 구체적인 세율은 수시로 변하겠지만 ‘외국 회사’와 ‘인도 회사’사이에 법인세(법인 소득세) 세율 차이는 거의 10%에 달한다.

프로젝트 오피스의 선택은 비교적 분명하다. 인프라 건설이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SI) 등 단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회계 정산한 후 해당 오피스 업무를 종료하는 내용의 진출에는 이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프로젝트 수행 이외 기타 목적에 따라 연락사무소나 혹은 지사인가를 두고서도 선택의 기준이 객관적으로는 매우 명료하다. 영업 행위를 해야 할 경우는 연락사무소 운영은 위험하다. 영업을 하고자 하는 포괄적 목적으로 연락사무소와 지사 중 택일하여야 한다면 지사(Branch)를 택해야 한다. 단, 지사 설립이 모든 회사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신청 당시 진출 모기업이 적자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매우 어렵다. 최근 인도 정부(RBI: 인도 중앙은행)의 방침으로 적자 기업의 지사 설립 인가가 나오지 않는다.<sup>10</sup> 각 유형별 성격과 설립 방법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2 장 1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sup>9</sup> 외국인의 지분이 51%가 넘는 경우에는 복합 브랜드 소매업(retail)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투자조건을 갖추고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FDI Policy에서 알 수 있다.

<sup>10</sup> RBI에 접수되기 이전에 주거래 은행에서 적자 기업의 지사 설립 신청 자체를 거부한다.

## 1-2. 비용 리스크 관리

많은 이들이 해외 투자 진출에서 저임금은 물론 토지 등에서도 저비용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에 대해서도 그렇다. 더구나 인도의 일반적인 이미지로 '가난'하다는 선입견이 있어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모든 투자 비용은 저렴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런데 실제는 이와 다르다. 인도 진출이 산간벽지 오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시장의 입지로서 적합한 곳을 우선시 하니 모두가 원하는 이런 지역에서의 토지 비용은 물론 인건비도 생각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진출 검토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따라 비용 리스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 세금 제도에서 오는 비용증가 측면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이 외에도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CEPA) 하에서 특정 품목에서 관세가 0%라는 사실을 단순히 모든 관세가 없다는 전제에서 비용 계산을 하였다면 이견 오류이다. CEPA 에서의 관세 0%는 기본관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외 추가되는 교육세, 상계관세 등 기타 관세는 여전히 존재한다. 어쩌면 기본 관세보다 이 부분이 더 크다.

### 1-2-1. 법인세 등 조세 리스크

인도의 법인세는 매출 구간 별로 다르기는 하나 평균 25.16%로 한국보다 수치로도 높지만 체감으로는 훨씬 높다고 여길 수 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인도의 법인세(법인소득세)가 과거 35%였던 시절에서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가세(VAT)와 부가세 환급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의 부가세 개념과 가장 유사한 형태가 GST 이다.<sup>11</sup> 동 세금 관련하여서는 본 가이드 3 장 1 절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나 분명히 인식할 것은 세율이 0%에서 28%로 복잡하다는 것과 환급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분기마다 매입과 매출 부가세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현금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도에서는 매월 GST filing 을 하여 매출이 매입보다 많을 경우 당연히 현금 납부를 하지만 반대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에도 현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종의 마일리지 개념으로 Credit 으로 남아서 다음 Filing 에서 이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TDS)도 주의하여야 한다.<sup>12</sup> 근로소득, 계약 소득, 임대료, 수수료와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등 적지 않은 거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오래 전 거래를 근거로 하여 세액 납부 증명을 세무당국으로부터 요구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sup>11</sup> GST: Goods & Service Tax 물품서비스세로 불리는데 일종의 부가가치세(부가세)로 간접세이다.

<sup>12</sup> TDS: Tax Deduction at Source: 원천 징수 제도: 구매자가 서비스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서비스 공급자가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공제하고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조세 리스크 관리는 관세에서도 있을 수 있다. 세번 분류에서<sup>13</sup> 한국에서의 세번 분류와 인도의 분류가 달라서 CEPA 적용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엔 예상하지 않았던 수입 원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당 품목의 양국 세관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자재로 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사전 인도 BIS 인증이 의무화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4</sup> 이 사항이 미비하면 생각하지 못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즉 진출 목적에 해당하는 원부자재 수입과 조달에서 생산활동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열거하면서 각각마다 적용되는 세금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원가 관리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진출 효과 유무와 정도를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 1-2-2.인적자원과 인건비 리스크

14 억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 인력수급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에서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다 숙련된 인력이 요구되나 인도는 아직 충분한 저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인력 공급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전문인력 부족은 필연적으로 예상 외 고임금 사태를 불러온다.

현대화된 유통업이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인도 내부에서나 해외에서 이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유통업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인도 유통 모 대기업 화장품 구매 책임자의 경우 연봉이 한화로 1 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한국 동종업계 동일 경력과 비교하여 보면 믿기 어려운 일이나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가 쓸만한 인력이 부족하고 또 구하여도 능력과 임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인력을 기초로 하는 분야에의 진출 시에는 HR 지원에 관계 구축과 사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구 많은 인도에서 공장 자동화에 많은 투자가 있는 것은 제품의 고품질 생산촉구에도 관계되겠지만 다른 이유로는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목적도 엄연하다.

인력 수급과 인건비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인건비 조사는 일반적인 조사 통계를 인용하기보다는 진출하고자 하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행하여야 한다. 산업 T1 지역과 T2 지역에서의 인건비 편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대도시에서 활동해야 할 업종이 아니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으로의 진출도 고려할 만하다.

---

<sup>13</sup> 세번: 세번 부호(HSK), HS Code분류 체계

<sup>14</sup> BIS인증이 의무화된 제품은 현재 약 170여 개가 넘는데 철강과 전자제품 등 다양한 범위이다.

이 까닭에 노동집약적 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으로 인도로 진출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인적 요소가 기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분야일 수록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고용 유지에 대한 전략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인도 인건비 수준은 한국과 비교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편이다. 다만 인구가 1 억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베트남 등과 비교하여서 14 억 인도의 인건비가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1-2-3.임차료 등 간접 비용 리스크

인도에서 공장용 부지의 구매비용이나 임차 비용은 표면적인 단가로만 비교할 수 없다. 배경과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가격 비교가 된다. 토지 구입도 공단 분양은 물론 사유지의 경우라 하여도 영구 소유권(Free Hold) 이전 매매인지 또는 99 년 장기 사용권(Lease Hold) 매입인지가 구분되어야 한다.<sup>15</sup> 특히 산업공단지에서의 사유지 매입도 원 소유주가 산업단지개발공사로부터 장기 임차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의 매입이나 임차에서 해당 공단의 분양(장기사용 분양) 조건이<sup>16</sup> 제 3 자 양도(매매)가 가능한 지 또는 임대 행위가 가능한 지를 살펴야 가격의 높낮이가 파악된다.

해당 부지가 지니고 있는 인프라 조건도 비용계산에서 빠져서는 안된다. 한국의 경우 공단 개발기관이 전력과 도로 그리고 상하수도 등 제반 인프라를 모두 제공하면서 분양 또는 임대하고 있지만 인도의 경우는 이와 다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 조건에 대한 구비 여부와 비용 부담 등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 다양한 인도라고 하면 인종과 언어 그리고 생활문화가 다양한 줄은 알았지만 이처럼 토지 거래 방식 하나만 두고 보아도 경우의 수가 양 손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다양하니 단순히 제공 미터 당 얼마냐고 묻는 것으로 비용 리스크를 관리할 순 없다.

단순히 공장용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비용 산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Bare Shell’ 방식 임대와 ‘Warm Shell’ 방식의 임대가 있기 때문이다.<sup>17</sup> 임대료가 싸다고 입주하려고 하면 아무런 마감 공사가 안 되어서 이 비용을 두고 분쟁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사기가 아니라 임차인의 사전정보 부족이다.

---

<sup>15</sup> 토지에 대한 독점 사용권은 30년, 99년 등으로 사전에 정하여 분양하고 있다. 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 권리를 갖는다.

<sup>16</sup> 인도 전체에 통용되는 하나의 조건이 없어 주(state)별로 다르고 같은 주 안에서도 사업 기관별로 다르니 하나의 예를 모든 경우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경우마다 매번 공시된 조건을 살펴야 한다.

<sup>17</sup> Bare Shell: 건물의 형태가 갖추어 있지만 내부 바닥이나 천정에 도장 공사와 필요한 전등을 설치하는 전기 공사 등의 마감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임대 후 임차인이 스스로 하여야 하는 방식.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Warm Shell이다. Warm Shell보다 충분한 내부 인테리어를 갖추고 임대하는 방식을 Furnished 또는 Plug & Play 라고 말한다.

공공 전력 비용은 싸다고 여길 수 있으나 품질이 문제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기공급이 24 시간 7 일 일주일 내내 끊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잠시의 전력 단전이 치명적인 공장 운영이나 서비스 기능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선 발전기 등 별도의 공급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선 비용이 든다. 따라서 임차료 외에 주변 인프라 사정이 가격결정 요소에 감안되어야 한다. 간접 비용에서 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매출 대비 전체 비용 중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로 한국인 임직원의 주재 비용이 있다.<sup>18</sup> 진출과 동시에 사업 이윤을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익 실현 이전의 진출기업의 인적 구성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sup>19</sup>

---

<sup>18</sup> 급여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 부담, 주거 및 차량 운행 비용, 동반 자녀 학비, 왕복 항공료 등

<sup>19</sup> 엄밀한 의미에서 인도에는 한국인 해외교포라는 의미의 거주자는 없다. 인도 국적 취득이거나 인도인과의 배우자로서 거주가 아닌 경우 사업주 비자나 고용 비자도 영주권이란 의미의 거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매우 길어도 5년 혹은 대부분 2~3년 내외 비자 유효기간을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일 뿐이다.

## 1-3. 투자인센티브

### 1-3-1. 업종별 인센티브

#### 1-3-1-1. 화학 공업 (Chemical Sector)

화학제품 생산 관련 인프라 집적을 위하여 석유·화학·유화 전용 투자지역(Petroleum, Chemical & Petrochemical Investment Regions)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PCPIR 지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시 사업이행 자금의 최대 2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며, 오폐수 무배출 공동 폐수처리장이나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비상대응 시스템 등 스마트 환경 시스템에 대해 추가적으로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sup>20</sup>(최대 2 천만 루피). 현재 구자라트(Dahej, Bharuch), 오딧샤(Paradeep), 타밀나두(Cudalore-Nagapattinam), 안드라프라데시(Visakhapatnam-Kakinada) 등 4 개 지역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36 개소의 중앙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소(Central Institute of Petrochemicals Engineering & Technology)를 설립하여 폴리머 및 플라스틱 분야의 첨단 연구개발, 기술지원,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sup>21</sup>

또한 6 개소의 플라스틱 파크(전용단지)의 설립이 승인되어 최첨단 플라스틱 제조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sup>22</sup>, 석유화학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최첨단 센터를 5 개의 인도 최고 교육기관 내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부 위험 화학물질 제외하고는 자동승인 절차를 통해 100%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어 별도의 복잡한 승인절차가 필요없으며, 2023 년 3 월 31 일까지 생산 개시하는 기업에 대해 인하된 법인세율(15%)이 적용된다.

화학 및 석유화학 부문 투자촉진을 위해 신규 생산기업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화학 및 농화학 업종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 (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프로그램도 도입될 예정이다.

<sup>20</sup> 인도 화학부 PCPIR 정책 (<http://chemicals.nic.in/sites/default/files/PCPIRPolicy.pdf>)

The Economic Times 언론보도 (2020.12.7 / [New PCPIR policy moots central funding for infrastructure](#))

<sup>21</sup> <https://www.cipet.gov.in/centres/cipet-haldia/facilities.php>

<sup>22</sup> <https://www.aipma.net/page/plastic-parks>

### 1-3-1-2. 자동차 부품 산업 (Auto Components Sector)

자동승인 제도를 통해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대해서도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인도 정부의 승인을 거쳐 향후 5 년간 총 5,704 억 루피(약 78 억 달러)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다.<sup>23</sup>

이외에도 차세대 화학셀(Advanced Chemical Cell) 배터리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도 지원하여 인도 및 해외 글로벌 기업의 인도 내 ACC 배터리 생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원 예산규모는 총 1,810 억 루피(약 25 억 달러)가 배정되었다.<sup>24</sup>

EV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도 도입된다. 대중교통(버스) 및 상업용 차량(2W, 3W, 4W)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1 킬로와트시(kwh)당 USD 14 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버스는 USD 290).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3 년간 전기 이륜차 100 만대, 전기 삼륜차 50 만대, 전기 사륜차 5 만 5 천대, 전기 버스 7 천대를 보급하고 2,700 군데의 전기 충전소를 마련할 계획이며, 지원예산은 약 14 억 달러가 배정되었다.<sup>25</sup>

추가적으로 2030 년까지 인도 전역에 69,000 여개의 전기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sup>26</sup>

### 1-3-1-3. 전기전자/IT 산업 (Electronics/IT Sector)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 촉진계획(SPECS)에 따라 전자제품의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대상 리스트에 따라, 품목 제조를 위한 자본지출의 25%를 재정 인센티브로서 지원한다. (총 USD 4 억 4 천만 규모 예산 배정)<sup>27</sup>

또한 공용 인프라 및 편의 시설이 구비된 최첨단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및 공용 인프라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최대 50%을 지원하며(최대 USD 950 만) 대규모 클러스터에 투자시에는 최대 USD 4,700 만까지 지원한다.<sup>28</sup>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발전과 최신화를 위해 Software Technology Park 가 운영되고 있다. 100% 외국인투자가 인정되며 소프트웨어 기업이 인도 투자시 필요한 장비(중고 포함)의

<sup>23</sup> <https://auto.economicstimes.indiatimes.com/news/industry/india-to-spend-27-billion-over-5-years-to-boost-manufacturing/79171904>

<sup>24</sup> <https://geplcapital.com/blog-view/144/The-production-linked-incentive-scheme-pli-explained>

<sup>25</sup> <https://www.autocarpro.in/news-national/fame-india-phase-ii-outlay-of-rs-10-000-crore-gets-government-approval-42247>

<sup>26</sup> <https://inc42.com/buzz/govt-plans-to-set-up-69000-ev-charging-stations-across-india/>

<sup>27</sup> <https://www.meity.gov.in/esdm/SPECS>

<sup>28</sup> [https://www.meity.gov.in/writereaddata/files/modified\\_electronics\\_manufacturing\\_clusters\\_scheme.pdf](https://www.meity.gov.in/writereaddata/files/modified_electronics_manufacturing_clusters_scheme.pdf)

수입관세를 100% 면제해주고 임대/리스 방식의 수입도 허용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출 규범을 단순화하였다.<sup>29</sup>

전자제품 업종에 대한 생산 연계 인센티브(PLI, Production Linked Incentive) 프로그램도 도입되었다. 전자제품 PLI 를 위해 약 USD 55 억 이 배정되었고 선정된 기업은 5 년간 4~6%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2019-20 년 이후)<sup>30</sup>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제도가 2020 년 4 월 개정(EMC 2.0)되어, 전자제품 제조 클러스터 프로젝트에 투자시 50%까지 지원하고(100 에이커 당 7 억 루피), 공용 인프라 시설(Common Facility Centers) 건립에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75%를 지원한다.(최대 7.5 억 루피)<sup>31</sup>

#### 1-3-1-4. 제약업 (Pharmaceuticals Sector)

자동승인 제도를 통해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FDI 지분 100% 투자 가능하다. 브라운필드의 경우는 정부 승인을 통해 100% 투자 가능하며 74% 이하는 자동 승인된다.

신속한 승인 처리를 위하여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이 도입되어, 일부 선진국에서 승인된 신약에 대해 인도인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이 이루어진 경우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인도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다.

제약업에도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다. 53 개 지정 원료의약품에 대하여 기준년도(2019-2020) 이후 6 년간의 매출 증가분 중 일정비율에 대해 재정 지원금이 지급할 예정이다. 기간은 2020 년부터 2028 년까지 유효하고 총 예산규모는 694 억 루피로 배정되었다.

표 1-3-1-4-1. 제약업 생산 연계 인센티브

발효 기반 약품	화학 합성기반 약품
매출 증가분의 20%	매출 증가분의 10%

자료원 : 인도 정보국(<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07483>)

<sup>29</sup> <https://www.stpi.in/stp-scheme>

<sup>30</sup> <https://www.meity.gov.in/esdm/pli>

<sup>31</sup> <https://www.meity.gov.in/esdm/emc2.0>

또한 하기 분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향후 5년간 1,500억 루피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표 1-3-1-4-2. 인센티브 지급 가능 분야**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카테고리 3
바이오 의약품, 복합 제네릭 의약품, 특허약품 또는 특허만료가 임박한 약품, 세포 기반 또는 유전자 치료 제품, 희귀의약품, 특수 공 캡슐	원료의약품(API), 핵심기초물질(KSM), 제약원료(DI)	용도 변경된 약물, 자가면역제, 항암제, 항당뇨제, 항감염제, 심혈관계, 향정신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체외진단장치(IVD), 식물약학, 인도에서 제조되지 않는 기타 약물, 승인된 기타 약물

자료원 : 언론 정보국(<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671912>)

제약 클러스터(원료의약품, 의료장비, Ayurveda, Unani 등 전통의학) 내 공용 인프라(R&D 센터, 폐수처리설비, 공동 물류센터) 설립 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총 예산규모는 3억 루피가 배정되었다.

### 1-3-1-5. 섬유 산업 (Textile Sector)

섬유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기술개발 펀드가 도입되었다. 기술개발을 위해 섬유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15%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최대 USD 410만). 기술개발 펀드를 통해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으로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통합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섬유 제조기술 개발을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sup>32</sup>

통합 섬유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섬유 관련 교육훈련, 창고, 공장 기계 등 시설투자 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으로 6.9억 달러 규모 예산이 정부에서 승인되었으며 6만 6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sup>33</sup>

<sup>32</sup> <http://texmin.nic.in/schemes/technology-upgradation-fund-scheme>

<sup>33</sup> Guidelines of the scheme for integrated textile parks

섬유업계 근로자를 위한 연금 비용을 지원하여, 월 임금 15,000 루피 미만의 신규고용 의류 산업 종사자의 국민연금을 정부가 3 년간 납부해준다.

섬유업계 고용 및 수출을 위한 특별 패키지가 마련되어 USD 8.2 억 규모 예산이 배정되었다. 수출업자에 대해 주정부 세금을 100% 면제해주고 생산 연계 인센티브의 10%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섬유업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요 중심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USD 1.7 억 규모 예산이 배정되었고 백만 명 이상의 섬유업 숙련공을 양성할 예정이다<sup>34</sup>

3 년 이내에 7 개의 메가섬유투자단지(Mega Investment Textiles Parks)를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USD 1.5 억 규모 예산이 배정되었고, 1 천 에이커 이상 규모의 부지에 첨단 인프라, 필요 시설 등을 완비할 계획이다.<sup>35</sup>

#### 1-3-1-6. 식품 가공 산업 (Food Processing Sector)

농촌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 낭비 최소화, 농민소득 증대 및 고용 기회 창출 보장을 위해 메가푸드 파크 조성을 지원한다. 일반 지역의 경우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 혹은 고산지역에 메가푸드 파크를 조성할 시 75%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최대 5 억 루피). 관리, 역량 강화, 조정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홍보 활동, 사무비용, 여비 등에 대해 전체 보조금 규모의 최대 5%까지 지원한다.<sup>36</sup>

메가푸드 파크, 농산물 가공 클러스터, 지정 농업단지 내에 식품 가공/저장 설비를 신설/확장/첨단화하는 비용의 35%를 지원한다.(최대 5 천만 루피)<sup>37</sup>

농산물 가공 클러스터를 위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인프라 구축비용(최소투자액 2.5 억 루피)의 35%(최대 1 억 루피)를 지원한다. 기초 인프라는 도로, 용수, 전력 공급, 하수, 폐수처리 등이 해당되며 핵심 인프라/공용시설은 창고, 냉동창고, 개별급송냉동, 테트라팩, 분류 등이 포함한다.<sup>38</sup>

콜드 체인 및 부가가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포장 설비, 사전냉각 장치, 숙성 챔버, 운송설비 등 저장 인프라 조성 비용의 35%를 지원하고, 냉동 보관/초저온 냉동고, 필수

<sup>34</sup> Special package for employment generation and promotion of exports in Textile and Apparel sector

<sup>35</sup> <https://blog.nextias.com/mega-investment-textiles-parks-mitra-scheme>

<sup>36</sup> <https://pib.gov.in/Pressreleaseshare.aspx?PRID=1696560>

<sup>37</sup> <https://indianexpress.com/article/cities/chandigarh/food-parks-the-for-crop-diversification-7139248/>

<sup>38</sup> [https://mofpi.nic.in/sites/default/files/revise\\_operational\\_guideline\\_of\\_apc\\_scheme\\_02032020\\_1.pdf](https://mofpi.nic.in/sites/default/files/revise_operational_guideline_of_apc_scheme_02032020_1.pdf)

가공설비 등 부가가치 인프라 설립은 투자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방사선 식품조사(照射) 시설 건립시에는 투자비용의 50%를 지원한다.<sup>39</sup>

식품 안전 및 품질 보증 인프라(QC/식품검사 연구소 설립 및 확장)에 대해서도 실험장비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구축 및 확장 관련 기술토목 작업 비용의 25%를 지원한다.<sup>40</sup> 식품안전/품질관리(HACCP/ISO 표준/식품안전/품질관리시스템) 관련 구현 비용의 50%를 지원한다.(최대 1.7 억 루피)<sup>41</sup>

식품가공부의 Operation Greens 프로젝트는 2018 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수확 후 발생하는 운송비의 50%, 보관 시설 임차비용의 50%을 지원한다.(최대 4~6 개월) 또한 수확 후 부가가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1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sup>42</sup>

### 1-3-1-7. 철강업 (Steel Sector)

철강제품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해 국내생산 기업에 대해 무담보 대출을 제공한다. (최대 USD 414 억 규모 예산 배정)

2019 년 10 월 이후 설립된 기업에 대해 23 년 3 월까지 생산 개시하는 경우 법인소득세율 15%를 적용하고 있다. (2019 년 10 월 이전 설립 기업은 법인소득세율 22% 적용)<sup>43</sup>

철강제품의 국내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35 년까지 항만 현대화, 연결성 개선, 산업화 및 해안 커뮤니티 개발에 8,100 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sup>44</sup> 인도내 지역 공항간 연결 강화를 위한 UDAN 프로젝트도 발표되었다. 항공편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4 년까지 100 여개의 신공항을 설립할 예정이고, 이미 UDAN 프로젝트에 따라 13 개 주에 지역별로 각 4 개 이상의 신공항이 설립되었다.<sup>45</sup>

### 1-3-1-8. 여행업 (Tourism Sector)

인도의 관광업 촉진 및 개발을 목표로 테마형 관광개발 지원책(Swadesh Darshan Scheme)이 도입되었다. 어플 개발, 도로변 편의시설, 응급 처치 시설, 관광 안내소 설립 비용 등 관광관련 서비스에 개발/투자하는 경우나, 관광 명소와 연계되는 도로환경 개선, 야외극장 설립,

<sup>39</sup> Revised operational guidelines of the scheme for integrated cold chain and value addition infrastructure (dated 17.12.2019)

<sup>40</sup> Revised Guidelines for the scheme of Food Testing Laboratories (27.05.2019)

<sup>41</sup> <https://mofpi.nic.in/node/972>

<sup>42</sup> <https://mofpi.nic.in/Schemes/operation-greens>

<sup>43</sup> <https://taxguru.in/income-tax/reduced-corporate-tax-rate-new-section-115baa-115bab.html>

<sup>44</sup> <http://sagarmala.gov.in/>

<sup>45</sup> <https://www.aai.aero/en/rcs-udan>

자연산책로 조성 등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sup>46</sup>

또한 주정부로부터 토지 보조금, 인지세 감면, 전기세 면제, 낙후지역 개발 보조금, 초대형 프로젝트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1-3-2. 지역별 인센티브

#### 1-3-2-1. 하리아나주

하리아나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규모별, 기업규모별, 구역별, 타겟 업종별로 인센티브를 차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sup>47</sup>

표 1-3-2-1-1. 인센티브 대상 유형별 구분

대상	기준
초대형 프로젝트 (Ultra-Mega Project)	고정자본 투자액이 지역별로 각각 최소 600 억 루피(A 블록), 450 억 루피(B 블록), 300 억 루피(C 블록), 150 억 루피(D 블록) 이상인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Mega Project)	고정자본 투자액이 지역별로 각각 20 억 루피(B 블록), 10 억 루피(C 블록), 7.5 억 루피(D 블록) 이상인 대형 투자 프로젝트
대기업 (Large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5 억 루피 이상 투자시 (매출액 25 억 루피 이상)
중기업 (Medium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5 억 루피 미만 투자시 (매출액 25 억 루피 미만)
소기업 (Small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1 억 루피 미만 투자시 (매출액 5 억 루피 미만)
영세기업 (Micro Enterprise)	공장 및 기계/장비 투자에 1 천만 루피 미만 투자시 (매출액 5 천만 루피 미만)

<sup>46</sup> <http://swadeshdarshan.gov.in/>

<sup>47</sup> [HARYANA ENTERPRISES AND EMPLOYMENT POLICY, 2020](#)

스타트업	하리아나 주정부에서 규정한 스타트업 해당 업종으로서 Start-up Haryana 등록 기업
낙후지역 개발 프로젝트	B, C, D 블록의 미개발 지역에 최소 10 개의 기업이 클러스터를 기획한 후 경제 활동 및 지역 고용률 발전에 기여
필수 재화 및 서비스	생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화, 고용 창출 서비스, 사업 연계 및 부품 제조업, 계절성이 있는 재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필수 재화
서비스 기업	건물 및 장비에 1 억 루피 이상 투자한 의료업, 관광업, 교육업, IT 업, 대량 택배 서비스업, R&D 센터, 시험 연구소, 엔지니어링 및 설계 서비스, 건설 및 공업 관련 장비 대여/리스업, 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 환경 서비스 및 영상문화단지 (영화관 제외)
데이터 센터	기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하는 정보 저장 관리 시스템 (예: 화재 진압 시스템, 공조기 시스템 등).
공유 사무 시설	IT 및 네트워크 장비 운용 관련 복수의 기업에 의해 공유되는 사무공간 (건물, 냉방, 전력, 네트워크 대역폭 및 보안 시스템 등 제공. 사용자는 서버 및 데이터 관리, 저장장비 등 제공)

표 1-3-2-1-2. 하리아나주 구역별 블록 구분

블록	지역
A	파리다바드, 구르가온, 파니파트, 소니파트, 로탁, 자자르, 레와리, 팔왈
B	암발라, 비와니, 히사르, 카르날, 메왓, 판츠쿨라, 파니파트, 팔왈, 레와리, 로탁, 소니파트, 야무나 나가르
C	암발라, 비와니, 파테하바드, 히사르, 자자르, 진드, 카이탈, 카르날, 쿠루크스테라, 메왓, 마힌더가르, 팔왈, 파니파트, 레와리, 로탁, 시르사, 소니파트, 야무나 나가르

D	비와니, 파티바드, 히사르, 자자르, 진드, 카이탈, 메왓, 마헨덜가르, 판츠쿨라, 레와리, 시르사, 소니파트, 야무나 나가르
---	---

자료원 : <http://www.haryanaindustries.com/4-BLOCK-WISE-CATEGORIZATION.html>

초대형 프로젝트(Ultra-Mega Project)에 대해서는 주정부에서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통합간접세 감면) 투자 규모에 따라 통합간접세(SGST)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며, 투자하는 구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표 1-3-2-1-3. 통합간접세 감면 내역

블록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중소/영세기업	중점산업 분야
D	5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 의 125% 한도)	7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 의 125% 한도)	10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 의 150% 한도)	10년간 100% 감면 (FCI 의 150% 한도)
C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 (FCI 의 100% 한도)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 (FCI 의 100% 한도)	7년간 75%, 이후 3년간 35% 감면 (FCI 의 125% 한도)	8년간 75% 감면 (FCI 의 125% 한도)
B	5년간 30%, 이후 3년간 15% 감면 (FCI 의 100% 한도)	5년간 30%, 이후 3년간 15% 감면 (FCI 의 100% 한도)	5년간 50%, 이후 3년간 25% 감면 (FCI 의 100% 한도)	7년간 50% 감면 (FCI 의 100% 한도)
비고	-	-	B, C, D 블록에 투자하는 영세 여성/SC/ST 기업은 7년간 75%, 이후	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3년간 35% 감면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데이터 저장장치 농업/식품 가공업
--	--	--	------------	---

자료원 : Haryana enterprises promotion policy, 2020

\* ESDM(전자시스템 개발 및 생산) 분야는 B, C, D 블록 투자시 10년간 100% 감면, A 블록 투자시 5년간 100% 감면한다.(고정자본 투자액(FCI)의 100% 상한)

\* 스타트업은 지역구분 없이 7년간 100% 면제해준다(고정자본 투자액의 150% 상한)

(고용창출 보조금) B, C, D 블록에서 고용창출시 7년간 1인당 연간 3만 루피(여성/SC 기업의 경우 36,000 루피) 보조금 지급한다.

\* 중점산업(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데이터 저장장치, ESDM)의 경우 7년간 1인당 연간 36,000 루피(여성/SC 기업은 48,000 루피) 지급하며, 농업/식품 가공업에 대해서는 경우 10년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지세 환급) D 블록 투자시 100%, C 블록 투자시 75%, B 블록 투자시 60%를 환급한다.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생산 개시 조건)

\* 중점산업(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데이터 스토리지, 농업/식품가공업)의 경우 C, D 블록 투자시 100%, B 블록 투자시 80% 환급하며 ESDM 업종의 경우 B, C, D 블록 모두 100% 환급한다.

(전기세 감면) D 블록 10년간, C 블록 7년간, B 블록은 5년간 100% 감면한다.

\* 중소기업은 D 블록 12년, C 블록 10년, B 블록 7년간 면제된다.

\* 중점산업 분야는 D 블록 20년, C 블록 15년, B 블록 10년간 면제되며, ESDM 업종은 지역구분 없이 조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면제한다.

(외부개발부담금 감면) D 블록 100%, C 블록 75%, B 블록 60% 감면한다.

\* ESDM 업종의 경우 지역구분 없이 100% 면제한다.

(이자비용 보조) 중소/영세기업에 대해 C, D 블록은 5 년간, B 블록은 3 년간 5%(연간 최대 2 백만 루피)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 여성/SC/ST 기업에 대해서는 B, C D 블록 투자시 6%(연간 최대 2 백만 루피) 지원한다.

\* 중점산업(자동차 및 부품, 섬유/의류, 항공방위, 의약/의료기기, 화학/석유화학, 대규모 에너지/데이터 저장장치, ESDM) 업종은 C, D 블록 7 년간, B 블록 5 년간 6%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며, 농업/식품가공분야의 경우 C, D 블록 7 년간, B 블록 5 년간 7%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기타 중소기업 지원 인센티브)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출전비의 75%, 항공임 등) 일부 보조, 시험장비 비용의 50% 지원(또는 연간 최대 2 백만 루피), 기술취득 비용의 75%(최대 5 백만 루피) 지원, 국내외 특허등록 비용의 100% 지원(최대 250 만 루피), ISO/HACCP/BSI 등 국제 QC 취득비용의 75%(건당 1 백만 루피 한도) 지원, 에너지 감사 비용의 75%(최대 20 만 루피), 수질감사 비용의 75%(최대 10 만 루피), 안전감사 비용의 75%(최대 10 만 루피), 고효율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공기정화 장치 도입 비용의 50% 지원(최대 5 백만 루피),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대출이자 5%(3 년간, 연간 최대 50 만 루피) 지원, 기술고도화 관련 이자 비용을 3 년간 6%(C, D 블록) 또는 5%(B 블록) 연간 100 만루피 한도 내 지원, 5 백만 루피 한도 내 산학연계 R&D 지원 비용, 영세기업 전기세 40kw 당 2 루피(D 블록) / 30kw 당 2 루피(C 블록) 지원, 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금융비용의 최대 75% 지급(최대 20 만 루피), 영세기업 담보/보증 수수료 5 년간 100% 환급, 주식시장 상장 비용의 25% 지원(최대 50 만 루피), ERP 시스템 사용료의 최대 75% 지원 (최대 50 만 루피), 린(lean) 생산방식(생산라인 최적화) 도입 컨설팅 비용의 80% 지원, 우수기업가상 수상 시 50 만 루피 지급, 창업가 육성 지원 기관들에 매년 50 만 루피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 5 년간 이자비용의 8%(연간 최대 2 백만 루피) 지원, 1 년간 리스/렌탈 비용의 30%(여성기업의 경우 45%) 최대 50 만 루피 지원, 기업당 최대 1 백만 루피 시드머니 지원(A 블록 100 대 스타트업, B 블록 200 대 스타트업, C 블록 300 대 스타트업, D 블록 400 대 스타트업), 국내외 스타트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가비용 지원, 멘토링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스토리지 비용 3 년간 100% 지원(최대 10 만 루피) 등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농업/식품가공업 지원) 사탕수수 구입세를 100% 면제하고, B, C, D 블록 내 식품 가공(과일야채 등의 세척, 등급분류, 약싱, 건조, 패키징, 콜드체인 등) 시설/장비 설립시 50%(최대 1,750 만 루피)를 지원한다.

### 1-3-2-2. 우타르프라데시주

#### 1-3-2-2-1. 제조업 고용투자 촉진책 2017<sup>48</sup>

(인지세 환급) 산업용지 구입 및 임대와 관련하여 지불한 인지세에 대해 Bundelkand 및 Poorvanchal 지역 투자시 100% 환급, Madhyancha 및 Paschimanchal 지역(GBNagar 및 Ghaziabad 구역 제외) 투자시 75% 환급, GBNagar 및 Ghaziabad 구역 투자시 50% 환급해준다.

(통합간접세 감면) 소기업은 통합간접세(SGST)를 5 년간 90% 감면, 대기업 및 중기업은 5 년간 60% 감면,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10 년간 70% 감면해준다.

(자본 이자비용 지원) 5 년간 5%를 지원한다.

(인프라 조성 관련 이자 지원) 5 년간 5%를 지원한다.

(품질개선 관련 비용 지원) 5 년간 5%를 지원한다.

(전기세 감면) UP 주 내 설립하는 신설 제조기업 대상 10 년간 100% 면제해준다.

(농산물 구입세(Mandi Fee)) 식품가공업 대상 농산물 원료에 대해 5 년간 100% 면제해준다.

(고용창출 인센티브) 미숙련공 100 명 이상 고용시 고용보험료의 고용주 부담분 50%를 환급해주고, 숙련/미숙련공 직접고용 200 명 이상시 추가적으로 10% 환급해준다.

#### 1-3-2-2-2. 전자기기/부품 제조업 촉진책 2017<sup>49</sup>

(자본 보조금)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본 비용의 15%를 지원한다. (최대 5 천만 루피)

(이자비용 지원) 7 년간 매년 5%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1 천만 루피)

(인지세 환급) 토지 매입/임대시 인지세 100% 면제해준다.

(특허 출원료 지원) 국내외 특허출원 비용 100% 환급해준다. (국내 50 만, 해외 1 백만 루피 한도)

(통합간접세 감면) 10 년간 100% 환급해준다. (토지 제외 고정자본 투자액의 100% 상한)

(토지 리베이트) 전기전자 생산지역(EMZ) 내에 전기전자 생산 클러스터/전기전자 시스템 개발/생산(ESDM) 단지 조성 또는 개별 ESDM 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 구입시 25% 할인해준다.

<sup>48</sup> <http://invest.up.gov.in/industrial-investment-and-employment-promotion-policy-2017/>

<sup>49</sup>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electronics-manufacturing-policy-2017/>

### 1-3-2-2-3. IT/스타트업 지원책 2017<sup>50</sup>

(이자비용 지원) 7 년간 매년 5%를 지원한다.

(인지세 환급) 사업개시 3 년 내에 토지/사무실/건물 매입 또는 임차시 인지세를 100% 면제해준다.

(전기세 감면) 사업개시일 이후 10 년간 100% 면제해준다.

(고용보험료 보조) 사업개시일 이후 1 년 이상 고용 유지한 종업원에 대해 100% 환급해준다.

(인증비용 지원) 최대 3 가지 인증 취득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최대 250 만 루피)

(고용 지원) 티어 2 / 티어 3 도시에서 UP 주 소재 대학 IT 전공 졸업자를 연간 50 명 이상 고용하고 6 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종업원 1 인당 2 만 루피 지원한다.

(특허 출원 보조금) 출원 비용의 최대 100% 지원한다.

(입지지원) 토지구입 비용의 최대 25%까지 환급해준다.

### 1-3-2-2-4. 중소기업 촉진책 2017<sup>51</sup>

(자본 이자비용 지원) 5 년간 5%를 지원한다.

(인프라 조성 관련 이자 지원) 5 년간 5%를 지원한다.

(토지용도 전환 비용 지원)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시 관련 비용을 100% 면제해준다.

(인지세 환급) 제조업 투자고용 촉진책 2017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환급) 사업개시일로부터 5 년간 100% 환급해준다.

(품질개선 관련 비용 지원) 5 년간 5%를 지원한다.

(전기세 감면) UP 주 내에 설립하는 신설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10 년간 100% 면제해준다.

### 1-3-2-2-5. 민간 산업단지 개발 촉진책 2017<sup>52</sup>

(이자비용 지원) 7 년간 토지구입 관련 이자비용의 50%, 인프라 건설 관련 이자비용의 60%, 종업원 기숙사 및 숙박시설 설립 관련 이자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인지세 환급) 토지개발업자는 100% 면제, 개별 취득기업의 경우 50% 환급해준다. (최초 1 회)

### 1-3-2-2-6. 스타트업 지원책 2020<sup>53</sup>

(자본금 지원) 인큐베이터 시설에 대해 현존 자본금의 50%까지 지원한다. (최대 1 천만 루피)

<sup>50</sup>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information-technology-policy-2017/>

<sup>51</sup>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msme-policy-2017/>

<sup>52</sup> <http://invest.up.gov.in/private-industrial-park-scheme-2017/>

<sup>53</sup>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startup-policy-2020/>

(운영비용 지원) 인큐베이터에 대해 5 년간 또는 자체유지 가능시까지 연간 최대 3 백만 루피를 지원한다.

(상금 지급) PMIC 선정 UP 주 상위 3 개 인큐베이터에 각각 30 만, 20 만, 10 만 루피 지급한다.

(자본 및 운영경비) 전문가 조직(CoE)에게 최대 1 억 루피까지 지원한다. (설립 후 5 년 이내)

(스타트업 유지경비)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인큐베이터 당 연간 최대 10 개사)에 대해 1 년간 월 15,000 루피 지원한다.

(시드머니) 최소기능 제품 출시를 위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최대 50 만 루피를 지원한다. (인큐베이터 당 연간 최대 10 개사)

(특허출원료 지원) 국내특허 출원시 20 만 루피, 해외특허 출원시 1 백만 루피까지 비용을 환급해준다.

#### **1-3-2-2-7. 바이오/에너지기업 촉진책 2018<sup>54</sup>**

(자본금 지원) 1 억 루피 미만 투자기업은 25%, 1 억~10 억 루피 투자기업은 20% 지원한다.

(인지세 비용) 100% 면제해준다.

(주 통합간접세 감면) 10 년간 100% 환급해준다.

(기타) 10 억 루피 이상 투자시 투자액의 15%를 지원한다. (최대 15 억루피)

#### **1-3-2-2-8. 민간항공산업 촉진책 2017<sup>55</sup>**

(부가세 면세) 지역간 연계 공항(RCS)으로부터 유통되는 주류, 담배, 총기에 대해 10 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RCS 공항이 아닌 경우는 1 년간 면세 조치한다. (UP 주내 또는 UP-타지역 간)

(전기세 지원) 유닛당 4 루피를 지원한다. (최대 3 만 유닛)

(통합간접세 환급) 항공 티켓에 부과되는 통합간접세를 100% 환급해준다. (RCS 간 항공편의 경우 3 년간, UP 주 내 비 RCS 항공 대해서는 1 년간 감면) UP 주 소재 비 RCS 공항을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1 년간 100% 환급해준다.

(주차비 감면) RCS 공항 내 3 년간 무료 주차를 지원한다. (주정부 공항)

(사무공간 지원) RCS 공항 내 사무실(최대 100 평방미터)을 3 년간 무상 임대해준다.

<sup>54</sup>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biofuel-policy-2020/>

<sup>55</sup> <http://invest.up.gov.in/uttar-pradesh-civil-aviation-promotion-policy-2017/>

### 1-3-2-2-9. 의약산업 촉진책 2018<sup>56</sup>

(특허출원 지원) 국내 특허출원 비용의 100%, 해외 특허출원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QC 인증취득 지원) ISO 인증 비용 75%, BIS 인증 비용 50%를 지원한다.

(R&D 연구소 설립 지원) 연구소 설립 관련 대출 이자의 60%를 지원한다.

(임상시험 지원) 총 지출 비용의 75%를 환급해준다.

(계약/후원연구 지원) UP 주 프로젝트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통합간접세 환급, 인지세 면제, 자본이자 지원, 인프라 이자비용 지원, 산업조사 지원, 전기세 및 농산물 구입세(Mandi Fee) 등 지원) 제조업/고용투자 촉진책 2017 에 준해 지원한다.

### 1-3-2-2-10. COVID19 이후 투자촉진책 2020<sup>57</sup>

(통합간접세 지원) Madhyanchal 에 투자시 12 년간 통합간접세 70%를 환급해주고 (투자자본의 200% 한도), Purvanchal, Bundelkhand 에 투자시 15 년간 70% 환급해준다. (투자자본의 최대 300% 한도)

(자본이자 비용 지원) 5 년간 매년 5%를 지원한다. (최대 1 천만 루피)

(전기세 감면) 10 년간 전기세 50%를 감면하고, 자체 사용을 위한 전력발전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 1-3-2-3. 편자브주<sup>58</sup>

(앵커기업<sup>59</sup>) 통합간접세를 15 년간 100% 감면(투자액의 200% 상한)하고, 토지용도 변경 비용(CLU)/외부개발부담금(EDC) 100% 면제, 고용창출시 5 년간 1 인당 연간 36,000 루피(여성/SC/BC/OBC 기업은 48,000 루피) 보조금 지급, 15 년간 전기세 100% 감면, 식품가공기업의 경우 농산물 최저지원가격(MSP)의 2% 추가지불 의무 면제 등을 지원책을 운영중이다.

(중소기업) 7 년간 통합간접세를 100% 감면하고(투자액 100% 상한), 7 년간 전기세 100% 면제, 인지세 100% 감면, 10 년간 재산세 50% 감면, 3 년간 이자비용 5% 지원(접경지역 또는 Kandi 지역에 투자하거나 SC/여성기업에 한해, 연간 1 억루피 상한), 불량률 제로화(ZED) 실현을

<sup>56</sup> <http://invest.up.gov.in/up-pharma-industry-policy-2018/>

<sup>57</sup> <http://invest.up.gov.in/post-covid19-accelerated-investment-promotion-policy-2020/>

<sup>58</sup> [Punjab Bureau of Investment Promotion \(Invest Punjab\)](http://invest.up.gov.in/post-covid19-accelerated-investment-promotion-policy-2020/)

<sup>59</sup> 의류, 전기전자, 식품가공, 신발/약세사리, IT업종 중 5억 루피 이상 투자 또는 500명 이상 고용, 이외 업종은 20억 루피 이상 투자 또는 1천명 이상 고용

위한 비용의 50% 환급(5 천만 루피 상한), 재무/기술/인프라/마케팅/수출 관련 지원 등을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한다.

(대기업) 7 년간 통합간접세를 75% 감면하고(투자액 100% 상한), 10 년간 전기세 100% 면제, 인지세 100% 감면, 10 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을 지원한다.

(중점산업 분야<sup>60</sup>) 10 년간 통합간접세를 100% 감면하고(투자액의 125% 상한), 10 년간 전기세 100% 면제, 인지세 100% 감면, 5 년간 재산세 50% 감면, 토지용도 변경 비용(CLU)/외부개발부담금(EDC) 100% 면제, 10 년간 재산세 100% 면제해주며, 이외의 모든 중소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스타트업) 5 년간 연 8% 이자비용을 지원하고(연간 5 천만 루피 상한), 1 년간 리스/렌탈 비용의 25% 환급(3 천만 루피 상한), 최대 3 천만 루피 시드머니 지원, 10 억루피 규모 자본펀드(Corpus Fund) 조성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인큐베이터) 최대 1 천만 루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5 년간 연간 최대 3 천만 루피까지 반복비용을 지원하며, 멘토링 비용(5 년간 연 3 천만 루피 상한), 스타트업 대회 참가비(행사당 최대 5 천만 루피) 등도 지원한다.

(접경지역) 토지용도변경 비용 및 외부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해주고, 최초 투자시 주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 비용, 수수료를 75% 감면해주며, 통합간접세 감면 상한의 40%를 추가로 환급해준다.

(얼리버드) 신규 산업단지 내에서 생산을 개시한 최초 10 개 기업(중소기업 5 개사, 대기업 5 개사)에 대해 12 년간 통합간접세 100% 환급해준다. (투자액의 125% 한도)

#### 1-3-2-4. 마하라슈트라주

대기업의 경우 마하라슈트라 내에서 청구된 통합간접세(GST)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며, 7 년간 100% 전기세 면제 및 인지세 100%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단지에 입주한 대기업은 인지세를 100% 면제해주며 민간공단에 입주시 75%를 감면해준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대기업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

<sup>60</sup> 전자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의료장비, 4차산업혁명 기반 제조업, 섬유/어패럴 및 기술섬유, 신발/액세서리, 전기전자, 항공방위, 농업/식품가공업, 바이오/의약, 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자전거 및 부품, 합금강, IT, 생명공학, 기술개발센터/인큐베이션센터/엑셀러레이터, 헬스케어, 관광/숙박, 미디어/오락, 항공방위MRO, 물류

표 1-3-2-4-1. 지역별 대기업 투자 인정기준 및 인센티브 지원 상한

지역	최소 설비투자액 (1 천만 루피)	최소 직접고용(명)	지원 상한 (FCI 대비)	지원 기간(년)
A(मुंबई, पुणे 등) 및 B 지역(दादर, नासिक 등)	750	1,000	25%	7
C (비만디, 마라마티 등)	500	750	40%	7
D (아우랑바드, 나그푸르 등)	250	500	60%	7
D+ (바르시, 카갈 등)	150	400	70%	7

자료원 : Government of Maharashtra, package scheme of incentives - 2019

중소기업의 경우 통합간접세를 100%까지 특별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며, 이자비용을 5%까지 지원하고 있다. C, D, D+ 지역에 설립하는 중소기업은 7 년간 전기세를 면제받는다. 기술고도화 관련 비용도 최대 5%(최대 250 만 루피)까지 지원하며, QC 취득 비용의 75%(최대 10 만 루피),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비용의 25%(최대 50 만 루피), 특허 출원비용의 75%(국내 특허 최대 100 만 루피, 해외특허 최대 200 만 루피), 수질감사 비용의 75%(최대 10 만 루피), 에너지감사 비용의 75%(최대 20 만 루피), 에너지절약 장비 도입 비용의 50%(최대 50 만 루피)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sup>61</sup>

인도 정부의 중소/영세기업발전법에 중소/영세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설비투자 규모 500 억 루피 미만인 기업을 중소/영세기업으로 분류하며, 인센티브 지원액은 고정자본 투자액(FCI)에 따라 총 인센티브 지원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 내에서 매년 균등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3-2-4-2. 지역별 중소/영세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상한

지역	지원 상한 (FCI 대비)	지원 기간(년)
A (मुंबई, पुणे 등)	-	
B (दादर, नासिक 등)	30%	7

<sup>61</sup> <https://maitri.mahaonline.gov.in/PDF/Package%20Scheme%20of%20Incentives%20-%202019.pdf>

C (비만디, 마라마티 등)	40%	7
D (아우랑바드, 나그푸르 등)	50%	10
D+ (바르시, 카갈 등)	60%	10

자료원 : Government of Maharashtra, package scheme of incentives – 2019

### 1-3-2-5. 타밀나두주<sup>62</sup>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패키지, 유망 분야, 산업단지, R&D 프로젝트, 물류 인프라, FDI, 중소기업 프로젝트 등 규모 및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표 1-3-2-5-1. 투자규모별 구분

프로젝트 분류	투자 규모		투자기간
	최소	최대	
중소규모(Sub-Large)	5 억 루피	30 억 루피	4 년
대규모(Large)	30 억 루피	50 억 루피	4 년
메가(Mega)	50 억 루피	500 억 루피	4 년
울트라 메가(Ultra-Mega)	500 억 루피	-	7 년

\* 모든 제조업 프로젝트는 최소 50 명 이상 고용 창출시 인센티브 대상으로 인정한다.

표 1-3-2-5-2. 투자대상 지역 구분

구분	지역
A	Chengalpattu, Chennai, Kancheepuram and Tiruvallur
B	Coimbatore, Erode, Karur, Krishnagiri, Namakkal, The Nilgiris , Ranipet, Salem, Tiruchirappalli, Tirupattur, Tiruppur, and Vellore
C	Ariyalur, Cuddalore, Dharmapuri, Dindigul, Kallakurichi, Kanniyakumari, Madurai, Mayiladuthurai, Nagapattinam, Perambalur, Pudukkottai, Ramanathapuram, Sivagangai,

<sup>62</sup> Tamil Nadu Industrial Policy 2021

	Tenkasi, Thanjavur, Theni, Thiruvarur, Thoothukudi, Tirunelveli, Tiruvannamalai, Villupuram and Virudhunagar
--	--

**1-3-2-5-3. ① 대규모(Large) 이상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

구분	내 용
대상	(울트라메가) A, B, C 지역 (대규모, 메가) B, C 지역
투자 보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합간접세 15 년간 100% 감면</li> <li>2. (고정형 자본보조금) 투자액의 최대 25% (최대 15 년 내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 B 지역 10%, C 지역 12% (10 년 이내)</li> <li>- 메가 : A 지역 10%, B 지역 12%, C 지역 15% (12 년 이내)</li> <li>- 울트라메가 : A 지역 20%, B 지역 22%, C 지역 25% (15 년 내)</li> </ul> </li> <li>3. (유연한 자본보조금) 최대 35%(A) / 37%(B) / 40% (C 지역)</li> <li>4. (매출액기반 보조금) 대규모고용시 매출액의 최대 2%를 지급 <p style="text-align: right;">(메가/울트라메가 프로젝트에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 천~4 천명 고용시 : 1.5%(A 지역), 1.75%(B 지역), 1.8%(C 지역)</li> <li>- 4 천명 초과 고용시 : 1.75%(A 지역), 1.8%(B 지역), 2%(C 지역)</li> </ul> </li> </ol> <p style="text-align: right;">* 2, 3, 4 번 인센티브 중 택일</p>
고용훈련 보조금	6 개월간 종업원 1 인당 월 4 천 루피 고용훈련비용 지급 * 여성(트랜스젠더 포함), 장애인, SC/ST 출신은 월 6 천 루피
부지 분양비용 지원	SIPCOT 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비용의 10% 보조(A, B 지역), C 지역은 50% 지원(고정자산 투자액의 20% 한도)
이자비용 보조	-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 6 년간 5% 지원 (연간 4 천만루피 한도)
기본 인센티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세 : 5 년간 면제</li> <li>2. 인지세 감면 : A, B 지역 50%, C 지역 100% 감면</li> <li>3. 환경친화 인프라 구축 비용의 25% 지원 (1 천만루피 상한)</li> </ol>

	4. QC(ISO, ISI, BIS, FPO, BEE, AGMARK, ECOMARK) 취득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250 만 루피) 5. 지재권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3 백만 루피)
통합간접세 감면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1-3-2-5-4. ② 유망산업 분야(Sunrise sectors)<sup>63</sup> 프로젝트 특별 인센티브**

구분	내 용
대상	(A 지역) 메가 및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B, C 지역) 대규모, 메가 및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투자 보조금	유연한 자본보조금에 추가적으로 자본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부지 분양비용 지원	SIPCOT 산업단지 내 부지 분양 비용의 10% 보조(A, B 지역), C 지역은 50% 지원(고정자산 투자액의 20% 한도, 최대 2 천만 루피)
인지세 감면	SIPCOT 으로부터 취득한 부지에 대해 100% 면제
QC 취득 지원	취득 비용의 50% 지원 (최대 1 천만 루피)
지재권비용 지원	프로젝트에 필요한 지재권 비용의 50% 지원 (최대 1 천만 루피)
이자비용 지원	6 년간 5% 이자비용 지원 - 대규모 프로젝트 : 최대 2 백만 루피 - 메가 프로젝트 : 최대 1 천만 루피 - 울트라메가 프로젝트 : 최대 4 천만 루피
기본 인센티브	1. 전기세 : 5 년간 면제 2. 환경친화 인프라 조성 비용의 25% 지원 (1 천만루피 상한)

<sup>63</sup> 항공방위산업, 농업/식품가공업(식용유 제외), 신재생에너지 부품 제조, 전기전자 개발/제조, 의료 전자장비/장치 및 설비, 전기 자동차/전기차용 셀배터리 및 친환경차(수소차 등), 바이오, 의약/복제약/약효식품, 석유화학/특수화학, 신발/가죽제품/폴리우레 탄섬유, 기술섬유(의료섬유포함), 기타 정부지정 유망산업 분야

통합간접세 감면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	------------------

**1-3-2-5-5. ③ 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 특별 인센티브**

구분	내 용
대상	B, C 지역에 메가/울트라메가 규모 산업단지 조성 투자프로젝트 (50 억 루피 이상 투자시)
자본 보조금	산업단지 인프라 조성 투자액의 12%(B 지역) 또는 15%(C 지역)
산업용 주거시설 조성 지원	산업단지 내 10 년 이상 기간동안 주거시설을 설립하는 비용의 10% 지원 (최대 1 억 루피)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지원	인프라 조성 비용의 25% 지원 (최대 5 천만 루피)

**1-3-2-5-6. ④ R&D 프로젝트 특별 인센티브**

구분	내 용
대상	인도 과학연구산업청에 등록된 5 억 루피 이상 투자, 50 명 이상 고용하는 R&D 프로젝트
자본 보조금	토지 취득/임차 비용의 50% (최대 20 에이커 / 에이커당 5 백만 루피 상한)
R&D 교육훈련 보조금	핵심 R&D 분야 종사 종업원 1 인당 12 개월간 월 1 만 루피 지원 - (학사) IT/과학 전공자로서 7 년 이상 경력자 - (석사) IT/과학 전공자로서 5 년 이상 경력자 - (박사) IT/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QC 취득 지원	취득 비용의 50% 지원 (최대 1 천만 루피)

지재권비용 지원	R&D 연구에 필요한 지재권비용의 50% 지원 (최대 1 천만 루피) * 지리적표시 등록시에는 최대 5 천만 루피
기본 인센티브	전기세 5 년간 면제 환경친화 인프라 관련 인지세 5 년간 면제 (최대 1 천만 루피)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1-3-2-5-7. ⑤ 물류인프라 관련 특별 인센티브**

구분	내 용
대상	1. 최소 5 억 루피 이상 투자, 최소 10 에이커 부지에 멀티모달 물류단지 조성 (내륙 컨테이너창고 포함) 2. 최소 1.5 억 루피 이상 투자, 최소 2 만 평방피트 규모의 콜드체인 시설 3. 최소 2.5 억 루피 이상 투자, 최소 10 만 평방피트 규모의 창고 시설
종합물류단지 대상 인센티브	B, C 지역 내 종합물류단지 개발자는 산업단지 내 창고/물류시설과 동일하게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비가공구역(창고 포함) 면적 상한을 50%까지 완화
기술훈련 지원	C 지역 내 물류창고 시설에 고용한 종업원 기술훈련 비용의 50%를 지원 (최대 1 인당 1 만 루피, 사업개시일 1 년 이내) * 타밀나두 기술개발공사 및 물류창고협회에서 공동지원
Apex 기술개발 센터	물류 운송능력 향상을 위해 Apex 기술개발 센터를 설립중임

**1-3-2-5-8. ⑥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구분	내 용
대상	메가 프로젝트 규모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

투자촉진 보조금	고정자산 투자금액의 40% 지원 타국가로부터 이전하여 설립하는 경우는 추가 지원 가능
수입장비	해외로부터 공장 이전시 도입하는 신규 및 중고 장비에 대해서도 고정자산 투자에 포함
운송비 지원	해외로부터 이전시 발생하는 자본재의 운송 및 물류 비용을 75% 감면 (최대 1 억 루피)
부지 분양비용 보조	부지 분양비용의 10% 보조(A, B 지역), C 지역은 50% 지원(고정자산 투자액의 20% 한도, 최대 1 천만 루피, 부지의 70%를 공장용도로 사용 조건)
R&D 교육훈련 보조금	핵심 R&D 분야 종사 종업원 1 인당 12 개월간 월 1 만 루피 지원 - (학사) IT/과학 전공자로서 7 년 이상 경력자 - (석사) IT/과학 전공자로서 5 년 이상 경력자 - (박사) IT/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기본 인센티브	1. 전기세 : 5 년간 면제 2. 인지세 감면 : A, B 지역 50%, C 지역 100% 감면 3. 환경친화 인프라 구축 비용의 25% 지원 (1 천만루피 상한) 4. QC(ISO, ISI, BIS, FPO, BEE, AGMARK, ECOMARK) 취득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250 만 루피) 5. 지재권비용 50% 지원 (투자기간 내 최대 3 백만 루피)
통합간접세 감면	자본재에 대한 통합간접세 환급

### 1-3-2-5-9. ⑦ 중소규모(Sub-Large)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구분	내 용
대상	50 명 이상 고용하는 중소규모 투자 프로젝트 (고정자산 투자액 5 억~30 억 루피).
자본 보조금	4 년 이내에 투자이행 완료시 1 천만 루피 보조금 지급

	c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고정자산 투자액의 5%를 투자이행 완료시 지원(5 년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
전기세 감면	신규/증액 제조업 프로젝트에 대해 5 년간 전기세 면제
인지세 면제	토지/건물 구입/임차 관련 인지세의 50% 감면
환경 친화 인프라 구축 지원	인프라 조성 비용의 25% 지원 (최대 1 천만 루피)

### 1-3-2-6. 안드라프라데시주<sup>64</sup>

(대기업) 토지 매입/임대/담보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양도세를 100% 환급한다.(최초 1 회만 환급 가능하며, 동일 토지의 후속거래는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 년간 50%를 환급해주고 의류, 식품가공, 바이오, 자동차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더 높은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적용해줄 수 있다. 특정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시 비용의 10%(최대 350 만 루피)를 지원하고, 폐수처리시설, 친환경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출물 모니터링 시스템, 취수시설 등 도입 관련 설비 투자액의 25%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최대 5 억 루피)

(중소/영세기업) 토지 매입/임대/담보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양도세를 100% 환급한다.(최초 1 회만 환급 가능하며, 동일 토지의 후속거래는 환급 불가) 영세/소기업은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5 년 간 100% 환급해주고, 중견기업은 7 년간 75% 환급해준다.(의류, 식품가공, 바이오, 자동차산업 등 특정 산업은 더 높은 환급률 적용 가능) 특정 친환경 생산설비 도입시 비용의 10%(최대 350 만 루피)를 지원하고, 폐수처리시설, 친환경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출물 모니터링 시스템, 취수시설 등 도입 관련 설비 투자액의 25%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최대 5 억 루피)

여성기업/SC/ST/BC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sup>64</sup> [https://www.apindustries.gov.in/VCIC/Data/PolicyDocuments/Andhra\\_Pradesh\\_Industrial\\_Development\\_Policy\\_2015\\_20.pdf](https://www.apindustries.gov.in/VCIC/Data/PolicyDocuments/Andhra_Pradesh_Industrial_Development_Policy_2015_20.pdf)

### 1-3-2-7. 케랄라주<sup>65</sup>

케랄라주(일부지역 제외) 내 설립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정자산 투자액의 15%(최대 2 백만 루피)를 지원(여성/SC/ST/청년기업가인 경우 20%(최대 3 백만 루피))하고, 중점산업<sup>66</sup> 투자시 추가적으로 투자액의 10%(최대 1 백만 루피)를 지원한다. 특정지역(Idukki, Wayanad, Kasaragode, Pathanamthitta)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10%(최대 1 백만 루피)의 투자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며,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도 10%(최대 1 백만 루피)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 1-3-2-8. 텔랑가나주<sup>67</sup>

(소기업/영세기업) 산업용 부지 취득시 인지세/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토지/건물 등 임차 및 모기지/담보대출과 관련된 인지세도 100% 면제해준다. 산업단지 입주시 입지비용을 25% 할인해주고(최대 1 백만 루피), 토지용도변경 비용의 25%를 환급해준다.(최대 1 백만 루피) 사업개시일 이후 5 년 동안 전기세를 유닛 당 1 루피 감면해주고, 고정자산 투자액의 1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최대 2 백만 루피)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5 년간 100% 면제하고, 5 년간 자본이자 비용의 연 이율 3%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9% 감면해주며, 신설 영세법인의 경우 기계장비 도입 비용의 10%를 지원한다.(총 투자보조금에서 지원분 만큼 공제) 현지인력 채용시 기술향상/교육훈련 비용을 50%(1 명당 최대 2 천 루피) 지원하고, QC/특허권 등록 비용의 50%(최대 20 만 루피), 특정 정화시설 설치비용의 25%를 지원한다.(최대 50 만 루피) 등

(중기업/대기업) 산업용 부지 취득시 인지세/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토지/건물 등 임차 및 모기지/담보대출과 관련된 인지세도 100% 면제해준다. 산업단지 입주시 입지비용을 25% 할인해주고(최대 1 백만 루피), 토지용도변경 비용의 25%를 환급해준다.(최대 1 백만 루피, 중소기업만 해당) 사업개시일 이후 5 년 동안 전기세를 유닛 당 1 루피 감면해주고, 부가가치세/통합간접세를 7 년간 75% 감면해준다.(중기업만 해당, 최대 고정자산투자액의 100%) 현지인력 채용시 기술향상/교육훈련 비용을 50%(1 명당 최대 2 천 루피) 지원하고, QC/특허권 등록 비용의 50%(최대 20 만 루피, 중소기업만 해당), 특정 정화시설 설치비용의 25%를 지원하며(최대 50 만 루피), 산업단지로부터 10km 거리 이내에 설립되는 단독 제조시설에 대한 도로/전선/용수 등 인프라구축 비용을 50% 지원한다.(최대 1 천만 루피, 고정자산 투자액의 최대 15%)

<sup>65</sup> <https://kerala.gov.in/documents/10180/9aef66b2-78c9-416b-bf11-6615329aab80>

<sup>66</sup> 고무산업, 농업/식품가공업, 기성복, 신재생에너지 장비/장치 제조, 바이오, 100% 수출전문기업, 바이오분해 플라스틱제조,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업, 바이오비료 제조업

<sup>67</sup> Government of Telangana Industries & Commerce Department – Incentive Scheme 2014

(여성기업) 고정자산 투자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고(최대 1 백만 루피, 소기업/영세기업만 해당), 기타 소기업/영세기업 대상 투자 인센티브도 모두 지원한다.

(메가프로젝트) 20 억 루피 이상 투자 및 1 천명 이상 고용하는 메가프로젝트 투자기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인센티브 패키지를 마련하여 지원한다.

(기설립 중소/영세기업) QC 취득 비용의 50%을 지원한다.(최대 20 만 루피)

(섬유산업) 방직 사업(조면업 제외)에 대해 5 년간 연 4%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고, 직조/뜨개질/염색/의류 생산 등 섬유사업(조면업 제외)에 대해 5 년간 6%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BC/소외계층) BC 계급에 대해 27%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12%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1-3-2-9. 웨스트벵갈주

대기업을 위해 투자 보조금, 이자 보조금, 산업 진흥 보조금, 고용 창출 보조금, 석탄 가스 보조금, 토지 전환 수수료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규모에 따라 인센티브 규모도 다르다.

Zone C 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자본 투자금액의 15%를 투자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고 D 에 위치한 기업은 30% 그리고 E 에 위치한 기업은 40%를 받을 수 있다. B, C, D, E 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이자 부채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최대 매년 175 락). 또한 B, C, D, E 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인지세를 75%까지 면제한다. B, C 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전기세를 5 년간 100% 면제받을 수 있고 D, E 에 위치한 기업은 5 년간 100% 이후 5 년간 75% 면제받을 수 있다.

Zone A,B 에 위치한 영세기업은 5 년 간 이자 부채의 55%를 지원하고 C, D, E 에 위치한 기업은 이자 부채의 70%를 지원한다. 인지세는 Zone A 25% 면제, B 는 50% 면제, C 는 75% 면제 그리고 D 는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전기세는 Zone A, B 는 5 년간 50%를 면제받고 C, D, E 에 위치한 기업은 75%를 면제받는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SGST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Zone B, C 에 위치한 기업은 30%을 환급 받을 수 있고 D, E 에 위치한 기업은 50% 환급 받을 수 있다 (누적 환급액이 고정 자본의 75%를 넘을 수 없음). 또한 표준 품질 인증에 발생하는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USD 6800) 특허 등록 비용의 50%를 환급한다 (최대 USD 6800).<sup>68</sup>

<sup>68</sup> Government of West Bengal department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extiles

표 1-3-2-9-1. 웨스트벵갈주 지역 구분

지역	도시
A	- 콜카타, 북 파르가나스, 남 파르나가스, 하우라
B	- 후글리, 북 파르나가스 & 남 파르나가스 (자치도시지역 제외), 하우라 (자치도시지역 제외) - 실리구리, 파스침, 푸르바, 부르드완, 나이다의 자치도시지역
C	- 부르드완, 푸르바, 나이다, 다르질링 (자치도시지역 제외) - 마이다, 잘파이구리, 푸르시다바드
D	- 피르뭉, 푸를리야, 방쿠라, 우타르 디나즈푸르, 닥신 디나즈푸르 - 파스침 (자치도시지역 제외)

자료원 : Government of West Bengal Department of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extiles

## 2. 회사 설립

### 2-1. 외국인 투자 절차

진출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이전 신속한 실무 진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2 장 1 절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시간 순서에 입각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2-1-1. 입지 선정

인도는 28 개주 8 개 연방직할지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각각의 주는 지향하는 산업과 경제활동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고 한 도시에서 다른 중심지까지의 떨어진 거리 역시 매우 멀다. 그러기에 인도 진출은 더 정확히 인도 어디로 진출하는 것으로 정해져야 한다.

입지선정에는 진출 목적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가운데 검토할 사항으로 통관과 물류에서 비용 부담이 큰 관계로 원부자재 수입 여부, 시장과의 거리, 협력 대상 주변 산업 유무, 진출 업종에 대한 주정부 정책 그리고 진출에 따른 인센티브 여부 등이 있다. 일단 손쉬운 곳에서 설립하고 이후 판단에 따라 다른 주로 옮기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 법인 본점 주소를 주에서 주로 이동하는 것은 간단한 일도 아니다. 무려 10 여 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과정 과정의 승인 여부에 최소 3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대기업 동반진출이 많은 관계로 사실상 입지 선정은 이미 정해진 답이 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한 진출이라면 타밀나두(Tamil Nadu)주 내에서 정해질 것이며 노이다(Noida)에 있는 삼성과 LG 에 관계된 진출이라면 공장으로는 노이다이거나 그레이터노이다(Greater Noida) 혹은 더 멀리 떨어진다고 하여도 인근 위성도시 파리다바드(Faridabad)와 가지아바드(Ghaziabad)가 고려될 것이다. 이들 도시 모두는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에 속한 도시이니 본점 주소 이동이 용이하다.

입지가 정해져도 공장부지 혹은 사무실 부동산 매매나 임대 등을 하는데 필수적인 계약 당사자 법적 신분이 없어 곤란을 겪는다. 이에 가계약 상태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명의 전환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설립 이전에 이미 지출된 비용은 설립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본사 비용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입지가 정해지면 신속히 회사설립 절차를 마치는 것이 여러 행정 절차에 유리하다. 그러기 위해선 2 장 4 절(회사 설립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에서 언급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조건과 내용에 대해 숙고를 통하여 사전 결정을 해두어야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sup>69</sup>

---

<sup>69</sup> 이따금 인도에서 법인 설립에 걸리는 시일에 대해서 30일 내외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와 같은 사전준비를 통해 필요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단계별 신청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경우에 한정된 예외적 경우이다.

## 2-1-2. 회사 유형 결정

프로젝트 오피스의 선택 여부는 매우 단순하다. 해당 사업으로만 관리하고자 한다면 다른 회사 형태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프로젝트 수행이라도 이를 계기로 인도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을 할 전망이라면 프로젝트 수행과 청산이라는 절차보다는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와 지사(支社)를 두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연락 사무소엔 법인세가 없다는 점에 미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출 목적이 말 그대로 연락 업무만 하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영업 행위가 뒤따르기에 이는 합법적 선택이 아니다.

다른 고민은 지사로 할 지 아니면 투자법인을 설립할 지에 대한 선택이다. 지사에서 법인설립이란 단계적 선택도 바람직하다. 다만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지를 살피고 진행해야 시간과 비용에 낭비가 없다. 또한 지사 설립과 동시에 사업 이익이 충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세 10% 정도 차이를 고려하여 진출 초기에 법인 설립을 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어느 형태로든 제조나 소매 판매를 해야 한다면 지사를 택해선 안된다. 지사 설립이 이후 법인 설립에 법적 인센티브가 되지는 않는다.

한국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를 택하는 데 경우에 따라서 유한책임파트너십(LLP)를 선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다만 이 경우는 반드시 파트너 중 1 인은 인도 거주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자금 조달 방법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조업이나 큰 규모의 서비스업을 하기엔 부족한 형태이다. 진출 기업이 무역업이나 소규모 서비스업을 지향한다면 택할 수 있는 선택이다.

진출하고자 하는 유형이 결정되어야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내용이 달라지니 유형 결정엔 신중하여야 한다. 경험으로 보면 이사로 등재된 인원이 많고 이사회 의결 과정이 복잡한 규모의 회사의 경우, 지사 설립에 대한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2-1-3. 회사 구조 결정(주주 혹은 파트너 및 이사)

연락 사무소나 지사 설립에는 현지 대표 1 인의 선정으로 구조가 완성된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에는 이와 달라 2 인 이상 주주 구성이 필수적이며 이사 또한 2 인 이상이 요구된다.

직접 진출 전략을 선택한 기업은 그때부터 인도 법인의 주주 구성과 이사 구성 그리고 이사 중 누구를 대표로 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결정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한국 본사의 100% 단독 투자 인도 법인 설립인 경우 일반적으로 본사 법인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상징적

의미의 1 주 주식을 대표이사 개인이나 기타 임직원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주주 1 인이 인도 현지에 있어야 한다거나 인도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sup>70</sup> 주주가 인도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그 소재지에 대해선 제한이 없다.<sup>71</sup>

이전 회사법에는 설립 직전 연도에 인도에 최소 182 일 이상 거주 한 이(인도인 또는 거주 등록한 외국인)가 1 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투자 신설 법인으로서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 불만이 크자 인도정부는 회사법(Company Act 2013)을 개정하여 회계연도에<sup>72</sup> 180 일 이상 거주하는 이사가 1 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완화시켰다.<sup>73</sup> 이 규정에 따르면 이제 설립 시기를 잘 선택하면 이제부터 인도에 주재하는 이를 인도 거주 이사(Resident Director)로 지명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굳이 회사에 관계 없었던 이를 차명하여 이사로 세울 필요가 없어졌다.

아래의 표는 진출 설립 형태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의 인적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sup>74</sup>

표 2-1-3-1. 비공개회사의 최소 인적 구조

구분	최소 인원	최대 인원	특이사항
이사(Director)	2 인	15 인	주주 총회를 통해 이사 최대 정원 15 인을 초과할 수 있음
주주(Share Holder)	2 인	200 인	주주의 국적 제한은 없다. 즉 주주 중 인도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sup>70</sup> 본사에서 법인장(法人長)이 아닌 주재원으로 나갈 직원을 등기이사 및 주주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인도취업비자(Employ VISA)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sup>71</sup> 한국 법인이 인도 설립 법인의 주주로 최상위 대주주인 경우는 인도 법인의 회계는 한국법인 회계에 연결(연결 재무제표 작성)되어야 한다.

<sup>72</sup> 회계 연도: Financial Year로 인도 회계는 매년 4월1일부터 다음 해 3월31일까지인데 이를 회계연도라고 부른다.

<sup>73</sup> As per the provisions of Sub Section (3) of Section 149 of the Companies Act, 2013, Every company shall have **at least One Director who stays in India** for a total period of not less than one hundred and eighty-two (182) days **during the financial year.**

<sup>74</sup> 법인 설립에서 친분이 있는 인도인을 거주 이사로 등재하고 나중 이를 교체하려는 계획을 갖지만 현실에선 이 인도 인 이사를 사임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품 요구로 곤란을 겪은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 2-1-4. 자본금 결정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정이 2015 년 회사법이 부분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2 루피(약 30 원)의 자본금으로 인도에서 주식회사 법인을 세울 수 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과 실제로 납부된 자본금을 말하는 납입자본금(Paid Capital)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주식회사 자본금과 다르다. 수권자본금이란 납입할 수 있는 법인의 자본금 최대 한도를 표시한 것으로 이 한도 내에서 수시로 자본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 수권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증액 변경이 가능하다.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에서 특정 회사에 대한 정보 열람을 하면 수권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알 수 있다.

설립 초기에 수권 자본금을 향후를 위해 최대로 늘려 놓고 필요한 만큼 납부하여 납입자본금을 만들 수는 있으나 수권자본금 금액에 대해 적지 않은 인지세가 부과됨으로 이에 신중한 결정이 따른다. 법인 등록 과정에서의 인지세는 수권자본금 금액 구간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자본금 규모를 어떻게 정할 지에 대해선 이익실현 이전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지 아니면 자본금은 명목상으로 하고 필요 비용은 차입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법인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 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2-1-5. 설립 대행사 선정

법인 설립은 한국에서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법률회사(Law Firm), 회계사(CA),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서도 설립된다. 회사의 규모와 사업 내용에 적합하게 자격과 경험을 갖춘 대행회사를 선정하도록 한다. 단순하게 설립대행비용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설립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고 진출 회사의 성격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택하여야 설립 이후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개시일에 임박하여 진출이 결정되어 빨리빨리 진행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20 일 이내 완료한다는 대행사의 복선 있는 약속을 무조건 믿어서도 안된다. 이런 약속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태에서 신청부터 허가까지 소요되는 날수를 계산한 것으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인데 실제로는 한국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작성과 번역, 아포스티유(Apostille) 절차 등으로 2 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된다. 모든 서류는 실제로 한국에서 발급받고 작성하여야 하며 인도에서 추가되는 서류는 대부분 e-filing 으로 이루어지기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굳이 담당자가 인도에 계속 체류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 법인 설립 이후 은행 계좌개설 등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할 경우에 맞추어 입국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선택이다. 대행 수수료 견적에는 인지세, 서류 번역과 공증 수수료, 해외특송비용 등 절차상 지출되는 제 비용 포함 여부도 확인해야 할 점이다.

## 2-2. 회사 유형 별 이해

### 2-2-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는 한국 본사와 인도 현지와의 연락 업무를 위해 거점으로 세우는 형태이다. 연락사무소 지위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시장조사 그리고 본사와 거래처 간의 기술 지원 등 소통 역할이다. 이 외에 인도로의 수출 또는 인도로부터의 수입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다.<sup>75</sup> 이런 일반적인 범주 외에 한국계 은행이 인도 중앙은행으로부터 인도 내 지점 개설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즉 한국 본사의 인도 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연락 거점으로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연락사무소는 3년 한시적이란 점이 스스로 폐업하거나 청산하기 전까지 존속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오피스와 비교된다. 물론 3년이 지나서 인도 중앙은행 승인을 전제로 연장할 수 있다.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것은 연락사무소는 직간접적으로 인도 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조건이어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직접 판매는 물론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재고관리 등도 금지되어 있다.<sup>76</sup>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국 본사가 전년도 기준 순자산이 미화 5만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여야 것과 흑자 재정을 보여주는 직전 3개년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 외에 특별한 규정은 없다.<sup>77</sup>

아래에 붙이는 표에서는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 항목을 예시한 것이다.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이드 작성 시점에서의 내용이기에 실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소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sup>75</sup> 수출입 홍보 고취 활동은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가격 제시나 흥정(Negotiation)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sup>76</sup> 이를 어기고 암암리에 본사와 영업과 매출에 관하 업무를 하였을 경우 그 흔적을 찾아 소급하여 막대한 세금과 추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실제로 한국기업의 연락사무소에서 발생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세금 추징을 위해 관련 인원에 대해 출국금지명령이 동시에 내려진다. 이는 법원판례로도 입증된 사례이므로 피할 방법이 없기에 애초부터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혹시나 어쩌다 라는 안일함이 큰 곤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sup>77</sup> 3개년도 연속으로 재무제표에 흑자로 기록되어야 한다. 즉 어느 한 해라도 적자였으면 본사 외 다른 관계 회사의 지급 보증(Letter of Comfort)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지만 승인 여부는 불확실 하다.

**표 2-2-1-1.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

순서	절차
1	신청서(FNC1) 등 서류 양식 준비 (양식 제공은 인도, 작성은 한국)
2	준비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한국)
3	AD-Category-1 은행 등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sup>78</sup>
4	현지 은행의 1 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후 RBI 로 서류 송부
5	RBI 서류 검토에서 문제없으면 UIN 이 발급됨 <sup>79</sup>
6	신청은행에서 설립인가 발급
7	인도 기업부에 Liaison Office 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8	이후 은행계좌개설과 PAN 발급 등 후속 조치

이 외 필요 서류로는 연락사무소를 세우려는 한국 본사 관계 서류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연락사무소 대표로 부임할 개인의 서류가 있다. 즉 연락사무소 설립이 정해질 땐 반드시 소장 파견 인원도 결정되어야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장 개인 서류로는 신분과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사본) 그리고 여권사진이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로는 본사 이사들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및 여권사본, 본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소개서, 영문 사업(활동)계획서, 직전 3 개년 재무제표(영문),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와 계좌 증명서 등이고 그 외로 설립 신청서, 설립 대행 위임장, 설립 동의서,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본사 이사 명부 등도 요구된다.

## 2-2-2.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

프로젝트 오피스는 외국기업이 인도에서 인프라 건설 공사 등 특정 목적을 일정기간 수행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사업체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오피스의 사업활동 범위는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한정된다.

<sup>78</sup> 한국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지점이 있으면 대부분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의 인도 지점이 설치된 도시는 New Delhi, Gurgaon, Mumbai, Pune, Chennai, Hyderabad, Ahmedabad 등인데 Gurgaon에 가장 많이 있다.

<sup>79</sup> UIN: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프로젝트 오피스의 설치 운영 기간은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이다. 당초 신청된 기간 중 종료되지 않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운영에 관하여서 프로젝트오피스는 인도 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는 없으나 외국 기관이나 본사로부터 송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수출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 등 행위를 할 수는 있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일반 법인보다 매우 높아서 거의 40%에 달한다. 이를 납부한 후 나머지 이익금은 당연 한국 본사로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서는 인도 현지에 납부해야 하는 법인 소득세율을 감안해야 하나 납부 후 한국으로 송금된 실재 이익금에 대해선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또 소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인도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한 조치이다. 프로젝트 오피스는 지사와 연락사무소와 함께 인도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부득이 하게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인도중앙은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2-1. Project Office 설립 절차**

순서	절차
1	신청서(FNC1) 등 서류 준비
2	준비된 서류의 아포스티유 발급 <sup>80</sup>
3	AD-Category-1 은행 등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4	현지 은행의 1 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후 RBI 로 서류 송부
5	RBI 서류 검토에서 문제없으면 UIN 이 발급됨
6	신청은행에서 설립인가 발급
7	인도 기업부에 Project Office 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 외 필요 서류로는 Project Office 를 세우려는 한국 본사 관계 서류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사무소 대표로 부임할 개인의 서류가 있다. 즉 연락사무소 설립이 정해질 땐 반드시 소장 파견 인원도 결정되어야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사무소장 개인 서류로는 신분과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사본) 그리고 여권사진이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로는 본사 이사들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sup>80</sup> 국내에는 아포스티유 발급을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발급대행기관을 주로 사용한다. 아포스티유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 영사 확인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여전히 요구하기도 한다.

및 여권사본, 본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소개서, 영문 사업(활동)계획서, 직전 3 개년 재무제표(영문),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와 계좌 증명서 등이고 그 외로 설립 신청서, 설립 대행 위임장, 설립 동의서,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본사 이사 명부 등도 요구되는데 이러한 준비 서류 목록은 앞서 연락 사무소 설립과 같다.

### 그림 2-2-2-1. Project Office 등록증 사례



### 2-2-3. 지사(Branch Office)

한국에 있는 회사가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한 해외 사무소를 지사로 부른다. 이 사무소는 상품의 수출입<sup>81</sup>, 관련분야의 컨설팅 서비스, 시장조사, 본사의 사업영역과 관련된 기술개발 업무의 수행, 본사를 대표하여 인도 내 기업과의 기술과 금융 협력 업무, 본사를 대리하여 판매 및 매입 대리점 역할, 본사 수출제품에 대한 유무상 After Service 를 할 수 있다. 열거된 내용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임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sup>81</sup>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IEC(Import & Export Code)를 발급받아야 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표 2-2-3-1. Branch Office 설립 절차**

순서	절차
1	신청서(FNC1) 등 서류 양식 준비 (양식 제공은 인도, 작성은 한국)
2	준비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한국)
3	AD-Category-1 은행 등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sup>82</sup>
4	현지 은행의 1 차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면 이후 RBI 로 서류 송부
5	RBI 서류 검토에서 문제없으면 UIN 이 발급됨 <sup>83</sup>
6	신청은행에서 설립인가 발급
7	인도 기업부에 Branch Office 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8	이후 은행계좌개설과 PAN 발급 등 후속 조치

지사는 인도 내에서 제조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업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이렇게 취득된 부동산은 제 3 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지만 지사가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 기간이 최대 5 년까지로 허용돼 그 이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역시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지사는 운영경비를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사용할 수도 있고 인도 내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본사로도 송금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후에 가능하다.

**표 2-2-3-2. Branch Office 설립 자격조건**

1	직전 5 개년도 재무제표에서 5 개 년도 연속으로 흑자(surplus)
2	재무제표 상 전년도 순자산이 최소 미화 10 만 달러 이상
3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설립이 허가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신청한 회사의 상위 지주회사나 특수

<sup>82</sup> 한국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지점이 있으면 대부분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의 인도 지점이 설치된 도시는 New Delhi, Gurgaon, Mumbai, Pune, Chennai, Hyderabad, Ahmedabad 등인데 Gurgaon 에 가장 많이 있다.

<sup>83</sup> UIN: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관계 자회사의 지급 책임 확인서(Letter of Comport)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위 1,2 항의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	--

이 외 필요 서류로는 지사를 세우려는 한국 본사 관계 서류가 있는데 이와 동시에 지사 대표로 부임할 개인의 서류가 있다. 즉 지사 설립이 정해질 땐 반드시 소장 파견 인원도 결정되어야 설립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지사 대표의 개인 서류로는 신분과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과 여권사본) 그리고 여권사진이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로는 본사 이사들의 영문 주민등록 등본 및 여권사본, 본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영문 소개서, 영문 사업(활동)계획서, 직전 5 개년 재무제표(영문), 은행의 영문 잔액증명서와 계좌 증명서 등이고 그 외로 설립 신청서, 설립 대행 위임장, 설립 동의서,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 본사 이사 명부 등도 요구되는데 이러한 준비 서류 목록은 앞서 연락사무소 설립과 같다. 현재 인도 내에 설립된 한국기업의 지사(支社)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중은행 지점이다.

#### 2-2-4. 현지법인

현지법을 설립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포함하여 상장을 전제로 한 공개회사(Public Company)을 택하는 경우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를 90% 택하고 나머지 10% 정도가 유한책임파트너십(LLP)를 선택하는 추세다. 여기서는 비공개회사를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비공개 법인을 설립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설립 조건을 검토하여 사전 결정을 해두어야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에 불필요한 낭비가 없다.

법인 설립을 하는 데에는 미리 결정해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법인 설립 신고 주소, 이사진 구성, 주주 구성, 회사 이름 결정, 자본금 규모 결정을 한 상태에서 실무적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름 주소, 이사 그리고 주주의 구성에 대해서는 2 장 1 절 3 항(회사의 구조 결정)과 2 장 1 절 4 항(자본금)에서 설명한 바를 참고할 수 있다. 회사의 이름은 인도 기업부 웹사이트 ‘Check Company Name’<sup>84</sup> 통해서 직접 중복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법인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반려되고 유사한 발음이 될 경우에도 반려 가능성이 크다. 같은 본사 소속일 경우에 유사한 이름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먼저 등록된 회사의 동의서(NOC)<sup>85</sup> 받아서 제출할 수 있다. 비공개법을 설립하면 이름 끝에 Private Limited 혹은 PVT LTD 라는 약어가 붙게 된다.

<sup>84</sup> www.mca.gov.in 중(中) <http://www.mca.gov.in/mcafoportal/showCheckCompanyName.do>에서 확인 가능하다.

<sup>85</sup> NOC: Non-Obligation Certificate

표 2-2-4-1. 법인 회사 설립 절차

순서	내용
1	전자서명인증서(DSC,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등록
3	법인 이름 사전 등록(RIN, Reserve Unique Name)
4	SRN(Service Request Number) 발행
5	법인 설립 신청 서류 제출
6	해외직접투자신고(국내 주거래 은행)
7	자본금 인지세 납입
8	법인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

이사에 대한 전자서명인증서(DSC)는 한국 공동인증서와 유사한 것으로 인도 정보통신부 산하 CCA(Controller of Certifying Authorities)에서 인정한 6 개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www.safescrypt.com](http://www.safescrypt.com), [www.nic.in](http://www.nic.in), [www.idrbtca.org.in](http://www.idrbtca.org.in), [www.tcs-ca.tcs.co.in](http://www.tcs-ca.tcs.co.in), [www.ncodesolutions.com](http://www.ncodesolutions.com), [www.e-Mudhra.com](http://www.e-Mudhra.com) 등이 선정기관이다. 발급할 때 본인 인증절차를 진행하는데 특정 문장을 낭독하게 하고 비디오 녹화를 하여 인증하게 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DSC 신청서, 이사의 거주지 증명(영문주민등록등본), 이사의 여권 사본, 이사의 여권용 사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정상적이라면 4~7 일 정도 필요하다.

DSC 는 등록이 완료되면 USB 에 저장되어 발급되는데 이는 법인설립 서류를 제출할 때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법인 설립 이후 받아야 할 제반 인허가 및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이사의 서명이나 확인이 필요한 때마다 사용되는 것으로 잘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USB 를 누가 보관할 것인지나를 두고 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각각 보관할 수도 있지만 이사 중 누가 인도 법인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기에 보안이 확실할 수 있는 보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 이름 사전 등록은 인도정부가 법인 설립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RUN: Reserve Unique Name’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과거처럼 많은 서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법인 이름을 사전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번 신청에서 2 개의 법인 이름 후보를 제시할 수 있는데 최대

1 주일 정도 소요된다. 법인 이름이 승인되면 SRN 이86 주어지는데 이 번호를 가지고 20 일 이내에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 일이 지나면 법인 이름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법인 이름을 임의로 지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는 반려된다.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Samsung Wedding Service 는 불가능하다. 인도에 진출한 삼성 기업이 ‘삼성’을 브랜드로 등록하였기 때문이다. 욕설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 외 Board, Commission, Authority, Undertaking, National, Union, Central, Federal, Republic, President, Nation, Governor, State, India, Bharat, Minister, Financial, Forest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sup>87</sup>

법인설립 신청서 제출을 간소화하려는 인도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어 이 가이드 이후에도 지금의 설명보다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한 노력으로 법인 이름 신청서, 법인 주소 신고서, 이사(Director) 등록번호(DIN)신청서, 법인 등록 신청서 등을 각각 제출해야 하는 것을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한 시스템이 SPICe 이다.<sup>88</sup> 뿐만 아니라 PAN(소득세 번호)과 TAN(원천공제세번호)를 법인 설립 이후 별도로 해야했지만 이제 SPICe 제출시 함께 할 수 있어서 시간 소요가 대폭 축소되었다. SPICe 제출시 다음 <표 2-7>에서 열거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표 2-2-4-2. SPICe 제출 서류**

1	이사 및 주주 <sup>89</sup> 의 거주지 증명서와 신분증
2	DIR-2 (이사 등기 동의서)
3	이사 및 주주의 확약서 (Affidavit & Declaration)
4	MOA 와 AOA (인도 법인 정관)
5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실존을 증명할 전기세 또는 관리비 납부 영수증 <sup>90</sup>
6	기타

<sup>86</sup> SRN: Service Request Number

<sup>87</sup> ABC India, ABC Delhi Company와 같이 국가나 도시명만 추가된 이름은 사용 불가이다.

<sup>88</sup> SPICe: Simplified Proforma for Incorporating Company Electronically

<sup>89</sup> 주주가 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결의서, 사업자 등록증, 정관 그리고 법인 대리인 신분증 및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sup>90</sup> 설립단계에서 아직 입주하지 않아 미비할 경우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에 보완하여도 된다.

MOA(Memorandum of Association)는 법인의 사업목적, 활동 범주, 구조 등 법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문서이고 AOA(Articles of Association)은 이사회, 주주총회 등 법인 내부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문건이다. 이들 서류 각각 마지막 페이지에는 Subscriber Sheet 라고 주주 정보와 지분 관계를 기재한다.

제출 서류가 완비되고 이를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신청서에 작성된 수권자본금(Authorized Capital)에 따라 인지세가 계산되는데 이를 납부하여야 SPICe 신청서가 제출된다. 자본금에 따른 인지세는 인도 기업부 웹사이트에서 미리 계산하여 준비할 수 있다. SPICe 제출 후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과 DIN, PAN 그리고 TAN 이 발급된다. 인도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법인명과 주소, CIN(사업자등록번호), PAN 그리고 TAN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만 본다면, 모든 서류가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설립에 걸리는 시간은 20 일 전후이다. 그러나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실재는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에 총 60~90 일 정도 걸리는 것을 전제로 진출 준비를 함이 옳다.

### 그림 2-2-4-1. 사업자 등록증 사례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Central Registration Centr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Pursuant to sub-section (2) of section 7 of the Companies Act, 2013 (18 of 2013) and rule 18 of the Companies (Incorporation) Rules, 2014]

I hereby certify that  
 PRIVATE LIMITED is incorporated on this Thirteenth day of February Two thousand nineteen under the Companies Act, 2013 (18 of 2013) and that the company is limited by shares.

The Corporate Identity Number of the company is U2029

The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of the company is **AAE JF**

The Tax Deduction and Collection Account Number (TAN) of the company is **CH IA\***

Given under my hand at Manesar this Thirteenth day of February Two thousand nineteen .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ALOK TANDON**  
 Deputy Registrar Of Companies  
 For and on behalf of the Jurisdictional Registrar of Companies  
 Registrar of Companies  
 Central Registration Centre

Disclaimer: This certificate only evidences incorporation of the company on the basis of documents and declarations of the applicant(s). This certificate is neither a license nor permission to conduct business or solicit deposits or funds from public. Permission of sector regulator is necessary wherever required. Registration status and other details of the company can be verified on [www.mca.gov.in](http://www.mca.gov.in)

---

Mailing Address as per record available in Registrar of Companies office:  
 PRIVATE LIMITED  
 LEVEL 2, AGNITO TECH PARK II, HANDANEKALAVADI NEAR  
 CHENNAI, Chennai, Tamil Nadu, India, 600096



\* as issued by the Income Tax Department

## 2-3. 회사 설립 이후 필수적 절차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회사를 운영함에 필요한 필수적인 절차와 인허가 및 등록을 마쳐야 사후 문제가 없다. 공통적으로 필수적인 절차로는 제 1 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사 공문 양식(Letterhead Form)을 마련한다. 법인 사인 스탬프도 필요하다. 회사 현판을 설치하여야 이후 증빙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감사를 회사 규모에 적합하게 임명하고 자본금이 5 천 만 루피 이상일 경우는 회사 총무비서(Company Secretary)를 관련 협회에 등록된 인원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인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주요 절차를 본 2 장 3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2-3-1. 1회 이사회 개최

30 일 이내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장 선출,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확인을 하고 법인계좌 개설도 승인하도록 한다. 법인 감사도 임명하여야 하는데 외부회계사무인(CA)이 감사를 겸한다. 물론 이사회를 물리적으로 개최한다기 보다는 서류상 갖추는 의미가 크다.

### 2-3-2. 법인 계좌 개설

인도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한국에서 하듯이 생각하면 전혀 오산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적지 않은 서류와 불친절을 생각하면 은행 계좌 개설이 엄청난 특권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이젠 이런 고민은 많이 해결되었다. 인도에 한국계 은행이 상당수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갓 진출한 한국기업의 처지를 나름 이해해주는 한국계 은행에서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고 있다.

법인 계좌 개설에서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다. 한국계 은행이라도 법인 사무실의 존재여부를 실사로 확인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문제는 진출 초기에 법인 사무실을 실제로 개설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타인의 사무실이나 설립 대행사의 주소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엔 사무실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유령회사를 차리고 자금세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기에 취하는 은행의 자구수단이다. 은행의 사무실 실사에 대한 이해가 공유될 수 있는 것은 한국 본사의 평판이 중요하기에 가급적이면 본사 주거래 은행의 인도 지점을 계좌 개설 주거래 은행으로 정하곤 한다. 서류 준비는 은행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니 개설 은행을 정하고 해당 창구에 이를 문의하도록 한다.

### 2-3-3. 자본금 송금 및 해외투자 신고

은행 계좌가 준비되면 주주들은 정해진 자본금을 해당 계좌로 송금한다.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60 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설정된 수권자본금 모두를 송금할 필요는 없다. 한국에서 해외로 자본금을 송금할 때부터 신고를 하고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비로서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 후에는 1 장 1 절 4 항에서 언급한 대로 사후신고까지 차질 없이 마쳐야 한다. 자본금 송금에서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승인이 나지만 세금을 체납한 이나 신용관리 대상자는 부적격 투자자로 분류되어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없다.

### 2-3-4. 자본금 신고

법인 계좌로 자본금이 도착하면 전체적으로 두 번에 걸쳐 신고를 하게 된다. 자본금 1 차 신고 기한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60 일이다. 기한은 넘기면 비록 소액이지만 과태료가 발생한다. 1 차 신고는 자본금 수취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차 신고는 자본금 도착 후 정관 내용대로 주식을 발행한 후 2 차 신고를 하는데 주식 발행 후 30 일 이내에 신고가 되어야 한다. 2 차 신고는 회사에서 직접 FC-GPR 이라는 온라인 신청서로 RBI 에 제출하게 된다.

### 2-3-5. GST 등록(통합상품서비스세)

모든 거래에 필수적인 GST(Goods & Service Tax) 등록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인도 은행 계좌가 필수적이다. 신청은 GST 웹사이트([www.gst.gov.in](http://www.gst.gov.in))에서 가능하다. 실제로는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한다. GST 등록은 사업장이 소재한 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사가 뉴델리에 있고 지사가 첸나이에 있다면 뉴델리와 첸나이에서 각각 GST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같은 주소의 사업장일지라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하고 있다면 각각 나누어서 GST 등록을 해야 한다. 참고로 연 매출 3 천 만원 이하의 마이크로 기업은 GST 등록 의무가 없다.

### 2-3-6. 사업개시 신고

법인 설립 이후 180 일 이내에 자본금이 도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도 기업부에 사업 개시가 되었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INC-20A 라 불리는 사업개시 신고서와 자본금 도착을 보여주는 은행 계좌내역서이다. 이 신고에는 자본금 액수에 따라 소액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는 비록 몇 천 원에 불과한 소액인데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는 엄청나다. 법인에게 50,000 루피의 과태료가 청구되며 등기 이사

각각에는 하루 지연에 무려 10,000 루피라는 날벼락이 떨어진다.<sup>91</sup> 이 외에 법인이 납부해야 될 인지세도 벌금 성격으로 지연 일수에 따라 2 배에서 12 배까지 증액된다.

### 2-3-7. 수출입 코드(IEC) 발급

무역업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한국에서나 베트남 등지에서 원부자재 공급이 있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사용의 물품 수입을 위해서 수출입 코드를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이는 DGFT 라는 중앙정부 관서에서 발급하는데 신청 또한 웹 페이지에서 가능하다.<sup>92</sup>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IEC 신청서, 법인 PAN 카드 그리고 법인 계좌 정보와 Cancelled 표시한 수표사본이다.

### 2-3-8. 기타

이 외에도 근로자 연금(EPF)과 근로자 주정부 보험(ESI) 등 회사에 고용인이 발생하면서 해야 할 내용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인도에 이러한 필수 행정 사무가 유별나게 많은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등 4 대 보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행정 신고 요구는 대동소이하다.

---

<sup>91</sup> 이사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00,000 루피이다. 10일 이상 지연되어도 과태료 최고액은 100,000만 루피이다.

<sup>92</sup> 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www.dgft.gov.in](http://www.dgft.gov.in)

## 2-4. 회사설립 관련 사전 체크리스트

앞서 각 장과 절에서 언급된 바가 있는 내용으로 인도 진출로 회사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진출 회사 내부에서 검토하여 논의하여 기본 방향을 정하여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였다.

표 2-4-1. 회사설립 사전 체크리스트

항목	Check Point
인도시장 경쟁력	자사의 제품(서비스)의 인도 시장 조건 하에서 경쟁력이 갖추어 있는 그 여부를 분석하여 진출의 타당성 검토한 후 진출 여부와 진출 형태(단독, 합작, 기술이전 등)를 결정하여야 시행착오 많은 비용과 시간 손실을 피할 수 있음.
입지(Location)	진출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진출 목적지를 확인하여 입지여건 분석(산업 허가, 인력 상황, 임금수준, Incentive 여부, 주변지원산업, 물류, 성장성 등)
회사 구조	회사 이름 (무조건적으로 본사 이름을 사용하는 것 외 법인의 경우 주주 등 지배관계를 고려하여 이전가격 등 제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사와 주주 구성, 자본금 규모와 납부 계획
	회사 내부 여건(재무제표 현황 등)
	주재 인원 선정과 사전 교육
	한국 본사와 인도 법인의 향후 관계 설정(지분관계 이외 독립성 지향 여부)

### 3. 회사운영

#### 3-1. 세무

##### 3-1-1. 조세체계

###### 3-1-1-1. 세목의 구성

인도의 조세는 부과권한의 행사 주체에 따라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주체가 부과하는 주요 세목은 다음과 같다.

표 3-1-1-1-1. 인도의 주요 세목 구성

연방정부세	직접세	소득세 (Income Tax)
	간접세	관세 (Customs duty)
		연방 상품·서비스세 (Central Good & Service tax, 'CGST')
		통합 상품·서비스세 (Integrated Good & Service tax, 'IGST')
		물품세 (Central excise duty)
주정부세	직접세	인지세 (Stamp duty)
		재산세 (Property Tax)
	간접세	지출세 (Expenditure Tax)
		주 상품·서비스세 (State Good & Service Tax)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인도는 2017년 여러 간접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한 GST 제도를 도입하였다. GST 제도 도입 이전 인도의 간접세는 주 정부 별로 각각 다른 세목과 세율의 제정으로 인해 주 간 재화 이동에 대해 거래세가 부과되는 등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GST 제도의 도입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부과하던 간접세는 GST로 통합되어 단일의 세율로 부과하게 되었으며 적용된 GST 세율은 50:50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세수에 귀속되고 주간 거래에는 중앙정부가 IGST를 부과한 후 각 주에 배분한다.

다만, 일부 재화와 상품은 아직까지 GST 제도로 통합되지 않고 기존의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류 (Alcohol for human consumption)와 석유제품 (Petroleum products)이 이에 해당하는데 동 재화의 생산시설 반출에는 기존의 간접세인 물품세 (Central excise duty)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부과하고 있다.

상속세는 과거 상속재산의 7.5% ~ 40%의 세율로 과세되었으나 1985 년 폐지되었으며 현재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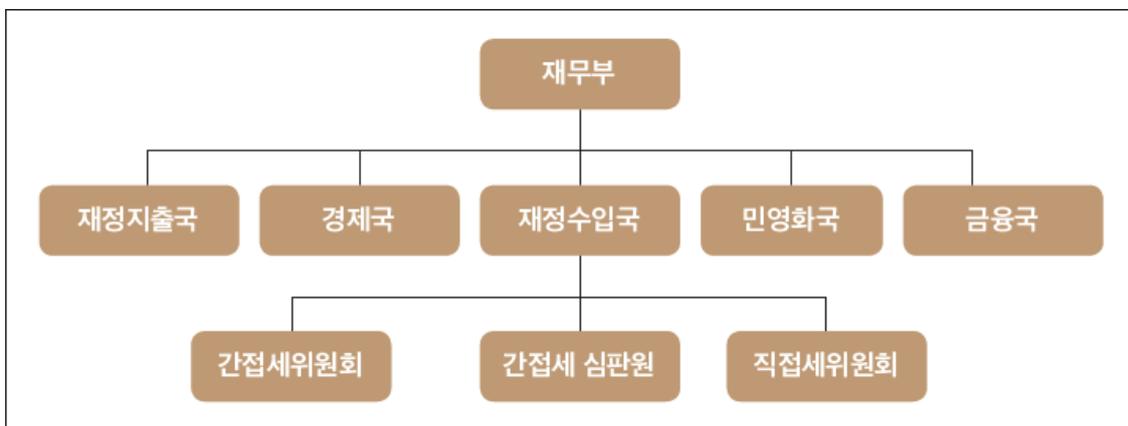
증여세법은 1998 년 폐지되었으나 자산의 무상이전은 수증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족 간의 증여와 가족 이외의 자로부터 5 만루피 이하의 증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3-1-1-2. 인도 과세당국의 구조<sup>93</sup>

인도의 재무부 (The ministry of Finance)는 재정지출국 (Department of Expenditure), 경제국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민영화국 (Department of disinvestment), 금융국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 재정수입국 (Department of Revenue) 5 개의 Department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Department 의 장은 차관이다.

재무부의 재정수입국 (Department of Revenue)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관세청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연방정부의 직접세 분야는 직접세위원회 (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가, 간접세 분야는 간접세위원회 (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가 담당하며 각 위원회의 장을 ‘Chairman’으로 위원들은 ‘Member’라고 한다.

그림 3-1-1-2-1. 재무부와 과세당국(간접세위원회, 직접세위원회)의 관계



<sup>93</sup> 주인도대사관, 2016, 인도 세법 이해

인도의 직접세심판원 (ITAT, Income Tax of Appellate Tribunal)은 법무부 (Ministry of Law and Justice) 산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세심판원 (CESTAT, Custom, Excise Service Tax Appellate Tribunal)은 재무부의 재정수입국에 소속되어 있다.

## 3-1-2. 소득세

### 3-1-2-1. 인도의 소득세 특징

한국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와 달리 인도의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모두 다루면서 개인과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에는 차이가 있는데 매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연방예산과 함께 매년 제출되는 Finance Bill 에 포함되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세에는 부가금 (surcharge)과 목적세인 건강·교육세 (Health and Education Cess)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 3-1-2-2.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1)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 (Person)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다음의 7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개인 (individual), 힌두 비 분리 가족 (Hindu undivided family)<sup>94</sup>, 기업 (company), 유사파트너십 (firm), 조합 (association of persons or a body of individuals), 지방당국 (local authority), 기타 법률상의 납세자 (Every artificial juridical person)

#### (2) 거주자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범위

조세의 부담범위는 거주자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인도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크게 거주자 (Resident in India)와 비거주자 (Non-resident in India)로 구분된다. 이에 더하여 거주자인 개인과

---

<sup>94</sup> 힌두사회에만 독특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일종의 파트너십으로 이해될 수 있다. 통상 파트너십은 제3자간에 계약관계로 존재하는 것임에 비하여 이는 혈통상으로 묶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종중과 유사한 개념이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주요국의 조세제도 인도편

힌두 비 분리 가족은 정규거주자 (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In India)와 비정규거주자 (Resident but not ordinarily resident in India)로 세분화된다.

거주자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3-1-2-2-1. 거주자 별 납세의무 범위**

구분	정규거주자	비정규거주자	비거주자
인도 국내소득 (Indian Income)	과세	과세	과세
해외소득 (Foreign Income)	과세	1) 인도에서 설립되었거나 2) 인도에서 통제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 경우 과세	과세제외

(3) 개인 (Individual)의 거주자 판정

개인이 1) 과세연도 (Previous year)동안 인도에 체류한 기간이 182 일 이상이거나 2) 과세연도 중 인도에 60 일 이상을 체류하고 그 직전 4 개년 동안 인도에 365 일 이상을 체류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된다.

상기 2 가지 요건 중 1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자로 판정된 개인이 아래의 추가 요건 두가지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규거주자 (Resident and ordinarily resident in India)로 판정한다.

- ① 과거 10 년 중 2 년 이상을 인도에 체류한 경우
- ② 과거 7 년 중 730 일 이상을 인도에 체류한 경우

(4) 기업의 거주자 판정

인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도기업은 항상 거주자로 판정한다. 외국기업의 경우 1) 총 매출액 50 Crore 루피를 초과하고 2)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장소 전체 또는 일부를 인도에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한다.

### (5) 조합 및 기타 법률상 납세의무자의 거주자 판정

조합 등의 경우 사업의 통제와 경영(Control and Management)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된다. 통제와 경영은 단순히 통제와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상태가 아닌 실제적인 통제를 의미한다.

#### 3-1-2-3. 진출형태에 따른 과세 상 취급

인도 진출형태는 크게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지점 (Branch Office), 프로젝트사무소 또는 현지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업활동은 수행할 수 없으며 현지 시장조사, 홍보활동 및 업무 상 의사소통 등의 제한적 활동만이 허용된다. 연락사무소가 허용된 활동범위내에서만 운영된다면 인도세법에 따른 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점과 프로젝트사무소는 주로 수출입, 연구활동 및 건설 등 특정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되는데 두 형태 모두 인도 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발생한 수익은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인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은 인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에게 요구되는 세법 상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3-1-2-4. 소득세의 과세기간

인도의 과세기간은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 년을 기본단위로 한다. 다만, 회계기간의 시작일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인도의 회계기간은 4 월 1 일에 시작하여 익년 3 월 31 일로 종료되는데, 동 12 개월의 기간을 회계연도 (Financial year)라고 한다.

##### (1) 사업연도 (Previous year)와 과세연도 (Assessment Year)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대상기간을 인도세법 목적 상 사업연도 (Previous year)라고 한다. 12 개월의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익년의 12 개월의 기간을 과세연도 (Assessment year)라고 한다

##### (2) Financial year 와 다른 기간을 사업연도로 적용하는 경우 과세소득 계산

인도소득세법 목적 상, 모든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 소득은 회계연도 (Financial year, 4 월 1 일 ~ 익년 3 월 31 일)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회계연도에 맞춰 회계장부를 기록할 필요는 없다.

2021.04.01 ~ 2022.03.31 의 사업연도 (Previous year 2021-22) 동안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소득은 2022.04.01 ~ 2023.03.31 의 과세연도 (Assessment year 2022-23)에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1 월 1 일부터 시작하는 12 개월을 회계기간으로 정하여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인도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표 3-1-2-4-1. Financial year 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세소득 계산**

회계기간	회계이익		
	합계	1 월 ~ 3 월	4 월 ~ 12 월
2020.01.01~2020.12.31	80,000	20,000	60,000
2021.01.01~2021.12.31	110,000	54,000	56,000
2022.01.01~2022.12.31	70,000	38,000	32,000

기간 별 과세대상 소득:

과세연도	사업연도	과세대상 소득
2021-22	2020-21	114,000 (60,000 + 54,000)
2022-23	2021-22	94,000 (56,000 + 38,000)

### (3)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

신설법인 또는 신규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 첫번째 사업연도는 사업개시일 또는 소득이 발생한 날에 시작하여 바로 직후에 도래하는 3 월 31 일로 종료되며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법인과 신규사업자의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는 4 월 1 일 시작하여 3 월 31 로 종료되며 항상 12 개월의 기간으로 구성된다.

### 3-1-2-5.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PAN 은 인도과세당국이 납세자별로 발급하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10 자리 고유번호를 말한다. PAN 은 세무신고 뿐 아니라 은행계좌의 개설, 부동산 거래 등 인도 내 경제활동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이다.

PAN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고율의 TDS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이후에도 연차 소득세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PAN 을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PAN 의 발급을 위해서는 인도국민의 경우 서식 49A 와 (외국인의 경우 49AA) 신분과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한다. 특히 외국법인의 경우 주소증명의 영문번역, 공증 뿐 아니라 대리인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의 영문공증 등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 3-1-2-6. 소득세의 계산구조

소득세는 각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에 이월결손금과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소득세에는 부가금인 Surcharge 와 목적세 Cess 가 추가로 부과된다.

표 3-1-2-6-1. 소득세의 계산 흐름



### 3-1-2-7. 과세대상 소득

#### (1) 소득의 구분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아래의 5 가지로 분류한다.

- ① 근로소득 (Salaries)
- ② 부동산소득 (Income from house property)
- ③ 사업소득 (Profits and gains of business or profession)
- ④ 양도소득 (Capital gains)
- ⑤ 기타소득 (Income from other source)

상기 5 가지 분류에 따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총 소득금액 (GROSS TOTAL INCOME)이라고 한다. 5 가지 소득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 (2) 배당에 대한 과세

2003 년 4 월 1 일부터 2020 년 3 월 31 일 사이에 선언된 배당에 대해서는 개정 전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에게 배당분배세 (Dividend Distribution Tax)를 과세하였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0 년 4 월 1 일 이후 선언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분배세를 과세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주주의 기타소득 (income from other sources)의 일부로서 과세한다.

#### (3) 과세제외 소득

소득세법 제 10 조, 10A, 10AA, 10B, 10BA, 11, 12, 13 및 13A 에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다루고 있다. 소득세법 제 10 조는 농업소득, 힌두 비 분리 가족으로부터 수령한 소득 등 일반적인 비과세 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10A, 10AA, 10B, 10BA, 11, 12, 13 및 13A 는 자유무역지역 내 신규투자 및 자선재단 및 정치자금 등 특정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과세혜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3-1-2-8. 사업소득금액 계산

제조, 판매 등의 사업활동 및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제공을 통해 창출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사업소득금액은 통상 회계장부 상

순이익에 사업소득과 관련되지 않은 수익과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등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표 3-1-2-8-1. 사업소득금액 계산구조**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	XXX
가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수익	XXX
차감: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수익,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비용	(XXX)
사업소득금액	XXX

(1)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용

자본적 지출,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외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원천징수 하지 않은 지출

이자비용, 로열티 등에 대한 대가 지급 시 TDS 를 징수할 의무가 있다. TDS 대상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TDS 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지출액을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받은 상대방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TDS 를 이행하지 않은 지출액 100%를 공제하지 않는다. 반면, 대가를 지급받은 상대방이 거주자인 경우 지출액의 30%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TDS 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연도 경과 후 원천징수를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연도에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균등부과금을 징수하지 않은 지출

균등부과금(Equalisation Levy)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특정서비스의 대가 임에도 균등부과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기한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대가는 공제받을 수 없다. 만약, 이후 연도에 균등부과금을 징수·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다.

③ 종업원 소득세의 대납

종업원에게 비화폐성 급여 (주택제공 등)를 제공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해당 소득세 대납액은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④ 특수관계인에게 초과지불한 대가

친인척, 임원, 조합의 파트너 및 주요 이해관계자(출자지분 또는 이익의 20%이상을 배분 받을 권리를 보유한 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상 필요, 공정가치 또는 지출에 따른 효익을 초과하여 지불한 대가는 공제하지 않는다.

⑤ 특정지불수단에 의한 지급

Account payee cheque/draft 또는 Rule 6ABBA 에서 정한 전자결제수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동일인에게 1 일 1 만루피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액은 비용으로 공제(1 만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 지급액 전액 불공제)하지 않는다. 만약 과거 소득세 계산 시 아직 결제하지 않은 부채를 비용으로 공제받은 후, 차후 연도에 동 부채를 1 만 루피를 초과하는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년도에 이를 수익으로 과세한다.

⑥ 법률이 정하지 않은 연금기여금 등

법률이 정하지 않은 단체, 연금 등에 대한 기여금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종업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총당금 설정액은 Fourth Schedule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제가 허용되는 지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지출한 비용은 원칙 상 공제를 허용한다. 비용으로 공제되는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에 대한 임차료, 수선비 등

건물에 대한 임차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지방세 및 보험료는 비용항목으로 공제가능 하다. 이전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임차료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편, 이익연동 등 변동조건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임차료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공제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 ② 기계장치, 설비 및 비품 관련 수선비, 보험료

기계장치, 설비 및 비품에 대한 수익적 지출 성격의 수선비와 보험료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감가상각비

사업연도 동안 사업에 사용한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한다. 당초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의 자산과 시운전 중인 자산의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상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이 아닌 자산 군 별로 세법이 정한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상각후잔액법 (Written down value method)과 정액법 (Straight-line method)를 인정하고 있다. 발전 및 송전설비를 제외한 자산은 상각후잔액법을 적용한다. 반면, 발전 및 송전설비의 경우 상각후잔액법과 정액법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상각후잔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자산군 별 상각후잔액 (기초 장부가액 + 신규자산 취득금액 - 처분대가 등)에 법률이 정한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감가상각비 계산 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산군의 상각후잔액이 '0'인 경우, 실제 자산이 존재하더라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한편, 자산군의 상각후잔액이 '0'이상이라도 자산의 처분 등으로 실제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고 처분으로 수령한 대가와 남아 있는 상각후잔액의 차이를 단기자산 양도차익 또는 손실로 과세한다.
- 신설합병, 분할 또는 조직변경 등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승계한 경우 합병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합병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승계 이전과 승계 이후의 일수로 안분하여 이를 각각 승계 받은 자와 승계한 자의 감가상각비로 배분한다.
- 신규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하지 않고 다른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용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의 50%만을 비용으로 공제한다. 이러한 50% 공제 제한 규정은 신규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에만 적용한다. 만약 자산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해에 사용을 시작하여

180일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시작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 전액을 공제한다.

-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거나 충분한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상각율에 따라 계산된 감가상각비 중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미 공제된 감가상각비는 차기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 차기로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기한의 제한 없이 이월공제 가능하며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기 이월된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이월결손금공제 후에도 잔여 소득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공제 가능하다.

#### ④ 과학연구지출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과학연구에 대한 지출은 공제를 허용한다. 사업개시일 전 3년 이내에 지출한 과학연구지출의 경우 사업이 개시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수익적 지출뿐 아니라 자본적 지출 성격의 과학연구지출도(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제외한다) 공제대상에 포함하며 연구목적에 아직 사용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출한 연도에 전액을 비용으로 공제한다(사용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과학연구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공제를 적용 받았으나 과학연구목적 사용 전 자산을 처분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과 처분금액 중 낮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처분금액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과학연구지출을 공제가능한 사업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과학연구에 대한 지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한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지출액을 공제기한 제한 없이 이월하여 공제한다.

생명공학기업 (bio-technology) 또는 주류, 담배 및 화장품 등 Eleventh schedule 에 열거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제조 기업이 정부승인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과학연구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지출 제외)의 150%를 비용으로 공제한다.

한편, 정부승인 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연구 또는 연구비용을 기부한 경우에는 사업연관성과관계없이 지출금액의 100% 또는 150%를 공제한다.

## ⑤ 창업비

인도내국법인 또는 인도거주자가 사업개시 및 확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정한도내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공제가능한 창업비는 사업타당성,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시장조사 등 사업개시를 위한 분석보고서 작성, 계약서 작성 지원 등 법률서비스, 기업법에 따른 등록비 및 지분발행과 차입 등 자금조달비용을 포함한다.

창업비는 프로젝트 비용(고정자산 등의 투자금액)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내국법인의 경우 투자된 자본(지분투자액과, 무담보 사채 및 장기차입금 포함)의 5%와 프로젝트 비용의 5%를 창업비 공제 한도로 선택할 수 있다. 창업비는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정액상각하여 비용으로 공제한다.

## ⑥ 명예퇴직금

명예퇴직자금은 실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5년간 균등 상각하여 비용으로 공제한다. 첫번째 비용공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는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에 따른다.

## ⑦ 이자비용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 가능하다. 다만, 비거주자인 관계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비거주자인 관계기업이 보증을 제공한 차입금 포함) 이자비용은 EBITDA의 30%를 한도로 비용 공제를 허용하되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자비용은 8년간 이월하여 공제한다.

한편, 자산취득 목적 차입금 이자의 경우, 차입시점부터 자산을 당초 목적에 사용하게 된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므로 이자비용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⑧ 대손금

영업과 관련된 회수불가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한다. 실제 장부에서 제거한 채권금액의 공제만을 허용하므로, 회수불가능 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된 일반적인 영업채권의 대손금이 공제 대상이므로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설비, 기계장치 등의 양도로 발생한 채권을 대손처리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⑨ 대손충당금

금융기관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은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표 3-1-2-8-2. 대손충당금 비용공제 한도

구분	비용공제 한도
해외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Non-banking finance companies)	대손충당금 전입액 차감 전 소득금액의 5%
공공금융기관 (Public financial institution)	대손충당금 전입액 차감 전 소득금액의 5%
인도은행 (Indian banks)	대손충당금 전입액 차감 전 소득금액의 5%와 도시 외 지역 지점의 단기대여금의 10% 합계

3-1-2-9. 결손금 통산

총 소득금액은 5 가지 분류 (Head of Income)에 따른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일부 소득분류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은 이를 당해연도의 동일한 소득분류내에서 통산하거나 다른 소득과 통산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결손금통산의 적용방법 및 순서에 대해 살펴본다.

(1) 결손금 통산 순서

- ① 동일 소득분류 내 결손금통산 - 한 소득원천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일한 소득분류내의 다른 원천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한다.
- ② 소득구분 간 결손금통산 - 동일 소득분류내 결손통산 후에도 잔여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소득구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한다.
- ③ 소득구분 간 통산 후 남은 손실은 향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 (2) 동일 소득분류 내 결손금통산

동일한 소득분류 내 한 소득원천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다른 소득원천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우선 서로 상계하기 전에는 다른 소득구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이 존재한다.

- 투자사업 (Speculation business) 손실은 오직 다른 투자사업 원천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 소득세법 35AD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공제를 적용 받는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 규정을 적용 받는 다른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해서 상계할 수 있다.
- 장기자산 양도손실은 오직 다른 장기자산의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다. 단기자산 양도손실은 장기자산과 단기자산 양도차익 모두와 상계할 수 있다
- 경주용 말의 소유,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오직 동일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상계할 수 있다.
- 복권 등의 당첨소득은 다른 원천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상계에 활용될 수 없다.

## (3) 소득구분 간 결손금통산

동일한 소득분류 내 결손금통산 후 에도 남아있는 결손금 잔액은 다른 소득구분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한다. 다른 소득구분 내 상계가능한 이익이 있는 경우 결손금의 일부만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계가능한 결손금 전액을 모두 상계하여야 한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투자사업손실은 다른 분류의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 소득세법 35AD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공제를 적용 받는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은 다른 분류의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 양도소득 결손금은 다른 분류의 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 경주용 말의 소유,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소득과 상계할 수 없다
- 부동산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타 소득분류 간의 통산은 최대 2 lakh 루피를 한도로 허용된다.

각 소득구분 간 결손금통산 시 어느 소득분류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선 상계할 것인지에 대한 통산순서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결손금을 우선 상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 (4) 결손금 이월 공제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일한 소득내 통산과 다른 소득구분 간 통산을 통하여 결손금을 전액 상계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부족한 경우에는, 통산 후 남은 결손금을 이월하여 차기 이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결손금 이월 공제가 허용되는 결손금은 아래와 같다.

- ①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8 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투자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4 년간 오직 투자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 가능하다. 소득세법 35AD 의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같은 규정에 따른 특정 사업소득과 공제기한 제한없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 ②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8 년간 이월하여 부동산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한다.
- ③ 양도소득: 장기자산 양도손실은 8 년간 이월하여 오직 장기자산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반면, 단기자산 양도손실은 단기자산과 장기자산 구분없이 8 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기타소득: 경주용 말의 소유, 관리 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4 년간 이월하여 동일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5) 합병 시 결손금 승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 전 발생한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간 합병 또는 은행, 공공기관의 합병
- ② 합병당사회사들이 결손이 발생한 사업을 3년이상 영위한 경우
- ③ 합병당사회사들이 합병일 2년전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의 4분의 3 이상을 합병일 현재 계속하여 보유.
- ④ 합병신설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4분의 3 이상을 합병 후 5년간 유지

- ⑤ 합병신설법인이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을 5년간 계속하여 운영
- ⑥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간 합병의 경우 생산능력의 50% 이상의 조업도를 합병일 4년전부터 합병 후 5년간 유지 - 승계한 사업의 조업도 등 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Certificate을 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1-2-10. 소득세의 세율

인도 소득세법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정하고 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납세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법인의 세율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는 부가금 (Surcharge)과 건강·교육세 (Health and Education Cess)가 추가로 과세된다. 2021-22 과세연도 (Assessment Year)에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 (1) 법인소득세 세율

표 3-1-2-10-1. 법인의 소득세율

구분	매출액 범위	세율
내국법인	400 Crore 이하	25%
	400 Crore 초과	30%
외국법인	단일세율	40%
유사파트너십	단일세율	30%

표 3-1-2-10-2. Surcharge

구분	소득범위		
	1 Crore 이하	1 Crore - 10 Crore	10 Crore 초과
내국법인	0%	7%	12%
외국법인	0%	2%	5%
유사파트너십	0%	12%	12%

③ 건강·교육세

건강·교육세는 법인의 분류, 매출 및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4% 단일세율을 부과한다.

(2) 개인소득세 세율

표 3-1-2-10-3. 60 세 이상 80 세 미만 거주자의 세율

소득범위	소득세율	Surcharge		Cess
		양도소득	이외소득	
Rs. 3,00,000 이하	0%	0%	0%	0%
Rs. 3,00,000 – Rs. 5,00,000	5%	0%	0%	4%
Rs. 5,00,000 – Rs. 10,00,000	20%	0%	0%	4%
Rs. 10,00,000 – Rs. 50,00,000	30%	0%	0%	4%
Rs. 50,00,000 – Rs. 1,00,00,000	30%	10%	10%	4%
Rs. 1,00,00,000 – Rs. 2,00,00,000	30%	15%	15%	4%
Rs. 2,00,00,000 – Rs. 5,00,00,000	30%	15%	25%	4%
Rs. 5,00,00,000 초과	30%	15%	37%	4%

표 3-1-2-10-4. 80 세 이상 거주자의 세율

소득범위	소득세율	Surcharge		Cess
		양도소득	이외소득	
Rs. 5,00,000 이하	0%	0%	0%	0%
Rs. 5,00,000 – Rs. 10,00,000	20%	0%	0%	4%
Rs. 10,00,000 – Rs. 50,00,000	30%	0%	0%	4%
Rs. 50,00,000 – Rs. 1,00,00,000	30%	10%	10%	4%
Rs. 1,00,00,000 – Rs. 2,00,00,000	30%	15%	15%	4%
Rs. 2,00,00,000 – Rs. 5,00,00,000	30%	15%	25%	4%
Rs. 5,00,00,000 초과	30%	15%	37%	4%

표 3-1-2-10-5. 60 세 미만 거주자 및 비거주자

소득범위	소득세율	Surcharge		Cess
		양도소득	이외소득	
Rs. 2,50,000 이하	0%	0%	0%	0%
Rs. 2,50,000 – Rs. 5,00,000	5%	0%	0%	4%
Rs. 5,00,000 – Rs. 10,00,000	20%	0%	0%	4%
Rs. 10,00,000 – Rs. 50,00,000	30%	0%	0%	4%
Rs. 50,00,000 – Rs. 1,00,00,000	30%	10%	10%	4%
Rs. 1,00,00,000 – Rs. 2,00,00,000	30%	15%	15%	4%
Rs. 2,00,00,000 – Rs. 5,00,00,000	30%	15%	25%	4%
Rs. 5,00,00,000 초과	30%	15%	37%	4%

### 3-1-2-11. 최저한세

소득세법은 사회, 경제 및 조세정책 목적 상 납세자에게 여러 인센티브, 공제, 감면 등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혜택을 적용 받는 납세자는 동일한 소득을 창출한 다른 납세자에 비해 낮은 조세를 부담하게 된다. 많은 조세혜택을 적용 받는 납세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저한세 (Minimum Alternate Tax, MAT)는 이러한 세제상 우대조치로 과세형평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상 다양한 조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1) 최저한세의 적용

최저한세는 회계이익 (Book profit)에 15%를 곱하여 계산된다. 소득세법 상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는 적용가능한 조세혜택에 불구하고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최저한세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세액은 15 년간 이월하여 일반적인 납부세액이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3-1-2-11-1. 최저한세 적용 예시

일반적인 납부세액과 최저한세 중 높은 최저한세를 적용	구분	일반적인 납부세액	최저한세
	당기순이익	100	100
<b>납부세액: Max[A, B] = 21</b>	세무조정사항	(50)	-
A. 일반적인 납부세액: 15	MAT 목적 조정사항	-	40
B. 최저한세: 21	과세표준	50	140
	세율	30%	15%
	소득세	15	21

(2) 회계이익의 계산

최저한세 계산 목적 상 회계이익은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세법이 정한 조정항목들을 가감하여 산출한다. 주요 조정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산조정<sup>95</sup>

-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 준비금 (Reserve), 확정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비해 마련한 준비금, 자회사의 손실에 대비한 총당부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배당금, 소득세법 상 면세소득과 관련된 비용, 자산의 가치 감소에 대비한 총당금

② 차감조정<sup>95</sup>

- 준비금의 인출, 유보금, 소득세법 상 면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감가상각 미상각 잔액, 발전·송전회사의 인수에 따른 이익, 인프라 Facility를 개발·유지·운영하는 기업의 인수에 따른 이익, 부실기업의 이익, 소득세법 제80HHC조, 소득세법 제80조에 규정된 공제

<sup>95</sup> 주인도 대사관, 2016, 인도 세법 이해

### 3-1-2-12. 신설 제조법인 등의 특례세율 적용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설 제조업법인 및 모든 내국법인은 기본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한번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일부 소득공제 등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1) 모든 내국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 특례세율

##### ① 적용요건

상장여부, 주주의 구성 및 연 매출액 규모 등에 제한 없이 모든 내국법인은 동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특례세율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까지 소득세법이 정한 신고서식(Form No. 10-IC)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적용세율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한 법인의 소득은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부가금 10%와 건강·교육세 4% 고려 시 유효세율 25.17%).

##### ③ 고려사항

-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법인은 신규 취득 설비 등의 추가 감가상각비 공제(제32(1)조), 신규투자지출 비용 공제(제32AD조) 및 기타 소득세법 상 일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특례세율 선택 시 적용이 배제되는 상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하여 전기로부터 이월된 결손금과 미상각잔액은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이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법인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2) 신설 제조법인

##### ①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설립 후 첫 번째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15%의 특례세율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컴퓨터소프트웨어, 대리석 블록의 제작 등 일부 품목의 제조는 제

외한다

- 2019년 10월 1일 이후 설립되어 2023년 3월 31일 이전 생산을 개시하여야 함
- 과거 호텔 및 컨벤션 센터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이용하지 않아야 함
- 중고 설비 및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② 적용세율

특례세율의 적용을 선택한 신설 제조법인의 소득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부가금 10%와 건강·교육세 4% 고려 시 유효세율 17.16%).

## ③ 고려사항

-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신설 제조법인은 신규 취득 설비 등 추가 감가상각비 공제(제32(1)조), 신규투자지출 비용 공제(제32AD조) 및 기타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특례세율 선택 시 적용이 배제되는 상기 소득공제 등과 관련하여 전기로부터 이월된 결손금과 미상각잔액은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이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한 신설 제조법인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신설 제조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가 유사한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이 상의 초과이윤을 신설 제조법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해당 거래에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소득을 재계산 할 수 있다.

### 3-1-2-13. 소득세의 신고

#### (1) 소득세 신고 대상자

개인, 조합 및 기타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의 경우 소득금액이 일정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기업과 유사파트너십의 경우 소득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 (2) 소득세 신고서식

소득세는 납세의무자 및 소득의 원천구분 등에 따른 다음의 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표 3-1-2-13-1. 소득세 신고서식**

신고서식	납세자 유형
ITR-1	근로소득, 연금 및 이외 기타의 소득이 있는 개인
ITR-2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 및 HUF
ITR-3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및 HUF
ITR-4	소득세법 44AD 조 등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납세자
ITR-5	ITR-7 제출대상을 제외한 유사파트너십, 조합 및 이외 기타납세의무자
ITR-6	자선 또는 종교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을 적용하는 납세자
ITR-7	소득세법 139(4A)조 등에 따른 재단 등
ITR-V	전자서명 없이 ITR-1 내지 ITR-5 서식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

(3) 신고기한

**표 3-1-2-13-2. 소득세 신고기한**

구분	신고기한
이전가격세제를 적용 받는 기업 (Form No. 3CEB 제출대상)	11 월 30 일
이전가격세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기업	10 월 31 일 <sup>96</sup>
기업을 제외한 개인 등:	
세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0 월 31 일 <sup>96</sup>
세무감사를 받아야 하는 Firm 의 파트너	10 월 31 일
이외의 경우	7 월 31 일

<sup>96</sup> AY2020-21의 신고기한은 11월 30일로 연장되었다.

#### (4) 결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

기한내 소득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신고불성실 시 가산세 등

- 연차신고서를 지연제출 한 경우 5천 루피의 late fee가 부과된다. 다만, 과세소득금액이 5 lakh 루피 이하인 경우 late fee는 1천 루피를 초과할 수 없다<sup>97</sup>.
- 지연납부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월 1%의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 과소신고의 경우 세액의 50%(세금회피 목적의 과소신고의 경우 2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6) 수정신고

제출된 신고서에 누락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 과세연도 (Assessment year)종료일 또는 부과절차가 완성된 날 중 이른 날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AY 2020-21 의 경우 수정신고서는 2021 년 3 월 31 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부과절차가 2021 년 1 월 15 일에 완성된 경우 수정신고는 2021 년 1 월 15 일까지 제출을 허용한다.

### 3-1-2-14. 중간예납

#### (1) 중간예납의무자

연 소득에 대해 1 만 루피 이상의 소득세 납부(TDS 및 TCS 공제 후 세액)를 예상하는 납세의무자는 분기별로 중간예납을 할 의무가 있다(60 세 이상인 개인은 제외).

####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중간예납 기한

중간예납의무자는 매 분기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각 분기말 현재 예상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추정해야 한다. 소득세법은 분기별로 추정납부세액 중 각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각 분기별 중간예납 기한과 납부세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sup>97</sup> 과세연도 12월말 이후 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추가 late fee를 부과하던 규정은 Finance Act 2021 공표 시 삭제되었다.

표 3-1-2-14-1. 중간예납 기한 및 중간예납 비율

분기	중간예납 기한	일반납세자	간이과세자
1 분기	6 월 15 일	15%	0%
2 분기	9 월 15 일	45%	0%
3 분기	12 월 15 일	75%	0%
4 분기	3 월 15 일	100%	100%

(3) 과소납부 시 지연이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 최종 결정된 소득세액의 90%에 미달할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득세 확정일까지 월 1%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3-1-2-15. 세무감사 (Tax Audit)**

연 매출액이 1 Crore 루피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세무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0 lakh 루피). 연간 거래액 중 현금거래의 비중이 5%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무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한다.

세무감사보고서는 과세연도 10 월말까지 제출되어야 한다(이전가격세제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 9 월말까지 제출). 세무감사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액의 0.5%와 1.5 lakh 루피 중 낮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1-2-16. TDS**

(1) TDS 제도 개요

원천공제 제도(Tax Deduction at Source)는 소득세법이 정한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에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원천공제의무자가 TDS 를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TDS 뿐 아니라 관련 가산세를 원천공제의무자가 부담한다. 또한, 관련 지급액은 원천공제의무자의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TDS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원천공제 된 세금을 제외한 순액만을 지급받게 되지만(1 Crore 루피 초과 예금인출액의 TDS 등 제외) 징수된 세금은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동 세액은 이후 지급받은 자의 사업연도 납부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2) TDS 대상 지급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증권 등의 이자, 임차료, 수수료 및 중개료, 복권 등의 당첨소득, 계약에 따른 대가, 전문·기술용역에 대한 대가 및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지불 등이 TDS 적용을 받는다. TDS 를 적용 받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1-2-16-1. TDS 대상 지급**

구분	적용대상 및 세율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 지급을 지급하는 경우</li> <li>▪ 세율 -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li> </ul>
배당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li> <li>▪ 세율 - 7.5%</li> </ul>
증권 이외 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에게 유가증권 이외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단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 또는 HUF의 경우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DS 의무를 부담</li> <li>▪ 세율 - 7.5%</li> </ul>
계약에 따른 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에게 광고/방송/상품 또는 여객운송, 케이터링, 도급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li> <li>▪ 건 당 지급액이 3만 루피 이하 또는 회계연도 중 지급액의 합계가 10만 루피 이하인 경우 TDS가 적용되지 않는다.</li> <li>▪ 세율 - 개인, HUF에게 지급 시 3.75%, 이외의 경우 1.5%</li> </ul>

구분	적용대상 및 세율
수수료 및 중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거래의 중개 또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의 대가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단 수수료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 또는 HUF인 경우에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DS의무를 부담</li> <li>▪ 세율 - 3.75%</li> </ul>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단, 임대료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 또는 HUF의 경우는 매출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DS의무를 부담</li> <li>▪ 세율 - 공장 및 기계의 임대 1.5%, 토지 및 건물의 경우 7.5%</li> </ul>
전문적·기술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자에게 로열티 및 전문적·기술적서비스(법률, 의료, 엔지니어링, 회계, 경영 및 기술자문) 및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li> <li>▪ 회사의 임원에게 회의비, 기타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경우 제외)</li> <li>▪ 세율 - 기술적서비스의 경우 2%, 이외의 경우 10%</li> </ul>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 및 인도내에서 과세대상인 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li> <li>▪ 세율 - 소득의 구분 및 금액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이자, 배당, 로열티 등의 경우 제한세율 적용가능)</li> </ul>
50 lakh 루피 초과 재화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초과하는 자가 5 lakh 루피를 초과하는 구매대가를 지급하는 경우</li> <li>▪ 세율 - 0.1% (PAN정보가 없는 경우 5%)</li> </ul>

지급을 받는 자는 원천공제 시 원천공제의무자에게 PAN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PAN 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TDS 일반세율과 20%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장기 Bond 이자 등 일부 제외).

### (3) TDS Certificate

원천공제 의무자는 TDS 신고 후 15 일 이내에 지급을 받는 자에게 TDS Certificate(원천징수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 기한 내 Certificate 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1 일 당 100 루피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4) TDS 신고 및 납부기한

원천공제의무자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다.

**표 3-1-2-16-2. TDS 신고 및 납부기한**

구분	신고 및 납부 기한	미이행 가산세 등
월별 TDS 납부	지급을 한 달의 익월 7 일 (3 월 지급분의 경우 익월 30 일)	1) 징수 및 납부불성실 이자: 미이행기간 매월 1%(1.5%)의 이자부과  2) 불공제 비용: 지급을 받은 자가 거주자인 경우 지급액의 30%를 공제대상 비용에서 제외(비거주자의 경우 100%)  3) 가산세: 징수하지 않은 TDS 와 동액의 가산세 부과 가능
분기별 TDS 신고	분기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일	1) 지연신고: 일당 200 루피의 late fee 부과(TDS 세액 한도)  2) 가산세: 1 만루피 가산세 부과 가능(최대 10 만 루피)

**3-1-2-17. TCS**

TCS 는 특정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자가 판매시점에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TCS 는 구매자의 소득세 신고 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1) TCS 적용대상

① 주류, 목재, 광물, 및 폐기물 등

주류, 목재, 광물 및 폐기물 등은 품목별로 판매액의 1% ~ 5% TCS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정부기관 또는 연간 매출액이 1 Crore 루피를 초과하는 사업자(법인이 아닌

경우 50 lakhs)는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시기에 TCS 를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구매자가 해당 품목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와 해당 재화를 제조, 가공 및 전력생산에 투입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TCS 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 주차장, 도로 및 채굴권 등 대여

주차장, 도로 및 채굴권 등을 임대하는 경우 2% TCS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임차인이 공공기관(Public sector)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자동차 판매

대당 가격이 10 lakh 루피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금액의 1%의 TCS 를 구매자(구매자가 정부기관인 경우 제외)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TCS 를 적용하며 자동차 제조사가 딜러 및 유통업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TCS 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LRS 제도를 통한 해외송금 및 해외여행 패키지

LRS (Liberalised Remittance Scheme, LRS)제도를 통해 연간 7 lakh 루피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 7 lakh 루피를 초과하는 금액의 5%(Non PAN/Aadhaar 의 경우 10%, 교육비 목적 금융기관 대출관련 송금의 경우 0.5%)의 TCS 를 징수한다.

## ⑤ 50 lakh 루피 초과 상품 판매

2020 년 10 월 1 일부터 직전 과세연도(Previous Year 2019-2020)의 매출액이 10 Crore 루피를 초과하는 납세자가 동일인에게 연간 50 lakh 루피를 초과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서비스 매출은 제외한다)은 판매액의 0.075%(2021 년 4 월 1 일 이후 판매분부터는 0.1%)의 TCS 를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한다.

TCS 징수기준인 50 lakh 루피는 GST 요소까지 포함한 판매대가를 말하며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판매금액을 포함한다. 한편 상품의 수출과 다른 규정에 따라 TDS 와 TCS 가 적용된 거래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2) TCS 납부 기한

판매자는 TCS 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징수한 TCS 를 납부해야 한다. TCS 를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TCS 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월 1%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 (3) TCS Certificate 및 신고기한

TCS 를 징수한 자는 매 분기 TCS 신고와 Certificate 을 발행하여야 한다. 분기별 TCS 신고와 Certificate 발행기한은 다음과 같다.

**표 3-1-2-17-1. TCS 신고 및 Certificate 발행 기한**

분기	신고기한	Certificate 발행기한
1 분기 - 6 월 30 일	7 월 15 일	7 월 30 일
2 분기 - 9 월 30 일	10 월 15 일	10 월 30 일
3 분기 - 12 월 31 일	1 월 15 일	1 월 30 일
4 분기 - 3 월 31 일	5 월 15 일	5 월 30 일

## 3-1-3. GST

### 3-1-3-1. GST개요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조세의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가 대표적인 직접세에 해당한다. 반면,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GST 는 인도의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한다. GST 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가격에 세금을 포함시켜 거래 징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GST 는 주 마다 개별적으로 부과하던 간접세를 하나로 단일화한 간접세제도로써 2017 년 7 월 도입되었다. GST 도입 이전 인도의 간접세 체계하에서는 재화의 공급거래에는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서비스의 공급에는 중앙정부가 주로 간접세를 부과하여 왔다. 주 별로 상이한 간접세 제도는 불공제되는 다수의 간접세 발생과 판매 이외 거래단계에 거래세 부과 등 조세제도의

복잡성을 야기하여 인도 내 기업활동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주 별로 상이하던 여러 간접세 항목이 하나의 GST 제도로 수렴됨에 따라 인도가 진정한 단일 경제시장으로 변모하여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3-1-3-1-1. GST 로 흡수된 간접세 항목**

중앙정부 부과 세목	주 정부 부과 세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entral excise duty (*)</li> <li>▪ Duties of excise</li> <li>▪ Additional duties of excise</li> <li>▪ Additional duties of customs</li> <li>▪ Special additional duty of customs</li> <li>▪ Service tax</li> <li>▪ Central surcharges and cess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ate VAT/Sales tax (*)</li> <li>▪ Luxury tax</li> <li>▪ Octroi and entry tax</li> <li>▪ Entertainment and amusement tax</li> <li>▪ Taxes on advertisement</li> <li>▪ Purchase tax</li> <li>▪ Taxes on lotteries, betting and gambling</li> <li>▪ State surcharges</li> </ul>

(\*) 주류, 석유제품 등은 아직 GST 제도로 수렴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간접세인 Excise duty 및 VAT 의 적용을 받는다.

### 3-1-3-2. GST 과세대상

GST 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Supply of goods and services)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공급은 판매, 교환, 사용권리의 대여 등 사업상 대가의 수령을 수반하는 모든 형태의 공급을 포함한다. 무상공급과 공급자의 사업과 무관한 공급은 원칙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수령이 없더라도 과세대상 공급으로 간주한다.

-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사업용 자산의 처분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수관계자간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직원에게 제공한 연간 5만 루피 이하의 무상공급은 제외)
- 복수의 GSTIN을 보유한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GSTIN을 갖고 있는 사업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 위탁판매, 구매대행 거래에서 본인과 대리인간 재화의 공급
- 국외 특수관계자로 부터의 서비스의 수입

- 사업을 폐지한 경우 보유중인 사업용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

### 3-1-3-3. GST 등록

GST 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식별과 GST 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첫 단계이다. GST 등록을 통해 납세의무자는 고유식별번호(GSTIN)를 발급받고 중앙정부와 주 정부를 대신하여 GST 의 거래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이전 단계에서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GST 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을 부과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며 과세대상 공급을 하는 자는 GST 의 납세의무자로서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연 매출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GST 등록은 공급활동을 수행하는 각 주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실체가 여러 주에 걸쳐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각 지점이 소재한 주별로 GST 등록이 요구된다.

#### (1) GST 등록의무 기준 금액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는 GST 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2 백만 루피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인도 북동부의 특정 주(Special category states)의 경우 GST 등록 기준점으로 2 백만 루피 보다 낮은 1 백만 루피를 적용한다. 헌법 279A 조는 이러한 특정 주를 정하고 있는데 Arunachal Pradesh, Assam, Jammu and Kashmir,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Sikkim, Tripura, Himachal Pradesh and Uttarakhand 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상기 특정 주 중 일부가 연간 2 백만 루피의 등록기준점 적용을 선택하면서 관련 GST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아래의 주가 연간 매출액이 1 백만 루피에 미달하는 경우 GST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표 3-1-3-3-1. GST 의무등록 기준

연간 매출액	구분
1 백만 루피 미만 (약 16 백만원)	Manipur, Mizoram, Nagaland and Tripura
2 백만 루피 미만 (약 32 백만원)	상기 이외 모든 주

연간 매출액이 2 백만 루피(또는 1 백만 루피)에 미달하는 자가 자발적으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등록신청으로 인정된다. 한번 GST 등록을 한 이후에는 연 매출액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GST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2) 재화만을 공급하는 자의 GST 등록

재화만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4 백만 루피에 미달하는 경우, GST 법 상 등록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의 주간 공급을 하는 사업자, 대리납부의무자 등 Section 24에서 정한 의무적으로 GST등록을 해야 하는 자.
- 아이스크림, Pan masala 및 담배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 특정 주내(Arunachal Pradesh,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Puducherry, Sikkim, Telangana, Tripura, Uttarakhand)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 자발적으로 GST등록을 한자

### (3) GST 의무등록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연 매출액이 GST 등록의무 기준(20 lakh 루피/10lakh 루피)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요구된다.

- 재화의 주간 공급을 하는 사업자(서비스, Job work 및 수공예품의 주간공급 제외)
- 임시과세사업자 (Casual taxable person)
- 대리납부의무자
- 전자상거래 운영자(Electronic commerce operators)
- 비거주과세자(Non-resident taxable persons)
- GST 51조에 따른 TSD의무자
- 과세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공급하는 사업자
- Input service distributor
- 전자상거래 운영자를 통해 공급하는 사업자

- GST 52조에 따라 TCS의무를 부담하는 전자상거래 운영자
- 인도 국외에서 온라인정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GST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GST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GST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와 서비스만을 공급하는 사업자
- 자신 또는 가족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자신의 책임하에 타인을 고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공급을 받는 자가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재화 및 서비스만을 공급하는 사업자

**3-1-3-4. GST등록 신청기한 및 필요정보**

(1) 일반적인 경우

GST 등록신청서 (Form GST REG-01)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여러 주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주마다 별도의 등록신청이 필요하다. GST 등록에는 아래의 정보와 문서가 필요하다.

- PAN,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승인권자의 Aadhaar number, 서명권자의 사진, 법 인등록증, 사업장 주소지 증명 – 임대차계약서, 각종 고지서 등, 통장사본, 취소 수표 등 은행계좌 증명서류, 이사회의사록(서명권자 지정)

(2) 비거주과세자의 경우

비거주과세자(NRTP, Non-resident taxable person)란 인도내 고정된 사업장 없이 비정기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비거주과세자의 GST 등록신청서는 인도 내 사업개시 5 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비거주과세자의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Form GST REG-09 와 법인등기부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 등이 필요하다.

### ① 서명권자 지정

비거주과세자의 등록신청서는 유효한 PAN 을 보유한 인도거주자의 서명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전 인도 휴대전화번호와 PAN 을 보유한 인도거주자 한 명을 서명권자 (Authorized Signatory)로 지정해야 한다.

### ② GST 등록 유효기간

비거주과세자의 GST 등록은 90 일간 유효하다. 비거주과세자는 신청을 통해 GST 유효기간을 최대 90 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내 사업활동이 180 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NRPT 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③ 선납세액 납부

비거주과세자는 등록신청서 제출 전 선납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선납세금은 등록유효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납부 한 선납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초과할 경우 등록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3-1-3-5. 매입세액 공제

GST 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는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아닌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포함된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이후 단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면 세금위에 다시 세금이 부과되는 누적과세효과가 나타난다. 각 공급단계의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 ITC)를 통해 이전 거래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으로써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만 GST 를 납부하게 된다.

### (1) 매입세액 공제 요건

GST 법 상 등록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① 세금계산서 수취 - 세금계산서 (Tax Invoice), Debit note, 계산서 (Bill of entry) 등 적격 증빙을 갖춘 매입세액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

② 재화 및 서비스의 수령 - 매입세액은 매입한 재화의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수취한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선급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및 서비스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공제받을 수 없다.

③ 신고서 제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납세자는 신고서에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매입대금 지급 - 공급받은 자는 매입대금과 GST 를 인보이스 발행일자로 부터 180 일 이내 공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동 기한내 지불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이자는 공급받은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된다.

④ 거래상대방의 매출액 신고 - 공급받은 자가 공제를 신청한 매입세액 중 공급자가 신고한 invoice 내역과 일치하는 하는 항목만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 등의 정보는 공급받은 자의 GSTR-2A 서식으로 자동적으로 복사된다. 공급자의 신고내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공급받은 자는 본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급자가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급자가 신고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한다.

## (2) 불공제매입세액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13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와 관련된 매입세액 (재화 및 여객의 운송 등 과세목적 차량 등의 경우 제외)
- 식품, 음료, 미용목적의 치료, 헬스케어 서비스, 차량 등의 리스(사업자가 동일한 품목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제 허용)
- 클럽, 피트니스센터 등의 회원권
- 종업원에게 제공한 휴가 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을 제외한 부동산의 리노베이션, 개량, 수선을 위한 건설도급계약과 관련된 매입세액. 단, 건설도급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매입의 경우 공제를 허용한다.
-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을 제외한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 비거주과세자의 매입세액. 단, 비거주과세자가 수입한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한다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 개인목적 사용, 고객에 대한 선물, 무상샘플

### (3) 매입세액공제 적용 순서

인도의 GST 는 하나의 거래에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절반씩 세금을 징수하는 Dual GST 제도로 운영된다. 주 내 공급에는 CGST 와 SGST 가 각각 세율의 50%씩 징수되며, 주 간 공급에는 IGST 과 부과된다. 연방정부와 개별 주 정부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CGST 와 SGST 간 공제 및 각 주의 SGST 상호 간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IGST 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CGT 및 SGST 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매입세액의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 3-1-3-5-1. 매입세액공제 적용 순서<sup>98</sup>**

매입세액	공제순서	비고
IGST	IGST → CGST 또는 SGST (납세자 선택 가능)	납세자는 매입 IGST 를 매출 CGST 와 SGST 각각에 일부 금액을 나누어 공제가 가능
CGST	CGST → IGST	매입 CGST 와 SGST 는 매입 IGST 를 전액 활용 후에만 공제가 가능
SGST	SGST → IGST	

### (4) 매입세액공제 적용 기한

다음의 두 날 중 이른 날이 지난 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 해당 인보이스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이후 도래하는 9월의 GST신고기한
- 해당 매입세액이 귀속되어야 하는 연차 GST신고기한

<sup>98</sup> V.S. Datey, 2021, TAXMANN's GST Ready Reckoner

### 3-1-3-6. GST 세율

소금, 우유, 가공하지 않은 곡물 및 채소 등은 GST 가 면세된다. 수출 또는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로 과세한다. GST 면세항목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영세율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기 GST 면세와 영세율 적용대상 이외에는 품목별로 다양한 세율이 지정되어 있다. 대부분 5%, 12%, 18%, 28%세율을 적용 받으며 설탕, 오일, 대중교통서비스 등 생필품에 해당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에어컨, 담배 등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외 다이아몬드, 귀금속 등 특수품목은 0.25% 또는 3%의 세율이 지정되어 있다.

### 3-1-3-7. GST 신고

GST 신고는 전자신고로 이루어진다. 공급자가 업로드한 인보이스 정보는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공제로 연계되어 상호대사를 통해 불일치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 지게 된다.

GST 법상 납세의무자는 월별, 분기별 및 연단위로 아래의 서식을 사용하여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고서식 및 신고기한

주요 GST 신고서식 및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표 3-1-3-7-1. 주요 GST 신고서식

신고서식	신고주기	신고사항	신고대상자	신고기한
GSTR-1	매월/분기(*1)	매출내역 신고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납세의무자	익월 11 일(분기별 신고자: 분기종료 후 13 일 이내)
GSTR-3B	매월/분기(*1)	종합신고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납세의무자	익월 20 일(분기별 신고자: 분기종료 후 22 일 이내(*2))
GSTR-4	매년(*3)	연차 간이과세신고	간이과세자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4 월말

신고서식	신고주기	신고사항	신고대상자	신고기한
GST CMP-08	매 분기	분기 간이과세신고	간이과세자	분기종료 후 18 일 이내
GSTR-5	과세기간 종료 시	비거주과세자 종합신고	비거주과세자	과세기간 종료 후 20 일, 등록 유효 기간 만료 후 7 일 이내 중 이른 날
GSTR-6	매월	ISD 월별 신고	ISD	익월 13 일
GSTR-7	매월	TDS 신고	TDS 의무자	익월 10 일
GSTR-8	매월	전자상거래 운영자 월 단위 신고	전자상거래 운영자	익월 10 일
GSTR-9	매년	연차신고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납세의무자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12 월말일 까지(*4)
GSTR-9A	매년	연차 간이과세신고	간이과세자	회계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4 월말일

(\*1) 직전 년도 매출액 5 천만 루피 이하인 사업자는 분기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2) Himachal Pradesh, Punjab, Uttarakhand, Haryana, Rajasthan, Uttar Pradesh, Bihar, Sikkim, Arunachal Pradesh, Nagaland, Manipur, Mizoram, Tripura, Meghalaya, Assam, West Bengal, Jharkhand, Odisha, the Union Territories of Jammu and Kashmir, Ladakh, Chandigarh, Delhi 의 경우 분기 종료 후 24 일<sup>99</sup>

(\*3) 분기단위로 신고하던 GSTR-04 은 2019 년 이후 연 단위 신고로 변경되었다. 기존 간이과세자의 연차신고서 GSTR-9A 의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연 매출 2 천만 루피 초과시 요구되던 Chartered Accountant 의 GST 감사는 2020-21 세법개정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GSTR-9 서식과 신고기한이 변경 공지될 예정이다.

<sup>99</sup> Notification No.82/2020-Central Tax

### 3-1-3-8. 지연신고 시 가산금 등

#### (1) 지연신고가산금 (Late fee)

##### ① 연차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연차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 매출액의 0.25%를 한도로 지연제출 일 당 200 루피의 지연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② 연차신고 이외 신고서의 지연제출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연차신고서 이외의 신고서(GSTR-1, GSTR-3B, GSTR-4, GSTR-5 및 GSTR-6)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만 루피를 한도로 지연신고일 당 50 루피의 지연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무실적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에는 지연신고일 당 20 루피의 지연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sup>100</sup>.

#### (2) 납부지연이자(Interest)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GST 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미달납부세액 등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일수와 18%를 적용하여 계산한 납부지연 이자를 부과한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25%이자율을 적용한다.

### 3-1-3-9.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제도 (Composition Scheme)는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가 간소화된 납세의무 이행절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간이과세 적용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GST 로 납부하게 된다.

#### (1) 간이과세 적용 대상

---

<sup>100</sup> Notification No. 4 to 7/2018 – Central Tax

직전 회계연도의 연 매출액이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표 3-1-3-9-1.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기준금액	구분
연 매출 75 lakh 루피	Arunachal Pradesh, Manipur, Meghalaya, Mizoram, Nagaland, Sikkim, Tripura, Uttarakhand
연 매출 150 lakh 루피	상기 특정 주를 제외한 모든 주

(2) 간이과세 적용 배제

아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팬 맛살라, 탄산수 및 담배제조업자
- 음식점을 제외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다만, 직전 회계연도의 총 매출액 중 서비스매출의 비중이 10%를 초과하지 않거나 5 lakh 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임시과세자 및 비거주과세자
- 주간 공급(inter-state outward supply)을 하는 사업자
-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3) 간이과세자의 GST 납부세액 계산

간이과세자는 메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매출액에 다음의 업종별 세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표 3-1-3-9-2. 업종별 간이과세 세율**

구분	적용세율
제조업 (아이스크림, 담배 등 간이과세 적용 배제품목의 제조는 제외)	1% (CGST 0.5%+SGST 0.5%)
음식점업	5% (CGST 2.5%+SGST 2.5%)

이외(서비스매출이 총 매출액의 10% 또는 5 lakhs 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포함)	1% (CGST 0.5%+SGST 0.5%)
--	--------------------------

(4) Alternative 간이과세

일반적인 간이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소규모 서비스공급업자(재화와 서비스를 모두 적용하는 경우 포함)가 적용할 수 있는 Alternative 간이과세제도가 2019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전년도 매출액이 50 lakh 루피 이하인 사업자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 GST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 주간 공급을 하는 사업자
-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팬 맛살라, 탄산수 및 담배제조업자
- 임시과세자 및 비거주과세자

Alternative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며 매출액에 6%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을 납부한다. 다만, 50 lakh 루피 까지의 매출액에는 6%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품목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3-1-3-10. 대리납부제도**

일반적으로 GST 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특정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및 GST 법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GST 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대리납부 (Reverse Charge)라고 한다.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연 매출액 규모(20 lakh 루피)와 관계없이 등록이 요구된다.

① 대리납부 의무 대상 재화의 공급

**표 3-1-3-10-1. 대리납부 적용 대상 재화의 공급**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 자
캐슈넛 –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것	농부	등록납세자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 자
담배 잎, 면화	농부	등록납세자
실크원사	실크원사를 제작하는 자	등록납세자
복권판매	주정부, 연방직할지 또는 지방정부	복권판매업자 및 판매대리인
중고차, 압류한 물품 및 폐품	중앙정부, 주정부, 연방직할지 및 지방정부	등록납세자
우선부문 대출 증명 (Priority sector lending certificates)	등록납세자	등록납세자

② 대리납부 대상 서비스

표 3-1-3-10-2. 대리납부 적용 대상 서비스의 공급

대상상품	공급자	공급받는 자
운송업자가 (Goods Transport agency) 제공하는 서비스	Goods Transport Agency	Factories act 에 등록된 공장, 모든 등록납세자 및 임시과세자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개업변호사 및 법무법인	등록납세자
중재재판소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재재판소	등록납세자
회사 또는 파트너십에게 제공하는 스폰서십 서비스 (스포츠경기, 문화행사 등에 후원회사 로고 등의 노출)	스폰서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	회사 및 파트너십

대상상품	공급자	공급받는 자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단, 다음은 제외한다  1) 부동산 대여 2) 우편, 택배, 보험서비스 3) 항공기, 선박, 공항, 항만서비스 및 여객운송서비스	중앙정부, 주정부, 연방직할지 및 지방정부	등록납세자
부동산 개발 권리, 30 년 이상 장기리스	모든 사람	부동산업자 (Promoter)
회사의 이사가 회사 및 법인에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의 이사 등	과세지역에 소재한 회사
보험판매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보험판매인	과세지역에 소재한 보험회사
채권추심대리인의 서비스	추심대리인(Recovery agent)	은행, 금융기관 및 NBFC 등
작곡가, 사진가, 작가 및 예술가 등이 저작권 제공	작곡가, 사진가 예술가 등	출판사, 음원회사 등
은행감독기구(Overseeing Committee)가 RBI 에 제공한 서비스	The member of overseeing committee	Reserve Bank of India
금융상품 판매대리인이 제공한 서비스	개인사업자인 금융상품 판매대리인	과세지역에 소재하는 은행, NBFC
Business facilitator 가 은행에 제공하는 서비스	Business facilitator	과세지역에 소재하는 은행
보안서비스	법인을 제외한 보안서비스제공자	등록납세자

대상상품	공급자	공급받는 자
여객운송용 차량 렌트 서비스	법인을 제외한 렌트 사업자	과세지역내 법인
유가증권 대차거래	대여자	차입자
과세지역 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과세지역 외 사업자	과세지역내 사업자

### 3-1-3-11. Input Service Distributor

Input Service Distributor (ISD)는 동일한 PAN 을 보유한 납세자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매입세액을 이전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여러 주에 걸쳐 GSTIN 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본점 또는 특정 지점이 여러 사업장을 대신하여 통합구매를 하는 경우 ISD 를 이용하여 해당 매입재화 등이 실제 소비되는 다른 사업장으로 매입세액을 이전할 수 있다.

ISD 로 사용하려는 사업장이 이미 GSTIN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GSTIN 과 별도로 ISD 등록이 필요하다.

#### (1) 매입세액 이전 방법

ISD 는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을 이전한다. 매입세액의 이전은 해당 매입이 귀속되는 지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전되는 매입세액이 여러 지점에 귀속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를 배분할 수 있다.

#### (2) ISD 신고

ISD 는 매월 ISD 의 매입세액공제액과 이전한 매입세액을 GSTR-6 에 기재하여 익월 13 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지연신고의 경우 일당 50 루피의 late fee 가 부과된다.

## 3-1-4. 이전가격세제

### 3-1-4-1. 이전가격세제 의의

이전가격은 관계기업간의 재화 및 서비스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국외특수관계기업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가격과 다르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독립된 당사간에서 이루어졌을 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국가간 과세소득의 이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조약에서는 국외 특수관계기업간 거래가 독립된 기업간 거래의 조건을 벗어 났을 경우 정상적인 조건에서 거래가 이루어 졌음을 가정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인도세법 상 이전가격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3-1-4-2. 적용대상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거래 뿐 아니라 과세소득을 차감시키는 이자, 기타 경비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국제거래로 간주되는 특정 내국거래 또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 3-1-4-3. 특수관계기업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특수관계기업으로 규정한다.

인도 세법 상 회계연도 중 어느 한시점에 아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갖는 기업들은 특수관계기업으로 본다.

- ①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의 26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② 다른 기업의 장부 상 총 자산의 51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대여금을 제공한 경우
- ③ 총 차입금의 10%이상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경우
- ④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 이상 또는 한 명 이상의 집행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기업이 가진 경우
- ⑤ 어느 두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동일인이 갖고 있는 경우, 그러한 회사들
- ⑥ 한 회사의 제품의 제조, 사업수행이 다른 회사가 가진 노하우, 특허권, 라이선스 등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우
- ⑦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90퍼센트 이상이 특정 다른 회사에 의하여 공급되고 제품의 판매가격 및 공급조건이 그 다른 회사의 공급에 영향을 받는 경우

- ⑧ 동일인 또는 그의 친인척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회사들

#### 3-1-4-4.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 (1) 정상가격의 의의

인도소득세법은 정상가격을 관계기업간의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기업간의 거래조건은 통상적인 시장의 경쟁상황 뿐 아니라 거래참여자 간의 밀접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계기업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 (2) 정상가격 산정 방법

인도소득세법 92C 조는 정상가격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6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이 중 거래의 성격 및 종류, 거래상대방, 수행기능 등 관련된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① 비교가능제 3 자가격법('CUP')

비교가능제 3 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는 해당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당사자간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 ② 재판매가격법('RPM')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자산의 정상가격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 실현될 수 있는 매출총이익률을 차감하여 결정하는 방법이다.

##### ③ 원가가산법('CPM')

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는 제품의 제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 ④ 이익분할법('PSM')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거래참여자가 함께 실현한 결합이익을 각 참여자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이와 같이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인도 소득세규정 10B 조는 이익분할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래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a. 거래당사자들이 제공하는 특수한 무형자산이 거래에 관련된 경우
- b. 거래당사자들간의 활동이 높은 수준으로 통합되어 있어 개별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거래순이익률법('TNMM')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 ⑥ 기타합리적인방법('Other Method')

#### (3) 정상가격 결정

최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가 하나 이상의 수치의 범위로 나타날 수 있다. 정상가격 분석결과가 범위로 나타나는 경우 정상가격은 다음에 따라 결정한다.

#### ① CUP, RPM, CPM 또는 TNMM 적용결과 6 개이상의 가격 범위가 나타난 경우

실제 국외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이 데이터의 상위 35%와 하위 65%범위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간주한다. 실제 국외특수관계자 거래가격이 데이터의 35% 65%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전체 데이터의 중앙값(Median)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 ② 이외의 경우

이익분할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Other method) 또는 이외의 산출방법의 결과가 6 개 미만의 범위로 나타나는 경우 전체데이터 값의 산술 평균값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가 실제거래가격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실제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인정한다.

### 3-1-4-5. 이전가격 문서화

#### (1) BEPS 프로젝트 – Action Plan 13

다국제기업의 BEPS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을 위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BEP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BEPS 프로젝트의 세부과제 중 ‘Action Plan 13 – 이전가격문서화’는 과세당국이 기존의 각 국가별 법률에 기초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만으로는 이전가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정비에 다음의 3 단계 접근법을 다룬다.

표 3-1-4-5-1. Action Plan 13-3 Tiers

구분	보고사항
Country by Country Report (국가별보고서)	각 조세관할 지역별 소득 및 세금 등의 배분내역, 조세관할 지역 별 전체기업 목록
Master File (통합기업보고서)	전체 법인의 조직구조, 사업설명, 무형자산 및 다국적기업간 금융 거래 등
Local File (개별기업보고서)	현지법인의 기본정보, 특수관계거래 내역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보 등

인도는 OECD BEPS Action 13 에 따라 국가별보고와 마스터파일의 보고 의무를 담은 2016-17 세법개정안을 2016 년 2 월 발표하였다.

#### (2) 인도의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 ① Form 3CEB (Accountant's Report)

과세대상기간 중 국제거래 또는 특정 국내거래가 있는 모든 납세자는 관련 국제거래 등에 대한 정보가 적절히 문서화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독립된 회계사의 의견을 Form 3CEB 의 양식에 따라 소득세신고기한 1 개월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이전가격 문서와 달리, 국제거래 등의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대상기간 중 국제거래 또는 특정 국내거래가 있는 모든 납세자는 3CEB 제출의무가 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 1 루피의 국제거래가 있는 경우에도 기한내 3CEB 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 거주자뿐 아니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지점, 고정사업장 포함)도 3CEB 적용대상 거래가 있다면 제출대상에 포함된다.

#### ② TP Study Report (Local file)

과세대상 기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합계가 1 천만 루피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Local file 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인도 세법은 Local file 의 제출기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Local file 은 독립된 회계사의 Form 3CEB 양식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Form 3CEB 의 제출기한 이전 작성되어야 한다.

#### ③ Master file

Master file 은 Part A 와 Part B 2 개의 Part 로 구성되며 Part A 는 전체 법인의 회사명, 주소 PAN 등 기본정보가 기재되며 Part B 는 전체법인의 사업내용, 이전가격 정책 등의 기재가 요구된다.

Master file 은 제출대상을 각 Part 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Part A 는 국제거래금액 크기 등과 관계없이 다국적그룹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작성의무가 있는 반면, Part B 는 하기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출대상이 된다.

- i. 그룹의 연결매출액이 50억 루피를 초과하면서
- ii. 국제거래의 합계가 5억루피를 초과하거나 무형자산의 국제거래가 1억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 ④ Country by Country Report

Country by Country Report (CbCR)는 그룹의 연결매출액이 550 억루피를 초과하는 경우(2021 년 4 월 1 일부터 640 억 루피) 모회사 또는 보고대상으로 지정한 회사가 모회사의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2 개월 이내 제출한다.

CbCR 은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주로 모회사가 제출의무를 부담하며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자동으로 국가간 교환이 이루어진다.

### 3-1-4-6. 이전가격 문서화 미이행시 가산세 등

이전가격 문서화 요구사항 미이행 시 가산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3-1-4-6-1.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가산세 규정

구분	가산세
독립된 회계사의 이전가격 보고서(Form 3CEB) 미제출	10 만 루피
적절한 TP Study 문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제출요구 기간내 미제출한 경우	국제거래 또는 특정 국내거래금액의 2%
Master file 미제출	50 만 루피

### 3-1-4-7.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 (1) 일반사항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는 납세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해 과세당국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이다.

인도는 APA 제도를 2012 년 도입 이후 2019 년 3 월까지 7 년간 271 건의 APA 를 체결하였다. 7 년간 체결된 271 건 중 일방적 APA 가 240 건 쌍방적 APA 는 31 건으로 일방적 APA 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년도 별 APA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sup>101</sup>.

표 3-1-4-7-1. 연도별 APA 체결 현황

회계연도	일방적 APA	쌍방적 APA	합계
FY 2013-14	5	-	5
FY 2014-15	3	1	4
FY 2015-16	53	2	55
FY 2016-17	80	8	88
FY 2017-18	58	9	67
FY 2018-19	41	11	52
합계	240	31	271

<sup>101</sup> Annual report (2018-19) of APA programme of India, CBDT

상기 2019 년 3 월 기준 과거 7 년간 체결된 APA 의 신청부터 체결까지 소요된 기간은 일방적 APA 의 경우 32.5 개월 쌍방적 APA 경우 44.32 개월로 나타난다.

한편, 2018-19 회계연도 중 체결된 APA 를 통해 채택된 정상가격산정방법 내역을 살펴보면 총 199 건의 거래 중 TNMM 이 적용된 거래는 155 건으로 TNMM 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정상가격 산정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4-7-2. 사전 승인된 정상가격산정방법 \_FY 2018-19**

회계연도	일방적 APA	쌍방적 APA	합계
TNMM	132	23	155
PSM	-	8	8
Other Method	24	1	25
CUP Method	8	3	11
합계	164	35	199

### (2) APA 신청 및 신청수수료

국제거래를 수행하였거나 향후 국제거래를 예상하는 납세자 모두 APA 를 신청할 수 있다. APA 를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Form 3CED 와 함께 APA 를 적용하고자 하는 국제거래금액에 따른 다음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10억 루피 이하 - 1백만 루피
- 10억 루피 초과 20억 루피 이하 - 1.5백만 루피
- 20억 루피 초과 - 2백만 루피

APA 승인이전에는 언제든지 Form 3CEE 제출로 APA 신청을 철회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 (3) APA 신청대상기간

납세자는 최대 5 년까지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정상가격을 소급(roll-back)하여 적용하길 원하는 경우 과거 4 년이내 기간 까지의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사전승인대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 (4) 사전면담

납세자는 정식 APA 신청 전 과세당국과의 사전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사전면담은 Form 3CEC 양식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납세자의 이전가격관련 이슈, 사전승인신청 범위 등을 다루게 된다. 사전면담은 과세당국과 납세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납세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래의 범위와 타결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5) 연례보고서 제출

정상가격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자는 사전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의 준수여부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소득세신고기한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세무공무원은 사전승인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감사보고서를 납세자의 연례보고서가 제출된 월의 말일부터 6 개월 이내에 Director general of Income tax 에 제출한다.

### 3-1-5. 한-인도 조세조약

#### 3-1-5-1. 국제조세의 의의

기업의 경제활동은 글로벌화 되었지만 글로벌화된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문제를 단일하게 규율하는 국제기구 및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세권은 각 국가가 자신의 특유한 경제환경에 맞춰진 조세제도에 기초하여 행사한다. 하나의 국제거래에 대해 각 국가가 서로 다른 세법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제적 이중과세 또는 과세공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와 조세회피 및 탈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조세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체결된 조약에 따라 각 국가는 과세권의 일부를 양보하게 된다.

#### 3-1-5-2. 한-인도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 (1) 대상인

한-인도 조세조약은 어느 한 쪽 또는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 인(人)에게 적용된다. 인(人)이란 개인, 회사, 인의 단체 및 각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과세단위로 취급되는 그 밖의 모든 실체를 포함한다.

## (2) 대상 조세

한국과 인도의 조세조약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다. 조세협약 대상조세를 아래와 같이 소득에 대한 조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간접세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인도의 경우 - 소득세(이에 대한 모든 부가세)
- 한국의 경우 -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 「한국-인도 조세조약」 제 2 조의 대상조세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이는 최초 조약 체결 시부터 적용됨[국조, 서면-2020-국제세원-3426, 2020.08.10]

### 3-1-5-3. 거주자

거주자의 판정은 조세조약을 적용할 인적범위의 결정과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해결에 주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각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하므로 한 사람이 조약체결 양 국가에서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1)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그 개인의 지위를 결정한다.

- ①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 ② 개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
-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 ④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는 국가, 양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상호합의로 문제를 해결

#### (2) 법인이 양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법인이 양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다만,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한다.

### 3-1-5-4.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은 과세권을 배분하는 주요 요인이다.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 체결 국 중 어느 국가가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지를 결정한다. 한국 기업이 인도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동 기업이 인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인 인도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더라도 인도는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고정사업장의 의미

한-인도조세조약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으로 1) 사업장소, 2) 계속성 및 3) 사업활동관련성 3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표 3-1-5-4-1. 고정사업장 성립요건**

사업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건물, 시설장치 등을 의미</li> <li>▪ 토지, 건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업목적에 사용가능한 일정한 장소를 의미함</li> <li>▪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업장소를 구성함</li> <li>▪ 사업장소는 고정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장소는 일반적으로 특정 장소와 관련이 있다.</li> </ul>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히 일시적이 아닌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갖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구성됨</li> <li>▪ 많은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사업장소가 지속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판단함</li> <li>▪ 단기간 수행되는 활동이 반복되는 경우, 각 활동이 사업장소를 사용한 기간과 반복횟수를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을 판단</li> </ul>
사업활동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소를 통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되어야 함. 그 활동이 반드시 생산적인 성격일 필요는 없음</li> <li>▪ 또한, 활동이 어떠한 중단없이 영속적일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함.</li> </ul>

## (2) 고정사업장의 예시

한-인도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다만, 이는 완전한 리스트가 아닌 예시 사례이므로 실제 고정사업장 판단 시 상기한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후술할 예비적·보조적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 ①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판매대리점
- ② 다른 인을 위하여 저장 설비를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
- ③ 농장, 플랜테이션 또는 농업·임업·플랜테이션 또는 관련 활동이 수행되는 그 밖의 장소
- ④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 자원의 채취장소
- ⑤ 건축현장이나 건설, 설치 또는 조립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 활동

## (3) 건설공사, 피고용인 등을 통한 용역공급

다음의 건설공사 등이 183 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한다. 고정사업장은 183 일 초과 이후가 아닌 사업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본다.

- 건축현장이나 건설, 설치 및 조립 공사 또는 그와 관련된 감독활동. 다만, 그러한 현장, 공사 또는 활동이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기업이 피고용인 또는 자문용역을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그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러나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하거나 관련된 공사를 위하여) 그 국가 내에서 어느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으로 18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피고용인을 통한 용역공급에서 고정사업장 판단의 기준이 되는 183 일 초과여부는 ‘어느 12 개월 기간’ 이내의 단일 기간 또는 이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단일한 전체를 형성하는 복수의 용역이 12 개월 이내에 수행된 경우 해당 용역기간을 통산하여 지속기간을 판단한다.

### 3-1-5-5.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지만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이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 수익을 배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비적 활동은 기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예상하여 수행되며 기업의 다른 활동에 앞서 비교적 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다른 국가의 건설현장에 종업원을 파견한 건설회사가 종업원의 건설현장투입에 앞서 특정장소에서 교훈훈련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예비적 활동에 해당한다.

반면, 보조적 활동은 기업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활동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산과 종업원의 상당부분을 필요로 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보조적 성격을 가진 활동으로 볼 수 없다.

한-인도조세조약은 앞서 서술된 고정사업장의 정의 충족여부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아래의 예외규정을 갖고 있다.

- ①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②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③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④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⑤ 기업을 위한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⑥ ①호 부터 ⑤호까지 언급된 활동들의 어떤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 3-1-5-6. 간주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의 3 가지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대리인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업을 위하여 수행되는 모든 대리인의 활동장소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리인만이 고정사업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대리인을 종속대리인이라 한다.

(1)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① 독립대리인

기업이 한쪽 계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이고,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해당 기업과 그 대리인 간의 상업적 및 재정적 관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는 이항의 의미내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고려되지 아니한다.

② 주주로서 지배하는 자회사

한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계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계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과세문제에 있어 자회사는 독립된 법적실체를 간주되므로, 단순히 다른 쪽 계약국의 자회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주로서 가지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력은 대리인의 판단에 고려사항이 아니다. 종속대리인 여부에 판단은 종속대리인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종속대리인

한 쪽 계약국의 기업이 다른 계약국에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종속대리인이 있다면, 그 기업은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독립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다른 기업을 위해 다음의 활동을 수행(다만,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면, 그를 종속대리인으로 판단한다.

**표 3-1-5-6-1. 종속대리인의 범위**

계약체결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li> <li>▪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 자신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확보하는 경우</li> </ul>
---------	--

재고보유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을 대신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정기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한쪽 체약국 내에 상시 보유하는 경우</li> </ul>
보험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쪽 체약국의 보험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그 영역 내에 소재하는 위험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재보험의 경우 제외)</li> </ul>

### 3-1-5-7. 과세권의 배분

한쪽 체약국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서 발생시킨 사업이윤은 그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상대방 체약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외국기업이 고정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 체약국은 그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발생시킨 이윤만을 과세할 수 있으므로 한 기업의 이윤 중 고정사업장에 배분될 이윤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독립기업원칙

한 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따라서, 고정사업장과 특수관계기업 또는 동일 기업내 다른 부문간 거래 등에서 정상가격을 벗어난 거래가 있을 경우에도 유사한 조건에서 독립된 자와 거래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별도 취급항목의 예외

고정사업장 기준에 따른 과세권 결정은 조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소득항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소득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부동산소득,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 제10조 배당, 제11조 이자,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제13조 양도소득,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제16조 이사의 보수,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제18조 연금, 제19조 정부용역, 제20조 교수, 교사 및 연구원, 제21조 학생, 제22조 그 밖의 소득

### 3-1-5-8. 제한세율

한-인도조세조약은 배당, 이자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제한 세율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정한 것으로서 원천지국 세법에 따른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 원천지국 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표 3-1-5-8-1. 제한세율 적용규정

구분	제한세율	소득의 정의
배당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따라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li> <li>▪ 지분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 부터 생기는 소득</li> </ul>
이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li> <li>▪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li> </ul>
사용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도면, 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등에 대한 대가</li> </ul>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인력의 용역제공을 포함하여 경영, 기술 또는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li> </ul>

이자, 배당, 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방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 등을 수행하고, 이자, 배당 등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한다.

### 3-1-5-9. 이중과세의 제거

(1) 한-인도조세조약 상 이중과세 방지제도

한국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므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인도조세조약은 다음과 같이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있다.

**표 3-1-5-9-1. 한-인도조세조약 상 이중과세 제거**

인도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의 거주자의 소득에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이 포함된 경우, 인도는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li> <li>▪ 조약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인도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인도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도 인도는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li> </ul>
한국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인도의 조세 또는 조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도의 조세는 그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된다.</li> <li>▪ 그러나 그 공제액은 한국의 조세의 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가운데 인도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li> </ul>

(2) 한국 법인세법 상 규정

한국 법인세법은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산입 방법을 법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 법인세법은 직접외국납부세액, 간접외국납부세액 및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한-인도조세조약은 현재 간주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도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이 있더라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3-1-5-10. 상호합의 절차**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란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신청은 조약의 규정에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아래의 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표 3-1-5-10-1. 상호합의 절차 관할당국**

구분	관할당국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2년간(협의로 추가 3년 연장가능) 징수유예가 가능하다(보증금/은행보증 제공 필요).

### 3-1-5-11. 혜택의 제한

2016년 9월 한-인도 조세조약 개정으로 조세조약 남용의 경우 조약혜택을 배제하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이 추가(제 28조)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조세의 회피 또는 탈세를 예방하고자 고안된 한쪽 체약국 법 또는 규정의 어떠한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의 회피를 주요 목적으로 또는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업무를 처리한 인에게는 이 협정의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 ③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다음의 경우 이 협정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 가) 그 거주자가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 명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경우, 또는
  - 나) 주식,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인용하는 것인 경우

### 3-1-5-12.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

#### (1) 개요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General Anti-Avoidance Rules, GAAR) 은 납세자의 행위, 거래 등에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고 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납세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부인하고 과세당국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 소득세법에 도입된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납세자의 특정행위가 허용될 수 없는 조세회피 행위 (Impermissible Avoidance Arra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된다. IAA 란 아래의 주된 기준에 해당하면서 특정 추가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sup>102</sup>.

#### ① 주된 기준

- 거래 과정 또는 거래 약정 일부에서라도 조세 회피 의도가 존재
- 행위(Arrangement)에는 거래, 영업, 계약행위, 합의,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되며 법적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에 의해 판단

#### ② 추가 기준

- 거래가 시장가격 또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 세법규정을 오·남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상업적 실질이 없거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한 거래
-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

#### (2) IAA 로 간주될 경우 세무상 취급

- ① 행위 단계의 부인 또는 결합, 세법 목적상 행위 부인
- ② 행위 거래 당사자의 부인 또는 결합
- ③ 행위 당사자 간 수익과 비용의 재배분
- ④ 수행된 행위 구조 및 형식을 무시하고 거래 실질 판단
- ⑤ 자본/부채, 투자/수익 등의 재판단

<sup>102</sup> 국세청, 2015, 인도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⑥ 행위 거래 당사자의 거주지국 및 행위가 일어난 장소의 재판단

(3) 절차규정

세무공무원이 GAAR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보고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GAAR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를 받은 지 6 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 변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제출한 반대의견에 대해 세무서장이 동의하여 GAAR 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담당세무공무원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한다. 납세자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3 인 이상으로 구성된 승인위원회가 GAAR 적용여부를 판단하여 6 개월내에 결정한다.

(4) GAAR 적용 FAQ

인도 직접세위원회 (CBDT)는 2017 년 1 월 GAAR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FAQ 형식으로 공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과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SAAR)<sup>103</sup>은 사실과 상황에 따라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 특정 조세회피 행위가 조세조약 상 혜택제한 조항의 적용으로 충분히 해소될 경우 GAAR조약이 적용되지 않음
- GAAR은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관계없이 적용됨
- GAAR은 단지 특정실체가 조세피난처에 위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음
- GAAR시행 전(2017년 4월 1일)에 금융상품 발행 시점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금융상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GAAR시행 전 투자가 이루어진 리스와 대부계약에는 GAAR 적용을 면제하지 않음
- 특정 행위가 사전심사제도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미 허용된 경우 GAAR은 적용되지 않음
- GAAR이 적용되는 경우 대응조정은 되지 않음
- GAAR 적용 기준인 조세혜택 3 Crore 루피는 해당 조세회피 행위 참여자들이 얻은 조세혜택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함

---

<sup>103</sup> 개별적 조세회피방지규정은 어떠한 행위를 '조세회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의 없이 개별사안에 적용되는 조세회피 방지 규정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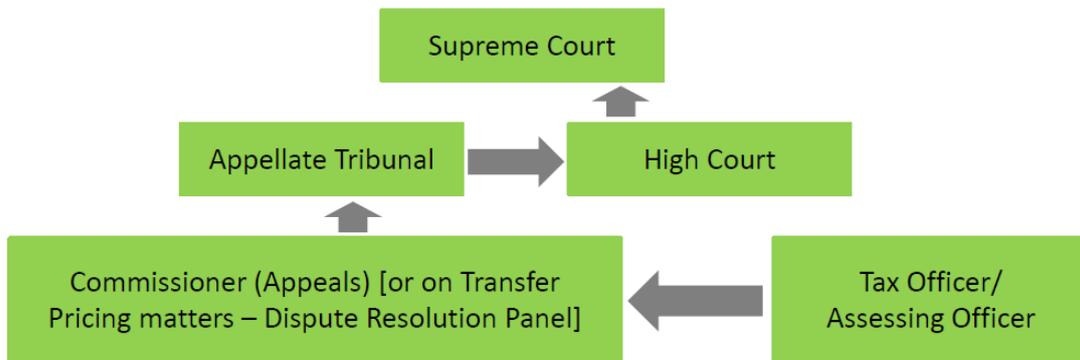
- 특정 행위가 한 과세연도에 허용가능한 거래로 판단된 경우, 사실관계와 상황이 동일한 그 행 위에는 GAAR이 적용되지 않음

### 3-1-6. 조세불복

#### 3-1-6-1. 조세불복 절차

인도의 조세불복절차는 과세관청인 Commissioner (Appeal) 또는 Dispute Resolution Panel 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Appellate Tribunal 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소송 3 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표 3-1-6-1-1. Hierarchy of tax administration<sup>104</sup>



#### 3-1-6-2. 심사청구

과세당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소득세의 경우 30 일 이내, GST 의 경우 3 개월 신청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전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신고서와 관련된 세금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GST 관련된 불복의 경우 불복청구 전 과세 통지된 금액의 10%의 납부가 요구된다). 심사청구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표 3-1-6-2-1. 심사청구 수수료

<sup>104</sup> INVEST INDIA, Taxation august 2020

구분	심사청구 수수료
소득세	불복청구 금액; 10 만 루피 이하 - 250 루피 10 만 루피 초과 20 만 루피 이하 - 500 루피 20 만 루피 초과 - 1,000 루피
GST	청구금액 1 lakhs 당 1 천 루피 (25,000 루피 한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은 불복청구서가 접수된 회계연도의 말일로부터 1 년이내(GST 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1 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 3-1-6-3. 심판청구

#### ① 소득세 심판청구

소득세의 심판청구는 관련된 과세결정을 안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ITAT 에 신청할 수 있다 (불복청구금액에 따라 최대 1 만루피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ITAT 는 Ministry of Law 의 산하기관으로 법률전문가와 회계전문가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세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턴 4 년이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 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아니다.

#### ② GST 심판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려는 납세자는 그러한 처분결정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Appellate Tribunal 에 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Appellate Tribunal 은 과세당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3 개월의 기한 내 청구를 하지 못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Appellate Tribunal 은 최대 3 개월의 기한내에서 기한 후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관련된 세액이 5 만루피 이하인 경우 Appellate Tribunal 은 불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불복대상 처분이 공급장소와 관련된 경우 National/Regional benches of Appellate Tribunal 이 심판청구를 담당하며 이외의 경우는 State/Area benches of Appellate Tribunal 관할한다.

불복신청 전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은 모두 납부되어야 하며 불복대상인 세액의 20%(10 억 루피 한도, 심사청구 시 납부한 10%와 별도)를 추가로 예치하여야 심판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시 청구인이 납부한 예치금은 예치금 납부시점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6% 한도로 Notification 을 통해 결정)와 함께 환급된다.

또한, 예치금 이외 심판청구 신청에는 관련 세액 10 만 루피 당 1 천 루피의 수수료(25 천 루피 한도)의 납부가 요구된다.

Appellate Tribunal 은 심판청구 신청일로 부터 1 년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 **3-1-6-4. 조세소송**

소득세 심판청구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그러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20 일(GST 의 경우 180 일) 이내에 고등법원(High court)에 상고할 수 있다. 기한 내 불복을 신청하지 않은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0 일 (180 일)을 초과한 신청도 인정될 수 있다.

고등법원은 납세자의 불복이 법률의 해석과 관련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고등법원에 대한 불복청구는 최소 두 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해 심리가 되며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Supreme Court)에 제기할 수 있다.

## 3-2. 회계

### 3-2-1. 회계법령

#### 3-2-1-1. 재무제표 작성 의무

모든 회사는 매 회계년도 말 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고 회사법 Schedule Ⅲ가 요구하는 양식과 공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관련 주석 등을 포함한다.

#### 3-2-1-2. 회계장부의 보관 의무

회사는 회계장부 및 이와 관련된 증빙을 등록된 회사의 공식 주소지에 최소 8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형태로 보관 가능). 이사회에 결정으로 등록 주소지 이외 다른 장소를 회계장부 등의 보관장소로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결정 후 7 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기업등록국(ROC)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지점의 거래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해당 지점에 보관할 수 있으나 각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계기록의 요약정보를 정기적(3 개월 이내 주기)으로 등록 주소지에 전송하여야 한다.

#### 3-2-1-3. 회계연도 (Financial year)

재무보고 목적의 회계연도는 4 월 1 일 시작하여 3 월 31 일로 종료하는 12 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회사의 첫번째 회계연도는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3 월 31 일에 종료되므로 신설법인의 첫번째 회계연도는 12 개월 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다.

한편, 외국법인의 자회사로서 연결 목적 상 모회사의 보고기간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Financial year)와 다른 결산기간의 적용을 허용한다. 다만, 재무보고 목적 상 Financial year 와 다른 결산기간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세무신고 목적의 소득금액은 4 월 1 일 ~ 3 월 31 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3-2-1-4. 재무제표의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지정한 대표서명권자 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2 인이 이사회를 대신하여 재무제표에 서명을 한다.

승인된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21 일 이전 모든 주주(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권자 포함)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3-2-1-5. 기업등록국 재무제표 신고**

주주총회 후 30 일 이내 재무제표를 기업등록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주총회가 법정 기한내(회계연도 종료 후 6 개월, 회사 설립 후 첫 주주총회의 경우 9 개월 이내)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 기한 마지막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유와 함께 재무제표를 신고한다.

### **3-2-1-6. 증권거래위원회 재무제표 제출**

상장사는 매 분기 및 연차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 재무제표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 일 이내<sup>105</sup>, 분기 보고의 경우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2-1-7. 재무제표 공시의무**

상장회사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제표를 공시하여야 한다. 비상장회사에게는 재무제표의 공시가 요구되지 않는다.

### **3-2-1-8. 외부감사 대상**

회사법 (Companies Act, 2013)은 회사의 규모 와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외부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별도의 유한책임파트너십법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8)을 적용 받는 유한책임파트너십은 연 매출액이 40 lakh 루피를 초과하거나 납입자본이 25 lakh 루피를 초과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

<sup>105</sup> 2020-21 회계연도의 경우 Covid 19 Pandemic을 고려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 – Circular No. SEBI/HO/DDHS/DDHS\_Div1/P/CIR/2021/557

### 3-2-1-9. 감사인 선임

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5년 임기의 감사인을 선임한다. 한번 선임된 감사인의 임기는 5년이지만 매년 감사인 유지에 대한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인 유임이 부결된 경우 이사회가 다른 감사인을 선임한다.

신규 설립된 회사는 설립 후 30일 이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첫 번째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30일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90일 이내 특별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은 회계기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지명된 파트너의 의결로 감사인을 선임한다.

### 3-2-1-10. 감사인 의무교체 규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10년간 동일한 감사인을 계속하여 선임한 경우 감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개인인 감사인의 경우 5년).

- 상장회사
- 자본금이 10 Crore 루피 이상인 비상장 공개주식회사
- 자본금이 20 Crore 루피 이상인 비공개주식회사
- 50 Crore 루피 이상의 차입금을 보유한 회사

상기 의무교체 기간 동안 감사업무를 수행한 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5년간 감사인으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 3-2-1-1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회사법은 감사인에게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여부 뿐 아니라 회사가 적절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

따라서, 회사는 재무제표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또한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1인기업
- 소기업
- 최근 감사 받은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50 Crore 루피 미만인 비공개주식회사
- 차입금이 25 Crore 루피 이하인 비공개주식회사

## 3-2-2. 회계기준

### 3-2-2-1. 인도 회계기준의 구성

인도회계사회 (ICAI)는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통일된 회계기준 수립을 위한 기구인 회계기준위원회 (Accounting Standard Board)를 설치하여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인도에는 현재 다음의 두 개의 회계기준이 존재한다.

- Accounting Standards (iGAAP): Companies (Accounting Standards) Rules, 2006에 의해 공표되었으며 Ind AS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동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India Accounting Standards (Ind AS): IFRS와 합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회계기준으로 현재까지 41개의 기준서가 공표되어 있다. 도입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 3-2-2-2. 회계기준 준수 의무

회사법은 모든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기준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회계기준의 준수 의무를 129(1)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가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에는 회계기준의 준수에 대한 이사회 책임임을 인정하는 서한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회계기준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준거기준이 된다. 감사결과 회계기준을 벗어난 회계처리가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3-2-2-3. 인도의 IFRS 적용

인도는 당초 G20 에서 2011 년부터 IFRS 를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으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관련 법률과 기준서 제정 지연 등으로 2016 년부터 IFRS 에 근거하여 제정된 Ind AS 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IFRS 의 도입 형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IFRS 를 그대로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수용하는 전면도입(Full adoption)과 자국의 회계기준을 IFRS 와 합치되도록 제·개정하는 방법(Converge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의 상장법인 등이 적용하고 있는 Ind AS 는 IFRS 를 기초로 ICAI 가 제정한 기준서 이므로 인도의 IFRS 도입 방법은 Convergence 에 해당한다.

표 3-2-2-3-1. 인도의 IFRS 도입 현황<sup>106</sup>

India		
Extent of IFRS application	Status	Additional Information
IFRS Standards are required for domestic public companies		Indian Accounting Standards (Ind AS) are based on and substantially converged with IFRS Standards as issued by the Board. India has not adopted IFRS Standards for reporting by domestic companies and has not yet formally committed to adopting IFRS Standards.
IFRS Standards are permitted but not required for domestic public companies		
IFRS Standards are required or permitted for listings by foreign companies	No.	
The IFRS for SMEs Standard is required or permitted	No.	
The IFRS for SMEs Standard is under consideration	No.	

표 3-2-2-3-2. Ind AS 도입 로드맵

적용시기	적용대상
2015년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발적 적용을 선택한 기업</li> </ul>
2016년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자산 50억 루피 이상인 기업</li> <li>상기 의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및 JV</li> </ul>
2017년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장회사 및 인도 국내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예정된 회사(SME 상장회사 제외)</li> <li>순자산 25억 루피 이상인 비상장 회사</li> <li>상기 의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및 JV</li> </ul>
2018년 4월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자산 50억 루피 이상인 비은행금융기관(NBFCs) - 상장 및 비상장 NBFC포함</li> <li>NBFCs 이외의 금융기관<sup>107</sup></li> <li>상기 의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모회사, 자회사 및 JV</li> </ul>

<sup>106</sup> IFRS Home, Who uses IFRS Standards? – ifrs.org

<sup>107</sup> RBI와 IRDAI는 은행과 보험기관의 Ind AS 의무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notice를 공지하였다. 이로 인해 동 기관의 Ind AS적용 시기는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 3-2-2-4. Ind AS구성

인도의 국제회계기준 도입방법은 전면 도입이 아닌 일부 내용 및 형식을 인도의 특수한 회계환경에 맞춰 제정한 기준서로서 IFRS 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Ind AS 는 IFRS 와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IFRS 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맞춰 대응되는 기준서를 제·개정을 해오고 있으며 기준서의 일련번호는 IAS 에 대응하는 기준서의 경우 IAS 1~99 호 까지의 번호를 부여하고 IFRS 에 대응하는 기준서의 경우 101~199 호 까지의 번호를 사용한다.

표 3-2-2-4-1. Ind AS 기준서 구성

기준서 번호	기준서 명	대응되는 IFRS
Ind As 1	재무제표 표시 -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AS 1
Ind As 2	재고자산 - Inventories	IAS 2
Ind As 7	현금흐름표 - Cash Flow Statements	IAS 7
Ind 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Accounting policies, Change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IAS 8
Ind As 10	보고기간후사건 -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IAS 10
Ind As 12	법인세 - Income Taxes	IAS 12
Ind As 16	유형자산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IAS 16
Ind As 19	종업원급여 - Employees Benefits	IAS 19
Ind As 20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Accounting for Gov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IAS 20
Ind As 21	환율변동효과 -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Foreign Exchange Rates	IAS 21
Ind As 23	차입원가 - Borrowing Costs	IAS 23

기준서 번호	기준서 명	대응되는 IFRS
Ind As 24	특수관계자 공시 - Related Party Disclosures	IAS 24
Ind As 27	별도재무제표 -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AS 27
Ind 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IAS 28
Ind As 29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 Financial Reporting in Hyper Inflationary Economies	IAS 29
Ind As 32	금융상품: 표시 -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IAS 32
Ind As 33	주당이익 - Earnings Per Share	IAS 33
Ind As 34	중간재무보고 Interim Financial Reporting	IAS 34
Ind As 36	자산손상 - Impairment of Assets	IAS 36
Ind 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IAS 37
Ind As 38	무형자산 - Intangible Assets	IAS 38
Ind As 40	투자부동산 - Investment Property	IAS 40
Ind As 41	농림어업 - Agriculture	IAS 41
Ind As 101	Ind AS 의 최초채택 - First time adoption of India Accounting Standards (Ind AS)	IFRS 1
Ind As 102	주식기준보상 - Share Based Payments	IFRS 2
Ind As 103	사업결합 - Business Combination	IFRS 3
Ind As 104	보험계약 - Insurance Contracts	IFRS 4
Ind As 10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IFRS 5
Ind As 10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IFRS 6

기준서 번호	기준서 명	대응되는 IFRS
Ind As 107	금융상품: 공시 - Financial Instrument: disclosure	IFRS 7
Ind As 108	영업부문 - Operating Segment	IFRS 8
Ind As 109	금융상품 - Financial Instruments	IFRS 9
Ind As 110	연결재무제표 -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FRS 10
Ind As 111	공동약정 - Joint Arrangement	IFRS 11
Ind As 1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 Disclosure of interest in other entities	IFRS 12
Ind As 113	공정가치 측정 - Fair Value Measurement	IFRS 13
Ind As 114	규제이연계정 - Regulatory Deferral Accounts	IFRS 14
Ind As 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IFRS 15
Ind As 116	리스 - Leases	IFRS 16

### 3-2-2-5. Ind AS 의무적용 대상

Ind AS 는 2016 년 4 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2018 년 4 월부터 은행 및 보험회사도 Ind AS 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관련된 법률개정 지연으로 해당 기관의 Ind AS 적용 시점은 추후 공지 시점까지 연기되었다. 현재 Ind AS 의 의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상장회사 및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
- ② 직전 회계연도 말의 순자산<sup>108</sup> (Net worth)이 25억 루피를 초과하는 비상장회사
- ③ 상장 비금융기관 및 순자산이 25억 루피를 초과하는 비금융기관
- ④ 상기 ① 내지 ③의 모회사, 자회사 및 조인트벤처

Ind AS 의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IGAAP 을 적용한다. 상기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도 자발적으로 Ind AS 를 적용할 수 있다.

<sup>108</sup> 순자산(Net worth)는 Companies Act, 2013 2(57)에 정의되어 있다.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 + 주식 발행초과금 - 누적손실 - 이연비용’

### 3-2-2-6. IGAAP 기준서

IGAAP 은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일부 기준서의 적용을 면제한다. 현재 유효한 27 개의 IGAAP 기준서는 아래와 같다.

**표 3-2-2-6-1. IGAAP 기준서 구성**

기준서 번호	기준서 명	적용대상
AS-1	회계정책 공시 - Disclosure of Accounting Policies	모든 기업
AS-2	재고자산 평가 - Valuation of Inventories	모든 기업
AS-3	현금흐름표 - Cash Flow Statement	OPC, 소규모 및 휴면회사 제외
AS-4	우발상황, 보고기간후사건 - Contingencies and Events Occurring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모든 기업
AS-5	당기순이익, 전기 오류수정 및 회계정책변경 - 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Prior Period Item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모든 기업
AS-7	건설계약 - Construction Contracts	모든 기업
AS-9	수익인식 - Revenue Recognition	모든 기업
AS-10	유형자산 -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모든 기업
AS-11	환율변동효과 -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모든 기업
AS-12	정부보조금 - Accounting for Govt. Grants	모든 기업
AS-13	투자자산 - Accounting for Investments	모든 기업
AS-14	합병 - Accounting for Amalgamations	모든 기업
AS-15	종업원급여 - Employees benefit	모든 기업
AS-16	차입원가 - Borrowing Costs	모든 기업

기준서 번호	기준서 명	적용대상
AS-17	부문별 보고 - Segment Reporting	중소기업 제외
AS-18	특수관계자 공시 - Related Party Disclosures	Level III 제외 모든 기업
AS-19	리스 - Leases	모든 기업
AS-20	주당이익 - Earning Per Shares	모든 기업
AS-21	연결재무제표 -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AS-22	법인세 - Accounting for Taxes on Income	모든 기업
AS-23	지분법 - Accounting for Investment in Associates i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AS-24	중단영업 - Discontinuing operations	Level III 제외 모든 기업
AS-25	중간재무보고 - Interim Financial Reporting	상장회사
AS-26	무형자산 - Intangible Assets	모든 기업
AS-27	조인트벤처 - Financial Reporting of Interests in Joint Ventures	(*)
AS-28	자산손상 - Impairment of Assets	모든 기업
AS-29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모든 기업

(\*) 회사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는 회사

### 3-2-2-7. 중소기업의 IGAAP 적용특례

중소기업은 다음의 IGAAP 기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sup>109</sup>.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IGAAP 을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주석 등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AS-17 Segment Reporting: SMCs의 경우 기준서 전체 적용 면제
- AS-3 Cash Flow Statement: 1인기업(OPC), 소기업(Small Company) 및 휴면회사(Dormant Company)는 기준서 적용 면제
- AS-15 Employment benefit: 비누적 유급휴가의 인식과 측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기여금의 현재가치평가 규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공시사항 일부 등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AS-15 Earning Per Share: 희석주당순이익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AS-19 Leases: 리스총투자 등 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AS-28 Impairment of Assets: 사용가치를 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추정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AS-29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충당부채 유형별 경제적 효익의 유출예상 시기 정도 등 일부 공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3-2-2-8. 중소기업의 정의

Companies (Accounting Standards) Rules, 2006 은 아래의 5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한다.

- 비상장회사 및 상장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
-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
- 직전 회계기간의 총 매출액이 50 Crore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회사
- 직전 과세기간 중 차입금이 10 Crore 루피를 초과하지 않은 회사(과세기간 종료일 뿐 아니라 전체 회계기간 중 어느 시점에도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회사의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

---

<sup>109</sup> ICAI는 기업을 3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각 범주별로 iGAAP의 적용범위를 정한 기업 범주 별 회계기준서 적용 지침을 제정하였다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Entities and Applicability of Accounting Standards). 그러나 이후 중앙정부가 기업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에 따른 IGAAP의 적용기준을 공표함에 따라 ICAI의 iGAAP적용대상 기준은 회사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등에게만 적용한다.

### 3-2-3. 기타유의사항: GAAP 차이

#### 3-2-3-1. Ind AS vs IFRS

인도는 IFRS 와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인도 고유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회계기준의 유지를 위해 IFRS 의 전면도입이 아닌 Convergence 방법으로 IFRS 를 도입하였다. Convergence 에는 IFRS 기준의 일부 삭제와 IFRS 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기준의 삽입(Carve-in/Carve-out)이 수반되므로 Ind AS 와 IFRS 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차이가 존재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AS 28 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투자자와 피투자자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피투자자의 재무제표가 투자기업과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다면, 투자자는 이러한 회계차이를 조정한 후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자와 피투자자간 회계정책의 일치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IAS 28 와 달리 Ind AS 28 은 실무적으로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는('Unless Impractical to do so') 투자자와 피투자자간 회계정책의 차이를 인정한다.

한편,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몫을 초과하는 취득금액의 회계처리에도 두 기준서간 차이가 존재하는데, IAS 28 은 순공정가치 중 투자자의 몫을 초과하는 취득금액을 수익에 포함하는 반면 Ind AS 28 은 자본잉여금(Capital Reserve)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2) IFRS 3 사업결합

IFRS 3 사업결합 기준서는 해당 기준서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른 IFRS 기준서에서도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 사업결합 거래에 적용되는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관련 기준서 등을 참고하여 이에 적용할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Ind AS 는 동일지배 사업결합거래에 적용할 회계처리 방법으로 아래의 지분통합법(pooling of interest method)을 규정하고 있다.

- 사업결합 기업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 사업결합 전 재무제표에서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가 식별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자산과 부채의 인식으로 인한 어떠한 조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결합 참여기업 간 회계정책에 차이가 있는 경우 회계정책 차이 조정 후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의 개시일부터 사업결합거래가 있었던 것을 가정하여 비교 표시되는 재무정보를 수정한다.

### (3) IFRS 32 금융상품: 표시

IFRS 32는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교환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을 자본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자본요소와 부채요소 구분에 있어 발행자가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해 수취할 현금이 발행자의 기능통화 입장에서 변동하는 경우 이러한 전환권은 일반적으로 부채로 분류된다.

반면, Ind AS 32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이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과 교환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이 어느 통화로든 금액이 확정 가능하다면 이러한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 (4) IAS 38 무형자산

Ind AS는 Ind AS 전환일 이전 도로건설 사업시행자가 건설대가로 인식한 무형자산의 경우, 과거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산한 상각비의 인식을 허용한다. IFRS는 이러한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 (5) IAS 40 투자부동산

IFRS는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부동산을 측정할 것으로 요구한다(원가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공시가 요구됨). 반면, Ind AS는 투자부동산의 측정 방법으로 오직 원가모형만의 사용만을 허용한다.

#### (6) IAS 12 법인세

IFRS 는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일시적차이(피취득자의 세무상 이월결손금 이월액 등)가 사업결합의 최초 회계처리시 별도로 인식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실현된 경우, 이러한 취득 이연법인세 효익을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 감소로 회계처리 한다.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0'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Ind AS 는 사업결합 후에 실현되는 취득 이연법인세 효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잉여금 항목으로 직접 인식한다.

#### (7)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IFRS 15 는 위약금 (Penalties)을 거래가격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변동대가로서 명시하고 있다. 반면, Ind AS 는 변동대가의 예시 항목에서 위약금을 삭제하고 위약금이 계약 상 거래가격의 결정에 내재된(인도지연에 따른 판매가격 감액조건 등) 경우에만 변동대가에 포함하고 이외 다른 형태의 위약금은 거래가격 산정에 고려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 (8) IFRS 16 리스

IFRS 는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에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Ind AS 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 적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측정규정은 Ind AS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IFRS 는 이자지급액을 영업활동 또는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기업에 제공하며,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을 다른 이자지급액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와 일관되게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Ind AS 는 이자지급액을 재무활동 현금유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도 재무활동 현금유출로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 (9) IAS 21 환율변동효과

Ind AS 는 최초채택기업이 전환일 이전에 과거회계기준(IGAAP)에 따라 장기외화화폐성항목(Long term foreign currency monetary item)에서 생기는 외화환산차이를 관련 자산 및 부채의 기대 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Ind AS 를 채택한 이후에도 동 회계처리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10) IFRS 101 최초채택

IFRS 는 개시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의 간주원가로서 전환일의 공정가치 또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Ind AS 는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허용한다.

IFRS 는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항목으로 인식하였으나 IFRS 의 자산 또는 부채의 인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FRS 3 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최초채택기업이 과거 사업결합을 취득으로 분류하고 IAS 38 ‘무형자산’에 따른 자산의 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해당 항목은 영업권으로 분류한다. 반면, Ind AS 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자본잉여금 잔액의 한도내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 (11) IAS 1 재무제표 표시

IFRS 는 보고기간말 이전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하여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와 관련하여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이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반면, Ind AS 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장기차입약정 위반이 보고기간말 이전 발생하였으나 재무제표 승인일 이전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12) IAS 7 현금흐름표

IFRS 에서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일반회사의 이자지급, 이자수입 및 배당금수입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거나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투자활동 현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Ind AS 는 이러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이자지급은 재무활동으로 이자수입과 배당금수입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규정하고 있다.

#### (13) IAS 23 차입원가

IFRS 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차입원가에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외환차이 중 적격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반면, Ind AS 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결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

-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불리한 외환차이는 기능통화 차입금의 이자비용과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의 차이를 한도로 차입원가에 포함한다.
- 외화차입금과 관련하여 유리한 외환차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 인식한 외화차입금의 차입원가에서 조정한다.

#### (14)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IFRS 는 개인의 가까운 가족 (Close members of the family)으로 자녀 및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와 당해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를 예시하고 있다. Ind AS 는 여기에 더하여 형제, 자매 그리고 부모를 개인의 가까운 가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 (15) IAS 27 별도재무제표

IFRS 에서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원가법, 상각후원가, 공정가치(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 Ind AS 는 지분법의 회계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 3-2-3-2. IGAAP vs IFRS

IGAAP 과 IFRS 와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IFRS 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이를 변경한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반면, IGAAP 은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식하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효과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 (2) 전기오류

전기오류가 발견된 경우 IFRS 는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IGAAP 은 오류수정효과의 당기손익보고를 허용한다.

### (3) 수익의 인식

IFRS 는 자산의 통제에 기반한 5 단계 모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IGAAP 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계약에 장려금 (incentive) 등이 포함된 경우 국제회계기준은 이를 변동대가로서 계약개시시점에 포함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매 보고기간 이를 조정한다. IGAAP 은 성과조건 등의 충족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할 정도로 계약이 진행되어 장려금 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때 이를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또한,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경우 IFRS 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계약대가를 조정하지만 IGAAP 은 이러한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 (4) 계약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입된 원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IFRS 는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형태로 상각한다. IGAAP 은 이러한 원가의 자산화를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시점의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 (5) 금융상품의 표시 및 관련 이자, 배당 등 회계처리

IFRS 는 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금융상품의 분류결과에 따라 관련된 이자, 배당 등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IGAAP 은 금융상품의 계약의 실질과 관계없이 금융상품의 법적형식에 따라 이를 분류한다. 따라서, 누적적 상환우선주의 상환원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된 배당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한다.

### (6)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IFRS 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이와 달리 IGAAP 은 금융자산의 보유기간이 1 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유동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외에는 유동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유동투자자산은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비유동투자자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한다(일시적이지 않은 가치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이를 차감).

#### (7) 금융자산의 손상

국제회계기준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등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한다. IGAAP 은 금융자산의 손상에 적용할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주로 과거 경험률, 채권연령분석 등을 통해 채권의 손상금액을 추정한다.

#### (8) 확정급여제도

IFRS 는 보험수리적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이를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IGAAP 은 보험수리적 손익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IGAAP 은 퇴직급여채무를 보고기간 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반면, IFRS 는 우량회사채에 대한 거래 층이 두터운 해당 통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 이외에는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할인한다.

#### (9) 리스

IGAAP 은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두 유형의 리스를 다르게 회계처리 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만, 운용리스 이용자는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IFRS 는 소액리스와 단기리스를 제외하고는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 (10) 주당이익

IFRS 는 중단영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GAAP 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중단영업에 대한 주당손익을 계산하고나 공시할 필요가 없다.

#### (11) 특별손익 항목

IFRS 는 특별손익항목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과 명백하게 구분되고 빈번하거나 정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사건이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서와 주석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IGAAP 은 특별손익 항목을 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러한 손익의 영향을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한다.

#### (12) 연결범위

IGAAP 은 연결범위의 판단기준으로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보유 및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지배기구에 대한 통제능력을 사용한다. IFRS 는 연결범위 판단기준으로서 실질 지배력을 강조하며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노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등을 고려한다.

또한, IGAAP 은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투자주식 등의 연결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은 이러한 경우에 대한 연결면제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 (13) 공동기업

국제회계기준은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반면, IGAAP 은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비례연결을 적용한다.

#### (14)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국제회계기준은 무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IGAAP 은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만을 허용하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1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5 년 이내 기간에 상각하되 종속회사 취득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손상테스트만을 수행한다.

#### (15) 영업권 손상

IGAAP에서는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그 장부금액을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최소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여 수행한다. IFRS는 손상검사 목적으로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를 기업이 내부관리목적상 영업권을 관찰하는 기업 내 최저수준으로 하되 IAS 8 '영업부문' 기준서의 문단 5에 따라 정의되는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크지 않은 단위로 정의한다.

IGAAP은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영업권의 손상차손 환입을 허용한다. 반면, IFRS는 기존에 인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 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 (16) 총당부채의 측정

IFRS는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당부채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IGAAP은 해체, 원상복구 등 의무이행에 예상되는 지출이 관련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가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 (17) 투자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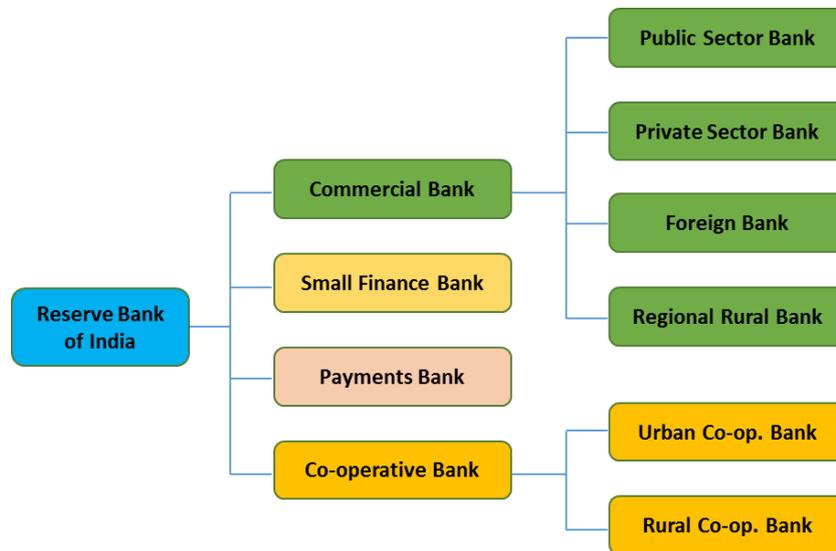
IFRS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투자부동산에 적용할 별도의 기준서가 존재한다. IGAAP에는 투자부동산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유형자산 기준서를 준용하여 회계처리 한다.

### 3-3. 금융

#### 3-3-1. 인도의 은행

인도의 은행은 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는 중앙은행(RBI) 외에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소금융은행(Small Finance Bank), 지급은행(Payment Bank),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 등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은행은 상업은행(Commercial Bank)에 해당되며 상업은행은 다시 공영은행(Public Sector Bank), 민간은행(Private Sector Bank), 외국계은행(Foreign Bank), 지방은행(Regional Rural Bank)으로 구분한다.<sup>110</sup>

그림 3-3-1-1. 인도의 은행 종류



자료원: 신한은행, 인도 중앙은행([www.rbi.org.in](http://www.rbi.org.in))

#### ○ 공영은행 (Public Sector Bank)

공영은행은 정부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은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Government Bank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인도를 대표하는 은행인 State Bank of India(SBI), Punjab National Bank(PNB)가 대표적인 공영은행이다. 인도의 금융 건전성 관련하여 인도 은행들의 NPA<sup>111</sup>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부실자산을 의미하는 NPA의 비율은 공영은

<sup>110</sup> 경우에 따라서는 Payments Bank, Small Finance Bank도 Commercial Bank의 한 종류로 구분하기도 한다.

<sup>111</sup> Non-Performing Asset, 경제학에서는 무수의 자산을 의미하고 금융에서는 이자나 원금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되어 대출의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분류된 자산을 의미한다.

행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인도 정부에서는 금융 건전성 개선을 위하여 2019년 이후 부실화된 은행들을 정리하고 있다. 공영은행의 보다 안정적인 성과를 위하여 정부 주도로 공영은행 간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영은행의 숫자는 27개에서 12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 민간은행 (Private Sector Bank)

민간은행은 민간 자본이 소유한 은행으로 HDFC Bank, ICICI Bank, Axis Bank, Kotak Mahindra Bank가 대표적이며 22개의 은행이 영업 중이다. The Banker<sup>112</sup>에서 발표한 'TOP 1000 World Banks 2020'에 따르면 공영은행인 State Bank of India가 57위, 민간은행인 HDFC가 76위로 100위권 안에 랭크되었으며 ICICI Bank, Axis Bank, Kotak Mahindra Bank가 그 뒤를 이어 2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계 5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인도 은행은 공영은행 1개, 민간은행 7개로 모두 8개이다.

인도 주요 은행과 한국 주요 은행의 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은행 순위는 Tier 1 Capital 기준이다.

그림 3-3-1-2. 주요 은행 순위

Ranking	Bank Name	Country	Ranking	Bank Name	Country
1	ICBC	China	76	HDFC Bank	India
2	China Construction Bank	China	81	Hana Financial Group	South Korea
3	Agricultural Bank of China	China	91	Woori Bank	South Korea
4	Bank of China	China	96	Industrial Bank of Korea	South Korea
5	JPMorgan Chase	US	100	NongHyup Financial Group	South Korea
6	Bank of America	US	101	ICICIBank	India
7	Wells Fargo	US	131	Axis Bank	India
8	Citigroup	US	182	Kotak Mahindra Bank	India
9	HSBC Holdings	UK	261	IndusInd Bank	India
57	State Bank of India	India	473	Yes Bank	India
61	KB Financial Group	South Korea	481	IDFC First Bank	India
65	Shinhan Financial Group	South Korea	502	Federal Bank	India
67	Korea Development Bank	South Korea	606	RBL Bank	India

자료원: The Banker 'Top 1000 World Banks 2020'

<sup>112</sup> The Financial Times에서 소유한 월간지로 매년 Global Top 1000 Bank를 발표한다.

○ 외국계은행 (Foreign Bank)

외국계은행은 외국 자본이 소유한 은행을 말하며 인도에는 총 46개의 은행들이 진출해 있다. 인도에서는 100% 외국자본의 은행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하지만 현지 은행으로 설립될 경우 지점인 경우보다 세율이 낮아지고 지점을 자유롭게 개점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충족해야 할 규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부담도 있어서 대부분의 외국계은행들은 현지 법인(Wholly owned subsidiary)이 아닌 지점(Branch)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진출 형태가 지점(Branch)인 경우에는 지점의 개점과 폐점이 중앙은행(RBI) 사전 승인 사항으로 자유롭게 않아 몇몇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개 미만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계 은행으로는 신한은행이 1996년에 Mumbai 지점을 설치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신한은행은 2006년 뉴델리 지점, 2010년 칸치푸람 지점, 2015년 푸네 지점을 개점하였고 2017년에는 아메다바드와 랑가레디에 각각 지점을 설치하여 총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2년에 첸나이에 첫 지점을 개점하였고 2017년 구르가온, 2018년 Mumbai에 진출하여 현재 3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첸나이, 2019년 구르가온에 진출하여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뉴델리(2015년), 국민은행은 구르가온(2019년)에 지점을 두고 있다. 2021년 3월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인도에 진출하였고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3-3-1-3. 한국계 은행 현황

은행명	채널 형태	채널 수	지역 (개설연도)
신한은행	지점	6개	Mumbai(1996년) / 뉴델리(2006년) / 칸치푸람(2010년) / 푸네(2015년) / 아메다바드(2017년) / 랑가레디(2017년)
우리은행	지점	3개	첸나이(2012년) / 구르가온(2017년) / Mumbai(2018년)
KEB하나	지점	2개	첸나이(2015년) / 구르가온(2019년)
기업은행	지점	1개	뉴델리(2015년)
국민은행	지점	1개	구르가온 (2019년)

자료원: 신한은행

○ 지방은행 (Regional Rural Bank)

지방은행은 Andhra Pragathi Grameena Bank, Telangana Grameena Bank, Baroda Gujarat Gramin Bank 등 43개 은행이 등록되어 있다.

#### ○ 기타

이 외에 Small finance Bank는 10개, Payments Bank는 2개의 은행이 등록되어 있다.

위 은행의 수는 모두 2021년 2월 24일 기준 RBI로부터 차입 및 예치가 가능한 자격을 득한 Scheduled Bank 기준이다.

### 3-3-2. 법인의 계좌 거래

인도에서의 사업자(business entity) 형태는 개인사업자에서 파트너십, 사무소, 주식회사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된 진출 형태인 비공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지사(Branch Office), 프로젝트사무소(Project Office) 등 3가지 사무소를 중심으로 계좌개설 및 계좌거래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3-3-2-1. 예금의 종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예금의 종류는 예치 자금의 인출 제한에 따라 크게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과 저축성예금(Time Deposi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예금주의 요청(on-demand)으로 인출이 가능한 예금 상품을 의미하며 예금주의 인출이 자유로운 만큼 낮은 이자율이 적용되거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축성예금은 일정 기간 자금을 예치하고 약정된 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는 예금 상품을 의미하며 사전에 예치 기간을 약정하므로 요구불예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인도에서는 요구불예금은 크게 Saving Account와 Current Account로, 저축성예금은 Fixed Deposit과 Recurring Deposit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

Saving account는 거래 회수 및 금액 등 거래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반면 Current Account는 거래에 제한이 없고 이자도 발행하지 않는다. Saving Account는 근로소득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개인만 개설이 가능하고 Current Account는 개

인사업자나 기업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개인 및 법인 모두 개설이 가능하다. Saving Account는 흔히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부르는 Overdraft 대출 한도 설정이 불가하지만 Current Account는 대출 한도 설정이 가능하다.

#### ○ 저축성예금(Term Deposit)

Fixed Deposit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는 거치식 예금으로 예치 금액과 예치 기간에 따른 약정 이자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예금의 중도해지 및 일부해지를 허용한다. Recurring Deposit은 일정 금액을 일정 주기로 납입하는 적립식 예금으로 예기 기간에 따른 약정 이자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중도해지는 허용하지만 일부해지는 제한된다. Recurring Deposit은 납입 건별로 Fixed deposit을 신규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므로 건별 납입액의 예치기간에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금액을 계산한다.

### 3-3-2-2. 법인의 계좌 개설

인도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연락사무소(LO), 지점사무소(BO), 프로젝트사무소(PO)의 경우에도 인도에서의 운영비를 모기업으로부터 수취하기 위하여 법인 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법인 계좌'는 자연인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이 개설한 계좌를 표현한 것으로 계좌의 특정 종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법인의 계좌 개설 필요 서류

법인이 개설 가능한 요구불예금인 Current Account의 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은행에 따라서도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법인의 형태가 Private Limited Company인 경우로서 신한은행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다.

- 1) 계좌개설 신청서 (은행 양식)
- 2) 이사회 의사록 원본 (Board Resolution, 계좌의 개설 및 서명권자 선임에 대한 결의)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4) 정관 사본 (Memorandum & Article of Association)
- 5) PAN 사본 (Permanent Account Number) 및 GST 확인서 (GST Registration Number)

- 6) 회사 주소 증빙 (Proof of Address of Company)
- 7) 서명권자의 사진 1 매
- 8) 서명권자 본인 확인 및 주소 증빙 서류 (KYC documents of authorized signatory)
- 9) 이사회이사록 서명 이사(Director) 각각의 본인확인 주소증빙 서류 (KYC documents of directors)
- 10) 실질소유주의 본인 확인 및 주소 증빙 서류 (KYC documents of beneficial owner)

1)에서 6)은 회사와 관련된 서류이고 7)에서 10)은 회사를 대표하는 서명권자와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에 대한 서류이다. 2) 이사회이사록은 법인 계좌의 개설에 대한 안건과 계좌의 서명권자 선임에 대한 안건의 결의가 그 내용이 되며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많은 한국계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에는 최소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5) GST 확인서는 법인 설립 후 첫 계좌 개설인 경우에는 아직 발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좌 개설 후 보완 제출하며 된다. 6) 주소 증빙의 경우 법인 설립과 함께 계좌 개설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3)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제출로 같 음한다. 개인과 관련된 본인확인 및 주소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KYC 항목에서 별도로 설명하였다.

#### ○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

법인의 계좌 거래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거래 권한을 부여받은 자연인의 서 명으로 성립되며, 이러한 권한을 부여 받은 사람을 서명권자 authorized signatory라고 한다. 서명권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이사회이사록에 명시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명권자의 서명 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서명권의 행사 방식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하였다.

#### ○ 실질 소유주(Beneficial Owner)

Beneficial owner는 회사의 실질 소유주를 의미한다. 중앙은행(RBI)은 KYC 규정<sup>113</sup>에서 '고 객이 법인인 경우에 Beneficial owner는 홀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 또는 복수의 법 인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배적인 소유 지분을 보유하였거나 다른 수단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배적인 소유 지분(controlling ownership interest)은 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하며 지배(control)는 주식 지분이나 경영권 또

<sup>113</sup> RBI Master Direction - Know Your Customer (KYC) Direction, 2016 (updated as on August 09, 2019)

는 주주총회 결의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경영진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Beneficial owner는 복수의 타 법인을 통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도 법인의 주주 현황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한 개인을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인도 법인의 최대 주주, 최대 주주가 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최대 개인 주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법인과와의 거래에 있어서 Beneficial owner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유럽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도 도입하고 있다.

## ○ KYC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약어로 한국에서는 고객알기제도라고 한다. 고객알기제도(KYC)는 금융기관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 등을 금융기관이 확인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 '고객주의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라고도 한다.<sup>114</sup>

인도에서는 금융회사가 계좌를 개설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와의 거래에 있어서 서명권자(Authorized Signatory),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 대리인(Power of Attorney holder)에 대해서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받아 고객주의의무(CDD)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객을 3개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 2년, 5년, 10년에 한 번씩 KYC 서류를 다시 제출 받아 확인하는 Re-KYC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1) 신분과 주소 정보를 포함한 OVD\*
- 2) 최근 사진 1매
- 3) PAN
- 4) 금융회사의 KYC 규정에 따른 필요 추가 서류

\* Officially Valid Document. KYC 규정에서는 OVD의 종류로 passport, driving license, proof of possession of Aadhaar number, Voter's Identity Card, job card issue by NREGA, letter issued by National Population Register 등을 열거하고 있다. OVD는 여러 종류의 신분증 중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으로 개인의 신분과 주소 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주소 정보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로 간주되는데, 제출된 OVD가 현재 주소로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전기/전화/가스 등 공과금 영수증,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을 주소 증빙(POA: Proof of Address)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

<sup>114</sup> Naver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현 주소로 갱신된 OVD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국적자가 제출한 OVD에 주소 상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정부 부서에서 발급한 서류와 주인도 외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레터를 주소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인 경우에는 위 OVD 중 제출 가능한 신분증은 Aadhaar와 여권 정도가 있다. Aadhaar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필요하였으나 이후 의무로서 강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만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여권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권에는 주소 기재란이 있기는 하지만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수기로 기재되는 것으로 신분증의 주소 정보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KYC 관련 규정에서는 외국 정부 부서에서 발급한 주소가 기재된 서류와 주인도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를 확인하는 레터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은행들의 실무적 접근법이 달라 요구하는 주소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다.

### 3-3-2-3. 서명권의 행사 방식 (Mode of Operation)

은행과의 계좌 거래를 위해 고객은 은행에 서명을 등록하게 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여 서명을 행사하는 서명권자의 서명을 등록하게 된다. 이 경우 법인을 대표하는 서명권자는 1인일 수도 있고 2인 이상의 다수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서명권의 행사 방식은 아래와 같다.

그림 3-3-2-3-1. 서명권 행사 방식의 종류

Mode of Operation	내용
Single	서명권자 1인의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
Jointly	서명권자 모두의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
Jointly or Survivor	서명권자 모두의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되며 서명권자 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남아 있는 서명권자 모두의 서명만으로 거래가 지속되는 방식
Either or Survivor	서명권자 2인 중 1인의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되며 서명권자 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남아 있는 서명권자의 서명만으로 거래가 지속되는 방식
Anyone(Severally) or Survivor	복수의 서명권자 중 1인의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되며 서명권자 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남아 있는 서명권자의 서명만으로 거래 지속되는 방식

자료원: 신한은행

위 서명권 행사 방식에서 Survivor를 포함하여 정의하는 것은 주로 개인 계좌인 경우로 국한된다.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예금주의 사망 등 만일의 경우까지 감안하여 서명권 행사 방식을 정해 둘 필요가 있겠지만, 법인 계좌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또는 법인의 위임장에 의하여 서명권자의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의 서명권 행사 방식은 주로 single, jointly, severally(Either/Anyone)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명권의 행사 방식은 은행과 고객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이므로 다른 형태의 서명권 행사 방식도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서명권자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지정하고 각 그룹에서 1명씩 총 2명의 서명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인 계좌의 서명권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서명권자의 변경을 결의하고 동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서명권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새로 선임된 서명권자의 서명과 함께 신분증, 주소 증빙, 사진 등 신입 서명권자의 KYC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 3-3-2-4. 지점사무소(BO), 연락사무소(LO), 프로젝트사무소(PO)의 계좌 거래

앞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주된 진출 형태 중 비공개 주식회사(private limited)를 기준으로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연락사무소(LO), 지점사무소(BO), 프로젝트사무소(PO)의 설립, 계좌 거래의 제한사항, 사무소의 추가 설치 및 폐쇄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계좌의 입금·지급 거래에 있어서 별다른 제약이 없지만 연락사무소(LO), 지점사무소(BO), 프로젝트사무소(PO)의 경우에는 계좌 입금·지급 거래에 대해서 허용되는 거래 사유를 두어 제한하고 있다.

#### ○ BO/LO/PO의 설립

해외 비거주자가 인도에 BO/LO/PO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AD Category-I bank<sup>115</sup> (이하 AD은행)를 통해 Form FNC 및 Form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 서류<sup>116</sup>를 제출하여 중앙은행(RBI)으로 신청하며 BO/LO의 경우에는 Unique Identification Number(UIN)가 승인 레터와

<sup>115</sup> RBI에서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에 따라 허가한 3가지 외환거래 사업자 범주 중 하나. AD는 Authorized Dealer를 의미하며 RBI는 AD Category-I Bank, AD Category-II, Full Fledged Money Changer(FFMC)로 구분하고 각 범주 별 취급 가능 업무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sup>116</sup> Form FNC에서는 공증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과거 5년(BO)/3년(LO) 감사보고서, 은행거래확인서 등을 제출 서류로 정하고 있다.

함께 발급된다. 은행의 계좌 개설은 UIN을 득한 후 가능하다. BO는 승인 유효 기간이 따로 없으나 LO의 경우에는 승인 유효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매 3년마다 연장 승인을 득해야 한다. PO의 유효 기간은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기간으로 한다.

BO와 LO의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조건을 충족해야 설립이 가능하다. BO의 경우에는 직전 5년 연속으로 흑자이고 순자산이 USD 100,000 이상, LO의 경우에는 직전 3개년 연속으로 흑자이고 순자산이 USD 50,00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기업이 재무건전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의 조건 충족 여부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기업이 발행한 Letter of Comfort(LOC)를 제출하여 재무건전성 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BO/LO/PO의 설립의 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며 6개월 이내에 설립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AD은행은 6개월 추가 연장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 ○ BO/LO/PO의 계좌 거래

LO는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계좌의 추가 개설은 RBI의 사전 승인사항이다. LO는 연락사무소로서의 활동 외 영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계좌의 입금·지급이 자유롭지 않으며 허용된 입금·지급 사유는 다음과 같다.

##### a. 입금

- 1) 사무소 운영비 목적의 해외 본사로부터의 해외 송금
- 2) LO의 계좌에서 또는 해외 본사의 해외 송금을 통해 직접 납부되었던 보증금의 환급
- 3) LO의 계좌에서 지급된 세금 등의 환급
- 4) LO의 자산 매각 대금

##### b. 지급

- 1) 사무소의 현지(local) 경비 목적

LO 계좌의 지급 사유는 오직 현지 경비사용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LO의 경우에는 사무소를 청산하는 경우에만 해외 본사로의 송금이 가능하다.

BO는 영업 활동이 허용되므로 계좌의 입금·지급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관련 규정<sup>117</sup>에서는 외국 본사로부터의 해외 송금과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당한 수취대금을 입금할

---

<sup>117</sup> RBI Master Direction - Establishment of Branch Office (BO)/ Liaison Office (LO)/ Project Office (PO) or any other place of business in India by foreign entities (updated as on March 29, 2019)

수 있고 BO의 운영 경비와 이익금의 해외 송금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BO의 이익금 송금은 인도에서 관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가능하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a. 당해 년도 감사보고서
- b. 아래 내용들에 대한 회계사(CA: Chartered Account)의 확인서
  - 1) 송금 대상 이익금의 산출 근거
  - 2) 송금 대상 이익금이 허용된 활동을 통해 발생되었다는 확인
  - 3) 송금 대상 이익금이 BO의 자산 재평가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

PO의 경우에는 해외 법인을 대리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결제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프로젝트 계약에서 외화 결제를 명시한 경우에는 외화 계좌의 개설이 허용된다. 외화 계좌는 미달러화 계좌와 본국 통화 계좌의 개설이 허용된다. 지급은 프로젝트 관련 지출이 허용되고 입금은 프로젝트 발주처로부터의 입금과 해외 본사로부터의 입금만 가능하다. PO의 외화 계좌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PO는 아래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PO의 청산 이전에 이익금을 해외 본사로 송금할 수 있다.

- a. 소득세 등 인도 내에서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남겨 두었다는 감사인(Auditor)/회계사(CA)의 확인서
- b. 해외 송금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자금을 수취하겠다는 PO의 각서

BO/LO/PO는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예금의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만기가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저축성예금(term deposit)으로 예치할 수 있다.

#### ○ BO/LO/PO의 사무소 추가 설립

사무소의 추가 설립은 동부/서부/남부/북부 지역에 각 하나씩 허용되며 복수의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복수의 사무소를 대표하는 Nodal Office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사무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Form FNC를 새로 제출해야 하며 이전 신청 시 제출하였던 서류에서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사무소의 개수가 4개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사무소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다.

#### ○ BO/LO/PO의 폐쇄

BO/LO/PO 계좌는 사무소 폐쇄 신고 후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후 잔액은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BO/LO/PO의 폐쇄 신고는 아래의 서류를 AD 은행으로 제출하여 신청한다.

- a. BO/LO의 경우 사무소 설립 승인 레터 사본
- b. 감사인(Auditor)의 확인서:
  - 1) 송금 대상 금액의 산출 근거 및 대차대조표, 자산 처분 내역
  - 2) 직원들의 퇴직금 및 기타 수당 등 인도에서의 모든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었다는 확인
  - 3) 수출대금 등 아직 인도로 들어오지 않은 해외 발생 소득이 없다는 확인
- c. 인도에서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없고 송금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확인
- d. BO/LO의 경우 Registrar of Companies(ROC)의 회사법(Companies Act, 2013) 준수 보고서
- e. AAC<sup>118</sup> 제출에 누락이 없을 것
- f. RBI/AD은행의 승인 심사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서류

#### 3-3-2-5. 법인 계좌 개설 제한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 2000년 이후로 은행이 법인 고객의 Current account 개설에 응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타행에 보유한 대출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 받도록 규제해 왔다. 타행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좌의 개설이 금지되며 대출 보유 은행으로부터 NOC<sup>119</sup>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좌 개설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새로운 circular<sup>120</sup>를 통해 대출을 보유한 법인이 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여신 보유 은행의 NOC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조건을 삭제하고 대출 보유 은행 이외의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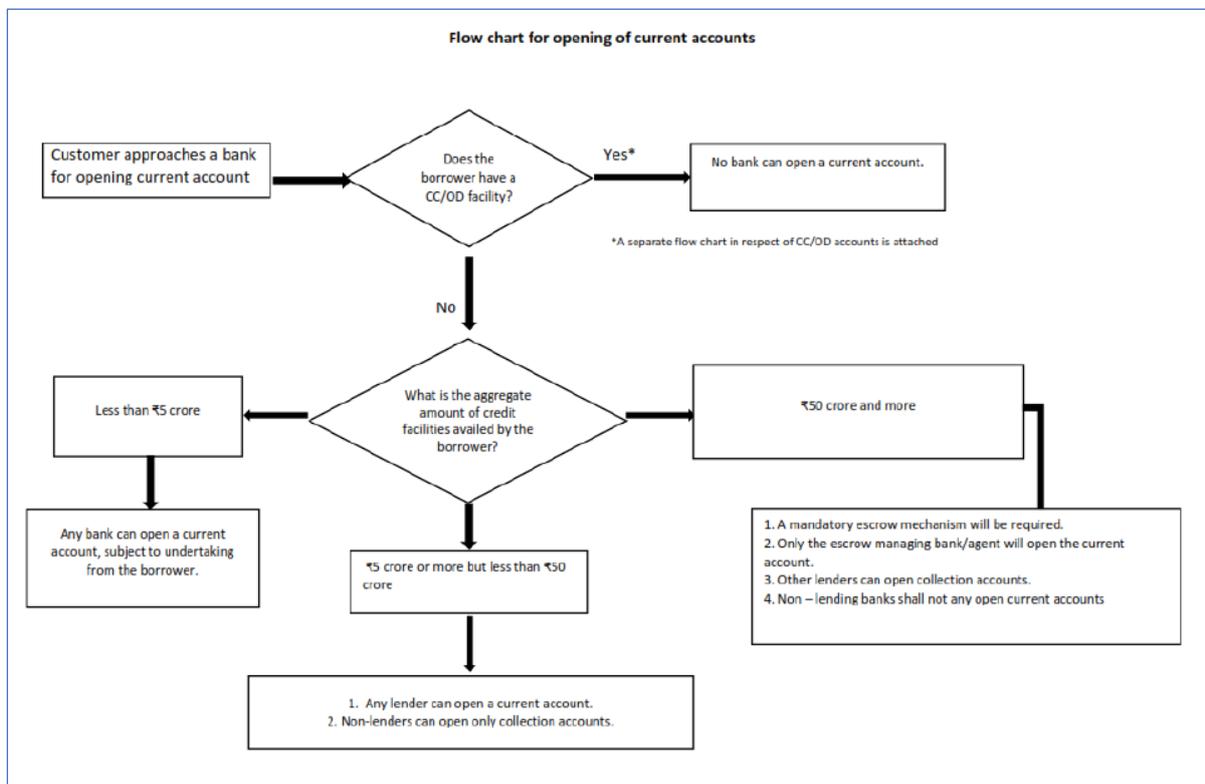
<sup>118</sup> Annual Activity Certificate, BO/LO/PO는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AAC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복수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통합된 AAC를 제출한다.

<sup>119</sup> No Objection Certificate. 어떤 행위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반대 의사가 없다고 발급하는 확인서. 인도에서는 향후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NOC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sup>120</sup> RBI Circular DOR.No.BP/BC/7/21.04.048/2020-21 (August 6, 2020)

관련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이 CC<sup>121</sup>나 OD<sup>122</sup>를 보유한 경우에는 CC/OD가 있는 은행 외 다른 은행에서의 current account 개설은 불가하다. 법인이 보유한 대출이 CC/OD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 금액에 따라 개설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대출 금액이 5크로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대출 금액이 5크로 이상 50크로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이 있는 은행에서는 계좌 개설이 허용되지만 대출이 없는 은행에서는 수금 계좌 (collection account)의 개설만 허용된다. 대출 금액이 50크로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없는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이나 법적 부담금 납부 목적으로 세금 납부 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등 몇몇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그림 3-3-2-5-1. Current Account 개설 플로우 차트



자료원: RBI (Circular DOR.No.BP.BC/7/21.04.048/2020-21)

<sup>121</sup> Cash Credit, 기업의 운전자금 목적의 단기 대출 상품

<sup>122</sup> Overdraft facility, 계좌의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에 약정한 한도까지 인출이 허용되는 대출 상품. 한국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3-3-3. 외환 거래

#### 3-3-3-1. 인도 법인의 자본금 송금 수취

인도의 주식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 또는 개인 거주자는 거래 외국환 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자본금을 송금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sup>123</sup>의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경유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가 역외 금융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다. 이 외에 한국은행 신고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필요 서류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그림 3-3-3-1-1. 한국 해외직접투자 신고 필요 서류

정구 서류	비 고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2)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최초 신고 시
3) 사업계획서	
4) 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서	거주자간의 기 해외 설립법인의 지분 양수도 시
5) 납세증명서	관할세무서발급 (유효기간 이내)
6) 실명확인증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7) 주민등록등본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고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발급)
8) 합작투자계약서	단독투자가 아닌 합작투자의 경우
9) 지분양수도 계약서	기 설립법인의 지분 양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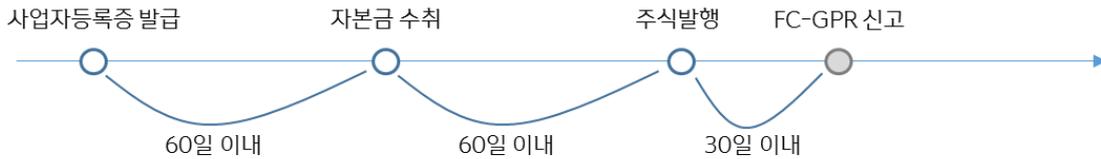
자료원: 신한은행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인도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자본금 납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은행(RBI)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

<sup>123</sup>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FIRMS(Foreign Investment Report and Management System)<sup>124</sup>를 통해 Form FC-GPR<sup>125</sup>을 제출하여 외국인 직접 투자(주식 취득)를 신고해야 한다. 자본금 납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0일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본금을 송금인(투자자)에게 다시 반환 송금하여야 한다.

**그림 3-3-3-1-2. FC-GPR 신고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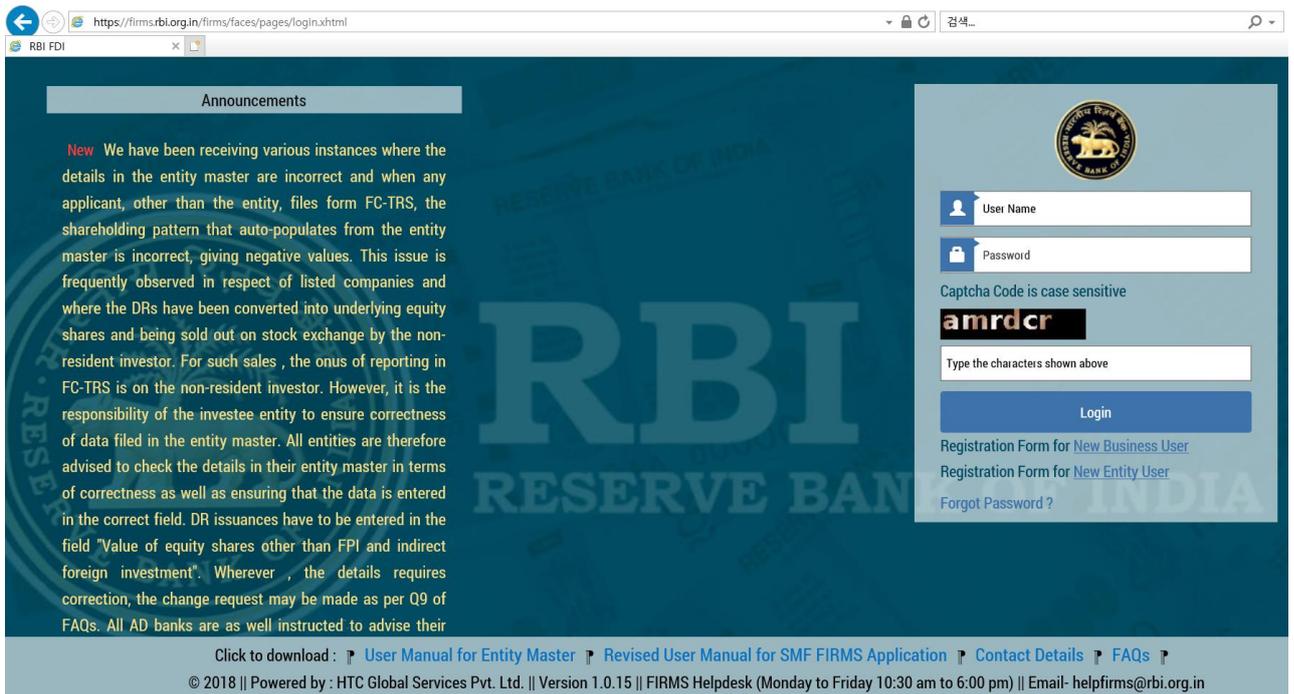
**자료원: 신한은행**

인도 법인이 FIRMS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저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저 등록은 FRIMS에서 ID 신청, RBI로부터 비밀번호 발급, Entity Master 양식 제출의 절차로 진행된다. FC-GPR 양식 제출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송금 받은 은행으로부터 FIRC와 KYC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FIRC는 송금인, 수취인, 송금일, 송금통화, 송금금액 등 해외송금 수취 정보를 기재한 해외송금 수취 확인서(Foreign Inward Remittance Certificate)이다. KYC 서류는 해외 송금인의 이름과 주소 등 KYC 정보를 기재한 서류이다. 송금 수취 은행은 수취인의 신청으로 송금 은행 앞으로 송금인에 대한 KYC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아 수취인에게 발급하게 된다.

<sup>124</sup> <http://firms.rbi.org.in>

<sup>125</sup> 인도의 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C-GPR(Foreign Currency – Gross Provisional Return)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 발행된 회사의 주식이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에게 양도된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FC-TRS(Foreign Currency Transfer of Shares)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림 3-3-3-1-3. FDI 신고 온라인 포털 FIRMS



자료원: <http://firms.rbi.org.in>

FC-GPR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및 주식 미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반환 송금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그림 3-3-3-1-4. FC-GPR 필요 서류

업무 구분	필요 서류
FC-GPR 신고	1) Declaration Letter (RBI 양식) 2) Chartered Accountant Certificate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 및 주당 가치 확인) 3) Company Secretary Certificate (RBI 양식) 4) Board Resolution (if applicable as per RBI guidelines) 5) FIRC, KYC Certificate
주식 미발행 자본금 반환송금	1) Form 15CA / 15CB 2) Board Resolution (주식 미발행 사유 및 미발행 안건 결의) 3) Request Letter for remittance (은행 송금 신청서) 4) Form A2 (RBI 양식) 5) Letter from Investor (주식 미발행 및 자금 반환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

자료원: 신한은행

### 3-3-3-2. 수입 결제

수입 거래는 인도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관리하며 AD은행은 해당 수입 거래가 Foreign Exchange Management (Current Account Transactions) Rules, 2000,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중앙은행(RBI)의 Directions에 따라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중앙은행(RBI)의 Master Direction - Import of Goods and Service (updated as on October 28, 2020)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 수입 대금 결제 기한

일반 수입의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sup>126</sup>에 결제해야 하며 품질불량, 수량부족, 합의조건 미이행 등 수출입 관련 분쟁 또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AD은행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수입 결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수출입 계약에서 결제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지연 이자의 지급은 선적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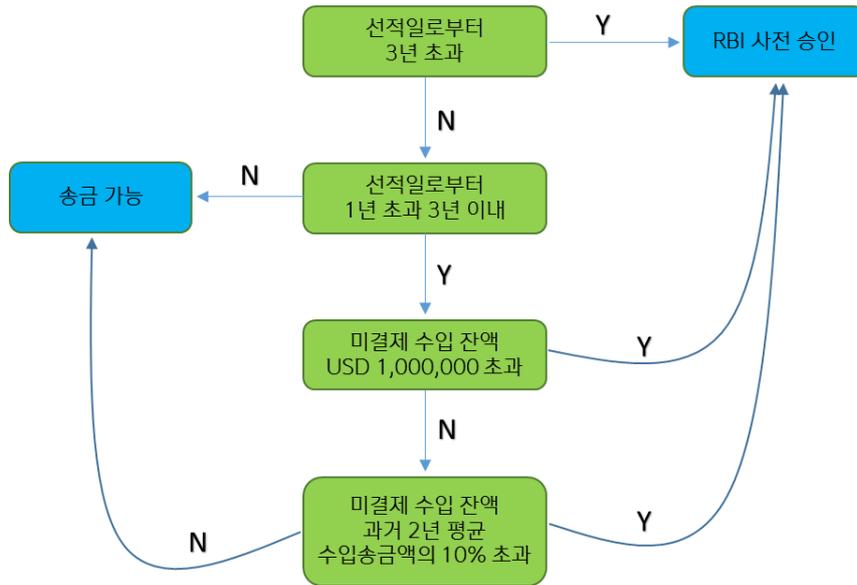
1년을 초과하여 수입 결제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 거래 관련하여 진행 중인 조사가 없고 수입자의 미결제 수입 잔액이 미화 1백만불 또는 직전 2년 평균 수입 결제액의 10%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는 수입 결제 송금을 위해서 AD은행을 통해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선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건의 송금인 경우
- 2)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수입 후 결제되지 않은 미결제 잔액이 미 달러화 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 3)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미결제 수입 잔액이 과거 2년 동안의 평균 수입 결제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sup>126</sup>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년 5월 22일부로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선적된 수입 건에 대한 결제 기한은 기존 선적일로부터 6개월에서 선적일로부터 12개월로 완화되어 적용됨.

그림 3-3-3-2-1. 1년 초과 수입건의 송금 가능 여부



자료원: 신한은행

후불 약정(Deferred payment arrangement)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 결제 기한이 최대 3년<sup>127</sup>까지 허용되며 Trade credit으로 간주하여 중앙은행(RBI)의 Master Circular -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and Trade Credits의 적용을 받는다. Trade credit에는 대표적으로 Supplier's credit과 Buyer's credit이 있으며, 수출입 거래의 후불 약정을 위한 신용을 누가 제공하고 있는가에 따라 구분한다. 수입자가 금융기관이나 은행 신용장 등을 이용하여 수출자에게는 즉시 지급하고 수입자는 금융기관이나 은행으로 나중에 지급하는 형태가 Buyer's credit의 일반적인 형태이고, 수출상이 결제 조건에 후불 결제가 가능하도록 신용을 주는 경우가 Supplier's credit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 ○ 외화 현찰의 휴대 반입

외국 통화를 해외에서 인도로 반입하는 것은 외국 통화의 수입에 해당된다. 별도의 신고 없이 해외로부터 휴대 반입 가능한 외화 한도는 현찰과 여행자수표 등을 포함한 총액 기준으로 USD 10,000 또는 그 상당액 이내이며 현찰 기준으로는 USD 5,000 또는 그 상당액 이

<sup>127</sup> Master Direction - Import of Goods and Service (updated as on October 28, 2020)에서는 후불 약정 수입인 경우 최대 5년까지 허용되며 Trade Credit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한편 Trade Credit 관련 규정(Master Circular -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 and Trade Credits)에서는 자본재(capital goods)인 경우 최대 3년, 비 자본재(non-capital goods)인 경우에는 운전주기(operating cycle) 이내에서 최대 1년까지로 허용하고 있다.

내이다. 이를 초과하여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항 세관에 Currency Declaration Form(CDF)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 제3자 수입 결제 (Third Party Payment)

제3자에게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 수입 결제는 3자 계약(tripartite agreement)이 체결되고 취소불능 구매주문(irrevocable purchase order)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취소불능 구매주문서와 invoice에 제3자가 명시되어 있는 등 제출된 증빙서류의 정황으로 제3자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자 계약의 체결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제3자 지급을 위해서는 invoice에 제3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Bill of Entry<sup>128</sup>에도 제3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한다.

#### ○ 사전 송금 (Advance Remittance)

수입 물품(goods)의 통관 이전에 수입 대금을 송금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를 사전 송금(advance remittance)이라고 한다. 사전 송금 금액이 USD 200,000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에 소재한 잘 알려진 글로벌 은행<sup>129</sup>에서 발행한 standby 신용장/ 보증서 또는 글로벌 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복보증서(counter-guarantee)로 인도의 AD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서가 요구된다.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이러한 은행 보증서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AD은행은 수입자의 과거 금융거래 이력과 수입의 진성거래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대 USD 5,000,000 이내에서 이러한 신용장·보증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수입 대상이 서비스인 경우에는 USD 500,000 또는 그 상당액 이내에서 사전 송금이 가능하며 송금 금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 수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외에 소재한 잘 알려진 글로벌 은행에서 발행한 standby 신용장/보증서 또는 글로벌 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복보증서(counter-guarantee)로 인도의 AD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서가 요구된다. 하지만 서비스 수입의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의 면제가 가능하지 않다.

#### ○ 수입 서류/환어음의 제시

수입 서류와 환어음은 수출자의 거래 은행으로부터 수입자의 거래 은행으로 직접 제출되

---

<sup>128</sup> Bill of Entry(BoE), 수입 물품의 통관 관련 서류로 수입 물품과 수입 결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입에 대한 증빙서류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수입통관필증으로 이해할 수 있다.

<sup>129</sup> 규정에서는 International bank of repute situated outside India라고 표현하고 있다.

어야 한다. 수입자가 직접 수신하여 은행에 제출한 환어음에 대해서는 송금할 수 없으며, 다 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환어음이 USD 3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2) 환어음이 외국 본사로부터 인도 자회사(wholly-owned Indian subsidiary)로 제시된 경 우
- 3) Foreign Trade Policy에서 정의한 Status Holder Exporters, Special Economic Zone 소 재의 법인, 100% 수출 법인 등이 환어음을 직접 수신하여 제시하는 경우
- 4) 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private limited)가 환어음을 직접 수신하여 제시하는 경우

AD은행은 수입자의 재무상태 및 거래 이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 서류가 수출자의 거래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 수출자로부터 AD은행(수입자의 거래 은행)으로 직접 제출되는 경우 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AD은행은 이러한 형태의 거래에 앞서 해외 수출자에 대한 해외 은행의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하지만 invoice 금액이 USD 300,000 이 내인 경우 수입자의 과거 금융거래 이력과 진성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신용조사 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 수입 증빙

수입 결제 송금을 위해서는 AD은행으로 수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물품의 수입 전에 수입 대금을 송금하는 사전 송금 방식의 경우에는 향후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수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수입 결제 송금액에 상관없이 송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입 증빙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는 수입 증빙으로서 Bill of Entry(BOE) 등 수입 관련 서류를 하드카피로 제출해야 했으나 2016년 12월 1일 이후로는 수출입 정보의 전산화로 하드카피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AD은행은 수입자로부터 제공받은 BOE 정보로 수입정보처리시스템(IDPMS)에서 관련 수입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수입 물품이 우편(post)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세관에서 발행한 Customs Assessment Certificate 또는 수입자가 세관에 신고한 Postal Appraisal Form이 수입 증빙이 될 수 있고, 택배(courier)의 방법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세관에 신고한 Courier Bill of Entry 를 수입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수입 물품이 특별경제구역(SEZ), 자유무역지역(FTWZ)<sup>130</sup>, 보세구역(Custom bonded warehouse)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Ex-Bond Bill of Entry

---

<sup>130</sup> Free Trade Warehousing Zone: 인도 정부는 수출입 촉진을 위해 2005년에 특별경제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2006년에 특별경제구역규정(Special Economic Zone Rules 2006)을 제정하였다. FTWZ는 SEZ의 한 형태로서 해당 지역이 국제 무역의 허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무역 및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고 역외(foreign territory)로 간주하여 규제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등이 제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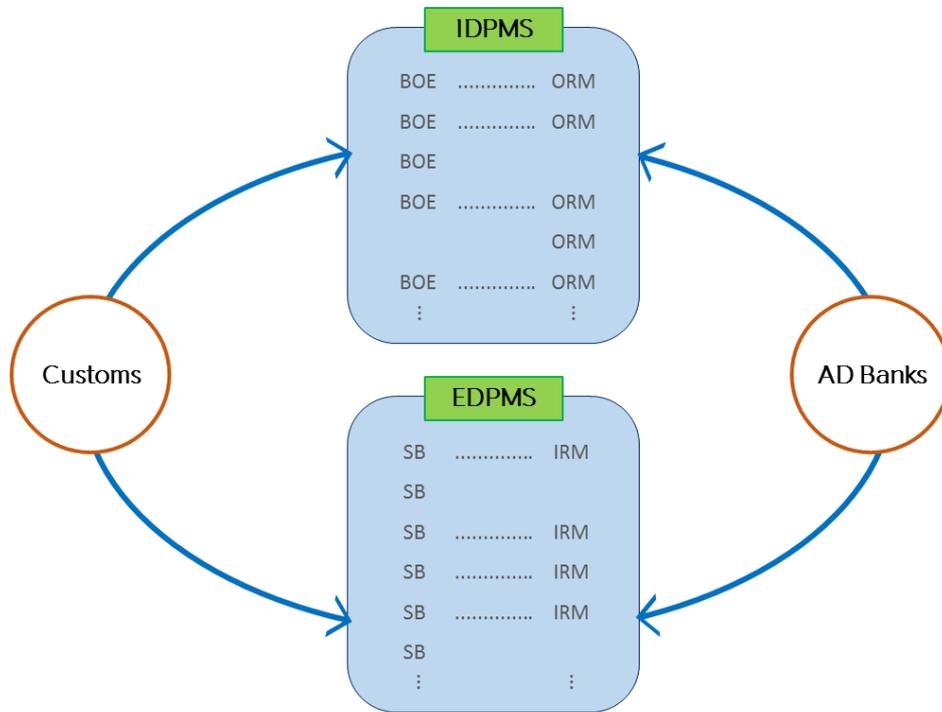
순 자산이 100크로 이상이고 인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인 경우 송금액 USD 1,000,000 또는 그 상당액 이내에서 BOE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 송금건에 대한 물품의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CEO 또는 감사인(Auditor)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데이터의 수입, 이메일/팩스를 통한 설계/디자인의 수입 등 무형물의 수입(Non-physical Import)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입 결제를 위해 소프트웨어/데이터/설계/디자인이 수입자에 의하여 수입되었다는 공인회계사(Chartered Accountant)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무형물의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 수출입정보처리시스템 (IDPMS/EDPMS)

인도는 수출입정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지난 2016년 수입정보처리시스템(IDPMS: Import Data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과 수출정보처리시스템(EDPMS: Export Data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하였다. 두 시스템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출입 통관 정보와 수출입 송금 정보를 서로 매칭하여 수출입과 이에 수반되는 수출입 결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출입 통관 정보는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세관에서 파악되어 수출입정보처리시스템으로 업로드 되고, 수출입 결제 송금 정보는 송금을 취급한 AD은행에서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업로드 한다. 수입 통관 정보는 Bill of Entry(BOE), 수출 통관 정보는 Shipping Bill(SB)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화 되고 수입 결제 송금은 Outward Remittance Message(ORM), 수출 대금 영수는 Inward Remittance Message (IRM)라는 이름으로 데이터화 된다.

그림 3-3-3-2-2. 수출입정보처리시스템 개요



자료원: 신한은행

사전송금 방식의 수입 결제인 경우에는 송금을 취급한 AD은행에서 ORM을 생성하여 업로드하고 향후 이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이 발행하게 되면 세관을 통해 BOE가 생성되어 수입정보시스템(IDPMS)에 업로드 된다. 수입자는 사전송금 처리 건에 대한 BOE 정보를 3개월 이내에 AD은행으로 제출해야 하며 AD은행은 수입정보시스템(IDPMS)에서 BOE 정보와 ORM 정보를 서로 매칭하여 해당 건을 종결 처리한다.

사후송금 방식의 수입 결제인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이 완료된 이후에 수입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이므로 IDPMS에 이미 BOE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수입 결제 송금을 취급하는 AD은행은 수입정보시스템(IDPMS)에서 ORM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기 등록된 BOE 정보와 매칭하여 해당 건을 종결 처리한다.

수출인 경우에도 사전송금 방식과 사후송금 방식에 따라서 송금 정보인 IRM과 통관 정보인 SB 중 어떤 것이 먼저 수출정보처리시스템(EDPMS)에 등록되는지가 달라지며 기본적인 처리 프로세스는 위 수입정보시스템(IDPMS)의 프로세스와 동일하다.

기본적으로 BOE와 ORM, SB와 IRM은 서로 금액이 일치되어야 종결 처리가 가능하다. 어

뎐 운영상의 이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두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입자가 AD은행으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상각(write off)을 신청해야 한다. AD은행은 제출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invoice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상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수입 결제 송금 신청 서류

수입 결제를 위해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사전송금 방식과 사후송금 방식, 그리고 수입 대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마다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AD은행으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신한은행을 기준으로 신청 서류를 제시하였다.

##### A. 사후송금 방식

- 1) Copy of IEC (one time)
- 2) Cover Letter, FEMA Declaration Letter
- 3) Commercial Invoice, Bill of Lading/ Airway Bill
- 4) Bill of Entry details (BOE Number, date) or Copy of Bill of Entry
- 5) Late payment letter (선적일로부터 1년 경과한 경우)

##### B. 사전송금 방식

- 1) Copy of IEC (one time)
- 2) Cover Letter, FEMA Declaration Letter
- 3) Pro forma Invoice (mentioning Advance payment)
- 4) Sales contract

##### C. 디자인/드로잉 등 무형물의 수입

- 1) Covering Letter, FEMA Declaration Letter
- 2) Form A2
- 3) Invoice & Agreement
- 4) 15CA, 15CB
- 5) Copy of tax challan (if tax applicable as certified by CA in 15CB)
- 6) CA Cert stating Design & Drawing imported via email/ fax.
- 7) Letter from customer certifying they have notified customs dept. about Design and Drawings.

## ○ 중계무역 (Merchanting Trade)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의 형태 중에서 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 중개무역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에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으로 삼국간 무역이라고도 한다.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듯이 중개무역에서도 제3국 상인이 수출입의 주체가 아니다. 한편 중계무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한 물자를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하여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 형태로 중계 화물이 자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을 제외한 국내로의 반입이 금지되며 자국에서 중계 화물을 제품화하여 수요국에 수출하게 되면 중계가공무역이라고 한다. 중계무역은 중개무역에서와 달리 제3국의 상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중개무역과 구분된다.<sup>131</sup>

우리나라에서는 중개무역을 merchandising trade, 중계무역을 intermediary trade로 영문 번역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다. 그런데 인도에서의 Merchanting Trade는 우리나라의 중개무역이 아닌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Merchanting Trade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물품이 보세구역을 제외한 국내<sup>132</sup>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 지급(Third party payment)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개무역 보다는 중계무역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제시된 증빙 서류와 거래의 진성 여부 등을 토대로 AD은행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어떤 가공이나 부가 가치 창출 등으로 인한 물품의 변형이 허용<sup>133</sup>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계가공무역 개념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중계무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Merchanting trade로 거래되는 물품은 Foreign Trade Policy(FTP)에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규제 측면에서는 Merchant trade를 수입부분(import leg)과 수출부분(export leg)으로 나누어 수입규제와 수출규제가 각각 적용된다. 수입부분과 수출부분은 모두 하나의 AD은행을 통해 결제되어야 하며, Merchant trade의 총 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고 수입대금 결제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영수와의 차이가 4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sup>134</sup> 위 9개월 기한의 산정은 선적일/수출대금 영수/수입대금 결제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시작하여 선적일/수출대금 영수/수입대금 결제 중 가장 늦은 날까지로 한다.

수입부분의 수입대금 결제보다 수출 부분의 수출대금 영수가 먼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

<sup>131</sup> Naver 지식백과 (두산백과)

<sup>132</sup> 규정의 'Domestic Tariff Area'를 보세구역을 제외한 국내라고 번역하였다.

<sup>133</sup> 2020년 1월까지의 물품의 변형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sup>134</sup> 원문에서는foreign exchange outlay가 4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입 대금 결제 시점까지 영수한 수출대금을 외화계좌(EEFC: 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sup>135</sup>에 외화로 예치하거나 또는 루피(INR)로 환전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루피 예금에 예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치된 자금은 해당 수출과 대응되는 수입 결제 목적의 자금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 결제 의무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환전하여 루피 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헤지(hedge)하는 것이 허용되며, 해당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수입부분의 수입대금은 사전송금 방식으로서의 결제도 허용되지만 수출대금 영수 이전에 수입대금의 사전송금 결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USD 500,000 이내<sup>136</sup>에서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의 사전송금 방식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잘 알려진 글로벌 은행<sup>137</sup>에서 발행한 신용장/보증서의 제출이 요구된다.

### 3-3-3-3. 수출 대금 회수

수출 거래는 인도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의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관리하며 AD은행은 해당 수출 거래가 Foreign Exchange Management (Export of Goods and Service) Regulations, 2015,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중앙은행(RBI)의 Directions에 따라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중앙은행(RBI)의 Master Direction - Export of Goods and Service (updated as on January 8, 2021)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 ○ 수출 대금 결제 기한

모든 수출자는 수출일로부터 9개월 이내<sup>138</sup>에 수출 대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출 대금이 수출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유로 기한 내에 결제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 이내에 수출 대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확인서를 AD은행으로 제출하여 한번에 6개월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총 미 회수 수출 대금 잔액이 USD 1,000,000이나 과거 3년 평균 수출 대금 보다 작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수출 건이 수입자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금액이나 미 회수 수출

<sup>135</sup> 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 Account (EEFC Account): 역외로부터의 외화 취득을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3-3-3-3. 수출대금 회수에서 별도로 설명하였다.

<sup>136</sup> 2020년 1월 USD 200,000 이내에서 USD 500,000 이내로 변경되었다.

<sup>137</sup> 규정의 'an international bank of repute'를 번역하였다.

<sup>138</sup>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년 5월 22일부터 2020년 7월 31일 이전 수출 건의 결제 기한은 기존 9개월에서 선적 일로부터 15개월로 완화되어 적용됨.

잔액에 상관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 ○ 인도 루피(INR) 현찰의 휴대 수출

인도 루피(INR) 현찰을 해외로 휴대하여 출국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된다. 루피(INR) 현찰 휴대 반출은 인도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25,000루피 까지만 허용되며 초과하여 휴대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RB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3자 수출 결제 (Third Party Payment)

제3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영수하는 제3자 수출 결제는 3자 계약(tripartite agreement)이 체결되고 취소불능 구매주문(irrevocable purchase order)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취소불능 구매주문서와 invoice에 제3자가 명시되어 있는 등 제출된 증빙서류의 정황으로 제3자 결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3자 계약의 체결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수출자는 Export Declaration Form(EDF)에 제3자 수출 결제임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제3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회수할 책임이 있다.

#### ○ 사전 송금 (Advance Remittance)

수출 대금을 사전 송금 방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수출자는 수출 대금 수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해야 한다. 선급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LIBOR+100bp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선적 서류는 수출 대금을 수취한 AD은행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수출 대금 수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선적을 모두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선적 미이행에 해당되는 자금을 반환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 Account (EEFC Account)

EEFC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외화 소득이 있는 인도 거주자 개인 및 기업이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개설은 AD Category-1 은행(AD은행)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current account로의 개설만 허용된다. EEFC 계좌의 잔액은 대출/보증 등 여신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

EEFC 계좌는 은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수취한 외화의 입금이 허용된다. 하지만 해외로부터 대출, 투자 등으로 외화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입금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 입금된 외화는 다음달 말까지 모두 환전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허용된 경상/자본 거래로서의 해외송금, Packing credit 상환 등 미래에 외화 결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AD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다음달 말을 경과하여 보유할 수도 있다. 환전하여 루피로 인출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나 외화로환의 재환전 및 재입금은 제한된다. EEFC 계좌에 보유한 외화에 대해서 환율변동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외화 매도선물환 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선물환의 중도청산(cancelation)은 제한되며 만기연장(roll-over)은 가능하다.

### 3-3-3-4. 기타 송금

#### ○ 로열티 송금 / 서비스 대가 송금

인도 회사는 외국 모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경우 외국 모회사로 로열티를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 회사는 기술 협력을 위해 모회사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며, 동 로열티는 제조프로세스, 기술지식, 디자인, 도면, 상표 및 브랜드 등의 권리를 포함한다.<sup>139</sup>

인도 회사는 외국 회사로부터 컨설팅 서비스, IT 서비스 등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해 서비스 수수료 등을 송금할 수 있다. 송금액이 프로젝트 당 USD 1,000,000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로열티 송금 및 서비스 수입 결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1) Covering Letter, FEMA Declaration Letter
- 2) Form A2
- 3) Invoice & Royalty Agreement
- 4) 15CA, 15CB
- 5) Copy of tax challan (if tax applicable as certified by CA in 15CB)

#### ○ 과실송금 (Remittance of Profit/Surplus)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해서 얻은 이익(배당)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과실(果實)송금이라고 한다. 투자에 따른 이익을 식물이나 나무에 열린 열매에 비유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

<sup>139</sup> KOTRA, 인도 투자실무 가이드 (2019)

된다. 하지만 영어 표현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Fruit remittance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투자자의 이익금을 송금하는 것이므로 remittance of profit/surplus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로서 이익금을 배당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배당금 송금, 주주가 보유 주식의 처분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각 대금의 송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과실송금, 즉 이익금의 송금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그림 3-3-3-4-1. 과실 송금 가능 여부**

구분	과실 송금 가능 여부
Liaison Office	- 상업 활동이 제한되므로 본국으로의 이익금 송금 불가 - 사무소 청산(closure)의 경우에만 송금이 가능
Project Office	-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종료 시 이익금 송금 가능 - 아래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산 전 이익금 송금 가능 a. 납세의무 이행에 자금이 충분하다는 감사인(Auditor)/회계사(CA)의 확인서 b. 송금 후 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PO의 확인서
Branch Office	-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 납부 후 송금 가능
Private Limited	- 배당의 형태로 송금하는 것과 보유 주식을 인도 회사에 매도하는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이익금 송금하는 것이 가능 a. 배당: 법인소득세와 배당분배세 및 가산세를 납부한 후 송금 가능 b. 자사주 매입: 법인소득세와 자사주 매입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후 송금 가능

**자료원: 신한은행**

배당금 송금(remittance of dividend)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Covering Letter, FEMA Declaration Letter
- 2) Form RCD 1, RCD 2
- 3) Form A2
- 4) 15CA, 15CB
- 5) Certified copy of audited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 statement
- 6) Certified copy of Resolution passed at Annual General Meeting declaring the dividend
- 7) Copy of tax challan (if tax is applicable)
- 8) FC-GPR Registration Number (approved in Firms or Letter from RBI having allotted

FC-GPR Registration Number)

#### ○ 급여 송금

인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영주하지는 않는<sup>140</sup> 외국 국적의 인도 거주자는 세금과 연금 (provident fund) 등을 차감한 공제 후 급여액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영주하지 않는 외국국적 거주자의 급여 송금을 위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1) Covering Letter, FEMA Declaration Letter
- 2) Form A2
- 3) Net Salary Evidence (TDS Certificate issued by Employer, copy of salary slips etc.)

참고로 한국에서 해외 송금을 수취하는데 있어서 일일 USD 50,000 또는 그 상당액 이상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취 은행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지침서식 제4-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수확인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은행 공통 양식으로 Fax 또는 스캔 방식에 의한 E-mail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 ○ 법인 설립 전 비용에 대한 송금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법인 설립 이후 반환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본금 납입 후 해당 비용을 반환 송금하게 되는데, 해외 투자금(자본금)의 5%와 USD 100,000 중 큰 금액까지 반환 송금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중앙은행(RBI)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

<sup>140</sup> RBI Master Direction – Other Remittance Facilities (updated as on November 6, 2018)에서 ‘resident but not permanently resident’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특정 기간 동안의 고용이나 대리인 지정 등의 사유로 인도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3-3-4. 자금 조달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자금 조달(fund raising)이라고 하며, 조달하는 방법은 조달 자금의 원에 따라 자기자금(자기자본)과 타인자금(타인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부채/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의 오른쪽 대변을 구성하는 항목이 부채와 자본인데 타인자금으로 조달된 부분이 부채, 자기자금으로 조달된 부분이 자본에 해당된다.

자본은 주식이 발행된 주식 지분 자본금과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금이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채는 타인자금으로 조달되는 자금으므로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된 회사채와 금융기관 등을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자금을 차입하는 기간차입금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은 인도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방법<sup>141</sup>과 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방법이 있으며 후자를 역외금융, 인도에서는 역외상업차입(ECB: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이라고 부른다. ECB는 외화를 수반하는 활동이므로 외국환관리법(FEMA)의 적용 대상으로 중앙은행(RBI)의 신고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금, 그 중에서도 은행을 통한 차입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3-4-1. 현지금융 (루피 자금 조달)

##### ○ 여신의 종류

여신(Credit)은 은행이 자금을 직접적으로 대여하는 대출(loan)뿐만 아니라 자금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지급보증서나 파생금융상품 등을 포함한다.

여신은 거래 방식에 따라 건별거래와 한도거래로 구분한다. 건별거래는 여신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발생하되 상환한 금액을 재사용할 수 없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하며, 한도거래는 한도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상환된 금액의 재사용이 가능하여 여신의 인출 및 상환을 반복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건별여신은 취급방식에 따라 일시취급방식과 분할취급방식으로 분류하며, 상환방식에 따라서는 일시상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으로 분류한다.

차주<sup>142</sup>에 따라서는 기업자금대출과 가계자금대출으로 구분된다. 기업자금대출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기업자금 용도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을 말하며, 가계자금대출

<sup>141</sup> 일반적으로 역외금융과 대비하여 현지금융 또는 역내금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sup>142</sup> 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은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 소비자금 등 비영리 목적을 위한 대출을 말한다.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는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구분한다. 운전자금대출은 기업의 생산과 판매활동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하며 시설자금대출은 기업설비의 취득·신설·증설·복구 등 일체의 시설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을 말한다.

담보의 유무에 따라서는 담보여신과 신용여신으로 구분하고, 인도에서는 은행이 자금을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Fund based facility와 Non-fund based facility로 구분한다. Non-fund based facility에 해당되는 여신의 종류로는 앞서 언급한 은행의 지급보증서가 대표적인데, 지급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채무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에는 수출입 거래에서 사용되는 신용장을 비롯하여 입찰보증서, 선수금환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등이 있으며 보증채무의 이행 통화에 따라 외화 지급보증과 내국통화 지급보증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여신의 구체적인 상품들은 각 은행에서 해당 여신에 특정 조건들을 어떻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같은 범주에서도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신한은행에서 취급되는 기업자금 대출 상품을 기준으로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림 3-3-4-1-1. 여신 상품 종류

분류	자금종류	상품명	주요내용
Fund base	운전자금	일반운전자금(WCDL)	산출 운전자금 한도 이내
		단기운전자금(Short Term Loan)	연기 및 상환기일 조정 불가
		당좌대출(Over Draft)	한도대출
		운전자금(Operation Loan)	취급 수수료 부과
		AR(Account Receivable) Loan	판매자 금융
		Inland Purchase B/D	구매자 금융 (내국신용장)
		Inland Sales B/D	판매자 금융 (내국신용장)
		Export B/D	수출자 금융
		Packing Credit INR	선적전.후 수출 금융
		Packing Credit Foreign Currency	선적전.후 수출 금융
	시설자금	시설자금(Term Loan)	거치기간 설정/ 분할 상환
		역외금융(ECB)	해외지점 취급
	개인금융	신용대출(임직원 대출 포함)	개인 신용 대출
주택담보대출		Mortgage Loan	
부동산담보대출		LAP, LRD	
Non Fund Base	보증서	Counter Guarantee(再보증)	한국 발행 보증서의 재발행
		지급보증서(Guarantee)	타행에 대한 지급보증서
		선금금/이행보증서(A/P, P Bond)	계약당사자 요청 보증서
	신용장	보증신용장(Stand-By L/C)	보증 신용장
		수입신용장(Import L/C)	수입물품 구매 신용장

자료원: 신한은행

○ 여신 취급 프로세스

그림 3-3-4-1-2. 여신 취급 프로세스



자료원: 신한은행

여신의 프로세스는 기업의 자금 조달 니즈의 인지부터 시작된다. 기업은 어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파악하고 자기자본 투입 규모와 필요한 자금 조달의 규모, 조달 기간 등

을 파악한다.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은행과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대출의 기간, 담보 제공 여부 및 상환 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고 대출 협의를 시작한다.

은행은 여신 심사의 첫 단계로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진행한다. 신용평가란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계량 정보와 비계량 정보를 분석하여 신용위험 및 채무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계량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분석되는 안정성, 수익성, 부채상환능력, 활동성, 유동성 관련 재무비율 등을 의미하고, 비계량 정보는 산업환경, 경영구조, 구매안정성, 기술력, 경쟁구조, 자금조달 능력 등을 의미한다. 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은 은행 등 평가 기관마다 자체적인 평가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평가 기관에 따라 산출되는 등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산출된 신용평가 등급과 제시된 담보 조건 등을 토대로 대출 가능 한도를 산출하는 등 여신 심사가 진행된다. 이때 담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도 함께 진행된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인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적인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은 여신 심사 후 대출 한도, 대출 기간, 상환 방법, 적용 이자율, 담보 조건, 중도상환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에 대해서 기업과 협의하고 양 당사자가 최종적인 대출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대출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대출 계약이 성립된다.

### 3-3-4-2. 역외금융 (ECB)

역외상업차입(ECB: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은 인도 거주자가 인도 역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업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로 외국환관리법(FEMA, 1999)<sup>143</sup>과 중앙은행(RBI)의 관련 규정<sup>144</sup>의 적용을 받는다. 관련 규정에서는 최소 평균 만기, 자금 사용 목적, 이자율 상한 등과 같은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 8월 이전까지는 ECB를 track I, II, III로 구분하였으나 이후에는 Foreign Currency ECB와 INR ECB로 구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ECB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sup>143</sup>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section 6의 sub-section 3. Foreign Exchange Management (Borrowing and Lending) Regulation, 2018가 적용된다.

<sup>144</sup> Master Direction –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Trade Credits and Structured Obligations (updated as on August 08, 2019)

그림 3-3-4-2-1. ECB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취급가능 차입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회사(Entity) 및 Port Trust, SEZ 소재 기업, 인도 중소기업은행(SIDBI), 인도 수출입은행(EXIM Bank) 등
취급가능 대여자	대여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회원국의 거주자 해외 은행, 인도은행의 해외지점/자회사, 차입자의 본사/관계사(Foreign equity holder)* 등
최소평균 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평균만기(MAMP) 3년 이상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함</li> <li>a) 제조업 영위 기업으로 회계연도 기준 50백만불 이내인 경우: 1년 이상</li> <li>b) 본사/관계사 ECB로서 운전자금, 일반 기업자금 또는 루피대출 상환 목적인 경우: 5년 이상</li> <li>c) 운전자금, 일반 기업자금인 경우: 10년 이상</li> <li>d) 시설자금 루피대출의 상환 목적인 경우: 7년 이상</li> <li>e) 시설자금 외 루피 대출의 상환 목적인 경우: 10년 이상</li> </ul> 위 b)~e)는 인도 은행의 해외지점/자회사를 통한 차입은 제한됨
차입비용 상한	All-in-Cost*** 기준 기준금리(Benchmark) + 4.5% 이내 (Benchmark: 6M Libor, 6M EURIBOR 등 해당통화 6개월물, INR의 경우 해당만기 국채수익률)
자금용도 제한	a) 부동산 거래(Real estate activities)# (단, 기존시설 확장/현대화/새로운 프로젝트 등을 위한 산업용 토지의 매매/장기임대의 경우 가능) b) 자금시장 투자 c) 주식/지분 투자
차입한도/ 비율	회계연도 기준 USD 750백만 이하 자동승인(Automatic route)이나대출 취급 전 LRN 발급 필요 본사 차입 외화 ECB인 경우 ECB 채무와 자본비율## 7:1 이내 (단, ECB 잔액 5백만불 이하 적용 제외)

자료원: 신한은행, 인도 중앙은행([www.rbi.org.in](http://www.rbi.org.in))

\* 본사/ 관계사(Foreign equity holder)는 직접보유 지분 25% 이상, 간접보유 지분 51%, 또는 동일한 해외 모기업의 자회사를 의미한다.

\*\* 최소평균만기(Minimum Average Maturity Period)는 대출의 원금 상환을 고려한 현금흐름 가중평균 만기를 의미한다. 만기 이전에 원금의 일부 상환이 있는 경우에 평균만기는 대출만기보다 길어진다.

\*\*\* All-in-Cost 란 이자 외에 취급수수료, 보증수수료 등 대출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이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 총 비용을 의미한다.

# 부동산 거래(Real estate activities)는 상업용/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소유/임대와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매매/임대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만 (i) industrial park/integrated township/ SEZ 의 건설·개발, (ii) 현재 시설의 확장/현대화 또는 새로운 시설을 위한 산업용 토지의 매입/장기임대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ECB liability-equity ratio 산출 시, ECB liability 는 INR ECB 를 제외한 신청건 포함 모든 ECB 의 잔액을 의미하고 equity 는 최근 감사보고서의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과 이익잉여금(free reserves)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ECB 취급 프로세스

ECB 규정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USD 750,000,000 또는 그 상당액까지는 자동승인대상(automatic route),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신청대상(approval route)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승인대상(automatic route)인 경우에도 Form ECB를 중앙은행(RBI)로 제출하고 대출등록번호(LRN: Loan Registration Number)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절차상으로는 두 방식 모두 동일하다.

그림 3-3-4-2-2. ECB 프로세스



자료원: 신한은행

ECB 차입자와 대여자는 합의된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상환 일정, 적용 이자율 및 이자 납입 주기 등 대출 조건을 명시하여 대출 약정서(Loan Agreement)를 작성한다. ECB 대여자가 한국 거주자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sup>145</sup>해야 한다.

인도의 ECB 차입자는 ECB 신청서라 할 수 있는 Form ECB를 작성하여 Loan agreement 사본과 함께 AD은행으로 제출하고, AD은행은 ECB의 상세 조건들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Form ECB를 중앙은행(RBI) 뭘바이 본점으로 제출하여 접수한다.

중앙은행(RBI)으로부터 대출등록번호(LRN)가 발급되면 해외의 ECB 대여자에게 대출 실행을 요청하여 대출금을 수취한다. 규정에서는 대출등록번호(LRN)가 발급된 이후에만 대출금의 인출(draw-down)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LRN 발급 전 대출 실행은 보고서 지연 제출과 함께 페널티 부과 대상이다.

ECB 자금이 바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외화로 지출 예정인 자금은 해외에 예치할 수도 있

<sup>145</sup>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거래는 신고대상으로 거주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이다.

다. S&P 신용등급 AA(-)(무디스 기준 Aa3) 이상의 은행 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국채 등의 금융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루피로 지출 예정인 자금은 대출금 수취 즉시 루피로 환전하여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이내로 정기예금(term deposit)으로 운용할 수 있다. 외화 지출 예정인 경우 국내 보유에 대해서는 규정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외화로 보유함으로써 불필요한 환전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CB 차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7영업일 이내에 Form ECB 2를 AD은행으로 제출하여 전월의 ECB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ECB의 조건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된 Form ECB를 제출해야 하며 매월 제출하는 Form ECB 2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Form ECB 2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30일 이내에는 5,000루피, 30일 초과 시에는 연 50,000루피의 페널티가 부과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000루피가 부과된다.

#### ○ ECB의 대환 (refinancing of existing ECB) / 자본 전환 (Conversion into Equity)

ECB를 새로 취급하여 기존 ECB를 상환하는 것을 대환(refinancing)이라고 한다. ECB의 대환의 경우 신규 ECB가 규정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함은 물론, 신규 ECB의 all-in-cost 기준 취급 비용이 기존 ECB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고 신규 ECB의 평균 만기는 기존 ECB의 잔존 평균 만기보다 줄어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ECB는 대출 만기 이전이라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 ECB 차입자는 ECB 취급 시점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받는데 있어 적절한 기업이어야 하고 자본 전환에 따른 ECB 대역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없어야 한다. ECB의 자본 전환은 잔액의 일부 전환도 허용되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한 자본금 수취 경우와 마찬가지로 FC-GPR 신고 대상이다.

### 3-3-5. FAQ

#### Q. 수입통관 관련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

##### 1) Solvency Certificate

수입자의 재무 안정성을 증빙하는 서류로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아니다. Request letter, 최근 회계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은행은 특정 금액을 명시하여 발급하게 되는데, 신한은행에서는 여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신의 사용 가능한 한도를 감안하여, 여신이 없는 경우에는 계좌 잔액 범위 또는 재무제표의 자본금 범위 내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발급하고 있다.

##### 2) AD Code Letter

AD은행은 우리나라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과 비슷한 개념이다. AD은행은 각 지점별로 고유의 식별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표시하여 발급하는 서류이다. 사실 AD는 Authorized Dealer라는 의미로 외국환 거래가 허용된 은행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나 실무적으로는 주거래 은행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AD Code Letter는 수출입 통관정보를 수출입통관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할 때 어느 은행 코드를 등록할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3) Signature Verification

인도에서는 은행 거래를 위해 은행에 해당 계좌의 서명권자를 신고하고 서명권자의 서명을 기반으로 거래를 한다.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되는 서류의 서명권자가 법인의 정당한 권한을 보유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서명이 은행에 신고된 서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의 양식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 원본에 은행이 등록 서명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날인한다.

##### 4) GR Waiver

- 전시목적 물품/샘플 등 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수입의 경우 또는 수입된 물품의 반품(수리 또는 교환) 시 발급된다. 발급 사유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샘플 수입인 경우 Request letter, invoice, packing list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Repair 수입인 경우 Request letter, 원 수입거래 서류(invoice, BL/AWB, BOE)와 추가 수입거래 관련 invoice, packing list등을 제출하여 신청한다.

## Q. 대출을 보유한 경우 Current Account의 개설 제한

인도 중앙은행(RBI)은 2020년 8월 6일 새로운 circular를 통해, 대출을 보유한 법인이 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여신 보유 은행의 NOC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조건을 삭제하고 대출 은행 이외의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 1) O/D, C/C 보유 → 개설 불가 (타행에 O/D, C/C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은 가능)
- 2) O/D, C/C 미보유 & 총 대출 50크로 이상 → 대출 보유 은행만 가능 (주거래 계좌 지정 필요)
- 3) O/D, C/C 미보유 & 총 대출 5크로 이상 50크로 미만 → 대출 보유 은행 가능. 대출 미보유 은행은 집금계좌만 가능

이 외에 세금 납부 목적으로 세금 납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 Q. LEI (Legal Entity Identifier)

LEI는 Legal Entity Identifier의 약어로 금융거래의 거래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한 20자리의 법인 식별 번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다 효과적인 금융거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국제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법인 식별번호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그 출발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도 기업 규모와 거래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며, (2021년 3월 기준) 50크로 이상의 여신 거래인 경우, 파생상품 거래인 경우, 일반 외환거래(파생상품 외 외화의 매입/매도)로서 건당 거래 금액이 USD 1백만 또는 그 상당액 이상인 경우, RBI 관할 자금시장(국채시장, 머니마켓 등) 거래인 경우 LEI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LEI는 지정된 발급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대표적인 발급기관으로는 인도 청산소(CCIL: The Clearing Corporation of India Ltd, [www.ccilindia.com](http://www.ccilindia.com))가 있다. 발급받은 LEI는 유효기간이 있어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며 발급 수수료가 발생된다.

## Q. 개인의 해외송금 시 TCS(Tax Collected at Source) 부과 여부

2020년 2월 발표된 예산안에서 처음 언급되고 2020년 10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된 내용은, LRS(Liberalized Remittance Scheme)에 해당하는 해외송금인 경우로서 회계연도 기준 누적 금액 700,000루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TCS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에서는 주재원들의 해외송금은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 발생 소득의 해외송금으로 분류

되어 LRS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TCS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Q. 해외송금 시 USD 송금과 KRW 송금의 차이**

결론부터 말해서 큰 차이는 없다. USD 송금과 KRW의 송금의 차이는 USD에서 KRW로 환전되는 시점이 서로 달라진다는 점이며, 서로 다른 시점의 USD/KRW 환율의 차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USD 송금의 경우 INR을 대가로 USD를 매입하여 송금하므로 송금 시점에는 USD/INR 환율이 적용되며, 한국에서 USD를 수취하여 KRW로 환전할 때 USD/KRW 환율이 적용된다. 한편 KRW 송금의 경우 INR을 대가로 USD를 매입한 후 다시 USD를 대가로 KRW를 매입하여 송금하므로 송금 시점에 USD/INR 환율과 USD/KRW 환율의 조합으로 KRW/INR 환율이 결정되어 적용된다. 즉 USD/KRW 환율의 적용 시점이 송금 시점에 결정되는지 자금 수취 시점에 결정되는지의 차이가 발생된다.

송금 한도에 있어서는 USD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송금한도가 없이 증빙서류의 금액범위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KRW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일일 USD 20,000 상당액 이상으로 송금할 수 없다. USD 송금은 인도 외환시장 장중에 송금이 가능하며 KRW 송금은 인도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외환시장이 열려 있는 인도 시간 오전 중에만 송금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해외 송금을 수취하는데 있어서 일일 USD 50,000 또는 그 상당액 이상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취 은행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영수확인서(지침서식 제4-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수확인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은행 공통 양식으로 Fax 또는 스캔 방식에 의한 E-mail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 **Q. 서명권 변경 서류**

#### 1) 법인 서명권자 변경 서류

- a) Request Letter (구 서명권자의 서명 및 법인 스탬프)
- b) 이사회회의사록 (서명권자 변경 안건 결의)
- c) 서명 카드 (은행 양식, 신규 서명권자 서명 및 법인 스탬프)
- d) 신규 서명권자 사진 1매
- e) 서명권자 본인 확인 및 주소 증빙 서류 (KYC documents of authorized signatory)

2) 연락사무소 서명권자 변경 서류

- a) 위임장(Power of Attorney) 또는 이사회결의서 (법인인감증명 날인 후 공증)
- b) Notarized company registered stamp certificate – 법인인감증명서(공증)
- c) Signature Card (New Signatory)
- d) One photograph (New Signatory)
- e) Copy of Passport/Visa/Address proof\* of new Authorized signatory (사본에 본인 서명)

**Q. 소득세 신고(ITR)를 위해 은행에서 발급하는 서류**

- 1) TDS Certificate (Form 16A, 회계연도 기준 이자소득 40,000루피 이상인 경우 발급)
- 2) Interest Statement 또는 Account Statement (Saving a/c의 경우)

인도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기예금/정기적금의 누적 이자소득이 40,000루피 이상인 경우에 10%의 원천징수(TDS: Tax Deducted at Source)가 적용되며, 초과 금액이 아닌 총 이자금액이 세금 납부 대상이다. 은행에서 TDS가 적용된 경우에는 TDS 확인서가 분기별로 발급된다.

### 3-4. 노무

#### 3-4-1. 인도 노동법제 개편

##### 3-4-1-1. 노동법<sup>146</sup>

인도의 노동입법은 사회경제적 정의를 지향하며 사회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관계는 노동과 경영진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적 목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높은 실업률과 싸우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법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점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노동관련 법률의 단순화, 강화 및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급여, 근무 시간, 징계 규정 및 고충처리 해소 절차, 해고 통지 기간, 휴가, 보험 제공, 연금 및 기타 고용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이 직장 내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법 위반은 엄격히 관리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용주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대다수의 노동법에 따른 형사소송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직원들은 관련 노동법하에서 최소한의 통지기간과 근무 조건을 가질 권리가 있고, 법률은 직원의 부당한 해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는데, 산업분쟁법은 정리해고의 경우 특정 요건에 해당된다면 고용주의 해고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 필요를 규정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체로 대규모 산업 및 노동 관련 법률은 이러한 지침의 이행을 지향해 왔다.

공장법, 근로자 국가보험법, 산업분쟁법 등은 공정하고 인간적인 근무 조건, 건강 보호 및 업무 중 지속되는 상해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저임금법 및 임금체불법은 임금체불을 규제한다. 보너스법은 최저 임금과 생활 임금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노력한다.

인도 노동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점은 해당 직원이 근로자(workmen)인지 아닌지(non-workman) 여부이다. 인도 산업분쟁법 제 2(s)조는 근로자를 “육체, 비숙련, 숙련, 기술, 운영, 사무 또는 감독사무”를 위해 고용된 자로서, (1) 경영, 관리직; (2) 월급여 10,000 루피 이상의 감독직; (3) 경영자 또는 위임자로서의 경영행위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47</sup> 다만, 법률 규정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sup>146</sup>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9) 내용을 기본으로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sup>147</sup> Industrial Dispute Act, 1947. Section 2 [(s) "workman" means any person (including an apprentice) employed in any industry to do any manual, unskilled, skilled, technical, operational, clerical or supervisory work for hire or reward, whether the terms of employment be express or implied, and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eding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an industrial dispute, includes any such person who has been dismissed, discharged or retrenched in connection with, or as a consequence of, that dispute, or whose dismissal, discharge or

사안별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고용계약서 및 인사매뉴얼에 기재된 상세 업무범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원이 근로자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인도 산업분쟁법 등 법률이 업무변경, 해고절차, 노동분쟁 진정 및 제소절차 등 사안에서 근로자의 보호범익을 따로 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직원(non-workman)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각 주법인 상점 및 상업시설법이 적용되며, 고용계약서 및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권리의무가 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외에도, 인도 노동법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해야 할 요소로서, 해당 사업장이 공장, 농장, 광산인지, 일반 상점 및 상업시설인지 여부이다. 각종 사회보장제도, 근로자 해고절차 등 적용규정이 달라지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3-4-1-2. 2021년 인도 노동법제 개편

인도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오던 노동법제 개편과 관련하여 신법이 모두 2020 년 하반기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일개 법률 조항이 개정된 수준이 아니라, 현행 29 개의 연방 노동관련 법률이 4 개로 통합되어 체계 자체가 크게 변화하였다.

인도 법률체계를 보면 연방법으로 이해되는 중앙법률과 각 주의 주법이 있다. 헌법에 따라, 중앙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주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중앙법과 주법이 함께 적용되는 분야가 있는데, 노동분야가 바로 중앙법과 주법이 함께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하나의 노무사건 가지고도 검토해야 할 법률 수가 매우 많고 복잡했다.

이 중에, 이번에 중앙노동법 29 개가 임금법, 사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사관계법 등 4 개의 법률로 통합된 것이다.

그간 인도정부는 지난 2002 년 이후 이러한 노동법제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노사간 이해가 얽혀 있어서 시간이 걸리다가, 2020 년 - 2021 년에 걸쳐 모두 의회를 통과하였고, 시행령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발효일이 곧 공표될 예정이다. 다만, 본 책자에는 신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발효 후에는 인도 중앙 노동법은 4 개 법률만 참고하면 되며, 각 주법들은 그대로 계속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노동 관련 주법은 각 주별로 상점 및 상업시설법(Shops and Establishment Act) 등이

---

retrenchment has led to that dispute, but does not include any such person--

(i) who is subject to the Air Force Act, 1950 (45 of 1950), or the Army Act, 1950 (46 of 1950), or the Navy Act, 1957 (62 of 1957); or (ii) who is employed in the police service or as an officer or other employee of a prison; or

(iii) who is employed mainly in a managerial or administrative capacity; or (iv) who, being employed in a supervisory capacity, draws wages exceeding <sup>59</sup>[ten thousand rupees] per mensem or exercises, either by the nature of the duties attached to the office or by reason of the powers vested in him, functions mainly of a managerial nature.]

있으며, 중양법과 함께 적용되는 법으로서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래 표와 같이, 임금 관련 4 개의 법률이 하나의 임금법으로, 연금, 보험, 복리후생 관련 9 개 법률이 하나의 사회보장법으로, 공장법 등 각종 산업 안전 관련 13 개 법률이 하나의 산업안전보건근로환경법으로, 산업분쟁법 및 노동조합법 등 3 개의 법률이 하나의 노사관계법으로 총 29 개의 법률이 4 개의 법률로 통합, 개정되었다.

**표 3-4-1-2-1. 노동법제 개편**

<p><b><u>임금법 (The Code on Wages, 2019)</u></b></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동일임금법 (The Equal Remuneration Act, 1976)</li><li>2. 최저임금법 (The Minimum Wages Act, 1948)</li><li>3. 임금지급법 (The Payment of Wages Act, 1936)</li><li>4. 상여금지급법 (The Payment of Bonus Act, 1965)</li></ol> <p><b><u>사회보장법 (The Code on Social Security, 2020)</u></b></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근로자연금기금법 (The Employees' Provident Funds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52)</li><li>2. 근로자국가보험법 (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li><li>3. 퇴직금지급법 (The Payment of Gratuity Act, 1972)</li><li>4. 출산지원법 (The Maternity Benefit Act, 1961)</li><li>5. 근로자보상법 (The Employee's Compensation Act, 1923)</li><li>6. 고용관리(의무공석통지)법 (The Employment Exchanges (Compulsory Notification of Vacancies) Act, 1959)</li><li>7. 영화산업근로자복지기금법 (The Cine-Workers Welfare Fund Act, 1981)</li><li>8. 건설근로자복지조세법 (The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 Workers' Welfare Cess Act, 1996)</li><li>9. 비조직근로자사회보장법 (The Unorganised Workers ' Social Security Act, 2008)</li></ol>
---

### **산업안전보건법 (The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Working Conditions Code, 2020)**

1. 공장법 (The Factories Act, 1948)
2. 계약노동(규제 및 폐지)법 (The Contract Labour (Regulation and Abolition) Act, 1970)
3. 주간이주노동자(고용규제 및 근로환경)법 (The Inter-State Migrant Workmen (Regulation of Employment and Conditions of Service) Act, 1979)
4. 농장근로법 (The Plantations Labour Act, 1951)
5. 광산법 (The Mines Act, 1952)
6. 저널리스트 및 신문기자(근로환경)법 (The Working Journalists and other Newspaper Employees (Conditions of Service) & Misc. Provisions Act, 1955)
7. 저널리스트(임금율고정)법 (The Working Journalists (Fixation of Rates of Wages) Act, 1958)
8. 운수근로자법 (The Motor Transport Workers Act, 1961)
9. 담배산업근로자법 (The Beedi and Cigar Workers (Conditions of Employment) Act, 1966)
10. 판매촉진근로자법 (The Sales Promotion Employees (Conditions of Service) Act, 1976)
11. 영화산업근로자법 (The Cine-Workers and Cinema Theatre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Act, 1981)
12. 항만근로자(안전,보건,복지)법 (The Dock Workers (Safety, Health and Welfare) Act, 1986)
13. 건설근로자(고용규제 및 근로환경)법 (The Building and Other Construction Workers (Regulation of Employment & Conditions of Service) Act, 1996 )

### **노사관계법 (The Industrial Relations Code, 2020)**

1. 산업분쟁법 (The Industrial Disputes Act, 1947)
2. 산업고용(복무규정)법 (The 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1946)
3. 노동조합법 (The Trade Unions Act, 1926)

법률이 29 개에서 4 개로 통합되어, 기존 각각의 법률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하던 용어 정의규정도 통합되었고, 법률마다 확인해야했던 각종 등록, 신고사항이 간소화된 장점이 있다. 기존에 배제되었던,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도 사회보장 보호 법익에 들어오면서 형평성도 제고되었고, 노동청 조사관 및 조정인의 역할이 규정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노사분쟁해결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률적용 요건인 직원수 규정도 각 사안별로 완화되었으며, 각종 전자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신고절차가 도입되면서 기술활용도도 향상된 장점도 있다.

새로운 노동법제가 발효하면, 임금의 새로운 정의에 따라 직원의 임금체계가 변경되어야 한다. 근무일, 휴일 등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내 인사규정 등을 개정해 놓아야 하며, 새롭게 작성될 사내 인사규정에 개정된 임금, 공제, 보상금 등 모든 사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파견업체와의 계약이 있는 경우, 신법 규정에 따라 원청사로서의 의무가 새롭게 발생된 부분이 있는 지 참고하여, 계약서를 검토하고 파견 고용 계약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게 새롭게 적용되거나 변경 적용되는 사항을 적절히 관리하여, 법률준수(Compliance)를 위한 사내 정책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회사 재정적으로도 이번 개정법상 임금 등 노무비가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노무비 변경에 따른 손익계정을 정확하게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 3-4-2. 채용계약<sup>148</sup>

인도는 단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근로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 온전히 당사자들 간의 고용 계약에 따라 근로 관계의 성격 등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직원과 계약을 맺기 전 우리 기업에 맞는 적절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따라야 할 채용, 면접, 심사 및 채용 절차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주는 임명 절차에 관한 자체적인 정책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채용 정책은 개인 사생활, 평등권 등 지원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많은 기업들은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신원조회(background check) 등을 진행하여, 이력서, 경력, 학력 등의 자료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고용주는 고용계약을 진행하기 전 신원조회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원의 고용은 신원확인 및 학력, 경력사항의 정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지원자의 개인정보 조사 동의여부를 명확하게 문서로서 기재하여야 한다. 인도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2000) 및 정보기술 (개인정보절차) 규정(Information Technology (Reasonable Security practices and

<sup>148</sup>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9)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procedures and sensitive personal data and information) Rules, 2011)은 취업 지원자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사용, 공개를 위해서는 해당 지원자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헌법상 권리로서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원조사 및 채용면접시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위 정보기술규정은 채용지원절차시 고용주가 (1) 지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2)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3) 개인정보 수집인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용하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그 일자리에 대한 지원자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취업 전 질의와 배경 조사를 할 경우에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데이터 보호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후에만 수행되어야 한다.

### 3-4-2-1.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 계약은 기업과 직원 사이에 자유롭게 그 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형식에 있어 정하여진 법률 규제는 없다. 인도 계약법에 규정된 계약을 관리하는 일반 규정은 고용 계약에도 적용된다. 구두상 계약도 유효하지만, 실무상 고용 관계의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 계약이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계약의 조건이 법 조항과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법률에 정의된 최소 작업 조건을 준수하고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업고용법(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s) Act, 1946) 등 특정 법률은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주에게 고용의 특정 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는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므로, 해당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고용 기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대로 일시적일 수도 있고, 정규직과 같이 영구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업무 범위 및 근무 장소, 수습 기간, 확인 절차, 근무 시간, 휴직 자격, 급여 및 기타 법적 혜택 자격, 경쟁방지 및 비밀보호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 계약의 조항의 복잡성과 확장성은 직원 수준에 따라 다르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은 공통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인사, 노무 정책 또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근로 계약의 조건과 병행하여 적용한다. 또한 제조업, 금융업, 의약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 정형화된 근로계약서 형태로 대규모 고용이 진행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고용계약은 먼저 수습기간을 가지고, 동 기간 동안 직원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식 채용 절차를 밟게 된다. 인도내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3 개월에서 6 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

회사의 정직원인지 여부, 산업분쟁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주법상의 노동법적 보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근로 또는 고용 계약의 실질은 계약의 조건과 실제 업무

범위 및 직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용 전 이러한 고용 관계의 실질을 특정하여 이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3-4-2-2. 근로계약의 종료

고용 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건의 발생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 합의된 기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 상호 계약을 해지하여 상호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 계약서에 합의된 대로 일방 당사자가 해지하는 경우.

산업분쟁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 1-3 개월의 통지기간 또는 해고통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 100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해당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아닌 직원의 고용 관계 해지에 대해서는 주법 규정과 고용계약 조건이 적용된다. 이러한 직원의 해지의 경우, 최소 1개월의 서면 통지 또는 1개월치 임금지불이 요구될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는 예고 없이 직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범죄 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해고는 조사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기업은 해고 원인에 대한 통지, 직원의 항변 절차 기회 제공,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기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절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해고는 불법 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각 근무연도에 대한 15 일치의 급여인 해고보상금과 1-3 개월의 통지(기업 직원 수에 따라 다름) 또는 그 대신 급여에 해당하는 법정 중복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직원의 위법행위로 해고된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떠한 보상도 할 의무가 없다. 고용주의 재산에 어떠한 손해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고용이 종료된 직원은,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의 범위까지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다. 직원의 고용이 심각한 위법행위로 종료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추후 해고된 직원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 기업은 해고된 직원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행하고, 기업과 직원 간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을 상호 정산하여 문서로서 합의하여 직원이 기업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남은 비용이 없으며 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4-3. 임금 및 보험<sup>149</sup>

#### 3-4-3-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Minimum Wages Act, 1948)에서는 특정고용에서 최저 임금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임금은 특정 주의 최소임금규칙에 따라 주정부 고시를 통해 국가가 규정한다.

최저임금액은 정확하게 모두가 평등한 통일된 하나의 숫자로 나오지는 않는다. 산업분야별, 직업별, 비숙련, 반숙련, 숙련 근로자인지 여부, 각 주별로 최저임금 수치가 다르다. 예를 들어 델리 보통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하여 비숙련 월 15,492 루피, 숙련 감독직 월 20,430 루피 등 15,000 루피에서 20,000 루피 사이로 이해하면 되지만, 정확한 액수는 최근 업데이트된 정부 고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숙련되거나 비숙련된 일, 육체 또는 사무직의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해당 정부가 정하거나 개정하는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

- 해당 정부가 정하는 기본급과 특별 수당;
- 기본급, 그리고 양도의 현금가치가 인정된 경우;
- 기본급을 포함한 일체의 포괄적인 임금.

고용주는 그 고용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그 고용에 종사하는 직원의 최소 임금을 이상의 비율로 어떠한 공제도 없이 지불해야 한다. 동법 상 근로시간, 최저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조건의 모든 위반이 있는 경우 10,000 루피의 벌금 또는 5 년의 구금형이 가능하다.

#### 3-4-3-2. 임금 지급

통합 노동법제에서의 가장 큰 변경사항 중의 하나는 '임금(wages)'의 정의가 바뀐 점이다.

임금은 기본급, 보상수당, 유지수당 등 따로 제외되지 않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주택수당 및 교통수당 등이 임금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개의 통합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임금은 모두 이 정의 규정에 적용받는다.

현행법 상에서 퇴직금, 상여금 등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이라고 칭할 때 기본급+수당을 적용하는 법률도 있었고, 더 많은 항목을 포함해서 임금이라고 적용하는 법률도 있어 계산금액이 모두

<sup>149</sup>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9)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달랐으나, 앞으로는 계산방식에서의 임금이라 함은 새로운 정의에 따른 임금이라고 통일화되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임금의 정의 규정에는 총 임금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물보수(remuneration in kind)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지만, 임금법에서 보수지급 방법으로 현금, 은행송금, 수표 등 현금보수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입법적 불비가 있지만, 시행령 등을 통해 향후 새롭게 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으로 특정되는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퇴직금, 상여금, 감축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15 일치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등으로 금액이 계산되는 기준이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 산정 금액이 높아지면, 결국 각종 지급액 산정 결과가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

현행 인도 임금지급법(Payment of Wages act, 1936)은 임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무단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인도 임금지급법상 임금은 현금으로 표시되거나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고용 조건이 충족되었든, 고용 또는 그러한 고용에서 수행된 일과 관련하여 고용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는 모든 보수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당사자 또는 법원 명령 간의 보상 또는 합의 하에 지불해야 하는 보상;
- 시간외 근무, 휴일 또는 휴가 기간과 관련하여 고용된 사람이 받을 권리가 있는 보수;
- 고용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추가 보수(보너스 등).
- 고용인의 고용 종료의 사유에 의해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 계약 또는 금융상품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지만, 지급해야 할 기간에 제공하지 않는 금액;
- 법률 등에 따라 권리를 갖게 되는 금액.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용 조건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상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거나, 당사자들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보너스;
- 주정부의 일반 또는 특별 명령에 의한 임금 계산에서 제외된 모든 편의 제공 또는 서비스의 가치;
- 고용주가 연금에 지급한 분담금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기여금;
- 여행수당 또는 여행할당권의 가치;
- 고용인의 고용 성격상 수반되는 특수 비용을 변제하기 위해 고용인에게 지급한 금액;
- 고용의 해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모든 지급액.

### 3-4-3-3. 보너스

보너스(법정상여금)는 흔히 얘기하는 보너스인 “performance” 보너스가 아니라,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져야하는 법정보너스를 의미한다.

보너스는 회사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다. 보너스를 주는 기본 목표는 조직이 벌어들인 이익을 직원과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것이다.

현행 보너스 지급법(Payment of Bonus Act, 1965)은 인도 내 특정 사업장에 고용된 자에 대하여 이익 또는 생산 또는 생산성에 근거하여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 명 이상의 고용인이 고용된 모든 사업장과 21,000 루피 미만의 보수를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30 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보너스법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보너스법은 8.33%(최소)에서 20%(최대) 사이의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 8.33%의 보너스는 동법 제 10 조에 따라 모든 업종 및 단체에서 지급한다. 어느 회계연도에나 지급할 수 있는 생산성 연계 보너스를 포함한 최대 보너스는 법 제 31A 조에 따라 직원의 급여/임금액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3-4-3-4. 근로자 국가보험

인도 근로자국가보험법(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은 지역별로 10 인 이상 고용된 공장 및 제조 단위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모든 공장 또는 시설은 관련 법률 규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보험금 분담 체계는 주로 인도 전역의 시행 지역에서 피보험자와 그 고용주로부터 적은 임금이지만 특정 비율의 급여로 인상된 기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일일 40 루피 이하의 하루 평균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기여금의 지급을 면제받지만, 이 제도 하에서 모든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분담율은 다음과 같다.

- 직원 분담율: 임금의 1.75%;
- 고용주 분담율: 임금의 4.75%.

직원과 고용주가 기여한 기금은 근로자보험 펀드로 알려진 공통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 제도 하에서 수혜자에게 의료 시설을 제공하는 것 외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를 포함한 그 가족 구성원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된다. 해당 기업의 행정비용과 기타 비용도 이 펀드에서 충당된다.

### 3-4-3-5. 연금

인도법상 연금은 모든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장으로서 2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될 수 있다. 20 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연금 가입도 가능하다.

임금의 12%(특정 경우에는 10%)의 균등분담금(기본임금, 수당, 유지수당 있는 경우)은 고용주와 직원(직접 또는 도급업자를 통해 고용한 경우)이 지불해야 한다. 직원에게 제공되는 자발적 제공 기금(VPF) 옵션(고용인이 동일한 금액을 기부할 의무는 없음)도 가능하다.

고용주는 법정금을 매월 15 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직원들은 고용주가 고용 기간 내내 균등하게 분담하는 금융 지원제도(주택 구입, 결혼/교육 등과 같은 제한적 상황은 제외)의 형태로 사회보장의 혜택을 누린다. 이 금액은 보통 퇴직하거나 사망 시 지불된다. 그 밖의 혜택으로는 직원연금제도 및 직원 예금연계 보험제도 등이 있다.

앞으로 발효될 사회보장법도 현행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국가보험은 10 인이상의 사업장, 연금기금은 20 인 이상의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임금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연금분담의무자나 분담액이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사회보장법 상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금기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60 일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고용주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직원수 요건에 부합하여 보장범위가 적용된 경우 적용면제를 신청할 수 없고, 자발적인 보장 적용 이후 5 년내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

우리 한국인의 경우 한-인도간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면, 인도에서는 면제될 수 있다.

### 3-4-3-6. 퇴직금

퇴직금은 10 인이상의 사업장에서 5 년이상 근속 직원 및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정산되며, 예를들어 4 년 근무 후 퇴직시는 퇴직금이 없고, 6 년 근무 후 퇴직시는 15 일치 임금 곱하기 근속년수인 6 년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다.

- 공장 (공장법에 따라 등록);
- 회사 (회사법에 따라 등록);
- 상점 (상점 및 상업시설법에 따라 등록);
- 교육기관 (직원 10 명 이상 고용);

- 기타 등록된 사업체.

퇴직금 산정은 근속 연도의 지급(완료된 근무 연도의 15 일치 급여)을 기준으로 한다.

### 3-4-3-7. 휴가수당

휴가수당도 마찬가지로 개정된 임금 정의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진다. 신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퇴직시 지급되던 휴가수당을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매 20 업무일 당 하루의 휴가일은 신법도 동일하지만, 240 일 이상 근무 규정이 180 일 이상의 근무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적용대상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사항으로는 일시해고, 출산휴가, 연차 기간도 위 180 일 근무일수 산정에 인정되지만, 유급휴가수당 일수 계산 산입에는 제외된다. 유급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고, 근로자의 업무기간이 해당연도 1 월 1 일에 시작된 것으로 계산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당연도 총 잔여일수의 1/4 이상 근무했을 경우 유급휴가 대상자로 인정된다.

현행법인 공장법이 근로자의 유급휴가 및 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이 공장법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통합되면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는 기존 주법인 상점 및 상업시설법 규정이 적용된다. 각 주법에서도 통상적으로 매 20 일 업무일마다 하루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이는 신입이나 수습직원들도 모두 적용된다.

잔여연차 정산방법과 관련하여, 현행 공장법은 기본금+수당을 한달 업무일인 26 으로 나눈 일일 임금 곱하기 잔여휴가일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에서는 기본금+수당이 아닌, 임금의 정의에 따른 임금을 26 으로 나눈 1 일 임금 곱하기 잔여휴가일수로 계산하면 된다.

### 3-4-4. 근무시간/휴식/휴가<sup>150</sup>

근로 조건에 적용될 수 있는 인도 노동법은 매우 다양하다. 공장법 등의 중앙법과 동시에 기업 소재지 주의 개별 주법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산업고용법(Industrial Employment Standing Order Act, 1946)의 목적은 산업시설의 고용주에게 정식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동법은 최근 100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한 모든 산업 사업장에 적용하며, 주에 따라 그 인원이 다를 수 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기준이 50 인이다). 동법은 모든 부문에 대한 고정기간 고용을 도입하도록

<sup>150</sup>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9)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정하고 있는 등 여러 근로 조건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각 기업에 적용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분쟁법(Industrial Dispute Act, 1947) 또한 근로 조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분쟁은 직원과 고용주, 고용주와 노동자, 또는 노동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정의되며, 고용, 비고용, 고용 조건 또는 노동 조건과 관련이 있다.

산업분쟁은 고용조건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이나 의견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대표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서, 대개 노동조합, 초과 임금 및 기타 근로 조건이며, 산업 활동의 방해로 초래할 수 있다.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당사자들, 즉 경영자와 노동자들이 서로 압박하게 된다.

공장법(Factories Act, 1948)은 공장의 노동 조건에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동법 또한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공장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동법의 주요 목적은 공장의 근로 조건을 규제하고 고용주가 공장 노동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의 기본적인 최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근로시간, 휴가, 휴일, 초과근무, 여성 및 아동 취업 등을 규제하고 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 일, 주 근무시간;
- 주간휴일;
- 여성 근무시간, 식사시간 등;
- 최소 휴직일수, 유급휴직;
- 초과근무수당.

아울러, 각 주는 상점 및 상업시설법(Shops and Establishment Act)을 제정하여 주요 근로 조건에 관한 법제의 틀을 만들고 있다. 동법의 목적은 고용의 허가 부문(예: 상점 및 시설)에서 직원 및 고용주에게 법적 의무와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동 법률은 고용주 가족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급여가 있든 없든 사업장에서 고용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1 일 및 1 주 근무 시간;
- 휴식 간격, 개폐 시간, 휴무일, 국경일 및 종교일, 초과근무에 대한 지침;

- 아동, 청년, 여성의 고용;
- 연차휴가, 출산휴가, 병가, 유급휴가 등에 대한 규정;
- 고용 및 서비스 종료에 대한 규칙.

일반적으로, 동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30 일 이내에 상점 및 상업시설 설립 등록을 해야 하지만 델리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등록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상점 등록과 설립에 관한 규칙은 주마다 다르다. 15 일 내의 통지가 필요하며, 주정부는 영구적으로 또는 특정 기간 동안 동법의 모든 조항 또는 모든 조항에서 면제할 수 있다.

### 3-4-4-1. 근무 시간

근무 시간은 통상적으로 각 개별 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공장법 등 중앙법 또한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소재지 주의 노동법 기타 관련 노동법을 확인하여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기업 내 업무 시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 확정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은 8 시간, 휴식시간 1 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 휴무일이 있고, 초과근무시 임금의 2 배를 지급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무시간은 8 시간, 주 6 일 초과근무 금지, 정상임금 2 배의 초과근무 수당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따로 유사하게 근무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현행 공장법 등은 일일 9 시간, 주당 48 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점심시간 불포함 매 5 시간마다 30 분의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 임금법 시행령안 제 6 조에 일일 8 시간 근무 및 1 시간의 중간 휴식시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 25 조에도 일일 8 시간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안 제 28 조는 근로자의 5 시간을 초과하는 연속 근무시간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소 30 분간의 중간 휴식시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임금법에는 초과근무 시간 포함하여 12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각 주법을 통해 직원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는데, 주법에서도 최대 초과근무 포함 총 하루 12 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다.

현행 공장법 및 주법인 상점 및 상업시설법은 명시적으로 휴식시간을 나누지 않고, 9 시간으로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하면 일일 최대 9.5 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었으나, 통합 노동법제에서는 명확하게 임금법 기준 휴식 1 시간 포함 9 시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휴식 30 분 포함 최대 8.5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

#### 3-4-4-2. 초과근무 및 수당

대부분의 주법은 초과근무 및 수당에 관하여 특정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초과근무 및 수당 규정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기도 하고, 관리감독 위치에 있지 않은 일반 직원에게만 적용하여 노동법상의 보호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해당 소재지의 주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회사 전체의 초과근무 및 수당 정책, 특정 직원에 대한 적용 여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정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다.

#### 3-4-4-3. 휴가

휴가에 대한 노동법 또한 기본적으로 개별 주법을 따르고 있어, 소재지의 적용 법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통상 연차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는 최소 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추가적으로 병가, 기타 휴가도 법정 최소일수가 있으며 이러한 최소 휴가일수는 직원의 연속 근무일수와도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법 조항을 검토하여 전체 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도입하고 개별적으로는 직원의 근속일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휴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추후 그 일수만큼 급여를 계산하여 현금으로써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개별 주법에 따라 이러한 의무의 정도와 이행 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기업은 이에 대한 관리 장부를 항상 작성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산휴가는 총 26 주간 주어지며, 출산전 8 주전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다. 세째아이 출산부터는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전 6 주부터해서 총 12 주로 줄어든다. 참고로, 육아휴직 관련 현행 법률규정은 없고, 인도 중앙정부 공무원에게만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따라서 일반 기업체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은 아직 없으며,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출산휴가든 육아휴직이든 임금은 100% 지급해야 한다.

### 3-4-5. 취업규칙/징계/배상<sup>151</sup>

#### 3-4-5-1. 내부 규정 작성 및 채택

회사 내 인사, 노무규정은 회사내의 인사 및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규정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자와의 고용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여 회사가 상시 그 규정을 수정하여 근로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사, 노무 규정은 회사 내부의 규정으로서 역할을 하며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등 그 효력의 우선성을 고려하여 이사회로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채용 (수습기간, 채용 조건 등);
- 근무 조건 (업무 시간, 정보 사용 등);
- 휴무;
- 보수 및 기타 복리후생 (월급 및 초과 수당 등 기타 혜택);
- 휴가 (연차 등);
- 징계 정책;
- 퇴직 (해고 등);
- 행동 강령 등.

인도에서 근로, 고용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노동법으로서 다양한 중앙법 및 주법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초과근무 수당이나 법정 휴가일수 등 특정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해당 주법에 따라 인사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 3-4-5-2. 규정의 효력 및 수정

인사, 노무 규정은 회사 내부 규정으로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고용 계약서 등이 이 규정의 내용과 충돌하는 경우 고용 계약보다 인사, 노무 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고용 계약 시 정할 수 있다. 이는 내부 규정이 상시 수정되더라도 계약보다 우선하여

---

<sup>151</sup>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9)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통합적인 인사, 노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의 수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규정으로서 최고경영자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달 및 공개되어야 한다.

채용 및 해고 등 퇴직과 관련하여서는 주법과 중앙법이 모두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해당 법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 기업이 원활한 업무 진행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맞춤형 인사 규정을 작성하고 상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통상 이러한 인사, 노무 규정은 변호사/로펌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3-4-6. 노동조합

인도 노동조합법(Trade Unions Act, 1926)은 노동조합을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고용주간, 근로자와 근로자간, 고용주와 고용주간 관계를 규정하거나 기업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구성된 모든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52</sup> 동법 제 4 조는 조합원 7 인이상이 조합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위한 최소 조합원 수로 사업장의 총 근로자의 최소 10% 또는 100 인 중 적은 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53</sup>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등록은 노동조합의 ‘인정(recognition)’ 절차와 구별된다. 인정절차는 사측이 근로환경, 임금 등 사안에 관하여 근로자측의 대표자로서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동 인정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각 주마다 관련 규정을 담고 있으나, 중앙법인 노동조합법 자체에는 인정절차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인정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집단교섭 거부는 인도 산업분쟁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된다.

---

<sup>152</sup> The Trade Unions Act, 1926, Section 2. (h) "Trade Union" means any combination, whether temporary or permanent, formed primarily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the relations between workmen and employers or between workmen and workmen, or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rs, or for imposing restrictive conditions on the conduct of any trade or business, and includes any federation of two or more Trade Unions:

Provided that this Act shall not affect-- (i) any agreement between partners as to their own business; (ii) any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those employed by him as to such employment; or (iii) any agreement in consideration of the sale of the goodwill of a business or of instruction in any profession, trade or handicraft.

<sup>153</sup> The Trade Unions Act, 1926, Section 4. [(1)] Any seven or more members of a Trade Union may, by subscribing their names to the rules of the Trade Union and by otherwise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with respect to registration, apply for registration of the Trade Union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no Trade Union of workmen shall be registered unless at least ten per cent. or one hundred of the workmen, whichever is less, engaged or employed in the establishment or industry with which it is connected are the members of such Trade Union on the date of making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Provided further that no Trade Union of workmen shall be registered unless it has on the date of making application not less than seven persons as its members, who are workmen engaged or employed in the establishment or industry with which it is connected.] [(2) Where an application has been made under sub-section (1) for the registration of a Trade Union, such applicati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become invalid merely by reason of the fact that, at any time after the date of the application, but before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 Union, some of the applicants, but not exceeding half of the total number of persons who made the application, have ceased to be members of the Trade Union or have given notice in writing to the Registrar dissociating themselves from the applications.]

인도 산업분쟁법은 100 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위원회(works committee)'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위원회는 노사간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공통 관심 사항에 의견을 개진하여 이견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20 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grievance redressal committee)'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산업분쟁법상 노동쟁의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근로자는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사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측은 1 개월 내에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에게 결정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이외에도 산업분쟁법에 기초한 각 주법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자라트주의 경우 500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동경영협의회(joint management council)'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헌법은 모든 국민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등 조합 및 협회를 결성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등록 노동조합의 주요 권리는 아래와 같다 :

- 노동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여한 경우, 노조위원과 조합원은 범죄음모 관련 형사 절차에 면책을 부여한다;
- 노동조합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유지할 수 있고, 조합원의 시민적, 정치적 이익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노동조합은 규정된 방식으로 다른 노동조합과 통합될 수 있다;
- 등록 노동조합의 조합원간 합의를 해당 목적이 근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무효화 또는 취소할 수 없다;
- 조합원이 당사자로 있는 노동쟁의를 위해 이루어진 행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고용계약 파기를 야기하거나, 타인의 고용활동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등록 노조, 노조위원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민사상 제소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은 산업체의 복지와 사회전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더 나은 근로조건 협상, 산업분쟁 해결 및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인력채용과 선발을 지원하여 기업구조 및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4-7. 채용계약 해지 및 해고

#### 3-4-7-1. 해고 절차

현행 산업분쟁법에 따르면, 모든 산업부문에서 1 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한 감축시, 고용자는 법률 적용규정에 따라 1 개월 - 3 개월 전 감축통보, 감축보상금 지급, 관계 정부부처

및 관청 신고 또는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요건은 노사관계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 승인필요 요건이 100 인 이상 근로자에서 300 인 이상 근로 산업체로 완화된 점이 주목된다.

법률이 따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workmen 또는 worker)의 범주가 아닌, 일반 직원의 경우, '상점 및 상업시설법' 등 각 주법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해고(Ordinary dismissal)'와 '사유있는 해고(Dismissal for cause)' 등 두 가지 형태의 해고가 있다. 통상적으로 해고통지 기간은 고용계약서에서 따로 통지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한 1 개월이다.

사유있는 해고는 징계 등의 경우 이루어지는 해고방법이며,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직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위법행위가 입증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주는 통지기간 없이 해고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산업분쟁법에서 고용주는 근로자 해고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해고행위는 무효이며, 해당 근로자는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각 주법에도 합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고용주가 합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로 간주된다. 고용주는 해고 후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인도 산업분쟁법상 근로자(workmen)를 징계, 퇴직, 계약기간 만료 이외의 사유로 해고할 경우, (1)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후입선출(last in, first out)" 원칙 적용; (2) 240 일 이상 근로자의 경우, 1 개월전 통지 의무; (3) 관계 노동청에 신고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직전 12 개월간 100 인 이상의 특정 근로사업장(공장 등)의 경우 3 개월 전 통지 및 관계 노동청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3-4-7-2. 해고 보상금

고용주는 일반 직원 해고시 잔여 휴가보상금, 퇴직금, 기타 계약에 따른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징계에 의한 해고시에는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인도 산업분쟁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지급금 외에도, 근속연수마다 15 일치의 평균임금을 해고보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 3-5. 법무

### 3-5-1. 인도 법률 체계

#### 3-5-1-1. 인도 헌법

인도 헌법(Constitution of India, 1950)은 총 450 개의 조항 및 12 개 부속서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의 헌법 중 하나이다. 헌법은 인도 독립이후 1950 년 1 월 26 일 제정의회에서 작성되고 채택되었으며, 인도 헌법 전문에 “우리 인도 국민은 인도를 사회주의 주권 세속적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인도의 최고법임을 증명하고 있다.<sup>154</sup>

인도 헌법의 특징 중 아래와 같은 몇 가지를 외국 출처에서 도출해왔기 때문에, 범세계적인(cosmopolitan) 문서로서 언급되고 있다:

- 영국으로부터 계수한 양원제, 법치주의 및 의회 민주주의;
- 아일랜드의 국가정책 원칙;
- 미국의 기본권, 사법부 독립, 대통령의 기능;
- 캐나다의 연방법률 및 주 법률 목록;
- 호주의 연방 및 주법 공통 목록 및 통상의 자유;
- 구 소비에트연방의 기본의무.

인도 헌법은 연방 헌법인 동시에 단일 헌법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 국가도 단일국가도 아닌 준연방(quasi-federal) 국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인도는 28 개의 주와 8 개의 연방직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및 주의회를 통한 각각의 입법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도 헌법은 중앙 차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의회(Lok Sabha)와 상원의회(Rajya Sabha)로 이루어져 있다 :

- 하원의회 (국민의 대표): 하원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 또는 정당의 연합의 정부를 구성한다. 하원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 상원의회 (주정부 대표): 상원의원은 주의회로부터 간접 선출된다.

각 주차원에서도 주 입법부인 주의회가 있다. 모든 주는 하원의회와 유사한 주의회가 있으며, 일부주는 입법회의로 불리는 두개의 하원을 가지고도 있다. 현재 인도 총 28 개의 주의회 중 7 개

---

<sup>154</sup> Constitution of India, 1950, Preamble. “WE, THE PEOPLE OF INDIA, having solemnly resolved to constitute India into a [SOVEREIGN SOCIALIST SECULAR DEMOCRATIC REPUBLIC] and to secure to all its citizens: JUSTIC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LIBERTY of thought, expression, belief, faith and worship; EQUALITY of status and of opportunity; and to promote among them all FRATERNITY assuring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and the [unity and integrity of the Nation]; IN OUR CONSTITUENT ASSEMBLY this twenty-sixth day of November, 1949, do HEREBY ADOPT, ENACT AND GIVE TO OURSELVES THIS CONSTITUTION.”

주에서 입법회의가 따로 있으며, 주의회가 입법회의보다 더 많은 입법권을 행사한다. 주의회 의원수는 각 주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달라진다.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인도 헌법에는 삼권분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나뉘어지는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 전반에 걸쳐 고려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행정부는 대통령 및 주지사의 행정명령 공표와 행정 위임 입법 등을 통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법부는 헌법 개정, 관할권 및 법원의 권한 개정, 판사 탄핵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사법부는 위헌 입법 및 행정명령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

### 3-5-1-2. 입법절차

인도의 의회제도는 중앙차원의 인도 의회에 의한 입법권한 및 주차원의 주 의회에 의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입법 권한이 부여된 입법분야는 인도 헌법에 나열되어 있다. 인도헌법 제 7 장은 중앙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분야, 주의회가 제정하는 법률분야, 중앙의회와 주의회가 모두 제정하는 법률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만약 중앙의회와 주의회간 법률에 충돌이 발생하면 중앙의회 입법권이 우선한다. 입법절차는 중앙의회 및 주의회 모두 유사한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중앙의회 입법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입법 제안된 법안은 정부 관련 부처에 의해 초안이 준비되며, 해당 법안은 타 부처에 회람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회람되어, 필요에 따라 수정 의견 개진 및 수정이 이루어진다. 동 법안은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내각위원회에서 승인받은 후, 하원 또는 상원의회에 발의된다. 유일한 예외로서 재정적 성격의 입법은 하원을 통해서만 우선 발의된다.

하원의회 또는 상원의회는 법안이 발의되면 심의를 거쳐 통과하게 된다. 법안이 상하원 의회 중 한곳에서 발의되어 과반수 찬성에 의해 통과되면, 상하원 다른 한곳에서 발의, 심의 통과 절차를 다시 거친다. 예외적으로 재정관련 법안은 하원의회가 최종 입법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권고적 권한만을 지닌다. 주의회의 경우 입법회의는 양원의 역할을 담당한다기 보다는 자문역할만을 담당하며, 주의회 자체가 최종 입법 권한을 가진다.

법안이 양원에 의해 과반수 찬성 통과되면,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종 제정된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정보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의회에 재고하도록 한 차례만 반송할 수 있다. 만약 이후 대통령의 권고사항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양원에 의해 다시 통과되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안은 의회 법률로서 관보에 게재되고 발효된다. 대통령은 의회 입법과는 별개로 의원회기 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도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의회 회기가 열리면, 의회에 비준을 받아 법률로서 효력이 지속되며,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례의 효력이 중단된다. 각 주의 주지사도 대통령의 상기 절차와 마찬가지로 각 주의 조례에 대한 입법권을 지닌다.

### 3-5-1-3. 법률시스템

인도는 대륙법, 영미법, 형평법, 관습법, 종교법 등 모든 요소가 합쳐져 있는 하이브리드 법률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인도의 주요 법원(source of law)은 아래와 같다.

- 헌법 : 헌법은 최고 법원이다;
- 법률(성문법) : 의회에서 법률로서 문서로 제정된 법률 및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 정부 단계에서 입법된 규칙, 규정, 시행령 등 하위 위임법률;
- 관습법 : 특정 사안의 경우, 현행법과 도덕적 가치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역 관습 및 종교적 관습;
- 법원 판결 : 대법원, 고등법원 등 상위 법원에 의한 선례적 가치를 지닌 사법적 판결, 판례.

조약, 국제협정 등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비준되었을 경우 인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진다. 특정 사안의 경우 국제관습 및 국제법 원칙도 인도 현행법 및 정의에 반하지 않는 한 국내 비준없이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할 경우 국내법이 우선한다. 인도 사법부는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 계약법적 이슈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국제법 원칙 및 영미법계 국가 등 외국의 사법적 판결도 법원천으로서 고려한다.

## 3-5-2. 기업관련 법제 개요<sup>155</sup>

### 3-5-2-1. 회사법

인도의 기업법제는 그 기원이 영국 회사법이다. 1956년 회사법은 1948년 영국 회사법을 계수한 것이었는데, 비즈니스가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의 시스템과 절차의 변화를 고려하여 회사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선진화된 회사법이 2013년 이해당사자들과의 오랜 숙고 끝에 통과되었다.

인도 회사법은 현행법 또는 선행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회사에 적용된다. 회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은 인도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에 의해 관리되는 회사법 및 각종 비즈니스 관련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회사법은 법인설립부터 기업, 주주, 이사 등의 책임을 정하고, 그 정리 절차 등 회사의 모든 운영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규율하는 규범으로의 법률로서, 기업의 통합, 기능 및 운영의 전반적인 틀을 지배하는 인도에서 가장 포괄적인 법률이다.

<sup>155</sup>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9)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정부 기관 및 독점 기업과는 별도로 인도의 주요 사업 조직의 형태는 공기업, 민간 및 1인 기업(OPC), 외국 기업, 외국 기업의 연락, 프로젝트 사무소, 유한책임파트너십(LLP) 및 기타 형태의 기업이다.

동법은 회사의 주식회사, 증권, 주식 자본 및 채권, 인수, 경영 및 관리, 배당 및 지급, 회사의 회계, 감사인, 임원 및 이사 자격,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장을 포함한다. 대표이사와 그 권한, 임명 및 경영자 인사, 감사 및 합병, 정리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기업부는 인도 정부 주요 부처로서, 주로 2013년 기업법 및 2008년 기타 관련 시행령 및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기업 부문의 기능을 법에 따라 규제한다.

### 3-5-2-2. 유한책임파트너십법

회사법은 주식회사를 주로 규율하는 반면, 유한책임파트너십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별도의 개별 법률인 유한책임파트너십법으로 규율한다. 회사법 관련 법률로서 유한책임파트너십법(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8)은 유한책임파트너십(LLP)에 대하여 적용된다.

동법은 2008년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주식회사보다 다소 간소한 컴플라이언스 규제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LLP 법은 LLP 라는 새로운 실체의 개념을 도입했다. LLP 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형태이며 파트너와 분리된 법적 실체로 되어 있다.

낮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 파트너에게 제한된 책임의 이점을 제공하는 대체 기업 형태로서 일반 파트너십과 같이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내부 구조를 조직할 수 있게 해주는 한편 파트너들의 책임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LLP 는 회사와 파트너십의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유한책임제휴, 주식회사, 파트너 및 이들의 관계, 기여, 금융공시, 제휴권 배분 및 이전, 청산 및 해산의 성격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구조와 운영의 유연성으로 인해, LLP 는 중소기업과 벤처 캐피탈에 의한 투자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한책임파트너십 또한 기업부가 주요 담당 부처로서 동법에 따라 그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 3-5-2-3. 증권거래위원회법

증권거래위원회법(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Act, 1992)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주요 법률이다.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Board of India, SEBI)는 인도 정부의 증권 감독 규제 기관이다.

1992년 SEBI 법에 따라 제정되어 인도 증권 시장을 규제하며, 위원회는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증권에 대한 투자자 지분의 보호로서 인도의 증권 시장 촉진, 개발 및 규제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 거래소와 관련된 규칙과 법률을 관장한다. 1992년 인도 증권거래소법에 관련된 통합형 FDI 정책(2017년 발효)에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외국 기관 투자자’(FII)는 인도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고 1995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FII 로 등록하는 인도 외부에 설립 또는 법인화된 기업을 의미한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란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 벤처캐피털 투자자(FVCI)’는 인도 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투자자를 의미하며,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CO) 규정, 2000년 SEBI(FVCI) 규정에 등록되어 본 규정에 따라 투자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5-2-4. 외환관리법

인도는 인도 외환시장의 질서 있는 발전과 유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 관련법을 통합하고 개정하기 위하여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FEMA))을 시행하고 있다. 동법을 근간으로 인도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은 상시 고시(RBI Master Directions and Notifications) 등을 통하여 구체적 규제를 이행하고 있다.

외환관리법은 2000년 6월 1일에 발효되어, 외환의 보존의 접근에서 무역과 지분을 용이하게 하고 질서 있는 외환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동법은 외환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법령에 따라 예금이 정한 규칙과 규정에 대한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외환관리법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보장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하기 전에 외국인 투자자는 자본금 또는 대여금 투자 시 반드시 동 외환관리법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연간 법률 준수 의무도 있으므로 동법에 대한 이해 및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은 인도 거주자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외국법인의 인도내 모든 지점, 사무실 및 기관에도 적용된다. 동법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틀에 부합하는 새로운 외환관리 체제를 가능하게 했다. 외환관리법은 인도 내외에서 개인 또는 기업이 자금을 이전하거나 여행 목적으로 인도에서 외화를 교환하는 것을 포함하는 전매 거래와 송금을 포함하여 규제하며, 중앙 정부가 인도 이외의 모든 개인에게 지불하거나 인도 밖에서 받는 영수증, 전주 및 외국 안전 거래의 세 가지를 제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도중앙은행(RBI) 또는 정부의 특정 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3-5-2-5. 인도중앙은행법

1934 년 인도중앙은행법이 제정되어 인도중앙은행(RBI)을 설립하였다. 은행과 다른 관련 사항들을 감독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 RBI 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감독자 역할을 한다. 이는 국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리를 보호하며, 대중에게 긍정적인 은행 체계를 제공한다. RBI 는 국가 소유로서 국가 통화의 발행자 역할을 한다.

주목적은 예정된 상업 및 협동 은행, 모든 인도 금융 기관, 지역 은행, 소규모 금융 은행, 지급 은행, 신용 정보 회사, 비은행 금융 회사 및 1 차 거래자로 구성된 금융 부문을 통합 감독하는 것이다. 이밖에 인도중앙은행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아래와 같다.

- 인도은행법, 1934 년;
- 공공부채법, 1944/정부증권법, 2006 년;
- 정부증권규제법, 2007 년;
- 은행규제법, 1949 년;
- 외환관리법, 1999 년;
- 금융자산의 증권화 및 재건 및 보안이익법, 2002 년(제 2 장);
- 신용정보회사법, 2005 년;
- 지불 및 정산제도법, 2007 년.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아래의 정부 승인 경로로서 인도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RBI 의 허가가 필요하다.

- 자동 경로(Automatic Route): 자동 경로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나 인도 회사는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승인도 인도중앙은행이나 정부로부터 요구하지 않는다;
- 정부 경로(Approval Route): 정부 경로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또는 인도 기업은 투자를 위해 인도 정부 투자관련부처(FIPB), 경제부(DEA), 재무부 또는 산업정책촉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5-2-6. 경쟁법

인도 경쟁법(Competition Act, 2002)은 국가의 경제 발전을 고려하여,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지속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참여자가 수행하는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쟁 위원회를 설립하여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어떤 기업이나 협회, 개인 또는 개인 협회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급, 유통, 보관, 획득 또는 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에 현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경쟁법은 어떤 기업이나 집단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적 지위란 관련 시장에서 기업이나 집단이 누리는 힘의 위치를 의미하며, 관련 시장에서 지배적인 경쟁력과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경쟁자나 소비자 또는 자신에게 유리한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인도의 관련 시장 내 경쟁에 현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러한 결합이 성립되면 무효가 된다.

경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동안 경쟁위원회로부터 중앙정부, 주정부는 해당 정책이 경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지시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항소를 심리, 처분하고 배상 청구에 대해 심판하기 위한 경기심판소, 중앙정부, 주정부, 위원회, 법령 기관, 지방 정부, 기업 또는 항소 재판소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법은 인도 경쟁위원회(CCI)에게 경쟁법의 제정으로 모든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반경쟁적 관행과 행위와 같은 카르텔에 대한 소송은 경쟁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다.

### 3-5-2-7. 환경 관련 법제

인도환경부는 1985 년에 설립되어 환경의 규제와 보존을 위한 국가의 행정 기관으로서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및 규제 이행 기반을 제공한다. 1970 년대부터 여러 환경법이 제정되었다. 산업자원부와 오염관리위원회(CPCB)는 산업의 입법 및 행정 핵심부처인 중앙오염관리위원회와 주 오염관리위원회(SPCB)를 구성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 국가녹색심판법, 2010;
- 공기(오염 방지 및 통제)법, 1981;
- 물(오염 방지 및 통제)법, 1974;
- 환경보호법, 1986;
- 유해 폐기물 관리 규정 등.

### 3-5-2-8. 소비자보호법

인도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1986)은 소비자의 이익을 보다 잘 보호하고 소비자 협의회와 기타 당국의 설립을 위한 조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소비자는 지급, 약속, 일부 지급, 일부만 지급된 대가를 위해 또는 이연 지급 시스템 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지급 또는 일부 지급 또는 일부 약속된 대가를 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이외의 해당 상품의 사용자를 포함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동법은 소비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가, 주 및 지역 단계에 3 단계 준사법적 소비자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였다. 또한 소비자 인식 확산을 위해 중앙 및 주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 포럼은 상품, 서비스의 가치가 2 백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청구된 경우, 보상금이 2 백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발을 접수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으며, 국가 위원회는 1 천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고발을 접수할 수 있다. 지역 포럼, 주위원회 또는 국가위원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제소하지 않는 한 고발을 인정할 수 없다. 지역 포럼, 주 위원회 및 국가 위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재판소의 권한이 있다.

### 3-5-2-9. 산업(개발 및 규제)법

산업(개발 및 규제)법은 인도의 산업발전과 산업에 대한 개념적이고 법적인 틀을 제공한다. 동법은 중앙 규제 하에 많은 중요한 산업,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및 그 발전이 경제적으로 요인에 의하여 규율 되어야 하는 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도 국내 산업의 개발 및 규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 산업 정책 구현: 동법은 산업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 중요 산업의 규제 및 개발: 동법은 여러 중요 산업의 개발 및 규제를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 있는데, 그러한 중요 산업의 개발은 반드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
- 새로운 산업 계획 및 개발: 건전하고 균형 있는 신규 사업의 계획과 향후 개발을 규제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 3-5-2-10. 관세법

인도 관세법은 선박, 항공기, 물품, 승객 등의 다양한 범주의 입출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 관세는 1962 년에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간접 세금으로서, 관세법, 다른 세법과

마찬가지로 세금 부과와 징수가 주된 목적이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다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수입 및 수출 규제;
- 국내 산업의 보호;
- 밀수 방지;
- 외환의 보전 및 증강 등;
- 외환보전을 위한 수입 제한;
- 대외무역법 및 외환규제법 등 외환을 취급하는 법률과 법률조항의 상호조율;
- 인도의 산업을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보호;
- 물품의 밀반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방지;
- 물품의 덤핑 방지.

관세법 제 12 조는 관세법(1962 년), 관세법(1975 년) 또는 인도에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기타 적용 법률에 명시된 비율로 관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3-5-2-11. 자금세탁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2002)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자금세탁에서 파생된 재산의 몰수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동법 및 관련 시행령은 2005 년 7 월 1 일부터 발효되었다. 금융회사, 금융기관, 중개업자에게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금융정보국(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3-5-3. 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인도에서 우리기업이 인도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단순한 표준계약서에 서명한 정도로 여기는 우를 범할 수 있는데, 훗날 상호 분쟁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 적용하는 것이 계약서이다.

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상 모호한 단어 설정, 중요 조항 누락 등으로 인해 권리의무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하는 문서가 계약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는 정형화된 문장의 모음이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의 목적, 분야, 이행방법, 권리와 의무,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상호간의 이해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떠한 종류의 계약이 되었든 아래 사항들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3-5-3-1. 계약의 목적

계약서는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계약 문구의 구성, 범위, 필수 조항이 다르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계약인 경우 기간, 장소, 로열티, 지식재산권 등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공급계약인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규모와 수준, 가격 및 지불조건, 손해배상, 거부 및 재배송, 분쟁해결수단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급계약인 경우 이행 방법 및 기간, 대금 및 지불조건, 손해배상, 불가항력, 분쟁해결수단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제계약의 경우 언어, 이행지역, 지불통화 및 환율, 분쟁해결 관할권 및 준거법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3-5-3-2. 표준문구 및 필수조항

당사자, 목적, 정의, 기간, 이행 조건, 수정, 해지/종료, 배상, 중재/분쟁해결수단, 준거법, 불가항력에 따른 면책 등 모든 계약서에 들어가는 표준 조항 및 필수 조항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표준 문구라고 해도 우리 기업의 이익에 맞게 적절히 검토하여 수정해야 한다.

특히 계약 문구 작성시 당사자간 형평성에 맞는 동등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언제든지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는 등의 불평등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문구 등은 문제가 있다. 분쟁해결 및 중재조항에서도, 중재인 지정, 중재지,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해야하며, 중재지를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또는 가까운 지역으로 설정하면, 훗날 중재에 임할 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나아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배상액의 범위와 액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추후 소송에 따른 추가비용까지도 배상액의 범위에 넣을 수도 있다.

영문으로 작성되는 계약서인 점을 감안하면, 계약서는 짧고, 명확하며, 누구나 읽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수동태보다는 능동태로 작성해야 하며, 불필요한 단어나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단어는 삭제해야 한다. 또한 ‘해야하는’ 의무를 의미하는 ‘shall’과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의미하는 ‘may’를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도 정부가 체결하는 계약서가 문장이 매우 길고 모호하며 표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이 경우, 의문스러운 조항은 최대한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3-5-3-3. 출구전략

누구든, 어느 기업이든 계약상대방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을 목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계약서를 해지/종료해야 할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가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합작투자 계약일 경우 파트너 기업과의 지분배분, 매각, 지분이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분쟁에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 3-5-3-4. 양해각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체결할 단계는 아니지만 당사자 쌍방이 상호 이해나 양해한 바를 메모나 각서 형식으로 기재하여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MOU 와 관련하여 자주 대두되는 의문은 MOU 에는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법적 책임이 있는 지 여부인데, 당사자가 정식 계약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더욱이 MOU 는 영미계약법상으로 청약(offer) 및 승낙(acceptance)과 함께 필요한 계약의 필수요건인 계약의 대가(consideration)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의 집행가능성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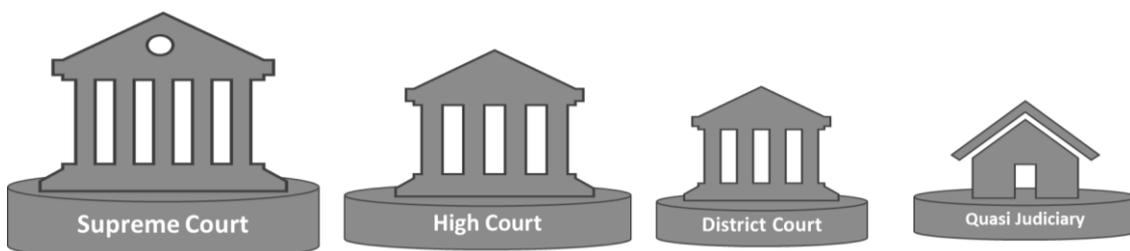
그럼에도 MOU 의 법적 성격을 검토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모든 법률문서는 MOU 라는 제목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그 효력 여부를 따지게 된다는 것이므로 비록 명칭은 MOU 로 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나 작위, 부작위의 약속을 하고 있다면 계약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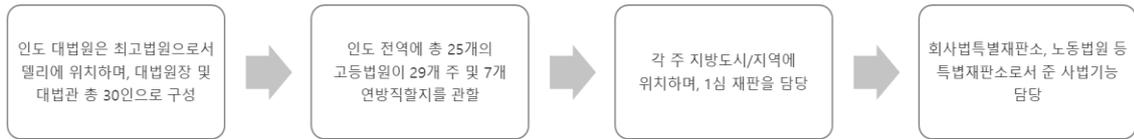
따라서 단순한 기준이 아닌 정식 계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거래가격의 책정, 구체적인 작위, 부작위 의무의 규정, 계약위반시의 구제수단 등을 기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MOU 는 정식 계약이전에 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 훗날 계약서 체결을 위한 중복적인 협상을 피할 수 있으니, MOU 작성단계부터 정확한 검토를 거쳐 작성해야 할 것이다.

## 3-5-4. 소송 요건, 소송 기간 및 절차

### 3-5-4-1. 사법제도

그림 3-5-4-1-1. 인도 사법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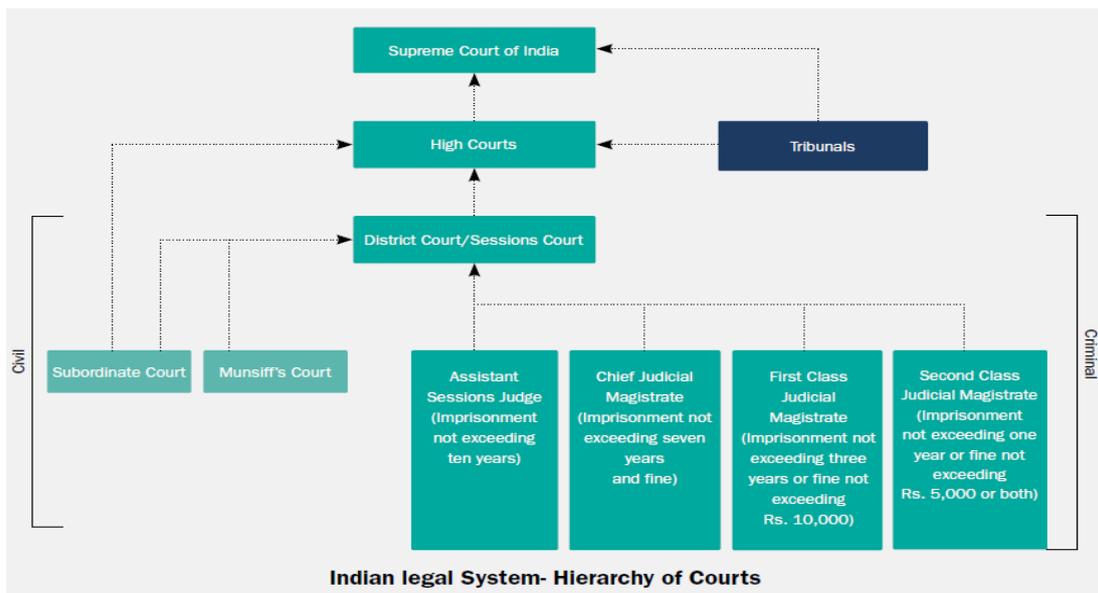
자료원 : 남인도 진출 가이드북 (주첸나이총영사관, 2020.11)

인도 법률체계는 중앙법과 주법이 혼재한 연방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소송 및 사법시스템은 미국과 같은 연방시스템이 아닌 단일법원 체계로 한국과 더 유사하다. 즉, 주 관할권이 있고, 주의회가 있어서 분야에 따라 주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법률체계 자체를 보면 인도 스스로 연방법시스템과 단일법시스템이 혼재한 준연방제(quasi-federal)로서 이해되고 있다.

연방제인 미국을 예로들면, 주법을 우선 따르고, 관세, 이민, 주간통상, 연방범죄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연방법을 따르는 반면, 인도는 중앙법을 적용하는 분야, 주법을 적용하는 분야, 둘 모두를 적용하는 분야를 헌법에 각각 리스트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인도 법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초 1 심법원부터 진행되며, 이후 고등법원으로 항소,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된다. 인도의 사법 및 준사법 제도는 각급 법원을 통한 사법제도, 증권거래위원회 등 준사법기관을 통한 준사법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 주, 지역에 민사, 형사를 담당하는 1심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있으며, 28 개 주 및 8 개 연방직할지에 걸쳐 총 25 개의 고등법원(High Court)이 있다. 인도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이 인도의 최고법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인도 헌법에 따라 대법원(1), 고등법원(25), 지방법원(672), 특별재판소로 구성되는 단일법원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림 3-5-4-1-2. 인도 사법부(법원) 구성도



자료원 : 남인도 진출 가이드북 (주첸나이총영사관, 2020.11)

민사법원은 ‘District Court’, 형사법원은 ‘Session Court’라 불리며, 형사법원은 형량에 따라 각 치안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회사법특별재판소, 직접세항소법원, 간접세항소법원, 소비자포럼, 중앙 및 주 행정법원, 채무변제법원, 지적재산권항소법원, 환경재판소 등이 특별재판소로 있다.

인도 민형사 재판에서는 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권주의(inquisitorial role)를 채택하여, 구두 및 문서상 증거를 접수하여 양측의 주장을 고려하고, 판례 및 법률을 해석 적용한다. 인도에서는 아직 배심원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일부 파르시(Parsi) 공동체에서의 혼인관련 사건에 대하여 배심원 제도를 예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도 사법부는 재판부의 성별 및 지역적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판사부족 및 여성판사 비율 부족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인도 대법원 대법관 및 고등법원 판사는 인도 헌법 제 124(2)조<sup>156</sup> 및 217 조<sup>157</sup>에 따라 인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대통령은 대법관 및 고등법원 판사 임명을 위해 필요시 다른 대법관 및 고등법원 판사와 협의해야 한다.

대법원, 고등법원 이외 하급법원 판사 임명은 헌법 제 233 조 내지 제 237 조에 따라 진행되며, 지방법원 판사는 관할 고등법원의 권고에 따라 주지사가 지방법원 이하 하급법원 판사 출신으로 임명할 수 있다.<sup>158</sup>

### 3-5-4-2. 소송 준거법 및 관할권<sup>159</sup>

인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준거법 선택(choice of law) 및 관할권 선택 계약 조항을 인정하지만, 준거법 선택이 인도의 공공 이익(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간주한다. 따라서 필수인 인도 법률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을 경우, 인도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이유로 무효로 할 수 있다. 또한 인도인간 인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인도 공공의 이익으로서 확립된 인도 법원의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인도 법률에 따라 인도에서 설립된 외국회사의 인도 자회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sup>156</sup> Constitution of India, 1950. Section 124. Establishment and constitution of Supreme Court.—(1) There shall be a Supreme Court of India consisting of a Chief Justice of India and, until Parliament by law prescribes a larger number, of not more than seven other Judges. (2) Every Judge of the Supreme Court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y warrant under his hand and sea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124A] and shall hold office until he attains the age of sixty-five years: [Provided that]— (a) a Judge may, by writing under his hand addressed to the President, resign his office; (b) a Judge may be removed from his office in the manner provided in clause (4).

<sup>157</sup> Constitution of India, 1950. Section 217. Appointment and conditions of the office of a Judge of a High Court.—(1) Every Judge of a High Court shall be appointed by the President by warrant under his hand and seal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Judicial Appointments Commission referred to in article 124A], and [shall hold office, in the case of an additional or acting Judge, as provided in article 224, and in any other case, until he attains the age of [sixty-two years]].

<sup>158</sup> Constitution of India, 1950. Section 233. Appointment of district judges.—(1) Appointments of persons to be, and the posting and promotion of, district judges in any State shall be made by the Governor of the State in consultation with the High Court exercising jurisdiction in relation to such State. (2) A person not already in the service of the Union or of the State shall only be eligible to be appointed a district judge if he has been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an advocate or a pleader and is recommended by the High Court for appointment.

<sup>159</sup> 인도 법률가이드 (2017, 대한민국 법무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나아가, 인도 회사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인도법원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외국법이 일반적인 사실로서 인정되고, 전문가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관할권 조항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는 소송목적물에 관하여 특정 법원의 관할권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 인도 법원은 단순히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서만 관할권을 지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국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두 개이상의 법원에 물적관할권이 존재하거나, 민사법원 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원 중 한 곳으로 관할권을 지정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은 유효하다.

인도 법원은 관할권이 외국법원으로만 지정되었을 경우, 인도 법률 및 인도 법원이 준거법 및 관할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인도 법원은 해당 관할권 선택 조항이 (1)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부당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경우; (2) 소송 목적물과 관할지의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3-5-4-3.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인도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1908) 제 13 조 내지 제 44A 조는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인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160</sup> 인도 정부가 상호인정으로서 확인한 국가(reciprocating territories) 법원의 판결이 해당 국가의 최상위법원에서 이루어진 경우, 인도에서 관할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집행할 수 있다. 영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싱가포르 등 국가가 인도 정부의 상호인정 국가이며, 한국, 미국 등 국가는 아직 상호인정 국가가 아니다. 상호인정 국가가 아닌 외국 판결의 경우, 외국 법원의 판결 후 3 년내에 인도 국내 법원에서 집행을 위한 소송을 따로 진행하여야 한다.

외국 법원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판결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에서도 효력이 있다.

-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 소의 이익 없이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 해당 판결이 표면적으로 국제법을 잘못 인용하였거나, 적용하여야 할 인도법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
- 법원 절차가 정의에 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

<sup>160</sup>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Section 13. A foreign judgment shall be conclusive as to any matter thereby directly adjudicated upon between the same parties or between parties under whom they or any of them claim litigating under the same title except--(a) where it has not been pronounce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b) where it has not been given on the merits of the case; (c) where it appears on the face of the proceedings to be founded on an incorrect view of international law or a refusal to recognise the law of India in cases in which such law is applicable; (d) where the proceedings in which the judgment was obtained are opposed to natural justice; (e) where it has been obtained by fraud; (f) where it sustains a claim founded on a breach of any law in force in India.

- 판결이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 해당 판결이 인도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인도법은 외국에서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하여, 인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진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해서만 효력을 인정한다.

### 3-5-5. 소송 기간, 절차 및 비용

#### 3-5-5-1. 소송기간

인도 소멸시효법(Limitation Act, 1963)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다. 소멸시효란 법적 권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효제도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생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 내지 입증 곤란의 구제,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보호가치의 부존재 등의 존재이유가 있다. 소송당사자는 소멸시효법에 따라 시효 기산을 임의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

소송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다르다. 예를 들어, 계약불이행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불이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부동산 점유회복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12년이다. 시효기간은 동법 부속서에 사안별로 1년에서 12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소멸시효법은 다양한 민사소송 사안에 따라 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관할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했거나, 소송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새롭게 기한이 기산되는 등 예외 또한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법 외에도 특별법이나 절차법에도 항소심, 재심 신청 등을 위한 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기간 초과는 재판부에 충분한 사유를 입증하면, 재판부에 의해 인정될 수 있으나, 소멸시효법에 규정된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재판부에 양해를 구할 수 없다.

아울러, 소멸시효법은 민사소송 사건 절차에서뿐만 아니라 인도 파산법(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2016)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기된 채무에 기초하여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청산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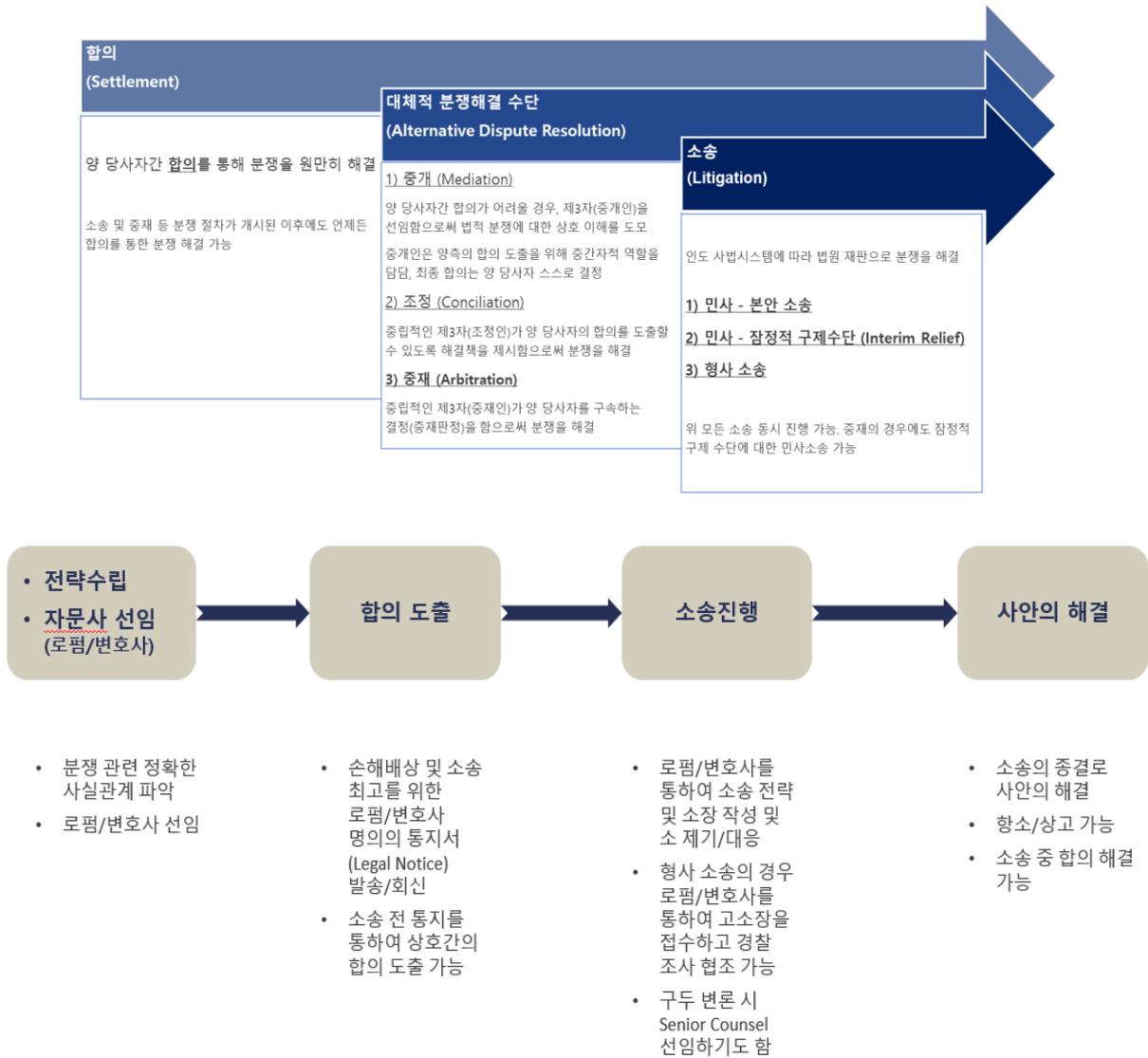
소송기간은 사안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3-5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소송기간의 이점 때문에 중재제도를 활용하는데, 중재는 중재조정법상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년내에 중재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6개월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으로 1년 반내에 중재를 완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절차 이후,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소송 또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소송 등을 따로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최소 2-5 년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 3-5-5-2. 소송절차

인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지 판단하여야 한다. 소송 및 중재 등 분쟁절차가 개시되면 불필요한 기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간 대립이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에 돌입하여야 할 것이다. 양 당사자간 계약서 또는 합의로서 중개, 조정, 중재 등 대체분쟁해결 수단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림 3-5-5-2-1. 인도 분쟁해결 대응과정 및 절차



### 자료원 : 남인도 진출 가이드북 (주첸나이총영사관, 2020.11)

통상적으로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개시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 또는 재판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송 상대방인 피고측은 소장을 전달받은 후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방당사자에 의한 심리도 진행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송절차상 소장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에게 법원 소환장을 발부하여 소송에 참석하게 한다.

인도 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과 적시의 심리일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증가하는 사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법원과 재판소가 확충되고 있지만, 수많은 소송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것이 인도 사법부의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도 정부와 의회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역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외 대체분쟁해결 수단 활용, 판사 임용 확대, 특별재판소 설치, 신속(패스트트랙) 재판제도 도입 등을 위한 입법을 지속하고 있다.

#### 3-5-5-3. 민사소송절차

인도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1908)은 모든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아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기함으로써 개시된다;
- 이후 피고에게 법원통지(summon)가 발부되며, 통지 접수 이후 피고는 변론을 희망할 경우 서면 답변서(written statement)를 통지 접수 120 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소송이 일반 '상사' 사건의 경우, 120 일의 기한 초과 제출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 기타 모든 민사소송의 경우 기한 내 답변서 미제출은 충분한 사유가 입증되면 법원이 양해할 수 있다;
- 서면 답변서가 접수되면, 양 당사자는 각종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후 법원이 소의 쟁점 및 결정 범위를 특정한다;
- 쟁점사항이 특정되면, 민사소송법, 증거법 등에 따라 각종 증거조사, 증인신문, 반대신문 등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 이후 최종심리를 통해 재판부는 판결 또는 명령을 선고한다;
- 재판의 판결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 심 판결 이후 고등법원 항소, 대법원 상고 등 두 차례의 불복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위 절차 외에도, 인도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서면자료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s)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사사건의 경우에도 상기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일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짧은 기간동안 소송을 완료하기도 한다.

#### 3-5-5-4. 잠정구제조치

소송 당사자는 본안 소송제기 전 또는 후 언제든지 잠정구제조치(interim relief)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구제조치는 가처분, 금지명령, 자산압류, 공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동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있어서 가처분 명령은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특정 사건에 따라서는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도 가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잠정구제 신청은 본안소송 제기시 함께 진행될 수 있다. 피고측은 해당 잠정구제 신청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후 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잠정구제 신청을 검토하여 명령을 선고한다. 잠정구제 명령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 상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송절차 진행을 위한 각종 기일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송당사자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다.

인도와 상호인정 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의 법원 판결도 인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도에서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외국 법원 판결을 인도에서 집행하기 위해 금지명령, 이행명령, 자산압류, 관재인선임, 담보설정 등의 형태로 잠정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도와 상호인정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에서의 판결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소송 형식의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3-5-5-5. 피해구제 및 집행

인도 민사소송법상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손해배상, 계약이행, 계약해제, 처분취소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인도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법원은 손해배상금 지급 지연 이자를 연 8% - 18%로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은 집행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판결 집행 방식은 판결의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동산 처분 매각, 동산 이전, 명령 등 다양하며, 매우 드문 경우지만 민사 구금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법원 판결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법정모독법(Contempt of Courts Act, 1971)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별도의 소송절차가 개시된다.

#### 3-5-5-6. 항소

인도 민사소송법은 민사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관한 판결외에는 항소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법원 판결에 대하여 따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 첫번째 항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고는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아닌 법률심에 기초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인도 헌법 제 136 조에 따라 고등법원 또는 특별재판소에서 결정된 판결 및 명령에 불복하여 상고가 필요하다는 특별승인(special leave)을 인정할 수 있으며, 헌법 제 136 조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해당 분쟁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만을 다룬다.<sup>161</sup>

### 3-5-5-7. 소송비용

인도 법원은 패소측에 법률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부 재량사항이다. 그간 인도 법원은 패소측에 법률비용을 전가하는 판결을 일반적으로 내리지는 않아왔으나, 최근 경향을 보면 반복적인 계약위반 당사자에게는 본보기로서 법률비용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인도 변호사협회 규정은 재판 승소시 변호사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변호사 성공보수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의 변호사 비용 대납의 경우, 인도 변호사협회 규정은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인 고객에게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인도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제 3 자에게 법률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sup>162</sup>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지닌 관련 보험 정책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 3-5-6. 소송 외 대체 분쟁해결방안

### 3-5-6-1. 중재제도 및 중재조정법<sup>163</sup>

인도중재조정법(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은 중재 및 조정의 과정을 간소화하고 사업상의 문제에 있어서 중재 및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은 중재 재판소에 의한 중재 절차의 수행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법원의 역할을 최소화한다. 중재 재판소의 자율성은 그들이 관할권을 결정하고 중재 협정의 존재나 타당성에 관한 이의제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현행법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 의해 제정된 모델법에 근거하며, 국내 중재뿐만 아니라 국제 상업 중재에 의거하여 인도 국내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대체분쟁해결(ADR) 프로세스는 절차상의 유연성을 제공하여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일반 소송 진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인도의 민사소송은 특히 분쟁을 결정하고

<sup>161</sup> Constitution of India, 1950. Section 136. Special leave to appeal by the Supreme Court.—(1)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Chapter, the Supreme Court may, in its discretion, grant special leave to appeal from any judgment, decree, determination, sentence or order in any cause or matter passed or made by any court or tribunal in the territory of India. (2) Nothing in clause (1) shall apply to any judgment, determination, sentence or order passed or made by any court or tribunal constituted by or under any law relating to the Armed Forces.

<sup>162</sup> Supreme Court of India in the case of Bar Council of India v AK Balaji & Ors (Civil Appeal No. 7875-7879 of 2015, Judgment delivered on 13 March 2018).

<sup>163</sup> 인도 법률가이드 (2017, 대한민국 법무부) 및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KOTRA, 2019)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최신 내용을 추가, 수정하였다.

처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재 및 조정은 오랜시간 소요되는 분쟁을 해결하는 더 좋은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중재는 전문 중재자가 필요한 기술적 문제에서도 유용할 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건설 등 산업 분야에서는 중재가 선호된다. 중재가 대중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어려움은 남아 있다. 중재도 결국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중재 판정을 받은 후에도 일방 당사자가 법정에서 그 유효성을 다시 다투는 경우가 있다.

계약 당사자는 중개, 조정, 중재 등 소송 외 대체적 수단을 통한 분쟁해결을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인도 중재조정법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는 등 중재에 관한 국제 원칙에 부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중재 판정 내용은 중대한 사기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도에서 집행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인도 모두 외국 중재판정 인정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 체결국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에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도내 중재기관으로서 인도 상공회의소(FICCI) 산하 인도 중재위원회(Indian Council of Arbitration), 법무부(Ministry of Law & Justice) 산하 국제대체분쟁해결센터(ICADR), 인도 상공인연합(IMC)산하 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등이 기관중재로서 활용되고 있다.

### 3-5-6-2. 중재협정 또는 계약서상 중재조항

인도 중재조정법 제 7 조는 집행가능한 공식적인 중재협정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재협정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것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재협정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계약 또는 부속계약 내의 중재조항 형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sup>164</sup>

---

<sup>164</sup>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Section 7. Arbitration agreement. (1) In this Part, "arbitration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by the parties to submit to arbitration all or certai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respect of a defined legal relationship, whether contractual or not. (2) An arbitration agreement may be in the form of an arbitration clause in a contract or in the form of a separate agreement. (3) An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4) An arbitration agreement is in writing if it is contained in (a) a document signed by the parties; (b) an exchange of letters, telex, telegrams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cation <sup>1</sup>[including communication through electronic means] which provide a record of the agreement; or (c) an exchange of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ce in which the existence of the agreement is alleged by one party and not denied by the other. (5) The reference in a contract to a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constitutes an arbitration agreement if the contract is in writing and the reference is such as to make that arbitration clause part of the contract.

### 3-5-6-3. 중재인 선임

만약 중재협정 또는 계약서상 중재조항에 중재인의 수와 선임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 인의 중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중재인 선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당 분쟁 관할 법원에 1 인 중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중재인 선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

법원이 중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 당사자간 중재협정이 없었다는 사실만이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최근 인도 대법원은 중재협약 또는 중재조항을 담고 있는 계약서가 인지세 납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따라 인지세 도장이 없는 중재협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중재인이 선임되기 전에 중재인 선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해당 불복신청은 중재인 선임에 관하여 알았을 때로부터 15 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인 선임 불복 신청 사유는 중재인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정당한 의심이 있거나, 중재인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만으로 한정된다.

중재기관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지 않고,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임의중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퇴한 대법관 또는 고등법원 판사를 중재인으로 선임하며, 분쟁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일반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기도 한다. 만약 분쟁이 기술적이거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기술전문가를 중재인단 중 한명으로 선임하기도 한다.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해당 중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재인 패널중에서 중재인을 구성한다.

### 3-5-6-4. 중재절차

인도 중재조정법은 중재 당사자들에게 중재절차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법 규정 및 민사소송절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으나, 해당 규정의 법적 원칙들은 중재절차를 결정하는 지침의 역할을 한다.

중재조정법은 법원의 최소한의 개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법원이 중재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중재인 선임 (당사자간 합의에 실패하였을 경우);
- 가처분 등 잠정구제조치;
-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 위임 종료;
- 중재인에 의해 결정된 잠정구제조치 명령에 대한 불복 항소;
- 중재판정 효력에 대한 심사.

중재 당사자는 중재협정 또는 계약 조항을 통해 법원의 권한을 배제할 수는 없다.

중재조정법 제 17 조는 중재인에게 민사법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처분, 자산압류, 담보설정, 관재인선임 등 잠정구제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65</sup>

2015 년 인도 중재조정법 개정 이후, 중재판정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12 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12 개월의 기간은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6 개월 연장될 수 있다. 추가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 절차를 통하여야 한다.

인도 중재조정법은 중재판정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중재판정부 중재인들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재판정은 중재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거나 중재판정 자체로 최종 해결되지 않는 한 중재판정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에는 중재판정의 일시 및 중재지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최종 중재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중간 또는 부분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5-6-5.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인도 중재조정법 제 34 조에 따라 중재판정은 인도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불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sup>166</sup> :

---

<sup>165</sup>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Section 17. Interim measures ordered by arbitral tribunal. (1) A party may, during the arbitral proceedings, apply to the arbitral tribunal-- (i) for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for a minor or person of unsound mind for the purposes of arbitral proceedings; or (ii) for an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in respect of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namely:-- (a) the preservation, interim custody or sale of any goods which are the subject-matter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 securing the amount in dispute in the arbitration; (c) the detention, preservation or inspection of any property or thing which is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in arbitration, or as to which any question may arise therein and authorising for any of the aforesaid purposes any person to enter upon any land or building in the possession of any party, or authorising any samples to be taken, or any observation to be made, or experiment to be tried, which may be necessary or expedient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full information or evidence; (d) interim injunction or the appointment of a receiver; (e) such other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s may appear to the arbitral tribunal to be just and convenient, and the arbitral tribunal shall have the same power for making orders, as the court has for the purpose of, and in relation to, any proceedings before it. (2) Subject to any orders passed in an appeal under section 37, any order issued by the arbitral tribunal under this section shall be deemed to be an order of the Court for all purposes and shall be enforceable under 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5 of 1908), in the same manner as if it were an order of the Court.

<sup>166</sup>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Section 34. Application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1) Recourse to a Court against an arbitral award may be made only by an application for setting aside such awar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2) and sub-section (3). (2) An arbitral award may be set aside by the Court only if-- (a) the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establishes on the basis of the record of the arbitral tribunal that]-- (i) a party was under some incapacity, or (ii)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under the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or (iii) the party making the application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or of the arbitral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or (iv) the arbitral award deals with a disput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only that part of the arbitral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not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set aside; or (v)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unless such agreement was in conflict with a provision of this Part from which the parties cannot derogate,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or (b) the Court finds that-- (i)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for the time being in force, or (ii) the arbitral award is in conflict with the public policy of India. (2A) An arbitral award arising out of arbitrations other th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may also be set aside by the Court, if the Court finds that the award is vitiated by patent illegality appearing on the face of the award: Provided that an award shall not be set aside merely on the ground of an erroneous application of the law or by reappraisal of evidence. (3) An application for setting aside may not be made after three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party making that application had received the arbitral award or, if a request had been made under section 33, from the date on which that request had been disposed of by the arbitral tribunal: Provided that if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was prevented by sufficient cause from making

- 중재 당사자가 무능력자였을 경우;
- 준거법에 따라 중재협정 또는 중재조항이 무효일 경우;
- 불복 신청자가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 중재진행 참석과 관련하여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 분쟁이 중재조항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중재판정부 구성이 중재조항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소송 및 분쟁 목적물이 중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중재판정이 인도의 공공 정책(public policy)와 충돌하는 경우;
-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해당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재조정법 제 37 조에 따라 항소할 수 있으나, 제 37 조에 따라 내려진 명령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는 헌법 제 136 조에 따라 대법원에 특별승인 신청을 통해 상고할 수 있다.

### 3-5-6-6. 중재판정 효력 및 집행

인도내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국내 판정으로서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 절차만 따로 개시하면 된다. 뉴욕협약 및 중재조항에 관한 의정서(제네바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 인도 법원이 중재조정법 규정에 따라 인도 내에서도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면 국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인도 국내 중재에 대한 집행은 민사법원 판결 집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따라서, 압류, 자산매각, 담보설정 등 모든 형식이 가능하다.

중재조정법 제 48 조에 따라 규정된 집행 조건과 관련하여, 뉴욕협약 체결국에서 이루어진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도 인도 민사법원 판결 집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sup>167</sup> 따라서, 인도 법원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면, 외국 중재 판정도 인도 민사소송절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the application within the said period of three months it may entertain the application within a further period of thirty days, but not thereafter. (4) On receipt of an application under sub-section (1), the Court may, where it is appropriate and it is so requested by a party, adjourn the proceedings for a period of time determined by it in order to give the arbitral tribunal an opportunity to resume the arbitral proceedings or to take such other action as in the opinion of arbitral tribunal will eliminate the grounds for setting aside the arbitral award. (5)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be filed by a party only after issuing a prior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such applic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n affidavit by the applicant endorsing compliance with the said requirement. (6)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be disposed of expeditiously, and in any event, within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the notice referred to in sub-section (5) is served upon the other party.

<sup>167</sup>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Section 48. Conditions for enforcement of foreign awards.

(1) Enforcement of a foreign award may be refuse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voked, only if that party furnishes to the court proof that— (a)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section 44 were,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m, under some incapacity, or the said agreement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on, under

### 3-5-6-7. 중재비용

인도 법원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따라 중재비용을 패소측에 전가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중재비용을 패소측이 부담할 지 여부, 금액의 규모, 지급기한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중재조정법 제 31-A 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승소측은 다음의 비용에 대하여 합당하게 보전받을 수 있다<sup>168</sup> :

- 중재인, 법원절차, 증인 관련 비용;
- 법률비용;
- 기관중재의 경우 행정비용;
- 중재, 법원절차 및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타 비용.

인도에서 제 3 자가 소송 및 중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 3 자가 지불한 비용을 중재비용으로서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made; or (b) the party against whom the award is invoked was not given proper notice of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of the arbitral proceedings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or (c)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that part of the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enforced; or (d)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authority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took place ; or (e)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2)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may also be refused if the Court finds that— (a) the subject-matter of the difference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under the law of India; or (b) the enforcement of the award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India. (3) If an application for the setting aside or suspension of the award has been made to a competent authority referred to in clause (e) of sub-section (1) the Court may, if it considers it proper, adjourn the decision on the enforcement of the award and may also, on the application of the party claiming enforcement of the award, order the other party to give suitable security.

<sup>168</sup> The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Act, 1996, Section 31A. Regime for costs.-- (1) In relation to any arbitration proceeding or a proceeding under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pertaining to the arbitration,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1908 (5 of 1908), shall have the discretion to determine-- (a) whether costs are payable by one party to another; (b) the amount of such costs; and (c) when such costs are to be paid. (i) the fees and expenses of the arbitrators, Courts and witnesses; (ii) legal fees and expenses; (iii) any administration fees of the institution supervising the arbitration; and (iv) any other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arbitral or Court proceedings and the arbitral award. (2) If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decides to make an order as to payment of costs, (a) the general rule is that the unsuccessful party shall be ordered to pay the costs of the successful party; or (b)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may make a different order for reasons to be recorded in writing. (3) In determining the costs,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shall have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 the conduct of all the parties; (b) whether a party has succeeded partly in the case; (c) whether the party had made a frivolous counterclaim leading to delay in the disposal of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d) whether any reasonable offer to settle the dispute is made by a party and refused by the other party. (4)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may make any order under this section including the order that a party shall pay- (a) a proportion of another party's costs; (b) a stated amount in respect of another party's costs; (c) costs from or until a certain date only; (d) costs incurred before proceedings have begun; (e) costs relating to particular steps taken in the proceedings; (f) costs relating only to a distinct part of the proceedings; and (g) interest on costs from or until a certain date. (5) An agreement which has the effect that a party is to pay the whole or part of the costs of the arbitration in any event shall be only valid if such agreement is made after the dispute in question has arisen.

### 3-5-6-8. 그 외 대체분쟁해결수단

일반적으로 인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체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중재, 조정, 중개 및 사법적 합의이다. 위에서 기술한 중재절차가 인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며, 최근 경향도 거의 모든 상사계약서에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에 의한 해결도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외의 대체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조정(conciliation)과 중개(mediation)가 있다. 조정은 중립적인 제 3자인 조정인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제시된 조정안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중재판정과 유사한 효력을 지니게 된다.

중개는 분쟁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조정인과는 달리 중개인은 일방의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으며, 다만 양측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중재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개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된다.

인도법상 당사자가 법원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대체분쟁해결수단을 활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아울러, 인도 법원은 당사자에게 소송이 아닌 대체분쟁해결수단으로 진행하라고 명령할 권한도 없다. 다만, 법원은 해당 분쟁에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양 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중재, 조정, 합의, 중개 등 대체분쟁해결수단을 통한 해결을 권고할 수는 있다.

따라서, 분쟁이 상사소송에 해당하고, 원고측이 잠정구제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중개(mediation)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최근 개정 움직임이 있다. 중개는 소송 전 단계의 시기적 절차로서 90 일의 기간을 주고 중개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소송을 개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3-6. 관세 및 통관

#### 3-6-1. 인도의 무역 환경

##### 3-6-1-1. 인도의 교역 현황

2020년 기준 인도의 총 교역액은 6,491억 400만 달러로 세계에서 14번째. 이는 싱가포르(13위), 스위스(15위)와 비슷하고 신흥국가 중 러시아(19위), 브라질(24위)보다 높은 수치이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인도의 교역액이 전년대비 20% 감소하였고, 인도 전역의 봉쇄 시행 및 수입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수입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총 수입액 중 약 20%는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3% 정도 차지한다.

표 3-6-1-1-1. 인도 교역액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감률
수입	449,871	541,462	486,058	372,824	-23.3%
수출	299,515	324,754	324,340	276,280	-14.8%
교역액	749,386	839,216	810,398	649,104	-19.9%
무역적자	-150,356	-189,709	-161,719	-96,544	40.3%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3-6-1-2. 한국과 인도의 교역 동향

한국과 인도의 CEPA 발효 이후 2년차인 2011년 양국 교역은 전년대비 약 20% 증가하여 205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2012년부터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교역액의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7년 총 200억 달러 달성 이후, 2018년(215억 달러), 2019년(207억 달러) 꾸준히 높은 교역액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 교역 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8.5% 감소한 168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인도와의 교역은 한국 총 교역액 중 1.72%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對 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품, 화학 및 석유 분야 물품 등이다.

표 3-6-1-2-1. 對 인도 수출입 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수출	15,056	15,606	15,096	11,937
수입	4,948	5,885	5,565	4,901
총 교역액	20,004	21,491	20,661	16,838
무역수지	10,108	9,721	9,531	7,036

자료원 : 무역협회(<https://stat.kita.net/>)

### 3-6-2. 인도의 무역 관리 제도

#### 3-6-2-1. 수출입 정책

인도의 수출입 정책은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서, 원칙적으로 물품의 수출입은 자유이며, 예외적으로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 정책의 종류는 '자유(Free)', '제한(Restricted)', 'STE(State Trading Enterprises)', '금지(Prohibited)' 4 가지이며, 인도 대외무역총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수시로 고시한다.

표 3-6-2-1-1. 인도 수출입 정책

수출입 정책	설명
Free	자유로운 수출입 가능
Restricted	수출입 제한
STE	국영무역기업에 의한 수출입만 가능
Prohibited	수출입 금지

자료원 : DGFT(<https://www.dgft.gov.in/CP/>)

### 3-6-2-2. IEC(Import Export Code)

인도에서 상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IEC 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술/서비스 수출입의 경우에는 기술/서비스 제공자가 인도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상의 혜택을 받거나 핵무기, 총기 등 안보와 관련된 기술/서비스의 수출입인 때에만 IEC 를 발급받아야 한다. IEC 는 대외무역총국에서 발급하며, 10 자리 숫자 형식으로 되어있다. IEC 는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이나 유효기간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6-2-3. 대외무역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

인도 정부는 수출확대와 경제성장, 고용창출을 위해 인도 상공부의 명의로 정기적으로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을 수립·발표하고 있다. 대외무역총국(DGFT)은 상공부의 부속 조직으로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이러한 대외무역정책을 수행한다. 대외무역정책은 약 5 년 주기로 발표되며, 무역 관련 절차와 수출 진흥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3-6-3. 관세 실무

### 3-6-3-1. 인도 수입세율 구조

인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통합부가세(IGST)가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추가 관세(Additional Duty of Customs), 농업 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AIDC), 건강부가세(Health Cess)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HS Code 8 자리 기준으로 결정되고, 같은 HS Code 라도 예외적으로 물품의 용도 및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표 3-6-3-1-1. 인도 수입물품 납부세액

$$\text{총 납부세액} = \text{관세} + \text{사회보장세(SWS)} + \text{IGST} + (\text{Health Cess}) + (\text{AIDC})$$

자료원 : CBIC(<https://www.cbic.gov.in/>)

### 1) 관세

관세는 CIF 기준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14 조에 따라 산정하며, 인도 역시 WTO 체약국이므로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사한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관세율은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체계(HS 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Basic Customs Duty)을 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시를 통해 개별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는데, 이 고시관세율(Notification Customs Duty)이 기본관세율에 우선 적용한다.

### 2)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10%를 사회보장세로 부과한다. 2018-19 예산안을 통해 기본관세에 가산되었던 교육세(Education Cess) 대신 신설되었다.

### 3) IGST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사회보장세 + 기타 세금'에 IGST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IGST 세율은 품목에 따라 0%, 5%, 12%, 18%, 28%로 차등 부과한다. 납부한 IGST 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4) 건강부가세(Health Cess)

HS Code 9018~9022 에 속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부가세로 부과한다. 단, FTA 등에 따라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가 면제되는 수입에 대하여는 건강부가세가 면제된다. 2020 년 2 월부터 시행되었다.

### 5) 농업 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AIDC,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

일부 농산품의 경우 농업 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이하 "농업세")를 부과한다. 농업세 세율은 품목마다 상이하며, 기본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업세가 면제된다.

## 3-6-3-2. 수입물품 납부세액의 확인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할 세액은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가 운영하는 관세·통관 관련 포털인 ICEGAT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ICEGATE 에서는 품목별 관세율, IGST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고시 및 양허 관세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관세율의 근거가 되는 인도 관세청 고시 문서번호를 사용자가 직접 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예상 수입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 통관대행업자(CHA)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 3-6-3-3. 관세 환급 제도

#### 1) 재수출 관세 환급 (Re-Export Drawback)

인도 관세법(Indian Customs Act, 1962) 제 74 조에 의거하여 인도로 수입된 물품이 사용, 변형 및 개조되지 않은 상태로 18 개월 이내에 재수출될 경우 재수출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재수출을 위해서는 수하인(Consignee)의 수취포기각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를 토대로 세관의 재수출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통상 1 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해당기간 동안에 발생한 체화료, 보세창고 이용료를 모두 지불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 2)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관세 환급(Drawback)

인도 관세법 제 75 조에 의거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로서, AIR(All Industry Rates) 및 Brand Rate 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AIR 방식은 수출가격(FOB)에 인도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품목별 고정 환급률을 적용하여 환급 받는 방식이다. AIR 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 시 수입 원재료의 수입신고서와 관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Brand Rate 는 원재료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100% 환급 받기 위한 방법이며, 수입된 전체 원재료 중 수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을 해야 하며, 신청양식(DBK-I, II & III)을 제출하면 관할세관이 수입 원재료의 사용량과 재고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진다.

### 3-6-3-4. 관세 감면 제도

#### 1) 사전 승인 제도 (Advance Authorisation)

사전 승인 제도는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수입원재료 등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 승인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승인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수출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본 제도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원재료(손모량 포함) 및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소모되거나 사용되는 포장재, 연료, 유류, 촉매 등이며,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는 기본 관세, 추가 관세, 교육세, 반덤핑관세, IGST 등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사전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물품 가격(CIF 기준)의 15% 이상의 부가가

치가 발생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최소 부가가치 기준은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사전승인은 '실제 사용자 조건'에 따라 부여되며, 사전승인을 받은 자는 사전승인 및 사전승인을 받은 수입물품을 수출의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2) 관세 면제 수입 승인 제도 (DFIA, 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관세 면제 승인 제도는 원재료 및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비되거나 사용되는 유류 및 촉매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사전 승인 제도와는 다르게 관세 면제 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은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만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표준 투입-산출 규범(SION, Standard Input-Output Norms)에 고시된 물품에 한하여 수출 이후에 발급된다.

관세 면제 수입 승인을 신청하는 물품은 수입물품 가격의 2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된 것이어야 하며, 수출 완료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 면제 수입 승인은 승인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3) 수출 촉진 자본재 장려 제도(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

수출 촉진 자본재 장려 제도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율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2021 년 9 월 30 일까지는 부과되는 IGST 및 소비세에 대하여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자본재는 CKD 또는 SKD 형태의 자본재를 포함하며, 자본재의 일부가 되는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및 스페어, 몰드, 다이 등과 초기 충전을 위한 촉매 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승인일로부터 18 개월 동안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승인일로부터 6 년 동안 감면받은 관세 등 세액의 6 배에 상당하는 수출을 달성하여야 한다.

## 4)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면제 제도 (RoDTEP, 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 Products)

RoDTEP 는 종전에 시행되던 인도의 상품 수출 장려 제도인 MEIS 를 대체하기 위해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한 간접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의 형태는 전자적인 형태의 세금 크레딧(Duty Credit)으로 지급되며,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관세의 납부에 사용될 수 있다.

기존 MEIS 가 인센티브율을 임의로 정하여 WTO 에서 금지하는 보조금 정책으로 지적된 것과 달리, RoDTEP 제도의 환급율은 원재료에 대한 간접세율을 기초로 환급율을 정하므로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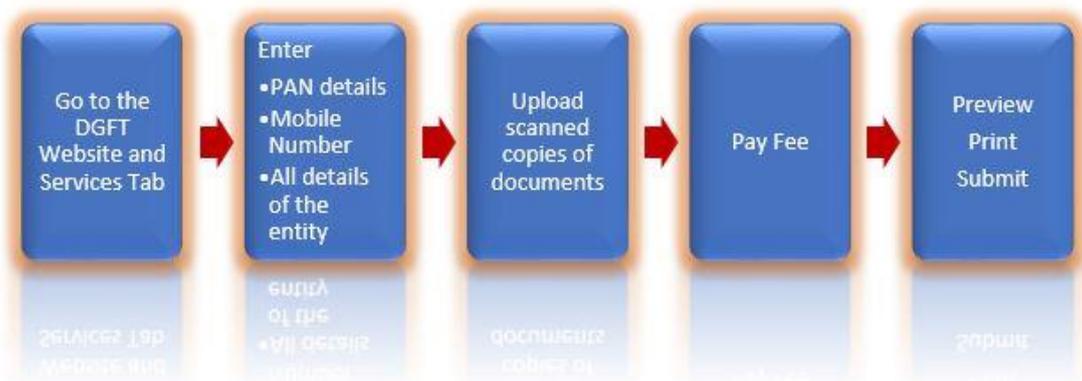
### 3-6-4. 통관 실무

#### 3-6-4-1. 수입 준비 단계

##### 1) IEC 발급

대외무역총국(DGFT)로부터 IEC(Importer Exporter Code)를 발급받아야 한다. IEC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 서명의 디지털본, PAN(영구계좌번호, Permanent Account Number) 사본 및 취소 수표(Cancelled Cheque)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PAN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림 3-6-4-1-1. 인도의 수입 준비 단계



자료원 : CBIC(<https://www.cbic.gov.in/>)

##### 2) AD Code 등록

AD Code(Authorized Dealer Code)는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14자리 숫자 코드로서, 수출입통관을 하는 각 세관에 AD code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림 3-6-4-1-2. AD 코드 등록 절차



자료원 : CBIC(<https://www.cbic.gov.in/>)

### 3) GSTIN 발급

GSTIN은 GST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14자리 숫자 형식의 고유 번호이다. 수입신고 시에 신고 서상에 GSTIN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입 전에 GSTIN을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그림 3-6-4-1-3. GSTIN 발급 절차



자료원 : CBIC(<https://www.cbic.gov.in/>)

### 3-6-4-2. 수입 전 단계

수입에 필요한 안전인증 등의 요건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인도는 품목에 따라 BIS(전기, 전자, 기계, 철강 등), CDSCO(화장품, 약물, 의료기기), FSSAI(식품), WPC(무선 통신기기) 등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 등이 허용된다. 이러한 수입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불가하므로, 인도 진출 검토 단계에서 바이어 또는 인도 내 통관사(CHA) 등 컨설팅사를 통하여 수입 요건 유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철강, 구리 및 알루미늄, 석탄의 경우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에

수입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수입 통관 단계

1) 수입신고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 또는 통관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는 ICEGATE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신고서(Integrated Declaration)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안전인증과 같은 수입 요건 구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인도는 2021년 3월 29일부터 입항 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선박의 경우 화물 도착일 1일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 화물 도착일까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경과 후 3일 동안에 대하여 일당 5천 루피, 그 이후에는 일당 1만 루피의 신고 지연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3-6-4-2-1. 인도의 수입신고 기한**

통관지	수입신고 기한
항구	선박 도착일의 전날까지 (공휴일 포함) 단, 방글라데시, 몰디브,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발 화물에 대하여는 화물 도착일까지 (공휴일 포함)
공항	항공기 도착일까지 (공휴일 포함)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또는 항공 화물 작업장(AFS)	운송수단 도착일의 전날까지 (공휴일 포함)
내륙 국경 세관 (Land Customs Station)	운송수단 도착일까지 (공휴일 포함)

자료원 : CBIC(<https://www.cbic.gov.in/>)

2) 1차 수입검사(First Check)

중고물품, 품목분류 불분명 품목, 최초 수입자, 기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 검사 대상이며, 통상화물은 1차 수입검사를 생략한다.

3) 검증/평가(Verification / Appraisal)

세관공무원이 품목분류, 관세평가 및 수입 요건을 확인하며, CEPA적용 시, C/O 원본 제출을 요구한다.

#### 4) 관세 납부

수입신고 승인 시 EDI시스템으로 관세액 및 신고지연가산세가 자동 책정되며, 수입신고 승인 후 12시간이내 관세 미납 시 가산금을 부과한다.

#### 5) 2차 수입검사(Second Check)

수입요건 및 수입신고 항목에 대한 재확인 목적으로 현품 검사를 진행한다.

#### 6) 화물 반출

세관 심사 및 검사가 완료되면 OOC(Out Of Charge)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 3-6-5. 한-인도 CEPA

#### 3-6-5-1. 의의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규정하는 협정이나, 실제 내용은 FTA와 큰 차이가 없다.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2009년 121억 5천만 달러 수준이던 한국과 인도의 교역은 2010년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200억 달러 이상의 교역을 달성하였다.

2020년 기준 對인도 수출금액은 총 120억 달러 수준이며, 국가별 수출액 중 7위로 對세계 수출금액 중 2.3%를 차지하였다.

### 3-6-5-2. 활용

수출물품이 한-인도 CEPA 양허품목에 해당할 경우, 관세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어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기본세율의 변동이 빈번한 인도의 통관환경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한-인도 CEPA 의 적용 절차는 '① HS Code 확인 -> ② CEPA 세율 확인 -> ③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④ 원산지 증명서 발급 -> ⑤ 관련 서류 보관'의 5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 3-6-5-3. CAROTAR 2020

2020년 2월 연방예산안 내 28DA 신설을 발표하며 사후(수입 후 5년 내) 자료 요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바 있으나, 당시 세부내용은 미발표하였다.

2020년 9월 21일부터 관할 세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인도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양허물품에 대하여 무역협정에 의한 특혜세율 적용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적인 증빙 서류 제출하여야 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해당 자료가 미흡하거나, 제출기한 내 요청 서류 미제출 시, 동 수입자의 향후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할 세관에 의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 3-6-6. 수입 규제

### 3-6-6-1. 무역구제 동향

무역구제란 특정 물품의 덤핑 수입 등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 관세에 추가하여 덤핑방지관세 등을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는 이러한 반덤핑 관세 부과,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다수의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무역구제조치 대상 물품은 화학 및 플라스틱, 철강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 3-6-6-2. 무역구제 절차

인도 내 기업의 무역구제 조사요청서가 제출되면 무역구제총국 산하 해당기관이 사전 검토를 통해 조사개시 및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구제 조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 년을 기한으로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연장되기도 한다.

### 3-6-6-3. 對 한국 무역구제 조치

2021 년 5 월 기준, 현재 조사중인건을 포함하여 한국에 대하여 반덤핑 26 건, 세이프가드 4 건의 무역구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화학 15 건, 철강/금속 7 건, 플라스틱/고무 4 건, 섬유/의류 2 건, 전기전자 2 건이다.

표 3-6-6-3-1. 인도의 對韓 무역구제 조치

연번	분야	품목명	HS 코드	유형	조사개시	상태
1	화학	카프로락탐 (Caprolactam)	2933.71.00	반덤핑	'20.9.30	조사중
2	화학	실리카 (Untreated Fumed Silica)	2811, 2839, 3404 의 특정 물품	반덤핑	'20.9.22	조사중
3	화학	차아황산나트륨 (Sodium Hydrosulphite)	2831.10.10 2832.10.20	반덤핑	'20.9.16	조사중
4	플라스틱/고무	고무 화학 물질 PX-13 (Rubber Chemical PX-13)	2938.12	반덤핑	'20.5.27	조사중
5	철강/금속	구리 및 구리 합금 평판 압연 제품 (Copper & Copper Alloy Flat Rolled Products)	7409, 7410 의 특정 물품	반덤핑	'20.4.20	조사중
6	화학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yl Alcohol, IPA)	2905.12.20	세이프가드	'19.11.4	조사중
7	철강/금속	스테인레스 스틸 평판 압연 (Flat 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7219 7220	반덤핑	'19.7.3	조사중
8	섬유/의류	나일론필라멘트사 (멀티 필라멘트) (Nylon Filament Yarn (Multi Filament))	5402.31 등	반덤핑	'19.6.28	조사중
9	플라스틱/고무	NBR 고무 (Acrylonitrile Nitrile Butadiene Rubber)	4002.59	반덤핑	'96.3.15	조사중
10	화학	가성소다(Caustic Soda)	2815.11 2815.12	반덤핑	'02.5.14	조사중

11	철강/금속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 시리즈 (Hot-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of ASTM Grade 304)	7219, 7220	반덤핑	'14.3.11	조사중
12	화학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Polytetrafluoroethylene, PTFE)	3904.61.00	반덤핑	'20.6.19	부과중
13	화학	프탈산 무수물 (Phthalic Anhydride, PAN)	2917.35.00	반덤핑	'20.5.21	부과중
14	화학	프탈산 무수물 (Phthalic Anhydride, PAN)	2917.35.00	세이프가드	'19.10.1	부과중
15	플라스틱/고무	폴리부타디엔 고무 (Polybutadiene Rubber, PBR)	4002.20	세이프가드	'19.11.7	부과중
16	전기전자	오프셋 인쇄용 디지털판 (Digital Offset Printing Plates)	8442.50, 3701.30 등	반덤핑	'19.5.16	부과중
17	철강/금속	알루미늄과 아연 코팅 평판 (Aluminium and Zinc coated flat products)	7210 의 특정 물품	반덤핑	'19.4.2	부과중
18	화학	염화폴리비닐류 (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PVC)- Whether or not further processed into compound)	3904 의 특정 물품	반덤핑	'19.3.28	부과중
19	철강/금속	알루미늄휠 (Cast Aluminium Alloy Wheels)	8708.7	반덤핑	'12.10.12	부과중
20	전기전자	태양광 셀 모듈 (Solar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panels)	8541.40.11	세이프가드	'17.12.19	부과중
21	화학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TDI, Toluene Dilsocyanate)	2929.10.20	반덤핑	'16.10.5	부과중

22	플라스틱/고무	스타이렌-뷰타디엔 고무(SBR)	4002.19	반덤핑	'16.1.14	부과중
23	화학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2847.00.00	반덤핑	'16.1.14	부과중
24	철강/금속	냉연강판 (Cold rolled/Cold reduced flat steel products of iron and non-alloy steel, etc)	7209, 7211 등	반덤핑	'16.4.19	부과중
25	철강/금속	열연후판 (Hot-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etc)	7208, 7211 등	반덤핑	'16.4.11	부과중
26	섬유/의류	탄성필라멘트사 (Elastomeric filament yarn)	5404.11.00	반덤핑	'16.1.27	부과중
27	화학	PVC 페이스트 수지 (PVC Paste Resin)	3904	반덤핑	'09.11.3	부과중
28	화학	에틸헥사놀 (2-Ethyl Hexanol)	2905.16.20	반덤핑	'14.11.20	부과중
29	화학	페놀(Phenol)	2907.11.10	반덤핑	'14.10.15	부과중
30	화학	인산(Phosphoric Acid)	2809.20.10	반덤핑	'08.11.12	부과중

자료원 : DGTR(<https://www.dgtr.gov.in/>)

#### 3-6-6-4. 수입 제한 · 금지 조치 현황

인도 정부는 인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와 인도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 제한 ·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표 3-6-6-4-1. 2020 년 수입 제한 · 금지 조치 현황

규제 내용	대상 물품
수입 제한 (2020 년 6 월부터 인도정부의 사전 수입 허가 필요)	- 컬러 TV - 차량 · 오토바이 · 자전거의 타이어

수입 금지 (2020 년 10 월부터 수입 금지)	- 냉매가 채워진 에어컨
--------------------------------	---------------

자료원 : DGFT(<https://www.dgft.gov.in/CP/>)

### 3-7. 인도 표준국(BIS) 인증 제도

BIS 제품인증제도는 최종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품에 표준마크인 인증마크(Indian Standards Institution: ISI) 및 의무인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CRS) 적용 여부에 따라 의무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해당제품이 사양에 적합하다는 보증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인증제도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사전 인증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또한 실시하고 있다.

<그림 3-7-1. 인도 표준 마크>



<그림 3-7-2. 인도 의무인증 마크>



\* 자료원 : 인도표준국 홈페이지 (<https://bis.gov.in>; <https://www.crsbis.in/BIS/about-crs.do>)

#### 3-7-1. 인증 기관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은 인도표준국법 (Bureau of Indian Standards Act)에 따라서 인도 국가표준기구로서 상품의 표준화, 표시 및 품질 인증 활동의 조화로운 발전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sup>169</sup> 1947 년에 세워진 Indian Standards Institution(ISI)은 1986 년 Bureau of Indian Standards 개칭되었다. 표준국은 인도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 Public Distribution) 산하 기관으로서,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의 핵심 활동을 통해 BIS 는 안전, 신뢰성 및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BIS 는 뉴델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5 개의 지역 사무소는 콜카타 (동부), 첸나이 (남부), 뭄바이 (서부), 찬디가르 (북부) 및 델리 (중부)에 있다.

<sup>169</sup> <https://bis.gov.in/wp-content/uploads/2020/07/Research-Policy-Covering-letter.pdf>

### 3-7-2. 주요 관련 규정

BIS 설립, 운영 및 인증과 관련된 주요 인도 규정으로서 인도표준기구법 (BIS Act, 2016) 및 시행령 (BIS Rules, 2018)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적인 개정 내용도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sup>170</sup>

- BIS Act, 2016
- BIS Act, 2016 BIS (Removal of Difficulty) Order, 2019
- Enforcement of BIS Act, 2016
- BIS Rules, 2018 incorporating all amendments
- The Bureau of Indian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s, 2018
- BIS (Advisory Committees) Regulations, 2018 incorporating all amendments
- The Bureau of Indian Standards (Hallmarking) Regulations, 2018
- Notification on precious metal articles to be marked with hallmark, notified by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 The Bureau of Indian Standards (Powers and Duties of Director General) Regulations, 2018
- BIS (Recruitment to Laboratory Technical Posts) Regulations, 2019
- BIS (Recruitment to Scientific Cadre) Regulations, 2019
- BIS (Conformity Assessment) Amendment Regulations, 2020
- BIS (Recruitment to Administration, Finance and other Posts) Regulations, 2020
- BIS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of Employees) Regulations, 2020
- BIS (Conformity Assessment) First Amendment Regulations, 2021
- BIS (Conformity Assessment) Second Amendment Regulations, 2021

### 3-7-3. 인증 적용 대상

#### 3-7-3-1. 인증의 종류

BIS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증 대상에 따라 인증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인증 적용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다.<sup>171</sup>

- 시멘트
- 가정용 전기 제품
- 배터리

<sup>170</sup> <https://bis.gov.in/index.php/the-bureau/bis-act-rules-and-regulations/>

<sup>171</sup> <https://bis.gov.in/index.php/product-certification/products-under-compulsory-certification/scheme-i-mark-scheme/>

- 식품 및 관련 제품
- 오일 압력 스토브
- 자동차 부속품
- 실린더, 밸브 및 조절기
- 의료 장비
- 강철 및 스테인리스 제품
- 전기 모터
- 전기 변압기
- 콘덴서
- 화학약품과 비료

### **(1) 제품 인증 (Product Certification Scheme)**

제품 인증은 BIS 가 특정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제 3 자의 보증을 제공하는 위한 것으로서 인증을 받게 되면 제품에 표준 마크라고 알려진 BIS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2) 시스템 인증 (System Certification Scheme)**

시스템 인증은 특정 제품이나 산업분야와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인증으로서 BIS 는 1991 년부터 관리 시스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 BIS 는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IS/ISO 9001)을 시작하였고, 수년간 점차 다른 여러 관리 시스템으로 활동을 확장해 왔다. 주요 시스템 인증은 다음과 같다.

- Quality Management System- IS/ISO 9001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ISO 14001
-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S/ISO 22000
- Energy Management System- IS/ISO 50001
- 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System- IS 18001 & IS/ISO:45001
-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IS 15700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IS 15000
- Medical Device Management System- IS/ISO 13485
- Social Accountability at Workplace- IS/ISO 16001
- Road Traffic Safe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Scheme as per IS/ISO 39001
- Adventure Tourism Safety Management System as per IS / ISO 21101:2014
- Ready Mixed Concrete Certification Scheme as per ISO:9001 alongwith IS:4926

- Integrated Milk Certification Scheme for Packaged Pasteurized Milk as per IS:13688 alongwith ISO:22000
- Educational Organizations Management System (EOMS)
- [Click here to see the Procedure for Grant of Certification](#)
- IS/ISO 37001:2016 Anti Bribery Management System
- IS 23485 Medical Devices – Quality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and Essential Principles of Safety & Performance for Medical Devices
- IS/ISO 27001:2013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 Food Safety Audits (FSSAI Recognized)

### **(3) 외국제조업체 인증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FMCS)**

외국제조업체 인증은 BIS Act 2016 및 Bureau on Indian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s, 2018 에 따라 외국 제조업체에 BIS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외국 제조업체 또한 인도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일 경우라면 인도의 표준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4) 홀마킹 (Hallmarking)**

홀마킹은 귀금속 제품의 귀금속 함량 등에 대한 정확한 표준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으로서, 제품의 순도 또는 섬세함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는 공식 마크이다. 인도에서는 현재 금과 은 제품이 인증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 **(5) 에코 인증 (Eco Mark)**

인도 정부는 BIS 인증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ECO Mark 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인증은 비누와 세제, 페인트, 식품 품목, 유탄유, 포장재/패키지, 건축용 페인트와 분말 코팅, 배터리, 전기 및 전자 제품, 식품 첨가제, 목재 대체제, 화장품, 에어로졸, 추진제, 플라스틱 제품, 섬유 등 다양한 제품 범주를 포함한다.

### **(6) 시험기관 인증 (Laboratory Recognition: LRS)**

BIS 는 2016 년 BIS 법 제 13 조 (4)와 2018 년 BIS 규칙 제 32 조에 따른 규정에 따라 시험기관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BIS 의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기반시설, 시험설비 및 인력의 가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에 대하여 시험기관 인증을 부여될 수 있다.

### 3-7-3-2. 의무 인증 제도

BIS 인증 제도는 다양한 인증 제도 중 일부 전기용품/IT 제품 등에 대해 사업자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인증제도 (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CRS)로서 필수적인 제품 등에 대한 강제적인 품질 보장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장 조사 단계에서 자사 제품이 동 CRS 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세 목록은 BIS 홈페이지 (<https://www.crsbis.in/BIS/products-bis.do>)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무 인증 적용 주요 전자제품은 다음과 같다.<sup>172</sup>

- 비디오 게임과 같은 전자 게임
- 노트북, 노트북, 태블릿
- 플라즈마 TV, LED, LCD 텔레비전 화면 크기 32" 이상
- 입력 전력 200W 이상의 내장 증폭기가 있는 광학 디스크 플레이어
- 전자레인지, OTG, 오븐
- 비주얼 디스플레이 장치
- 화면 크기 32 mm 이상의 비디오 모니터
- 프린터, 플로터
- 스캐너
- 무선 키보드
- 전화 자동 응답기
- 입력 전력이 2000W 이상인 증폭기

### 3-7-4. 인증 요건, 절차 및 필수 서류

BIS 인증은 그 종류별로 요건과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공통적인 인증 신청 발급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sup>172</sup> <https://bis.gov.in/index.php/product-certification/products-under-compulsory-certification/scheme-ii-registration-scheme/>

-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등록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시험 보고서는 원래 CRS 에 따라 BIS 가 인정한 연구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인도에 소재한 연락 사무소나 지점이 없는 모든 외국인 신청자는 규정된 지명 양식에서 BIS 가 발행한 지침에 따라 공인 인도 대표자(AIR)를 임명해야 한다.
- 인도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공인 인도 대리인은 지침에서 언급한 형식 Form A/B 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인도 거주 신청자는 형식 c 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수수료는 CRS 수수료 기준에 따라 납부 되어야 한다.
- 온라인으로 신청서(양식 VI)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문서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 신청서 원본은 출력본으로 신청서의 온라인 제출 후 15 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온라인 제출 후 15 일 이내에 신청서 원본이 BIS 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은 취소될 수 있다.
-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BIS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BIS 는 신청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신청서에 대한 모든 질의는 BIS 가 온라인으로 통지하며, 신청인 또한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BIS 수정 요청사항은 즉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
- 신청자는 불완전한 신청과 질의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 등록 허가에서 전반적인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일단 질의가 만족스럽게 소명이 완료되면, BIS 는 등록을 허가한다.
- 등록 통지서는 신청자의 포털에서 확인 발급 가능하다.
- 등록 제조업체는 동일한 제품 및 브랜드의 신모델을 동일한 등록번호로 포함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등록은 2 년 단위로 부여되며, 2 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그 중 우리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증으로서 제품 인증과 외국제조업체 인증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 3-7-4-1. 제품 인증

BIS 는 eBIS 플랫폼 (<https://www.manakonline.in/MANAK/login>) 에서 제품 인증 신청 및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sup>173</sup>

- 법인(사업자) 등록증
- 제조 프로세스
- BIS 공인 연구소 동의서 (필요시)
- 책임각서(Undertaking)
- 제조 품질보증서
- 제품도면 (필요시)
- 공장위치도
- 공장도면
- 품질확인서
- 원자재 시험확인서
- 시험장비 확인서
- 토지 소유확인서
- 제조 장비 상세내역
- 시험장비 상세내역
- 위생상태 확인서
- 제품 브랜드 증명서

#### 3-7-4-2. 외국제조업체 인증

외국제조업체로서 BIS 인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인도 표준 규격(Indian Standard Specifications: ISS)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 확인
- 모든 제조 기계/설비를 공장 구내에 설치
- ISS 에 따라 제품의 시험을 위한 모든 준비/장비를 공장 구내에 비치

---

<sup>173</sup> eBIS 홈페이지 (<https://www.manakonline.in/MANAK/login>)

- ISS 에 따라 해당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능한 테스트 인력을 소속 연구소에 배치
- 시험 및 검사 계획(Scheme of Testing & Inspection: SIT) 및 표시 수수료 등의
- 면허 약관 등의

인증 신청은 인도에서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Authorized Indian Representative (AIR)’ 을 선임하여 양식을 작성하여 BIS 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sup>174</sup>

- 사업장 주소증명서
- 공장 주소증명서
- 중소기업등록증 (해당시)
- 서명권자 확인서
- 제조프로세스 내역
- 제조장비 내역
- 하청제조 여부
- 하청계약서
- 시험장비리스트
- 공장 외부 시험 수행내역
- 시험장비 확인서
- 사내 시험 보고서
- 외주 연구소 시험보고서 (해당할 경우)

### 3-7-4-3. 의무 인증

의무 인증의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동 신청 양식 등을 출력하여 필수 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 15 일 이내에 BIS 본사로 제출되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경우 연락사무소나 브랜치 오피스를 통하여 또는 인도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선임하여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sup>175</sup>

- 온라인 신청 확인서
- 주소증명서
- 수수료 영수증
- 서명권자 확인서

<sup>174</sup> eBIS 홈페이지 (<https://www.manakonline.in/MANAK/login>)

<sup>175</sup> (<https://www.manakonline.in/MANAK/login>)

- FORM VI 양식
- 제품 브랜드명
- 시험보고서 확인각서
- 대표자 확인서 및 진술서
- 시험보고서

온라인으로 양식 Form VI 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출력하여 동 신청 양식 등을 출력하여 필수 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 15 일 이내에 BIS 본사로 제출되어야 한다.

### 3-7-5. CDSCO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허가, 등록 및 면허 제도

#### 3-7-5-1. 규제 기관

중앙 의약품 표준 관리 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sup>176</sup>는 보건복지가족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기관으로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과 관련된 표준을 정하고, 수입 및 생산 허가를 내리는 주요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및 인도 국내 업체들은 인도 내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 및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며 CDSCO 에 등록 하여야 한다. CDSCO 산하 인도 의약품통제국(DCGI)은 CDSCO 의 핵심 부서로서, 특정 약품(백신, 줄기세포치료제, 혈액제제, r-DNA 유도제), 특정 의료기기 및 신약의 제조 승인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제조, 판매, 유통 등에 대한 허가 기타 행정 조치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3-7-5-2. 주요 관련 규정

-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and its rules 1945
- Drugs and Cosmetics Amendment Act, 2008
- Pharmacy Act, 1948
- Drugs Price Control Order 1995
- ICH GCP Guidelines
- Schedule Y Guidelines
- ICMR Guidelines
- New Drugs and Clinical Trial Rules, 2019
- Cosmetic Rules, 2020
- Medical Device Amendment Rules, 2020

최근 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규정 Medical Device Rules 이 신설되어 2016 년부터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정비된 바 있어 주의를 요한다.

---

<sup>176</sup>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en/Home/>

### 3-7-5-3. 인허가 적용 대상

CDSCO 는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라 의약품 승인, 임상 시험 수행, 의약품 기준 정립, 국내 수입 의약품의 품질 관리, 의약품 관리 기관을 규제하며, 대표적인 CDSCO 의 주요 인허가 규제 대상으로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대한 인허가에 관련하여 소개한다.

### 3-7-5-4. 의약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sup>177</sup>

- 인간 또는 동물의 내부 또는 외부 사용을 위한 모든 의약품 및 인체에 적용되는 제제를 포함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완화 또는 예방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질;
- 중앙정부가 정하는 인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간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해충 또는 곤충의 박멸에 사용되도록 의도 된 물질 (식품 제외);
- 빈 젤라틴 캡슐을 포함하여 약물의 성분으로 사용하기위한 모든 물질.

보다 구체적으로 CDSCO 허가 대상 의약품은 다음의 4 가지로 분류된다.<sup>178</sup>

- 고정용량복합제(Fixed Dose Combination)

고정 된 비율로 단일 용량 형태로 조합 된 두 개 이상의 약물을 고정용량복합제 (FDC)라고 하며, FDC 는 (a) 치료 효능 강화, (b) 약물의 부작용 발생 감소, (c) 약학적 이점, (d) 알약 부담 감소를 통한 더 나은 순응도 측면에서 명확한 이점을 입증 (e) 개별 약물의 용량 감소 (f) 내성 발달 감소 (g) 포장에서 유통까지의 비용 절감으로 인해 개별 약물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의약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임상시험(Investigational New Drugs):

IND (Investigational New Drug)는 어떤 국가에서도 의약품으로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화학 또는 생물학적 실체 또는 물질을 의미한다.

- 신약(New Drug):

<sup>177</sup> Section 3 (b), Drugs and Cosmetics Act & Rules

<sup>178</sup> [https://cdsco.gov.in/opencms/resources/UploadCDSCOWeb/2018/UploadPublic\\_NoticesFiles/fagnd.pdf](https://cdsco.gov.in/opencms/resources/UploadCDSCOWeb/2018/UploadPublic_NoticesFiles/fagnd.pdf)

- 해당 국가에서 유의한 범위까지 사용되지 않은 활성 의약품 성분 또는 식물 의약품 약물을 포함한 의약품이 중앙 라이선스 기관(CLA)에 의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 특정 클레임에 대해 CLA 에 의해 승인되고 표시, 투여 경로, 투여량 및 투여량 양식을 포함하여 수정되거나 새로운 클레임과 함께 시판될 것을 제안한 의약품;
  - 두 개 이상의 약물의 고정 선량 조합이 CLA 가 특정 청구를 위해 별도로 승인하고 고정 비율에서 처음으로 결합하도록 제안하거나, 표시, 투여 경로, 투여량 및 투여량 형식을 포함한 특정 청구를 통해 성분 비율을 변경하도록 제안하는 경우;
  - 중앙 면허 당국이 승인 한 약물의 수정 또는 지속 방출 형태 또는 약물의 신규 약물 전달 시스템;
  - 백신, r-DNA 유래 제품, 유전자 변형 생물체, 단일 클론 항체, 줄기 세포 유래 제품, 유전자 치료제 또는 이종 이식, 약물로 사용하기 위한 것.
- 후속신약(Subsequent New Drug):

후속 신약이란 특정 청구에 대해 중앙 면허 당국이 승인하고 적응증, 투여 경로, 용량 및 제형을 포함하여 수정되거나 새로운 청구와 함께 판매되도록 제안 된 의약품을 의미하며, 국가에서 이미 승인 된 신약도 포함된다.

### 3-7-5-5. 의료기기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 3 조 (b)에 따라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약품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i) 인간 또는 동물의 내부 또는 외부 사용을 위한 모든 의약품 및 모기와 같은 곤충을 퇴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되는 준비를 포함하여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치료, 완화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모든 물질;

(ii) 관보에 통보하여 중앙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인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해충] 또는 인간 또는 동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곤충의 파괴에 사용되도록 의도된 물질(식품 제외);

(iii) 빈 젤라틴 캡슐을 포함한 약물의 구성요소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모든 물질;

(iv) 중앙정부가 때때로 공식 관보에 통보하여 지정할 수 있는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치료, 완화 또는 예방에 내부 또는 외부 사용을 의도하는 그러한 장치.

이에 대하여 의료 기기 (개정) 규칙은 의료기기의 범위를 보다 다음과 같이 보다 특정하고 있다.<sup>179</sup>

단독 또는 조합으로 사용되는 기기, 소프트웨어 또는 부속품을 포함하여 기기, 임플란트, 재료 또는 기타 물품을 포함한 모든 기기로서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된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음의 기기 :

- 질병 또는 장애의 진단, 예방, 모니터링, 치료 또는 완화;
- 상해 또는 장애에 대한 진단, 모니터링, 치료, 완화 또는 지원;
- 해부학 또는 생리학에 대한 조사, 교체 또는 수정 또는 지원 과정;
- 생명 유지 또는 부양;
- 의료기기의 소독;
- 임신 조절.

상기 법률에 따라 2021년 4월 기준으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이 필요한 구체적인 의료 기기 목록 총 37개는 다음과 같다. (정확한 명칭 안내를 위해 영문 기재)

- Disposable Hypodermic Syringes
- Disposable Hypodermic Needles
- Disposable Perfusion Sets
- Substances used for in vitro diagnosis including Blood Grouping Sera
- Cardiac Stents
- Drug Eluting Stents
- Catheters
- Intra Ocular Lenses
- I.V. Cannulae
- Bone Cements
- Heart Valves
- Scalp Vein Set
- Orthopedic Implants
- Internal Prosthetic Replacements
- Ablation Devices

---

<sup>179</sup>[https://cdsco.gov.in/opencms/opencms/system/modules/CDSCO.WEB/elements/download\\_file\\_division.jsp?num\\_id=NTU00A==](https://cdsco.gov.in/opencms/opencms/system/modules/CDSCO.WEB/elements/download_file_division.jsp?num_id=NTU00A==)

- Ligatures, Sutures and Staplers
- Intra Uterine Devices (Cu-T)
- Condoms
- Tubal Rings
- Surgical Dressings
- Umbilical tapes
- Blood/Blood Component Bags
- Organ Preservative Solution
- Nebulizer (effective from Jan. 1, 2021)
- Blood Pressure Monitoring Device (effective from Jan. 1, 2021)
- Glucometer (effective from Jan. 1, 2021)
- Digital Thermometer (effective from Jan. 1, 2021)
- All implantable medical devices Equipment (effective from April 1, 2021)
- CT Scan Equipment (effective from April 1, 2021)
- MRI Equipment (effective from April 1, 2021)
- Defibrillators (effective from April 1, 2021)
- PET Equipment (effective from April 1, 2021)
- X-Ray Machine (effective from April 1, 2021)
- Dialysis Machine (effective from April 1, 2021)
- Bone marrow cell separator (effective from April 1, 2021)
- Disinfectants and insecticide specified in Medical Devices Rules, 2017
- Ultrasound equipment (effective from Nov. 1, 2020)

위와 같이 의무 등록 의료기기로 정하여 진 경우가 아닌,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기타 모든 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자는 DCGI 로부터 이의 없음 확인서(Non Objection Certificate: NOC)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3-7-5-6. 화장품

화장품은 세정, 미용, 외모 증진을 위하여 인체 또는 그 일부에 문지르거나, 바르거나, 뿌리거나, 분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으로 정의된다.<sup>180</sup>

화장품의 수입은 1940 년 마약 및 화장품법 및 2020 년 화장품 규정에서 CDSCO 의 등록 시스템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도에 수입하기 전에 크기, 변형 제품 및 제조 시설과 함께 등록이 필요하다.

---

<sup>180</sup> Section 3(aaa) of the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 3-7-5-7. 인허가 요건, 절차 및 필수 서류

인도에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은 해당 규정에 따라 CDSCO 의 웹사이트 SUGAM 포탈([www.cdscoonline.gov.in](http://www.cdscoonline.gov.in))에서 온라인을 통해 인허가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완료한 후 필요 서류는 원본으로 CDSCO 사무소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상 소명 요청 기타 통지는 이메일로 이루어진다.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등록 신청 절차는 동일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 SUGAM 포탈([www.cdscoonline.gov.in](http://www.cdscoonline.gov.in))에서 신청인 정보 제출
- (2) 인허가 대상 (의약품 등) 정보 제출
- (3) 제조 / 사이트 정보 제출
- (4) 신청 양식 및 필수 서류 제출

온라인 제출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다.<sup>181</sup>

- 소개서 (Cover Letter)
  - 위임장
  - 수입허가서
  - 도매허가증
  - 서명권자확인서
  - 공장 상세 내역 및 확인각서
  - 의약품 제품 상세내역 및 확인각서
- (5) 신청수수료 납부
  - (6) 최종 신청서 제출 및 신청 완료

### 3-7-5-8. 의약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및 규칙에 따라 신약, 의료기기, 임상 시험, 후속신약, 고정용량복합제 등은 CDSCO 의 승인을 요하며, 승인 신청 후 CDSCO 는 내부 평가 심사를 거쳐 승인을 진행한다. CDSCO 는 심사 평가 후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화학 및 제조 관리 데이터를 검토하여 의약품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약품이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도 약전위원회가 신청자에게 이의 없음 확인서(NOC)를 부여할 수 있다. 그 후 컴플라이언스 테스트 후, 현장 시설 검사가 수행 된 후 의약품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sup>181</sup> CDSCO 웹사이트 SUGAM 포탈([www.cdscoonline.gov.in](http://www.cdscoonline.gov.in))

참고로 의약품의 경우 종류와 사안에 따라 필수 서류 및 신청 양식이 매우 다양하며 필요 정보 및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중 대표적인 신약 수입, 판매, 제조 등 시판을 위한 허가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sup>182</sup>

- 소개서
- 신청자 위임장
- 연구 프로세스
- 조사담당자 확인 각서
- 환자정보 및 개인정보동의서
- 인도내 연구수행 확인서
- 생물학적 샘플 수출 내역 및 수출 신청서
- 제조지 주소증명서 및 조사담당자 리스트
- 참여국가명
- 전세계 및 인도내 환자수
- 전세계 및 인도내 의약품 실태
- 타국가 승인서
- 윤리위원회 승인서 (해당시)
- 조사담당자 소개서
- 의약품 조사 서류일체
- 원재료 정보
- 제형 데이터
- 의약품 조사보고서 확인서
- 동물실험 데이터
- 동물 독성 데이터
- 임상실험 보고서
- 그 외 관련 양식

### 3-7-5-9. 의료기기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 3 조 (b)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필수 등록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 의무가 없으며, 제조자는 DCGI 로부터 이의 없음 확인서(Non Objection Certificate: NOC)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반면, 정부 고시에 따라 필수적으로 등록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CDSCO 에 의료기기 등록하여야 하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DCGI 의 별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DCGI 는 제품에 대한 임상 실험을 요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조시설을 실사할 수 있다.

<sup>182</sup> CDSCO 웹사이트 SUGAM 포털([www.cdsoonline.gov.in](http://www.cdsoonline.gov.in))

인도의 의료기기 등록 절차 및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인도 대리인 선임
- 의료기기 상세 정보 내역
- 공장 프로세스 상세 정보 내역
-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DCGI 검토 및 확인, 필요시 기술설명 제공
- 승인

의료기기 등록 신청 승인은 별도의 임상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통상 9-18개월 소요된다. 외국 제조 의료기기의 경우 인도 시장에 공급되기 위하여서 별도의 수입 면허 (Import License)가 필요하다. 이 경우 인도에 도매업 면허를 보유한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sup>183</sup>

- 소개서
- 위임장
- ISO 13485 확인서
- 영수증
- 제조, 디자인 확인서
- 사업자 면허 및 제조 등록증
- 감사보고서
- 인도 대리인 정보 내역
- 인도 대리인 도매, 제조 면허 및 수입 등록증
- 시험진단 판매허용 등록증
- 품질보증서
- 의료장비 상세 정보 내역 및 시험 데이터
- 제조공장 및 프로세스 내역
- 진단시험 확인서
- 시험보고서
- 판매허용 확인서 (해당 국가의 경우)

### 3-7-5-10. 화장품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내로 수입되기 전에 팩 크기, 변형 제품 및 제조 시설과 함께 등록해야 하며, 중앙정부 규칙에 따라 등록되지 않는 한 인도에 화장품은 수입될 수

---

<sup>183</sup> CDSCO 웹사이트 SUGAM 포털([www.cdsoonline.gov.in](http://www.cdsoonline.gov.in))

없다.<sup>184</sup> 나아가 규정된 규격이나 품질 및 안전의 다른 표준 및 규칙에 따른 기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수입 또는 제조할 수 없으며, 원산지 표시에 적용되는 규격과 이 규칙에 따른 요건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sup>185</sup>

화장품 수입 인허가는 CDSCO 의 SUGAM 포털에 있는 양식 COS-1 에서 제조자 본인 또는 제조자가 허가한 인도 내 공인 대리인 또는 수입자에 의해 필요한 수수료와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sup>186</sup>

수입 화장품 등록 신청 가능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인도에 업체 등록을 마친 제조업자
- 제조업자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
- 제조업자의 자회사
- 기타 수입자

온라인 등록은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승인 완료된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최대 3 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 등록 승인 후 중도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승인일로부터 3 년 동안 유효하다. 기존 등록 만료 시에는 만료 후 6 개월 이내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승인 후 에이전트사, 수입업체, 법인, 제조업체 등의 이름, 주소, 기업 형태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관리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한 등록사항 변경내역 통지는 불가능하다.

화장품의 수입은 화장품 및 제조현장에 대하여 COS-1 의 신청서를 제출한 뒤, COS-2 등록인증서 (Import Registration Certificat)를 발급 받아 CDSCO 에 등록되어야 한다. COS-1 은 등록 신청서로서 온라인 포털 SUGAM 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제조, 화장품 및 브랜드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후 COS-2 발 발급되면, COS-1 과 COS-2 를 첨부하여 Form 42 를 제출하여 화장품 수입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sup>187</sup>

- 소개서
- 위임장

<sup>184</sup> Rule 12(1) of the Cosmetic Rules, 2020

<sup>185</sup> Rule 39 of the Cosmetic Rules, 2020

<sup>186</sup> Cosmetics Rules, 2020 i.e. Drugs Controller General (I), CDSCO (HQ).

<sup>187</sup> CDSCO 웹사이트 SUGAM 포털([www.cdsoonline.gov.in](http://www.cdsoonline.gov.in))

- 성분분석표
- 제품라벨
- 규격
- 사용설명서
- 제조면허
- 판매허용증명서
- 동물실험 미시행 확인서
- 중금속 등 함량 검사보고서
- 기타 서류 양식
- 신청비 납부증명서

등록이 완료되면 Form 43 의 등록증이 발급된다.

### 3-7-6. FSSAI 식품 등록 및 면허 제도

#### 3-7-6-1. 규제 기관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은 식품안전기준법 (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 제조, 보관, 유통, 판매 및 수입에 대한 규제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FSSAI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식품 안전의 표준과 지침이 되는 법률 제도 마련
- 식품 사업자에 대한 식품 안전 면허 라이선스 및 인증 부여
- 식품 사업체의 실험실에 대한 절차 및 지침 수립
- 정책 입안을 위한 정부 제안
- 식품 내 오염물질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부상 위험 확인 및 신속 경보 시스템 도입
-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식품 안전 및 식품 표준에 대한 국민 인식 촉진

#### 3-7-6-2. 주요 관련 규정

인도 식품가공산업은 식품안전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되었던 아래 8개 법률은 더이상 효력이 없다.

- The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Act, 1954
- The Fruit Products Order, 1955
- The Meat Food Products Order, 1973
- The Vegetable Oil Products (Regulation)Control Order, 1998
- The Edible Oils Packaging (Regulation) Order, 1998
- The Solvent Extracted Oil, De oiled Meal, and Edible Flour (Control) Order, 1967
- The Milk and Milk Products Order, 1992
- Essential Commodities Act, 1955 (relating to food)

식품안전표준법은 인도 국내 식품 규제 및 식품안전기준 제정 및 시행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복잡한 법률, 규칙 및 규정을 통합하여 식품 안전을 위한 우산법으로서 제정되었으며, 국제 기준에 따라 인도의 식품 규제의 틀을 갖추고자 한다. 동법을 기본으로 하는 하위 규정은 다음과 같다.

- Food Safety and Standards (Licensing and Registration of Food Businesses) Regulations, 2011
-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Product Standards and Food Additives) Regulations, 2011
- Food Safety and Standards (Prohibition and Restriction of Sales) Regulations, 2011
-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aging and Labelling) Regulations, 2011
- Food Safety and Standards (Contaminants, Toxins and Residues) Regulations, 2011
- Food Safety and Standards (Laboratory and Sampling Analysis) Regulations, 2011
- Food Safety and Standards (Health Supplements, Nutraceuticals, Food for Special Dietary Use,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 Functional Food and Novel Food Regulations) Regulations, 2016
-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Recall Procedure) Regulation, 2017
- Food Safety and Standards (Import) Regulation, 2017
- Food Safety and Standards (Approval for Non-Specific Food and Food Ingredients) Regulation, 2017
- Food Safety and Standards (Organic Food) Regulation, 2017
- Food Safety and Standards (Alcoholic Beverages) Regulation, 2018
- Food Safety and Standards (Fortification of Food) Regulation, 2018
-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 Safety Auditing) Regulation, 2018
- Food Safety and Standards (Recognition and Notification of Laboratories) Regulation, 2018
- Food Safety and Standards (Advertising and Claims) Regulation, 2018
- Food Safety and Standards (Packaging) Regulation, 2018
- Food Safety and Standards (Recovery and Distribution of Surplus food) Regulation, 2019
- Food Safety and Standards (Safe food and balanced diets for children in school) Regulations, 2020
- Food Safety and Standards (Foods for Infant Nutrition) Regulations, 2020<sup>188</sup>
- Food Safety and Standards (Labelling and Display) Regulations, 2020<sup>189</sup>

---

<sup>188</sup> <https://www.fssai.gov.in/cms/food-safety-and-standards-regulations.php>

<sup>189</sup> <https://www.fssai.gov.in/cms/food-safety-and-standards-regulations.php>

### 3-7-6-3. 인허가 적용 대상

FSSAI 는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및 수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준과 의무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식품 사업자로 하여금 식품 사업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등록 또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형태로 규제를 하고 있다. 그 주요 적용 대상은 인도 국내 식품 제조 유통 등을 위한 식품 등록 또는 면허와 수입 면허로 나누어진다.

### 3-7-6-4. 식품등록 (Registration)

식품안전표준법 제 31 조 제(1)항 및 제 31 조 제(2)항에 따라 2006 년 인도 내 모든 식품사업자는 인도 식품안전표준청의 면허/등록을 받아야 한다. 허가 및 등록 절차와 요건은 식품 안전 표준(식품 사업의 허가 및 등록) 규정에 의해 규제된다. 등록(Registration)은 연매출액 1,200,000 루피 이하의 소매상, 매점상, 임시 노점상 또는 소규모 또는 가내수공업과 같은 소규모 식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세한 등록요건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sup>190</sup>

- 식품 제조 또는 소매, 매점, 행사, 임시노점을 통한 판매자;
- 종교, 사회 모임을 포함 어떠한 경우의 식품 유통자 (케이터링 제외);
- 연매출액 1,200,000 루피 이하의 소매상, 매점상, 임시 노점상 또는 소규모 또는 가내수공업과 같은 식품제조업자로서 아래의 사항 포함 :
  - 우유, 유제품 및 육류, 육류 제품을 제외한 일일 생산량 100 kg 또는 리터 이하의 식품 제조;
  - 일일 500 리터 또는 연간 2.5 MT 이하의 우유 조달 및 취급;
  - 일일 100 kg 또는 리터 이하의 식용유 제조, 가공;
  - 일일 100 kg 또는 30 MT 이상의 육류 제조, 가공;
  - 일일 대형 2 마리, 소형 10 마리, 가금류 50 마리 이하 도축;
  - 상기 외 일일 100 리터 또는 kg 이하의 모든 재포장 가공;
  - 연매출액 1,200,000 루피 이하의 냉장가공;
  - 연매출액 1,200,000 루피 이하의 도매, 소매, 유통, 공급업자;
  - 연매출액 1,200,000 루피 이하의 식품 자판점;
  - 연매출액 1,200,000 루피 이하의 호텔 및 레스토랑;
  - 연매출액 1,200,000 루피 이하의 운송업자.

<sup>190</sup> [https://fssai.gov.in/upload/media/FSSAI\\_News\\_License\\_IndianTalk\\_07\\_05\\_2019.pdf](https://fssai.gov.in/upload/media/FSSAI_News_License_IndianTalk_07_05_2019.pdf)

### 3-7-6-5. 식품 면허 (Licensing)

위 식품 등록의 대상이 되는 소규모 식품 업체가 아니라면 모두 면허(Licensing) 대상이 되어 반드시 사전 식품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 식품 면허는 중앙정부 면허와 주정부 식품 면허로 나누어진다.

#### (1) 중앙정부 면허(Central FSSAI License)

연간 20 크로 루피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식품사업운영자(Food Business Operator: FBO)는 중앙 정부가 발급한 중앙 식품 면허를 취득해야 하여야 한다. 면허의 최대 유효기간은 1-5 년이다. 상세 신청 요건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sup>191</sup>

- 일일 50,000 리터 초과 우유 및 일일 2,500 MT 초과 우유 고형분 취급, 처리;
- 일일 2 MT 초과 식용유 제조, 가공;
- 일일 대형 50 마리, 소형 150 마리, 가금류 1,000 마리 초과 도축;
- 일일 500 kg 또는 연간 150 MT 초과 육류 가공;
- 곡물을 제외한 일일 2 MT 초과 모든 식품의 가공 (재포장, 라벨링 포함);
- 상표가 붙은 모든 식품의 제조;
- 모든 수출기반 식품;
- 상업용 성분 및 첨가제를 포함한 모든 식품 수입업자;
- 냉장보관 외 50,000 MT 초과 여타 보관, 10,000 MT 초과 냉장보관, 1,000 MT 초과 실온/냉장 보관;
- 연매출 30 크로 루피 초과 도매;
- 연매출 20 크로 루피 초과 소매, 유통, 공급, 케이터링;
- 5성급 이상 호텔;
- 연매출 20 크로 루피 초과 레스토랑;
- 차량 100 대 이상 보유 또는 연매출 30 크로 루피 초과 운송업자;
- 연매출 20 크로 루피 초과 판매자;
- 중앙정부 기관 토지내 저장, 도매, 소매, 유통;
- 국방부 등 중앙 정부기관 내 케이터링 서비스.

#### (2) 주정부 면허(State FSSAI License)

중앙정부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중소형 사업의 경우에도 주정부 면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해당 주의 면허가 필요하다. 통상 면허의 유효기간은 1-5 년이다. 주요 신청 요건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sup>192</sup>

<sup>191</sup> [https://fssai.gov.in/upload/media/FSSAI\\_News\\_License\\_IndianTalk\\_07\\_05\\_2019.pdf](https://fssai.gov.in/upload/media/FSSAI_News_License_IndianTalk_07_05_2019.pdf)

<sup>192</sup> [https://fssai.gov.in/upload/media/FSSAI\\_News\\_License\\_IndianTalk\\_07\\_05\\_2019.pdf](https://fssai.gov.in/upload/media/FSSAI_News_License_IndianTalk_07_05_2019.pdf)

- 일일 501 리터 이상 50,000 리터 이하 또는 연간 250 만톤 이상 2,500 MT 이하 우유 및 유제품 처리 및 가공;
- 일일 2 MT 이하 또는 연매출 1,200,000 이상 식용유 처리 및 가공;
- 대형 2 마리 초과 50 마리 이하, 소형 10 마리 초과 150 마리 이하, 가금류 10 마리 초과 1,000 마리 이하 도축;
- 일일 500 kg 또는 연간 150 MT 이하 육류 가공;
- 일일 100 kg/리터 초과, 2 MT 이하 곡물 포함 모든 식품 가공 (재포장, 라벨링 포함);
- 50,000 MT 이하 규모의 실온/냉장 보관 창고를 제외한 10,000 MT 초과 냉장보관 및 10,000 MT 초과 실온/냉장 보관 창고;
- 연매출 30 크로 루피 이하의 도매;
- 연매출 20 크로 루피 이하의 소매, 유통, 공급 및 케이터링;
- 연매출 1,200,000 루피 식품 자판점;
- 3성급 이상 5성급 미만의 호텔;
- 연매출 20 크로 루피 이하의 레스토랑;
- 연매출 20 크로 루피의 판매업자;
- 최소 100 대의 차량 보유 또는 연매출 30 크로 루피 이하의 운송업자.

#### 3-7-6-6. 수입 면허 (Import Licensing)

식품안전표준법 제 25 조는 식품의 모든 수입은 동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면서, 식품의 수입 절차와 요건을 시행령을 통하여 상세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FSSAI 는 2017 년 'Food Safety and Standard (Import) Regulation 2017' 규칙을 개정하였고, 이는 통관절차 및 수입 면허를 포함하여 인도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규율한다.

상기 규칙에 따라 FSSAI 의 면허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은 수입할 수 없다. 식품 수입을 위하여서는 중앙 FSSAI 면허가 필요하며, FSSAI 는 동 면허에 대하여 첸나이, 콜카타, 뭄바이, 델리, 코친, 투티코린 등 6 개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지역 거점을 통해 수입을 관리하며, 관세청과도 협업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sup>193</sup>

<sup>193</sup> Manual For Food Imports, FSSAI, June 2019 <https://fssai.gov.in/flipbook.php?bookid=327&doc2=0#book2/5>

### 3-7-6-7. 인허가 절차

FSSAI 는 최근 기존의 온라인 식품면허등록시스템(Food Licensing and Registration System: FLRS)을 대체하는 새로운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식품안전규제시스템(Food Safety and Compliance System: FoSCoS, <https://foscos.fssai.gov.in>) 구축하여 2020 년 11 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기업부 및 세무 신고 온라인 포털과도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sup>194</sup>

#### 3-7-6-7-1. 식품 등록 (Registration)

최근 새로 도입된 FoSCoS 상 식품 등록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 등록 신청
- (2) 관할 주, 사업 내용 선택
- (3) 신청 정보 Form A 양식 작성, 필수 서류 제출, 신청 수수료 납부
- (4) 신청 완료
- (5) 등록증 발급

신청 진행 현황은 [foodlicensing.fssai.gov.in](http://foodlicensing.fssai.gov.in) 에서 확인 가능하다.

#### 3-7-6-7-2. 식품 면허 (Licensing)

식품 면허의 경우 제조업, 가공업, 음식점, 전자상거래 등 업종에 따라 면허 신청 절차가 상이하여서, 해당 업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제조업의 경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 등록 신청
- (2) 관할 주, 사업 내용 선택
- (3) 신청 정보 Form B 양식 작성, 필수 서류 제출, 신청 수수료 납부
- (4) 신청 완료

---

<sup>194</sup> 인도 식품안전규제시스템 홈페이지 (Food Safety and Compliance System: FoSCoS, <https://foscos.fssai.gov.in>)

(5) 등록증 발급

신청 진행 현황은 [foodlicensing.fssai.gov.in](http://foodlicensing.fssai.gov.in) 에서 확인 가능하다.

**3-7-6-7-3. 수입 면허 (Import Licensing)**

수입 면허 신청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온라인 등록 신청
- (2) 관할 주, 사업 내용 및 수입업체 선택
- (3) 신청 정보 기입 및 필수 서류 제출
- (4) 신청 수수료 납부
- (5) 신청 완료
- (6) 면허증 발급

신청 진행 현황은 [foodlicensing.fssai.gov.in](http://foodlicensing.fssai.gov.in) 에서 확인 가능하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1-5 년이며, 동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연간 비용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 FSSAI 의 담당관(Designated Officer: DO)심사 후 면허가 승인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면허증이 발급된다.

### 3-8. 물류

#### 3-8-1. 물류현황

##### 3-8-1-1. 인도 내 주요 항공 및 해상 Port

현재 인도 내 한국기업들의 주요진출지역은 인도 북부의 델리 NCR, 남부 첸나이 및 벵갈루루, 서부 뭄바이 및 푸네, 아메다바드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델리 NCR 은 인도 수도 델리와 그 인접하고 있는 2 개 州(주)의 주요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2 개의 州(주)는 하리아나州(주요도시 : 구르가온, 마네사르, 바왈)와 우타프라데시州 (노이다, 그레이터노이다)이다.

북부와 서부, 남부의 주요 공항 및 해상 Port 와 통관지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8-1-1-1. 인도 내 주요 공항

지역	도시	공항	통관지
북부	델리 NCR (델리)	델리 국제공항 (Indira Gandhi International Airport)	좌동
	델리 NCR (하리아나)	델리 국제공항 (Indira Gandhi International Airport)	좌동
	델리 NCR (우타프라데시)	델리 국제공항 (Indira Gandhi International Airport)	좌동
서부	뭄바이	뭄바이 국제공항 (Chhatrapati Shivaji International Airport)	좌동
	푸네	뭄바이 국제공항 (Chhatrapati Shivaji International Airport)	좌동
	아메다바드	아메다바드 국제공항 (Sardar Vallabhbhai Patel International Airport)	좌동
남부	첸나이	첸나이 국제공항	좌동

		(Chennai International Airport)	
	벵갈루루	벵갈루루 국제공항 (Kempegowda International Airport)	좌동

※ 항공수입의 경우 도착지 공항 내 창고에서 통관을 진행한다

표 3-8-1-1-2. 인도 내 주요 포트(Port)

지역	도시	포트(Port)	통관지
북부	델리 NCR (델리)	나바쉐바(Nhava Sheva), 문드라(Mundra) 피파바브(Pipavav)	ICD TKD
	델리 NCR (하리아나)	나바쉐바(Nhava Sheva), 문드라(Mundra) 피파바브(Pipavav)	ICD TKD ICD Ghari
	델리 NCR (우타르프라데시)	나바쉐바(Nhava Sheva), 문드라(Mundra) 피파바브(Pipavav)	ICD TKD ICD Dadri
서부	मुंबई	나바쉐바(Nhava Sheva)	좌동
	पुणे	나바쉐바(Nhava Sheva)	좌동
	अमदावाद	문드라(Mundra), 피파바브(Pipavav)	좌동
남부	첸나이	첸나이(Chennai)	좌동
	벵갈루루	첸나이(Chennai)	첸나이 ICD Bengaluru

※ 북부 델리 NCR 은 내륙지역으로 해안에 인접한 도시인 뭄바이에 위치한 포트로 수입 후 통관없이 철도를 통해 북부로 이동하여 각 지역별 인근 내륙통관기지(ICD)에서 통관을 진행한다.

※ 남부 벵갈루루는 내륙지역으로 해안에 인접한 도시인 첸나이에 위치한 포트로 수입 후 통관을 진행하여 트럭으로 이동 또는 통관없이 트럭을 이용해 이동하여 내륙통관기지(ICD)에서 통관을 진행한다

### 3-8-1-2. 해상 및 항공수입 Route 및 Leadtime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선적지를 한국(해상은 부산항, 항공은 인천국제공항), 도착지를 델리 NCR 그레이터노이다를 기준으로 통관 후 배송까지 고려했을 때 총 소요시간은 해상수입의 경우 약 40 일, 항공수입의 경우 약 2~7 일 정도이다.

신규수입의 경우 통관지 등록(4~5Working Days) 등의 절차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7-2. 수입물류 진행 전 준비 및 점검사항”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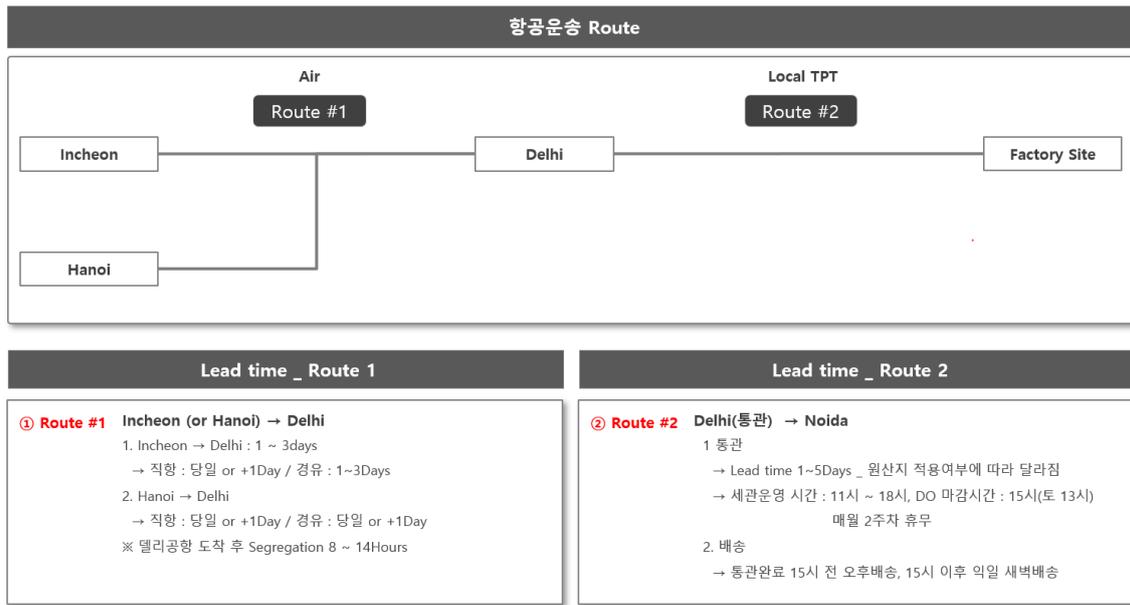
그림 3-8-1-2-1. 해상운송 리드타임 \_ 델리 NCR 그레이터노이다 수입기준



(중국 및 베트남 발과 한국발 리드타임은 크게 차이없음)

자료원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그림 3-8-1-2-2. 항공운송 리드타임 \_ 델리 NCR 그레이터노이다 수입기준



자료원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 3-8-2. 수입물류 진행 전 준비 및 점검사항

#### 3-8-2-1. 수입 전 행정업무 준비사항

인도로 수입하고자 하는 모든 화주는 B/L(선하증권) 상에 수입자의 GST(Goods and Service Tax) Number 와 IEC(Import and Export) Code 를 필수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하여 화물 선적 전에 기본적으로 법인설립이 완료되고, 수입통관 후 화물의 최종배송지 주소로 등록된 GST(Goods and Service Tax) Number 와 IEC(Import and Export Code)가 필요하며, AD(Authorized Dealer) Code 를 은행을 통해 발급 후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인도는 타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업체의 경우 통관지를 지정 및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통관지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법인 또는 공장을 설립할 지역과 가까운 통관지를 선택 후 통관지 등록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델리 NCR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통관지는 통상 아래와 같이 선택하며, 해상의 경우 B/L 상의 Final Destination, 항공의 경우 Airport of Destination 상에 하기 통관지명을 기입한다.

- 해상수입(원자재 및 컨테이너 내 적재가능한 설비) : ICD Tughlakabad(TKD)
- 해상수입(컨테이너 내 적재불가능한 설비 \_ Flat Rack Container 사용 등) : Nava Sheva

- 항공수입(원자재 및 소형설비) : Indira Gandhi International Airport

통관지 등록은 수입최초 1 회 등록하고, 필요에 따라 다수의 통관지 등록이 가능하다. 단, 주의할 점은 수입화물이 통관지에 도착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4~5Working Days 가 소요되므로, 사전에 소량의 테스트물량 수입하여 통관지를 등록한다면 향후 설비 및 정상 수입물량 수입 시 해당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통관지 등록서류에는 각 서류마다 법인설립 시 등록된 Director 즉, 서명권자의 서명이 필수적이다. 법인설립 시 한국국적의 Director 의 등록은 가능하지만, 통관지 등록서류 중 서명권자의 FRRO(Foreigners Regional Registration Officer\_외국인 등록증)와 PAN(Permanent Account Number\_세금납부번호) Card 제출이 필수이므로 적합한 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하여 해당 신청절차를 사전에 완료하는 것을 추천한다.

간혹 법인 Director 와 은행서명권자는 한국인으로 등록하였으나, 정작 해당 서명권자의 FRRO 와 PAN Card 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아, 통관지 등록서류 준비가 지연으로 전체적인 수입절차가 지연되고, 과도한 물류비(체화료 등)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표 3-8-2-1-1. 수입통관지 등록서류**

필요서류	출력양식	Remark
1. PAN Card of Authorized Signatory self-attested(승인권자 서명한 팬카드)	Plain Paper	
2. Residence proof of Authorized Signatory (Passport, Visa, FRRO, Pan Card Aadhaar card if any)	Plain Paper	서명자의 주소증명
3. Complete set of IEC Code duly sign & stamp. (IEC Code 서명, 도장찍은 Set)	Plain Paper	
4. Company PAN Card.(회사 Pan Card)	Plain Paper	
5. Memorandum of Article (각서, In digital case EMOA(Memorandum Of Article), EAOA(Article Of Association)	Booklet/Digital softcopy	자체양식: 회계사 확인
6. GATT Declaration((관세일반 무역협정 신고서)	Plain Paper	

7. GST Certificate Number(GST 등록번호)	Plain Paper	
8. ITR(Income Tax Return) for 2 years : 2 년동안의 소득세 내역으로, 신생법인의 경우 레터로 같음	Plain Paper	신설법인이라 해당사항 없으므로, 지금까지 매출이 없다는 레터를 회계사로부터 받아서 제출
9. Bank Statement for 6 months : 6 개월간 은행 거래내역으로, 신생법인의 경우 회계사 레터로 같음	Plain Paper	신설법인이라 해당사항 없으므로, 지금까지 매출이 없다는 레터를 회계사로부터 받아서 제출
10. Address proof (회사 주소증명서, Any of 전기세고지서, 전화비고지서, 수도고지서, 임대계약서 등)	Plain Paper	
11. Bank AD Code(Authorized Dealer Code) : 딜러고유번호	Bank Letter Head	

자료원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 3-8-2-2. 관계사 거래여부 사전확인

인도 내 수입통관은 수출자(Shipper)의 관계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수출자가 수입자의 관계사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통관지 등록만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수출자가 수입자의 본사 또는 지사 등 관계사인 경우 이전가격 이슈로 인해 수입 예정 Shipper 상호 및 제품, 인보이스 밸류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수입통관지 등록절차 외에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수입통관지 등록절차와 동시에 진행가능)

상기 관계사간 거래등록은 세관 내 SVB(Special Value Branch) 부서에 신청하는 것으로 통상 SVB 등록이라고 한다. 하지만 SVB 등록의 경우 최소 3 개월에서 1 년 가까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해 PD(Provisional Duty) Bond 를 임시적으로 등록하여 통관을 진행한다. 간단하게 PD Bond 는 SVB 전 임시적인 절차이며, SVB 는 취득법인의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3 년에 한번 갱신으로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PD Bond 등록절차는 수입통관지 등록절차와 동일하게 수입최초 1 회 등록하며, 통상 Working Day 기준 10 일 ~ 14 일이 소요되며, 수입화물이 통관지에 도착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소량의 테스트물량 수입하여 통관지를 등록과 관계사 거래등록을 진행한다. 향후 설비 및 정상 수입물량 수입 시 해당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관계사 간 최초거래 시 상기 PD Bond 등록절차 등이 필수이다. 하지만 아래의 필요서류는 인도법인 단독으로 준비가 불가하며, 본사 및 수출예정 지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법인설립 및 공장건축, 설비이전, 원자재 수입 등 전체적인 계획 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최초 PD Bond 등록 이후 60 일 내 SVB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 기준 Assessable Value(과세가격) 기준 5%의 EDD(Extra Duty Deposit)가 부과됨을 명심해야 한다.

관계사 간 거래등록 즉 PD Bond 와 SVB 등록 절차 및 서류준비는 다소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법인설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물류사 또는 통관사와 별도로 컨설팅을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아래의 신청서류는 물류사 또는 통관사 등 컨설턴트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실제 준비 시에는 별도확인이 필요하다.

표 3-8-2-2-1. PD Bond 등록서류

필요서류	출력양식	Remark
1. Request letter to customs for acceptance of PD Bond. (PD Bond 승인요청서)	수입자 Letter Head	물류사 또는 통관사 Draft 제공
2. Authorization letter for Bond Submission (Bond 납부 위임장)	수입자 Letter Head	물류사 또는 통관사 Draft 제공
3. PD Continuity Bond	Bond paper	물류사 또는 통관사 Draft 제공
a. PAN Card of Authorized Signatory self-attested (승인권자 서명한 팬카드 사본)		
b. Signature will be Bank verified of Authorized Signatory in PD Bond (서명은 회사계좌 서명권자 서명과 동일한 승인권 자가 해야 함)		
c. Residence proof of Authorized Signatory (Passport, Visa, FRRO, Pan Card Aadhaar card if any) (서명자의 주소증명)		
d. Self attested photo of Authorized Signatory should be pasted on PD Bond (서명권자가 서명한 사진)		
e. Two witnesses along with self-attested Photo & ID - PAN Card is not allowed as ID		

(서류상 2 명의 증인이 서명한 사진과 신분증 _ Pan card 제외)		
f. PD Bond should be Notarized (PD Bond 는 변호사 공증받아야함)		
4. Board Resolution or Power of Attorney in favor of Authorized Signatory. (서명권자를 확인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서)	수입자 Letter Head	자체양식: 회계사 확인
5. Solvency Certificate from Bank of Bond Value)(지불능력 증서)	Bank Letter Head	은행발급
6. Complete set of IEC Code duly sign & stamp. (IEC Code 서명, Stamp Set)	Plain Paper	
7. Company PAN Card (회사 Pan Card)	Plain Paper	
8. Memorandum of Article (각서, In digital case EMOA(Memorandum Of Article), EAOA(Article Of Association)	Booklet/Digital softcopy	자체양식: 회계사 확인
9. Commercial invoice and packing list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	Plain Paper	
10. GATT Declaration(관세일반 무역협정 신고서)	Plain Paper	물류사 또는 통관사 Draft 제공
11. GST Certificate Number (GST 등록번호)	Plain Paper	
12. SVB Order 획득을 위한 Annex-A, and Annex-B with supporting documents (본지사 등 관계 및 거래설명서류)	Plain Paper	하단의 SVB 등록 서류목록 _ 물류사 또는 통관사 Draft 제공

13. ITR(Income Tax Return) for 2 years :  2 년동안의 소득세 내역으로, 신생 법인의 경우 회계사 레터로 같음	Plain Paper	신설법인이라 해당사항 없으므로, 지금까지 매출이 없다는 레터를 회계사로부터 받아서 제출
14. Bank Statement for 6 months :  6 개월간 은행 거래내역으로, 신생 법인의 경우 회계사 레터로 같음	Plain Paper	신설법인이라 해당사항 없으므로, 지금까지 매출이 없다는 레터를 회계사로부터 받아서 제출
15. Address proof (회사 주소증명서, Any of 전기세 또는 전화비고지서, 수도고지서, 임대계약서 등)	Plain Paper	
16. Bank AD Code(딜러 고유번호— Authorized Dealer Code)	Bank Letter Head	

※ 해당서류 준비 및 작성 시 법인설립 단계부터 물류사 또는 통관사와 협업을 추천함

자료원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표 3-8-2-2-2. SVB 등록서류

필요서류	출력양식	Remark
1. Price List(장비, 원자재 분류하여 작성 필요) : 인도법인(수입자)으로 수출예정인 전 법인의 명의	수입자 Letter Head	예 : 한국, 베트남법인 → 인도법인으로 수입되는 제품들의 가격목록 - 물류사 또는 통관사 Draft 제공
2. Back-to-Back 가격비교표	수입자 Letter Head	물류사 또는 통관사

→ 타 업체에서 구매하여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인도법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비교		Draft 제공
3. Annexure A&B	수입자 Letter Head	
4. 관계사와의 비즈니스 계약서 (본사, 타법인 등)	수입자 Letter Head	
5. 로열티 계약서, 브랜드피 계약서 등 해외로 자금이전 관련 계약서들	수입자 Letter Head	
6. 가격 비교표 → Shipper 가 기존 인도의 타사에 판매하던 동일 제품을 인도법인에 판매할 경우, 가격비교 필요	수입자 Letter Head	기존 진행되었던 최근 6개월간 인보이스 유첨 - 물류사 또는 통관사 Draft 제공
7. 대차대조표 혹은 CA Certificate - 기본적으로 Balance Sheet, P&L, Income Tax 관련 항목들을 제출 - 신규 법인이라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회계사를 통해 법인이 언제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해당 항목들을 제출할 수 없음을 증빙하는 인증서를 발급 및 제출	Plain Paper or CA Letter Head	신설법인이라 해당사항 없으므로, 지금까지 매출이 없다는 레터를 회계사로부터 받아서 제출 추후 세관 요청시 Balance Sheet 제출
8. 인도법인 제품별 예상 판매손익	수입자 Letter Head	로컬 판매 인보이스 첨부 - - 물류사 또는 통관사

비교 : 판가, 물류비, 관세 등 고려		Draft 제공
-----------------------	--	----------

※ 해당서류 준비 및 작성 시 법인설립 단계부터 물류사 또는 통관사와 협업을 추천함

자료원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 3-8-2-3. HS-Code 및 관세 사전검토

인도 수입통관이 어려운 점은 HS-Code 적용 시 세관 및 세관원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고, 요구하는 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여 수입예정제품(설비 및 원부자재 등)의 수출국 HS-Code 를 기준으로 인도세관에서 동일하게 적용가능여부와 필요서류, 필요인증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제품별 수출국 HS-Code 와 함께 영문카탈로그(용도 및 해당제품을 통해 생산되는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를 통해 동일한 HS-Code 로의 수입가능여부 및 필요서류, 필요인증 등을 확인한다. 설비의 경우 어렵겠지만 원부자재인 경우에는 실물 샘플을 통해 인도세관에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대표적으로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AERB(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인증 등이 있으며, 생각과 달리 이러한 인증을 취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제품 수입지연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인설립 초기단계에서 사전검토는 향후 인도 비즈니스 전략수립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확정된 HS-Code 를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CO\_Certificate of Origin) 관세혜택의 수혜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인도 CEPA, 인도-ASEAN FTA(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혜택이 있다. 이는 향후 원부자재의 소싱전략 수립 시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확정된 HS-Code 를 기준으로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가능여부 역시 확인이 필수적이다. 인도에서 인정하는 HS-Code 와 수출국의 HS-Code 기준이 상이하여, 인도에서 원산지증명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출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도 종종 발생하므로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기 두가지를 사전에 검토완료 후에는 소량의 제품을 수입하여 해당 HS-Code 와 원산지증명서, 필요서류, 인증의 적용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수입통관실적을 확보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통관 상의 시시비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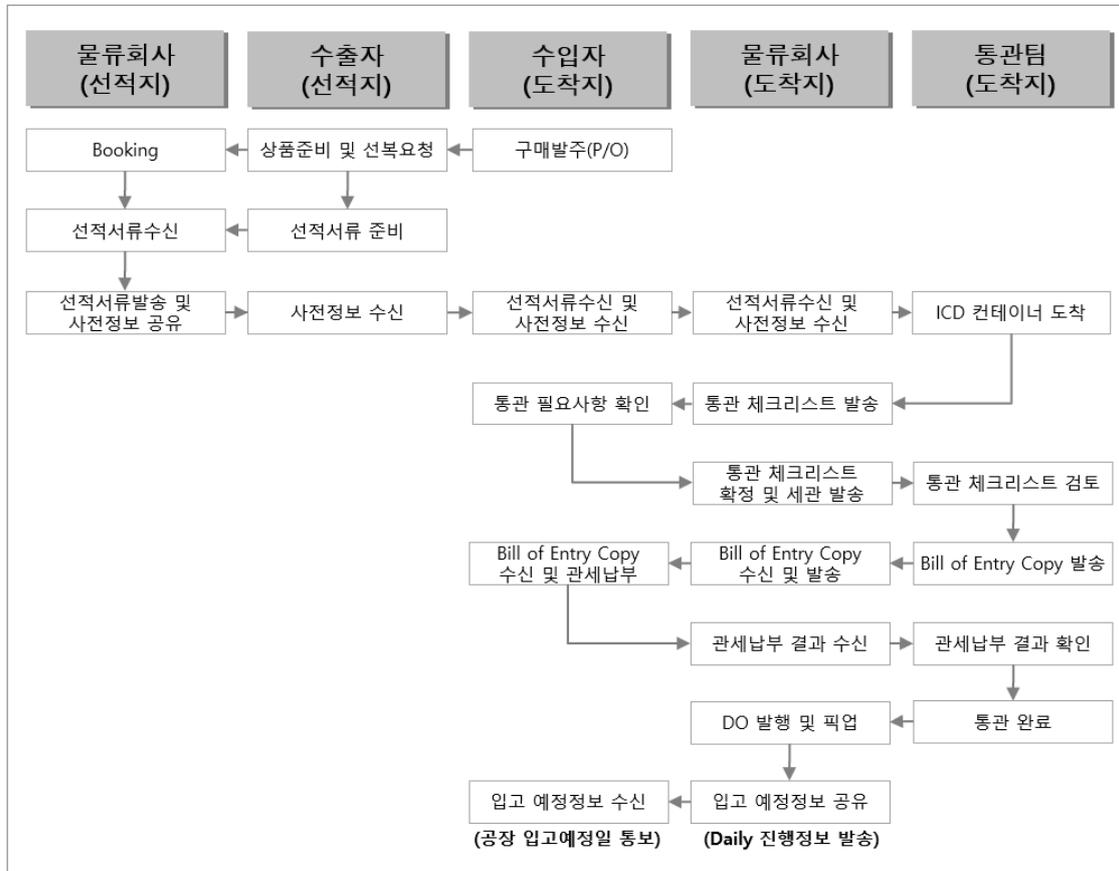
표 3-8-2-3-1. 인도 FTA 현황

국가명
US
Argentina
Afghanistan
ASEAN - 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Bhutan
Chile
Colombia
European Union
EFTA (Iceland, Lichtenstein, Norway, Switzerland)
Finland
Japan
Malaysia
Mauritius
Mercosur (Argentina, Brazil, Paraguay, Uruguay and Venezuela) Note: Venezuela was suspended from the grouping in 2016.
Nepal
Singapore
Sri Lanka
South Korea
SAARC - Bangladesh, Bhutan, India, Maldives, Nepal, Pakistan and Sri Lanka

자료원 :인도 상공부(<https://commerce.gov.in/>)

### 3-8-3. 수입물류 실행

그림 3-8-3-1. 수입물류절차



자료원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 3-8-3-1. 선적서류 준비 및 포장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구매발주 접수 후 기본적인 선적서류인 Commercial Invoice 와 Packing List 를 작성하여 선적지 물류회사에 선복요청 시 함께 송부한다.

선적지 물류사는 1 차 검토 후 도착지 물류사 및 수입자와 서류의 적합성(사전 협의된 HS-Code 사용여부, Packing Detail,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등) 및 선적일정을 최종 확인한다.

비교적 간단한 원재료 및 일반부자재에 비해, 설비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원활한 인도 내 수입통관을 위해 포장 및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작성 시 도착지 물류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가이드를 받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첫 수입 건의 경우 100% 실물검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Packing List 작성 시 각 부품 및 설비가 포장 되어있는 박스번호와 컨테이너 번호를 매칭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물검사 시 컨테이너 내 아이템 정보를 Packing List 와 신속하게 매칭할 수 있어 실물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세관원에게 첫 수입 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된 업체임을 어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다음 차수의 설비의 통관 시에도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는 Key Point 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내 신고되지 않은 제품들을 포장하게 되는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통관이 불가하여 Ship Back 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다음 차수의 설비의 통관 시에도 리드타임이 늘어나게 되므로, 신고된 제품 외 포장은 절대 금지사항이다.

**그림 3-8-3-1-1. 사례 \_ 세관원 실물검사**



실물검사 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에 기재된 명칭과의 대조과정이 있으므로, 설비 포장 시 컨테이너 내 적입 시 도어 전개 기준으로 포장 전면 부에 인보이스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하는 제품명 및 표식(NEW/USED), 포장박스 번호 부착하게 되면 실물검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3-8-3-2. 통관 시 필요서류 구비 (원산지 증명서 포함)**

기본적으로 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 3-8-3-2-1. 통관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필요서류 상세	해당 제품
1. 기본 선적서류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원부자재, 신규&중고설비
-		

2. 제품별 영문 카탈로그	설비 및 부자재별 사진/기본사양 /용도/작동원리 등이 영문으로 작성된 카탈로그	원부자재 : 최초 1 회  신규 및 중고설비  : 수입 건별
3. 수입설비 리스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AERB(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등 HS-Code 별 요구됨	원부자재, 신규&중고설비
4. 원산지 증명서	한인도 CEPA, 베트남 ASEAN 등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원부자재, 신규설비  : 수입 건별

※ HS-Code 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및 인증이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 사전확인 필수

※ 원산지 증명서는 신규물품 수입 시 최초 1 회 사전에 Draft 발행 후 적절성 사전검토 필수

※ 원산지 증명서는 원본제출이 원칙(통관신청은 사본으로 가능하나 반출 시 원본제출 필수)

자료원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한 통관과 관련하여, 인도 내무부는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2020 년 4 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후, 후속 조치로서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규정(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 Rule, 2020)], 약칭 CAROTAR 2020 을 제정, 2020 년 9 월 21 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 그림 3-8-3-2-2. Form I

**Section II**  
(To be filled after filing of Bill of Entry)

(a) **Name of the importer:**

(b) **Bill of Entry (B/E)No. and Date:**

(c) **Customs Station where B/E was filed:**

(d) **Goods on which preferential rate of duty has been claimed:**

S.no.	Description	Classification (8 digit)

**Section III**  
(This information should be possessed before import of goods)

**Part A:**

1. Briefly describe the production process undertaken in country of origin with respect to production of the imported good. Also, state which of the originating criteria prescribed in the Rules of Origin has been claimed. For example, WO, RVC + CTH/CTSH or CTH or CC or RVC, etc.

[WO: Wholly Obtained; RVC: Regional Value Content; CTH: Change in Tariff Head; CTSH: Change in Tariff Sub-Head; CC: Change in Chapter]

**Note 1:** Where the good is claimed to be "Wholly Obtained", mention the process through which it is claimed to fall under this category. Each trade agreement lists out such processes under a specific rule and may vary from agreement to agreement.

Page 10 of 13

Note: If origin of any of the components used in manufacture of final good cannot be ascertained, same should be treated as non-originating.

2.

a. Is the de minimis provision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 subject to this request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If yes, describe such material and the percentage value or quantity as applicable.
b. Is the accumulation/cumulation provision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 subject to this request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If yes, describe the manner and extent of cumulation.
c. Has any other additional criteria such as indirect/neutral materials, packing materials, etc. used in ascertaining whether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If yes, provide the criteria used: Describe the material concerned:
d. Is the originating criteria based on value content?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If yes, provide the following: (i) percentage of local value content: (ii) components which constitute value addition (e.g. material, profit, labour, overhead cost, etc.):
e. Has CTC rule been applied for meeting originating criteria?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If yes, provide HS of non-originating material/components used in production of good:
f. Has process rule been applied in ascertaining origin of good subject to this request?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If yes, provide the rule applied:
g. Has the CoO been issued retrospectively?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If yes, provide reasons for same:

Page 12 of 13

Examples:

- goods obtained by hunting or trapping within the land territory, or fishing or aquaculture conducted within the internal waters or within the territorial sea of the Party;
- goods produced on board factory ships from the goods referred to in preceding paragraph, provided that such factory ships are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 and fly its flag.

**Note 2:** If the goods are not wholly obtained, the manufacturing/processing undertaken in country of origin must be ascertained.

Description of goods	Production process	Originating Criterion
1.		
2.		

**Part B:**

(To be filled if originating criteria is NOT wholly obtained, for each of such good under import, on separate sheets)

1. State the following information for each originating material or component used in production of good subject to this request. If no originating material/components were used, same should be indicated as "None".

**Description of good under import and its classification (8 digit):**

Description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or Component	Whether manufactured by producer of final good	Whether procured by producer locally from a third party	In case procured from third party, did producer of final good seek conformation and documentary proof of origin of these component?
	(Yes/No)	(Yes/No)	(Yes/No)
1.			
2.			

Page 11 of 13

h. Has the consignment in question been directly shipped from country of origin?	<input type="radio"/> Yes <input type="radio"/> No If not, then has it been ascertained that same is as per provisions of the concerned agreement?  How has it been ascertained that goods have met the prescribed conditions of Direct Shipment?
--	---

[F. No. 15021/18/2020(ICD)]

(Ananth Rathakrishnan)  
Deputy Secretary to the Government of India

Page 13 of 13

자료원 : 인도 재무부 고시(No. 81\_2020-Customs (N.T.))

이로 인해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수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FORM I)가 추가되었으며,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 제출 외에도 수입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역 및 증명을 위한 다양한 근거 자료의 보유가 요구되며, 또한 인도세관은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관련 추가 정보 요구 가능한 상황이다.

인도 정부 측에서 “FORM I”에 대한 포맷을 공식화하여 공유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존 재무부 고시에 있는 4 페이지 가량의 샘플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재무부 고시에 따르면, “FORM I”는 ‘SECTION II’ 와 ‘SECTION III’ 로 구성이 되어 있다. ‘SECTION II’는 수입자가 작성하고, ‘SECTION III’는 수입자가 관련 정보를 수출자(원산지 증명서 발급 제품의 수출자 및 제조사)로부터 수신하여 작성한다. 생산원가 등 정보보안을 이유로 수출자 및 제조사 측에서 ‘SECTION III’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출자 및 제조사와 관련내용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요청자료 제출이 미흡하거나, 원산지 충족요건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경우,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할 관세에 대한 은행의 보증서(Bank Guarantee) 제공 후 임시(Provisional)통관을 진행하고, 사후 검증을 받는 방식으로 통관이 진행된다.

또한 강화된 원산지 증명서 관리 신규 규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든 수입자들은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및 C.O 등의 선적서류를 매 선적분의 수입통관 종료 후 “FORM I”와 함께 5 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는 향후 세관에서 과거 기록조회를 요청 시 수입자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통관 완료된 선적분의 기록 검증 대비를 5 년 동안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 3-8-3-3. 수입통관

인도의 수입통관의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일반 원재료 기준의 프로세스이며, 세관의 상황 조건 및 세관원의 재량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장비/설비 및 각종 Certificate 및 Letter 등을 제출해야 하는 특수 아이템의 경우, 아래의 프로세스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라며, 실제 진행 시 물류사와 협의할 것을 추천한다.

그림 3-8-3-3-1. 수입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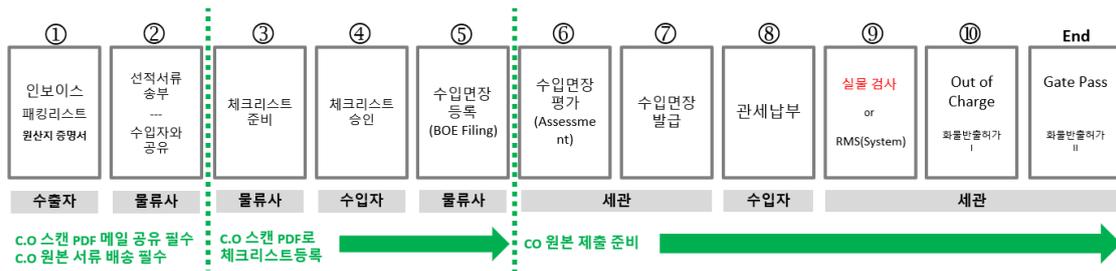


표 3-8-3-3-1. 수입통관 절차

구분	상세절차
①②	- 수출자는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혹은 기타 FTA 혜택관련 인증서류와 함께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선적지 물류사에 공유 및 검토
③④	- 선적지 물류사로부터 수출 선적서류를 전달받은 후 도착지 물류사는 세관 시스템에 수입면장(Bill of Entry) 최종 등록 전, 적용 세번 및 예상 관세율의 정보를 수입자가 알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Check List)를 작성하여 수입자 최종 컨펌을 요청함  - 수입자는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토대로 정식 수입면장(Bill Of Entry)를 신고할 지 혹은 내용 수정 후 신고를 진행할 지를 최종 컨펌하여 회신함  -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선적서류 및 원산지 증명서 스캔본 필요함
⑤	- 수입자의 최종 결정에 따라, 물류사에서 세관 시스템에 수입면장(BOE) 등록
⑥	- 세관은 우선 제출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스캔 PDF 등 파일링된 정보를 토대로 수입 화물에 대한 정보를 검증 시작  - 이 과정에서, 만약 세관 측에서는 질의가 발생할 경우 ICEGATE 시스템 화면 을 통해 질의를 제기하며, 수입자는 해당 질의에 대해 소명해야 함.  - 만약 소명을 위해 제출한 추가 데이터가 질의 해소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의 질의가 해소가 되면 Bill of Entry Assessment 라고 하여 세관 내의 Appraiser Group 을 통해 수입면장 최종 검증 및 평가 단계인 Bill of Entry Assessment 단계로 진입함. 이 과정에서 특별한 질의가 없다면 평가 단계 종료 후 최종 수입면장(Bill of Entry)가 세관 시스템을 통해 발행됨</li> <li>단, 이 시점(Bill of Entry Assessment)에서도 Appraiser Group 을 구성하는 세관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또한 수입자는 충실하게 소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불이행시 다음단계 진행 불가)</li> <li>- 또한 이 단계에서부터 수입자는 세관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원산지 증명서 원본(Original) 출력물을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li> </ul>
⑦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 시스템에 의해 수입면장이 발행이 된 후 수입자는 관세 납부를 진행함 (관세 미납시 추후 단계 진행 불가)</li> <li>- 관세납부는 국영은행으로만 진행이 가능함</li> <li>→ 국영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물류사 계좌를 통해 우회납부 가능함</li> </ul>
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관 시스템은 “Examination Order”를 발급하며 이를 통해 해당 선적분의 실물검수 또는 RMS(무심사 통관) 진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li> </ul>
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물 검수 혹은 RMS 절차 종료 후, 세관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Out of Charge”를 진행함</li> <li>→ 이 시점에서 수입자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Original) 제출해야 함</li> </ul>

수입통관의 경우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수입하는 화물의 종류는 중고설비, 신규설비, 원부자재, 위험물인 경우로 구분하여 도착 전 확인사항과 도착 후 필요서류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표 3-8-3-3-2. 중고설비 통관

구분	중고설비
<p>도착 전 확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상태 사전확인 : 사진 또는 실물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 시 도색 등의 작업을 통해 최대한 오래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만들면 통관 시 유리함</li> </ul> </li> <li>- 관세율 확인 : HS-Code 및 영문명을 통한 인도 내 관세율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설비 관세혜택 적용 불가</li> </ul> </li> <li>- 인보이스 밸류에 대한 증빙자료 : 내부 Asset List 의 감가 잔존금액, 최초 구매 인보이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 불가 시 시장가격 확인(현 시장에서 판매되는 중고설비의 경우 견적서 가능)</li> </ul> </li> <li>- 포장상태 최종 점검 : 한국 및 중국, 베트남발에 따라 달라지는 인도 내 통관 프로세스는 없으나 특히 중국발, 베트남발의 경우 포장상태 사전점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불량에 따른 보험처리 시 설비 셋업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됨</li> </ul> </li> </ul>
<p>도착 후 진행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 시 필요서류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등 선적서류, 설비 및 제품별 영문 카탈로그</li> <li>- CE(Chartered Engineered) Certific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 시작 전 인보이스 밸류 및 사용기간(5 년 이상 인도 내 사용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li> <li>→ 세관이 아닌 외부 기관에 진행하며, 이에 따라 인보이스 밸류 (과세가격)가 변경되기도 하며, 별도비용 발생함</li> </ul> </li> <li>- 통관 리드타임 : 5~10 일 _ 수량에 따라 상이함</li> </ul>

	<p>→ CE Certificate 절차 및 통관 시 실물검사 비율이 높아 리드타임 증가</p> <p>- 설비 크기로 인해 FR(Flat Rack) 컨테이너 사용 시 철도이동이 불가하여 Nava Sheva 에서 통관 후 트럭을 통한 이동</p> <p>→ 이에 따라 통관 및 물류비용, 리드타임의 변동이 불가피함</p>
--	---

**자료원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표 3-8-3-3-3. 신규설비 통관**

구분	신규설비
<p>도착 전 확인사항</p>	<p>- 관세율 확인 : HS-Code 및 영문명을 통한 인도 내 관세율 및 CEPA(한국), ASEAN(베트남) 등 원산지 혜택 적용가능 여부 확인</p> <p>→ 신규설비에 한하여 상기 관세혜택 적용가능</p> <p>→ 원산지 관세혜택 적용 가능 시 사전에 각 국가에서 CO(Certificate of Origin) 신청 및 준비</p> <p>→ 통관지 도착 전 CO Copy 전달 및 통관완료 전 원본전달 필수</p> <p>- 무상임대는 원칙적으로 불가함</p> <p>- 포장상태 최종 점검 : 한국 및 중국, 베트남발에 따라 달라지는 인도 내 통관 프로세스는 없으나 특히 중국발, 베트남발의 경우 포장상태 사전점검 필수</p> <p>→ 포장불량에 따른 보험처리 시 설비 셋업 등 시간이 오래 소요됨</p>
<p>도착 후 진행사항</p>	<p>- 통관 시 필요서류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등 선적서류, 설비 및 제품별 영문 카탈로그</p> <p>- 통관 시 인보이스 밸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며, 필요 시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 또는 방문설명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이 가능함</p> <p>- 통관 리드타임 : 3~5 일 _ 수량에 따라 상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 크기로 인해 FR(Flat Rack) 컨테이너 사용 시 철도이동이 불가하여</li> <li>Nava Sheva 에서 통관 후 트럭을 통한 이동</li> <li>→ 이에 따라 통관 및 물류비용, 리드타임의 변동이 불가피함</li> </ul>
--	---

**자료원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표 3-8-3-4. 원부자재 통관**

구분	원부자재
도착 전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율 확인 : HS-Code 및 영문명을 통한 인도 내 관세율 및</li> <li>CEPA(한국), ASEAN(베트남) 등 원산지 혜택 적용가능 여부 확인</li> <li>→ 가장 좋은 방법은 수입예정인 원부자재의 실물(샘플)을 통해</li> <li>인도세관에 직접 확인</li> <li>→ 원산지 관세혜택 적용 가능 시 사전에 각 국가에서 CO(Certificate of Origin) 신청 및 준비</li> <li>→ 관세적용 기준(KG, EA, 면적 등) 사전 확인</li> <li>→ 통관지 도착 전 CO Copy 전달 및 통관완료 전 원본전달 필수</li> </ul>
도착 후 진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 시 필요서류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등 선적서류,</li> <li style="text-align: center;">최초 수입 시 제품별 영문 카탈로그</li> <li>- 통관 리드타임 : 2~3 일 _ 원산지 혜택 통관여부에 따라 달라짐</li> </ul>

**자료원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표 3-8-3-5. 위험물 통관**

구분	위험물
도착 전 확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확인사항은 일반 원부자재와 동일함</li> <li>- 선적 및 현지철도연결, 통관가능 여부 확인</li> </ul>

	<p>→ 화주 : 수출예정 상품에 대하여 MSDS 준비</p> <p>→ 선적지 물류사 : 선사 및 항공사 선적 가능여부 확인</p> <p>→ 도착지 물류사 : 철송가능여부 및 통관지 내 통관 가능여부 확인</p> <p>- 위험물의 품목 및 등급별 통관절차 등이 다양하므로 사전확인 필수</p> <p>→ 위험물은 품목별로 사전에 인도세관에 승인 또는 통관절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인증 및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출지에서 선적 전에 사전 확인하는 절차 필수</p>
<p>도착 후 진행사항</p>	<p>- 통관 시 필요서류 :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MSDS 등</p> <p>→ 위험물의 품목 및 등급별 추가적인 필요서류 요청 가능함</p> <p>- 통관 리드타임 : 2~3 일 _ 원산지 혜택 통관여부에 따라 달라짐</p>

자료원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인도의 관세는 BCD(Basic Customs Duty), SWS(Social Welfare Surcharge), GST(Goods and Service Tax)로 구성되어 있고, HS-Code 별해당 관세율은 상이하므로, 사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HS-Code 및 관세율, 관세계산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의 표는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표 3-8-3-3-6. 관세 항목

항목	세금항목 상세	비고
Assessable Value	과세가격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	통상적으로 CIF Value
① BCD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로 통상 관세율을 말할 때 사용하는 항목	
② SWS	사회복지세(Social Welfare Surcharge) 개념으로 한국의 교육세, 통어촌 특별세와 유사함	
③ GST	부가세(Goods and Service Tax)	

	개념으로 한국의 부가세 개념과 동일함	
--	----------------------	--

**자료원 : 한솔로지스틱스 인도법인**

예를 들어 상기 관세항목을 기준으로 관계산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ssessable Value INR 10,000,00 이고, BCD 10%, SWS 10%, GST 18%인 A 라는 제품을 수입가고 원산지 증명서를 통한 통관 시 BCD 가 0%라고 가정하여 관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원산지 증명서 미적용 통관진행

$$(1) \text{BCD} = \text{Assessable Value} \times \text{BCD} \% = \text{INR } 1,000,000 \times 15\% = \text{INR } 150,000$$

$$(2) \text{SWS} = \text{BCD} \times \text{SWS} \% = \text{INR } 150,000 \times 10\% = \text{INR } 15,000$$

$$(3) \text{GST} = (\text{Assessable Value} + \text{BCD} + \text{SWS}) \times \text{GST} \% \\ = (\text{INR } 1,000,000 + \text{INR } 150,000 + \text{INR } 15,000) \times 18\% = \text{INR } 209,700$$

$$(4) \text{Total Customs Duty} = \text{BCD} + \text{SWS} + \text{GST} = \text{INR } 150,000 + \text{INR } 15,000 + \text{INR } 209,700 \\ = \text{INR } 374,700$$

- 원산지 증명서 적용 통관진행

$$(1) \text{BCD} = \text{Assessable Value} \times \text{BCD} \% = \text{INR } 1,000,000 \times 0\% = \text{INR } 0$$

$$(2) \text{SWS} = \text{BCD} \times \text{SWS} \% = \text{INR } 0 \times 10\% = \text{INR } 0$$

$$(3) \text{GST} = (\text{Assessable Value} + \text{BCD} + \text{SWS}) \times \text{GST} \% \\ = (\text{INR } 1,000,000 + \text{INR } 0 + \text{INR } 0) \times 18\% = \text{INR } 180,000$$

$$(4) \text{Total Customs Duty} = \text{BCD} + \text{SWS} + \text{GST} = \text{INR } 0 + \text{INR } 0 + \text{INR } 0 \\ = \text{INR } 180,000$$

관세는 BOE(Bill of Entry)가 발급되면 최종적으로 관세를 확인 가능하며, 인도세관의 관세포털 ICEGATE (<https://enquiry.icegate.gov.in/>)에서 Challan(납부고지서)를 확인 후 국영은행을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참고적으로 인도는 관세납부가 국영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므로, 법인설립 후 국영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불가 시 단기적으로 물류사의 국영은행 계좌를 통해 우회납부가 가능하다.

### 3-8-3-4. 배송

통관의 최종단계인 Gate Pass(그림 7-6. 수입통관 절차 및 표 7-7. 수입통관 절차 참조) 완료 후 통관지에서 반출 및 배송이 가능해진다.

인도의 대도시의 경우 상용차량의 도시 내 진입이 불가한 “No-Entry Time”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항과 ICD TKD 가 위치한 델리 또한 운영 중이다. (각 도시별 “No-Entry Time”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법인 또는 공장설립 예정지에 따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델리 No-Entry Time : 7AM ~ 11AM, 4PM ~ 11PM \_ 상용차량 도시 내 진입불가

이로 인해 공항 및 ICD 측, 통관지에서 통관이 완료되면, 바로 차량으로 배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11PM 이후 배송차량 출발하여 야간입고 가능 시 야간에 도착, 야간입고 불가 시 익일 오전에 배송이 진행된다.

“E-Way Bill” 발행 또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인도의 GST 제도에서 요구되는 INR 50,000 이상의 가치를 지닌 주 간 또는 주 내에서 이동을 위해 배송 전에 온라인(<https://ewaybillgst.gov.in/login.aspx>)으로 신청을 해야 하며, 법인설립 시 사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발급받을 것을 추천한다.

필요한 정보는 수입자 GST 번호, 배송장소, 인보이스번호, 인보이스금액, HSN Code, 운송사유, 운송서류번호, 차량번호 등이다.

그림 3-8-3-4-1. E-Way Bill 공식 포털

GOODS AND SERVICES TAX  
E - WAY BILL SYSTEM

SYSTEM  
MANAGED BY  
NITC

E - WAY BILL SYSTEM LOGIN X

Username

Password

C539H

Enter Captcha

Login

Forgot Password ?    Forgot Username ?  
Forgot Trans ID ?

If you are unable to Login, you can follow the steps given in this document.

©Powered by National Informatics Centre

자료원 : <https://ewaybillgst.gov.in/login.aspx>

## 3-9. 지식재산권

### 3-9-1. 개관

#### 3-9-1-1.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이란 지적 창작물, 즉 발명, 예술분야 창작물, 사업과 상거래에 사용되는 기호, 명칭, 이미지 등 국가 및 주 경제에 기여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하는 무형자산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지식재산권은 위와 같은 지식자산을 법령 등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도의 경제 전반에 걸쳐 수많은 회사 및 개인이 법령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용신안(실용상의 편리를 위하여 물품의 형상, 구조 따위에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하는 것)'을 따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 Trademarks (상표)
- Copyrights (저작권)
- Patents (특허)
- Designs (디자인)
- 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 표시)

#### 3-9-1-2.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세계화 및 선진화된 기술이 매우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지식재산의 보호는 기업의 발명품, 브랜드 및 해외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지식자산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상품 및 제품의 발명가 및 창작자의 창의성에 대한 보상 이외에도 새로운 창작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인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체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다.

- 수익창출의 수단 :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는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나, 지식재산권은 이를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로 전환된다.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통하여 로열티와 함께 전체적인 시장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 수출기업의 사업기회 :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생산성은 지식재산권에 의하여 향상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자신의 로고나 디자인 등 지식자산을 활용하여 인도를 포함한 해외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현지 법인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거나 독점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3자의 침해로부터의 보호 : 고유한 아이디어 또는 발명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복제 또는 침해하려는 자들로부터 지식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모든 회사가 소유한 지식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장의 요구와 상황을 평가한 후 해당 지식재산권을 어떠한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지를 결정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비즈니스의 성장 :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여 꾸준한 성장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독점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보호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 진출 초기 단계에서 해당 부문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보호는 발명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을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식재산권의 소유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동안 타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3-9-1-3. 인도 지식재산권 제도의 최근 개선 동향**

최근 인도 특허청은 특허 및 상표에 대한 기술 인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처리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특히 투명한 지식재산권 프레임워크 제공,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보급, 국가 내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국제 양자 협력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 **지식재산권 사무소의 현대화**

인도 전역의 지식재산권 사무소는 인프라 업그레이드, 기술 인력의 확충, 컴퓨터화, 절차 및 워크플로우의 재설계,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및 IT 활성화 등을 통하여 현대화되어 왔다. 지난 5년 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절차는 대부분 전산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관리가 개선되고, 강력한 공공 인터페이스 구축 및 지식재산권 사무소의 기능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 **인력의 확충**

지연업무를 해소하고 지식재산권 출원의 신속한 심사/거절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사무소의 인력이 대폭 확충되었다. 2016년에는 특허 및 디자인 심사관을 모집하였으며, 2019년에는 분야별로 220명의 특허 심사관을 대규모로 신규 채용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였다. 동시에 행정관(Controller)들의 인력 또한 상당 수 충원하였다. 또한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심사관도 새로 채용하여, 지식재산권 전반 절차의 인력 강화에 나섰다.

표 3-9-1-3-1. 2015년 3월과 2020년 5월 현재 인력 현황 비교 (단위: 명)

날짜	특허		상표	
	심사관	행정관	심사관	등록관
2015. 3. 31.	183	89	64	13
2020. 5. 26.	610(673 배정)	245(265 배정)	181(235 배정)	22(54배정)

자료원 : IPO annual report 2015-16, 2016-17, 2017-18,

### 온라인 전자 절차 개선

최근 인도 정부는 전자 절차 개선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의 간소화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특허,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시 전자출원이 연중무휴로 24시간 가능해 졌으며, 이에 따라 특허 및 상표의 경우 90%, 디자인은 약 75%의 전자출원이 증가됨. 온라인 출원 장려를 위하여 전자 출원으로 특허 및 상표 등록시 10%의 리베이트가 지급되며, 모든 지식재산권 절차 처리 시 진행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에 동 내용의 이메일 통지가 가능해졌고,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디지털 형식의 등록증(Certificates of Grant/Registration)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지식재산권사무소의 웹사이트는 콘텐츠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속 환경 개선을 통하여 정보 제공 및 탐색이 쉽도록 업데이트 되었으며, 특히 디자인, 상표 및 지리적표시의 출원 및 심사진행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로그인 없이 관련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 고충처리 민원 절차 개선

2017년 3월 1일부터 인도 정부 지식재산권 웹사이트(www.ipindia.nic.in)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피드백/제안/고충처리 기타 질의 등 관련 각종 민원 접수가 가능해 졌고, 특히 이해관계자의 민원 제기 시 이메일로 회신이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 3-9-1-4. 지식재산 관련 규정

인도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1957, 이하 ‘저작권법’)
- 상표법(The Trade Marks Act,1999, 이하 ‘상표법’)
- 특허법(The Patent Act,1970, 이하 ‘특허법’)
- 디자인법(The Designs Act,2000, 이하 ‘디자인법’)

- 반도체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법, 2000(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s Act,2000)
-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Act,1999, 이하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 또는 ‘지리적표시법’)
- 식물, 품종 및 농민 권리 보호법(The Protection of Plants and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2001)
- 생물 다양성 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2002)

### 3-9-1-5. 지식재산 유관 기관

#### 산업정책진흥국(DPIIT)

인도 중앙정부는 1995년 상공부 내 산업정책진흥국(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DPIIT)을 설립하여 인도 경제의 점진적 시장 개방을 주도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등 산업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다.

산업정책진흥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 디자인, 상표 및 상품의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상품의 홍보와 보호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감독하는 주무 관청으로서 기능하며, 지식재산권 등록에 관한 정책 이행도 함께 담당한다.

공식 웹사이트(<https://dipp.gov.in/>)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특허청(CGPDTM)

특허·디자인·상표 등 위 산업정책진흥국 산하의 인도의 지식재산권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특허(및 디자인, 상표 관리)청(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Trade Marks, 이하 ‘CGPDTM’)<sup>195</sup>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행정 집행 중앙부서로서, 인도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상품지리적 표시등록보호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관장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부에 자문을 제공한다.

콜카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첸나이, 뉴델리, 뭄바이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다.<sup>196</sup>

디자인등록사무소(The Design Office)<sup>197</sup>는 콜카타 특허청 본부 위치하고 있으며,

<sup>195</sup> <http://www.ipindia.nic.in/index.htm>

<sup>196</sup> <http://www.ipindia.nic.in/patents.htm>; <http://www.ipindia.nic.in/trade-marks.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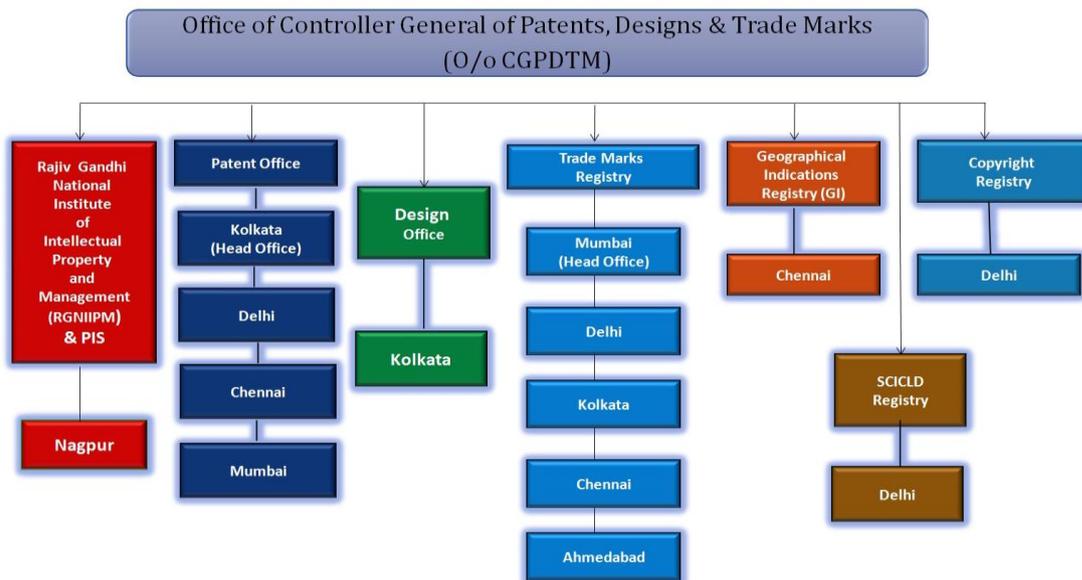
<sup>197</sup> <http://www.ipindia.nic.in/designs.htm>

지리적표시등록사무소(The Geographical Indications Registry)<sup>198</sup>는 첸나이에 위치하고 있다.<sup>199</sup>

인도 특허정보시스템 사무소(The Offices of The Patent Information System: PIS) 및 인도 지식재산권 관리기구(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NIIPM)는 나그푸르에 위치한다.

공식 웹사이트(<https://ipindia.gov.in>)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9-1-5-1. CGPDTM 조직도



자료원 : <http://www.ipindia.nic.in/about-us.htm>

### 간접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BIC)

간접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 Customs, 이하 'CBIC')는 한국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산하의 기관이다. 한국의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도의 CBIC는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간접세를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세관(Customs)은 CBIC의 하부 기관에 해당한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인도의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라 중앙 정부는 상표, 저작권,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

<sup>198</sup> <http://www.ipindia.nic.in/gi.htm>

<sup>199</sup> <https://ipindia.gov.in/about-us.htm>

공식 웹사이트(<https://www.cbic.gov.in/>)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경제범죄 수사과(EOW)**

경제 범죄 수사과(Economic Offence Wing, 이하 'EOW')는 위조, 불법복제 및 사이버 범죄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특정 영역과 범죄를 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수사과 기소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경찰에서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 수사관은 상표권 침해 물품, 허위 거래 표시(False Trade Description), 모조 의류, 가방, 시계, 전자제품, 영화 관련 침해 물품 등 일체를 관할 구역 내에서 압수할 수 있다. 기타 경찰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집행하는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후술할 경찰의 지식재산권 집행 방식(IPR ENFORCEMENT TOOLKIT FOR POLICE)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지식재산권팀(Cell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 CIPAM)**

지식재산권팀(Cell for IPR Promotion & Management, 이하 'CIPAM')은 인도 산업정책진흥국 산하 전문 기관으로 CIPAM은 정부의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과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치를 보장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사법, 경찰 및 세관 등의 기관이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효과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식웹사이트(<http://cipam.gov.in/>)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3-9-2. 상표**

### **3-9-2-1. 개관**

인도에서 상표는 법률 및 관습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상표권을 다루는 최초의 법률은 1940년 상표법으로, 상표권의 등록과 법적으로 보호 기구를 마련했다. 1940년 상표법은 1958년 상표 및 상품표기법으로 대체되었고, 이는 다시 1999년 상표법(The Trademarks Act, 1999)으로 대체되었으며, 이 법은 2017년 상표 규칙과 함께 현재 상표권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1999년 상표법은 2010년 상표법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상표권과 관련하여 인도에서는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약,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의무가 요구되며, 인도는 상품과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는 고유 분류인 니스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를 따른다.

상표권 등록을 통하여, 상표의 소유자가 상표법에 근거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에 상표를 사용하거나(기호 ® 사용) 타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도 구제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도록 한다. 또한 제 3 자의 무단 사용에 대한 침해와 구제 청구에 대해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인도 시장 진출 시 자사의 상표 출원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실시료(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라이선스를 통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해당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해당 상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표의 인지도를 높여 판매량 증가로 이어져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상표의 추가 라이선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또한 높이게 된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한다.

### **3-9-2-2. 정의 및 보호범위**

상표는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회사가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타인의 것과 식별될 수 있도록, 문자, 이름, 브랜드, 장치, 라벨, 서명, 포장, 숫자 또는 색채의 조합 등의 표장 또는 시각적 기호를 의미한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법에 의한 상표권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강력한 보호가 가능하지만,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상표의 사용으로서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다.

인도의 상표법은 서비스표와 입체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며, 관련 제품이 특정 표준을 준수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표장' 및 단체의 회원이 특정 단체가 정한 품질 수준 및 기타 요구사항 등으로 자신을 식별하도록 하는 '단체표장'의 등록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 **3-9-2-3. 출원 및 등록**

#### **3-9-2-3-1. 기간**

상표법 제25조 (1)에 따르면 등록상표의 보호 기간은 최초 10년이지만, 등록된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10년을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sup>200</sup>

### 3-9-2-3-2. 요건

인도의 상표법은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상대적 거절사유'와 '절대적 거절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상표가 권리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경우를 나열함으로써 상표권의 요건을 제도화하고 있다.

인도 상표법 제 9 조의 상표 등록에 관한 절대적 거절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 (a)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즉,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할 수 없는 것
- (b) 거래상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의도하는 목적, 가치, 원산지 또는 해당 상품 생산의 시기 또는 서비스 제공의 시기 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다른 특성을 의미하는 표장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 (a) 현행 언어에 있어서 또는 선의의 확립한 거래 관행에 있어서 관습화된 표장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 다만, 등록출원일 전에 사용의 결과로서 식별력을 획득한 상표이거나 주지 상표일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 (a) 공중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일 때
- (b) 인도 국민의 계급 또는 종파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 (c) 중상적 또는 외설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 (d) 그 사용이 상징 및 명칭(부정사용 방지) 법 (Emblems and Names (Prevention of Improper Use) Act, 1950)에 의해 금지되고 있을 때

(3) 다음의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장은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 (a) 상품 자체의 특성에서 유래된 상품의 형상
- (b) 기술적 성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상품의 형상
- (c)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그 밖에 상대적 거절사유로서 선행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선행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유사한 경우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며, 선행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상표'인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유사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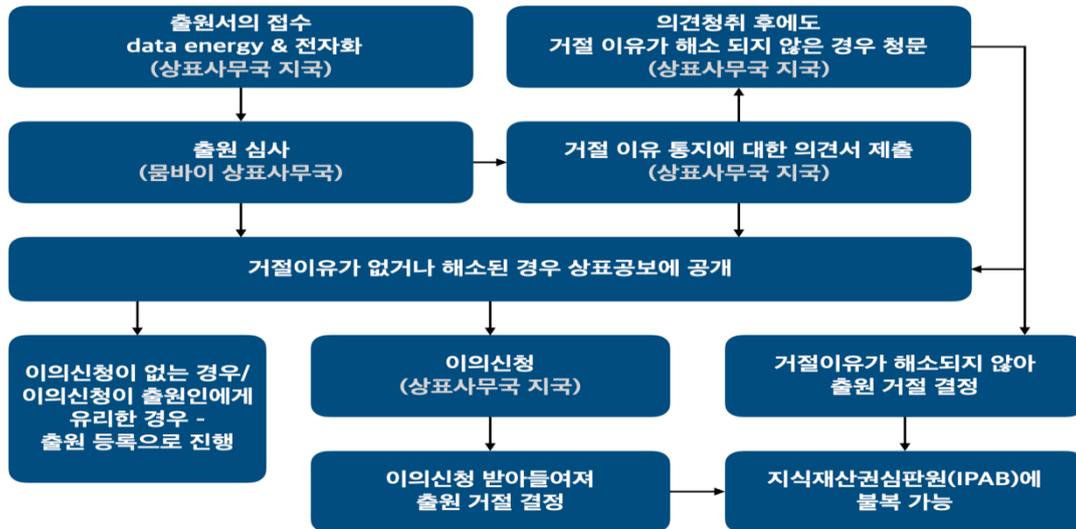
<sup>200</sup> "25. Duration, renewal, removal and restoration of registration. - (1) The registration of a trade mark,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shall be for a period of ten years, but may be renew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ection 25 of the Trademarks Act, 1999"

거절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행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고 경합에 의하여 모두 사용되는 경우라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다.

### 3-9-2-3-3. 절차

다음 흐름도는 상표 출원 시의 심사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sup>201</sup>

그림 3-9-2-3-3-1. 인도 상표 출원 심사절차 요약



자료원 : <https://ipindia.gov.in/workflow-chart.htm>

상표등록은 거절 이유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약 18 ~ 24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나, 최근 행정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그 기간이 많이 단축되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라면 7개월 이내에도 등록 절차가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02</sup>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실무적으로 상표 출원 및 등록을 위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인도 내 대리인 선정

인도에서 상표를 출원할 상표사무소(Trademark Registry)의 관할은 영업소의 소재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도 내 영업소가 없는 상표의 출원인은 대리인(agent) 또는 변호사(attorney)를 통하여 출원하여야 한다. CGPDTM의 웹사이트에서 대리인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pindia.gov.in/trade-mark-agents.htm>)

<sup>201</sup> 인도 지식재산권 A to Z, Kotra, 2020

<sup>202</sup> Annual Report, 2017-2018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 Trade Marks (CGPDTM),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Government of India  
[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IP\\_India\\_Annual\\_Report\\_2019\\_Eng.pdf](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IP_India_Annual_Report_2019_Eng.pdf)

## ② 조사

상표의 조사는 상표로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 이름이나 로고 등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상표의 적격성 및 가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즉, 상표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CGPDTM 웹사이트에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

## ③ 출원

조사 결과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가 고유한 것이라면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 니스 국제상품분류에 지정된 45개의 품목류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단일 또는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상표사무소에 제출하고 출원이 접수되면 출원 할당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 ④ 심사

출원 후 상표사무소는 해당 상표가 상표법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거절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심사결과는 1-2개월 내에 받아 볼 수 있다.

## ⑤ 공시

공시는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상표공보에 게재하는 절차이다. 상표사무소가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 거절하는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견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공시 절차로 나아가게 된다. 의견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청문이 신청될 수 있다. 등록이 허가되면 상표는 상표 공보에 공개되게 된다.

## ⑥ 이의 신청

상표가 상표 공보에 공시된 후에, 공시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는 상표 공보가 공중에게 공개된 때로부터 4개월 이내(공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 1개월 연장 가능)에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⑦ 등록 및 갱신

공보에 공개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는 등록되고 상표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된 상표는 10년간 유효하고, 등록 만료 6개월 이전에 10년 기간으로 갱신 가능하며, 재갱신이 가능하므로 상표권이 장기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 3-9-2-4. 양도 및 이전

상표권의 양도란 상표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도에서 상표권은 그 전부 또는 부분을 영업권과 함께 또는 영업권 없이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미등록상표의 경우에도 영업권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 3-9-2-5. 침해 시 대응방안

##### • 침해행위

상표의 등록은 침해 행위를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상표법 제29조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등록상표는 등록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자,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상표등록의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 표장의 사용을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에 의해 침해된다. 등록상표는 등록소유자가 아닌 자 또는 사용을 허가받지 않은 자가 업으로서 표장을 사용하고, 그 표장이 다음의 이유에 의해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등록상표와의 관련성을 가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침해가 될 수 있다..

즉, 인도에서 상표의 등록 소유자 또는 또는 사용을 허락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이 등록상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된다. 또한 상품 및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더라도 해당 상표의 평판을 해하는 등에는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 동일, 유사성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으로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며,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인도에 상표 출원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기존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는 않은지, 또는 기존에 소유한 상표권이 제 3 자에 의하여 침해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 사법적 구제방안

제3자에 의하여 소유한 상표권을 침해 받은 경우, 우리 기업의 상표권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의 방안을 통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

##### ① 통지서 발송

본격적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Cease and Desist Notice(C&D)라 불리는 경고장을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송부하여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침해 구제의 1단계 절차로서 가장 신속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며, 만약 상대측이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계속한다면, 민사 또는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민사상 구제방법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 제3자의 침해행위가 있을 때의 민사상의 구제책에는 다음과 같이 피해 당사자에게 즉각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금지명령(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적인 명령)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

영구적 금지명령 : 법원의 결정시에 침해 당사자 피고가 원고의 권리에 반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임시적 금지명령 : 피고가 원고의 권리에 반하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위를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

법원의 안톤필러/수색 명령 : 신청자가 증거를 보존하고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자 소유구역에 들어가 검증, 수색 및 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법원은 또한 침해 라벨과 표장을 파기 또는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 이익의 환수명령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손해배상과 이익의 환수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형사상 구제방법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형사고소 및 그에 따른 수사개시 또한 가능할 수 있다.

형사고소 : 상표의 소유자는 상표법에 따라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구역 내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음. 신고된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음

법원의 명령 요청 : 만약 경찰조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대하여 별도로 위 조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압수수색 : 상표법은 경찰 수사 시 침해 범죄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장 없이 해당 범죄 관련 물건 등을 수색 또는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법원 결정에 따른 처벌 :

상표법에 따르면 침해자는 최소 6월에서 최대 3년의 징역과 최소 5만 루피 최대 20만 루피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법에는 누범 가중 처벌 조항이 존재하는데 이에 의하면, 동일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과 최소 10만 루피에서 최대 20만 루피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만약 우리기업의 상표가 인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가장 효과적으로 침해 구제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인도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향후 예상되는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에서의 상표권 등록이 필수적일 수 있으며, 인도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가 아니라면 완전하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받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① 통지서 발송**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침해가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송부하여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 **② 사칭(Passing off) 소송**

우리 기업의 상표권이 인도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대신 사칭 소송으로서 침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사칭 소송의 경우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의 일반 민사소송과는 요건이나 증명 등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1) 원고가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인지 여부 2) 비교되는 상표들이 혼동을 초래하는 유사성이 있는지 3) 해당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4) 상표권을 사용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여 침해 구제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 금지명령 등 다양한 가처분 결정이 가능하다.

#### **③ 형사 소송**

민사적 구제 이외에 형사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상표법이 아닌 인도 형법(Indian Penal Code)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절차가 경찰서에서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사 개시를 요청할 수도 있다.

- 행정적 구제조치

### 상표 정정/취소

‘등록된 상표의 출원인’ 또는 ‘피해를 입은 자’는 상표사무소 또는 지식재산권심판원(IPAB, 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에 상표의 정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는 등록부에 상표가 존재함에 따라 거래에 관한 이익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하며,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표와 관련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피해를 입은 자’로서 적절한 사유를 들어 침해자가 이미 등록한 상표의 취소/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특허법에 따른 청문, 등록관 결정에 대한 불복, 특허청장에 대한 불복, 상품의 지리적표시법에 따른 불복 등 지식재산권 전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하여 2003년 인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전문법률기구인 지식재산권심판원이 2021년 4월 폐지되어 앞으로 등록된 상표에 대한 정정 및 취소 신청은 고등법원 관할 대상이 될 예정이다. 향후 인도 정부의 제도 개편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등이 아직 완비되기 전이라 향후 관할권 및 이송과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들이 인도 정부에 의하여 어떻게 처리될지 주의가 필요하다.

### 세관의 단속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인도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라 중앙 정부는 상표를 포함하여 저작권, 디자인 및 지리적표시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sup>203</sup> 또한 관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공고에 따르면 동 지식재산권 법령들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상품의 인도로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금지는 지식재산권 집행규칙(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orted Goods) Enforcement Rules, 2007)에 명시된 조건 및 절차에 따르게 되며, 단속 기관은 세관이 된다.

동 집행규칙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을 압수하거나 통관절차를 중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위 권리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자신의 권리를 세관에 등록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물품이 세관에서 단속 대상이 되었을 때,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 또는 통관절차 중지 등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는 미리 등록하여 세관에서의 단속이 가능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sup>203</sup>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ppt-ipr-border-measures.pdf>

### 3-9-2-6. 주요사례

## COVID-19와 상표권 분쟁 1 : 비교광고와 상표권 침해 Lifebuoy v.s. Dettol

그림 3-9-2-6-1. Lifebuoy v. Dettol



자료원 : Kotra 뉴델리 IP-DESK 인도 지식재산권 웨비나(2020년 9월)

#### • Lifebuoy의 주장 및 청구

- 주장 : 'Dettol 리퀴드 핸드워시' TV광고는 'Lifebuoy Soap'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 이 광고에서 Lifebuoy 비누와 비슷한 모양의 붉은색 비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는 Lifebuoy 비누를 오도, 폄하하며 악의적으로 비교를 시도하는 비방 광고임. 바 형태의 비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 소비자를 기만하여 COVID-19 기간 동안 바 형태의 비누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 이는 타 상표를 폄하하는 상업광고행위 (disparagement in advertisement)의 요건에 해당함
- 청구내용 : 광고 금지 영구적 금지명령 청구

#### • Dettol의 주장

- 광고에 묘사된 비누가 Lifebuoy 비누임이 증명되지 못하였으며, 이 사안은 상표권 침해의 적절한 사례가 아님. 그러나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해당 광고의 사용 또는 전송의 중단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겠음

#### • 뭄바이 고등법원의 결정

- 비교 광고 관련 판례법으로서, 폄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 : 1) 원고의 제품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 / 허위 주장이 있어야 함 2) 소비자에 대한 기만으로 이어져야 함 3)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Dettol 리퀴드 핸드워시' TV광고는 'Lifebuoy 비누'를 고유의 모양, 형태, 색상 및 구성 등에서 폄하(disparage)하고 명예를 훼손(denigrate)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

- 광고에 보여진 비누는 'Lifebuoy'의 등록 상표 및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기만적으로 유사하며, 광고를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이를 인식·이해할 수 있음
- 광고의 악의적인 의도(malice)는 Lifebuoy와 비슷한 비누를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비누는 어떠한 세균 제거 효과도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의도했다는 사실로서 입증되었다고 판시
- **상표 침해 대응 시 유의점**
  - 인도에서 **비교 광고도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 침해 구제를 주장하는 원고 기업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이 확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 원고의 제품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 / 허위 주장이 있어야 하고, 2) 소비자에 대한 기만으로 이어지거나 미래의 소비자를 기만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3) 나아가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행동, 즉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

## COVID-19 와 상표권 분쟁 2 : 상표권 침해 Dettol v. Devtol

그림 3-9-2-6-2.



자료원 : Kotra 뉴델리 IP-DESK 인도 지식재산권 웨비나(2020년 9월)

- Dettol의 주장 및 청구
  - 주장 : 'Devtol'이라는 브랜드는 Dettol 상표권을 침해함
  - 청구내용 : 'Devtol'을 사용하여 손 세정제를 판매하거나 기타 'Dettol'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어떠한 제품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 주장, 'Devtol' 그 자체에 대한 다양한 구제조치 주장
- Mohit Petrochemicals(Devtol)의 주장

- 이미 'Devtol' 상표를 철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당 침해 상표를 사용하여 손 소독제를 제조 및 판매하지 않을 것임. 이미 침해 상표가 표기되어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 대리점 및 판매업자들에게 관련 서한을 보냄
- 델리 고등법원의 결정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의 Devtol 제품들을 모두 회수 조치할 것을 명령, 상표 침해 금지명령 결정, 피고에 대하여 10만 루피(1 lakh)의 과징금을 비영리기관인 청소년 정의 기금(Juvenile Justice Fund)에 기부하도록 명령
  - 법원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영구적 또는 한시적 금지명령이나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라벨과 상표의 파기 또는 삭제 명령이 가능
  - 법원의 영구적 금지 명령(permanent injunction)은 침해한 자에 대한 지속적인 금지 명령을 의미하며, 허락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 한시적인 금지명령(temporary injunction)은 침해 당사자가 분쟁 중인 상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또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사용 금지

### 3-9-3. 특허

인도의 특허 시스템은 특허법(Patents Act, 1970; Patents (Amendment) Act, 2005) 및 2005년 개정 특허법, 특허 규칙(Patents Rules, 2003; 2016 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인도 특허법은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보호를 제공하는데, 특허 보호란 발명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제조, 사용, 배포 또는 판매될 수 없다. 출원 및 등록이 완료되어 특허권을 소유한 특허권자는 특허법에 따라 강력하고 배타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특허 출원등록의 중요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허가 부여됨으로써 특허권자는 자신이 발명한 제품을 판매, 사용, 제공하는 타인을 배제할 수 있게 되고 특허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경우, 타인을 배제함으로써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특허권자는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권의 실시(라이선스)로서 실시료(로열티)를 지급받음으로써 수익을 높일 수 있으므로 특허권 출원등록의 중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3-9-3-1. 정의 및 보호범위

특허는 특허권자의 발명을 자신의 동의 없이 제조, 사용, 판매, 수입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제한된 기간 동안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발명에 대한 법적 권리이다.<sup>204</sup>

### 3-9-3-2. 특허의 해외출원

인도에서 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인도 영토 내에서만 그 특허권이 유효하게 된다. 특허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에서 출원을 하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도로 타 국가에서 조약 출원 또는 PCT 출원을 통하여(이하 등록절차에서 상술) 우선권 등을 주장하여 출원할 수 있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sup>205</sup>

### 3-9-3-3. 요건

특허는 해당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 또는 최초의 발명자임을 주장하는 사람; (b) 해당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 또는 최초의 발명자로부터 해당 출원을 할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 (c) 사망 직전에 해당 출원을 할 권리가 있었던 자의 법정 대리인이 출원할 수 있다. 해당 발명을 수입하거나 인도 외에서 전달받은 자는 ‘진정한 발명자 또는 최초의 발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도 특허법상 특허 등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 진보성 또는 비자명성을 갖추어야 한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특허법 제3조 및 제4조에 언급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sup>204</sup>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 Patents, Office of CGPDTM, India, 2020  
[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Final\\_FREQUENTLY\\_ASKED\\_QUESTIONS\\_-PATENT.pdf](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Final_FREQUENTLY_ASKED_QUESTIONS_-PATENT.pdf)

<sup>205</sup> startups\_IPRFacilitation\_22April2016.pdf (ipindia.gov.in)

즉,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신규성 및 비자명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특허법 제 3 조(발명이 아닌 것) 및 제 4 조(원자력에 관한 발명)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신규성**

신규성 또는 “새로운 발명”은 특허 출원일 전에 어떠한 서류의 공개에 의해 예측되지 않았거나 인도 또는 다른 국가에 있어 사용되지 않은, 즉 주제가 공용의 범위에 있지 않거나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어떠한 발명 또는 기술을 말한다. 즉, 특허법에서의 신규성이란 발명이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대중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기술이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진보성**

진보성은 현존하는 지식과 비교하여 기술적 진보나 경제적 의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지는지에 관한 발명의 특징이며, 그 발명이 비자명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발명의 비자명성임을 의미한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이 특정 산업에서 고안될 수 있거나 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발명은 실질적인 효용을 갖추어야 하고, 추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어떤 산업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특허의 대상**

특허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발명이 될 수 없어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 (a) 사소한 발명 또는 확립된 자연법칙에 반하는 발명
- (b) 해당 발명의 주된 또는 의도된 사용, 상업적 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에 심각한 해악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c) 과학적 원리의 단순한 발견이나 추상적 이론의 공식화, 또는 자연에서 발생한 생명 물질이나 비생명 물질의 발견
- (d) 알려진 물질의 이미 알려진 효능 또는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의 단순 발견,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특성 또는 용도의 단순한 발견, 위 알려진 과정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반응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기계 또는 장치
- (e)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혼합이 단순한 집합에 지나지 않는 경우

- (f) 각 장치가 기존의 방법에 따라 서로 독립해서 기능하는 경우의 물질의 단순한 배치, 재배치 또는 복제
- (h) 농업 또는 원예에 관한 방법
- (i) 약용의, 외과적, 치유적, 진단·예방적 방법 또는 기타 인간의 치료와 관련된 방법 또는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사한 치료법, 경제적 가치 또는 제품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든 과정
- (j) 미생물을 제외한 동식물(종자, 품종, 종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 동식물의 생산 또는 증식을 위한 생물학적 과정
- (k) 수학적 방법 또는 영업 방식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또는 알고리즘
- (l)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또는 영화와 텔레비전 작품을 포함한 미학적 창작물
- (m) 단순한 계획이나 규칙, 정신적 행위나 게임하는 방법
- (n) 정보의 표시
- (o) 집적회로의 배치
- (p) 사실상 전통적인 지식이거나 전통적으로 알려진 요소 또는 구성요소의 속성을 통합하거나 복제한 발명

#### 3-9-3-4. 출원 및 등록

- **기간**

모든 부여된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그러나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된다.<sup>20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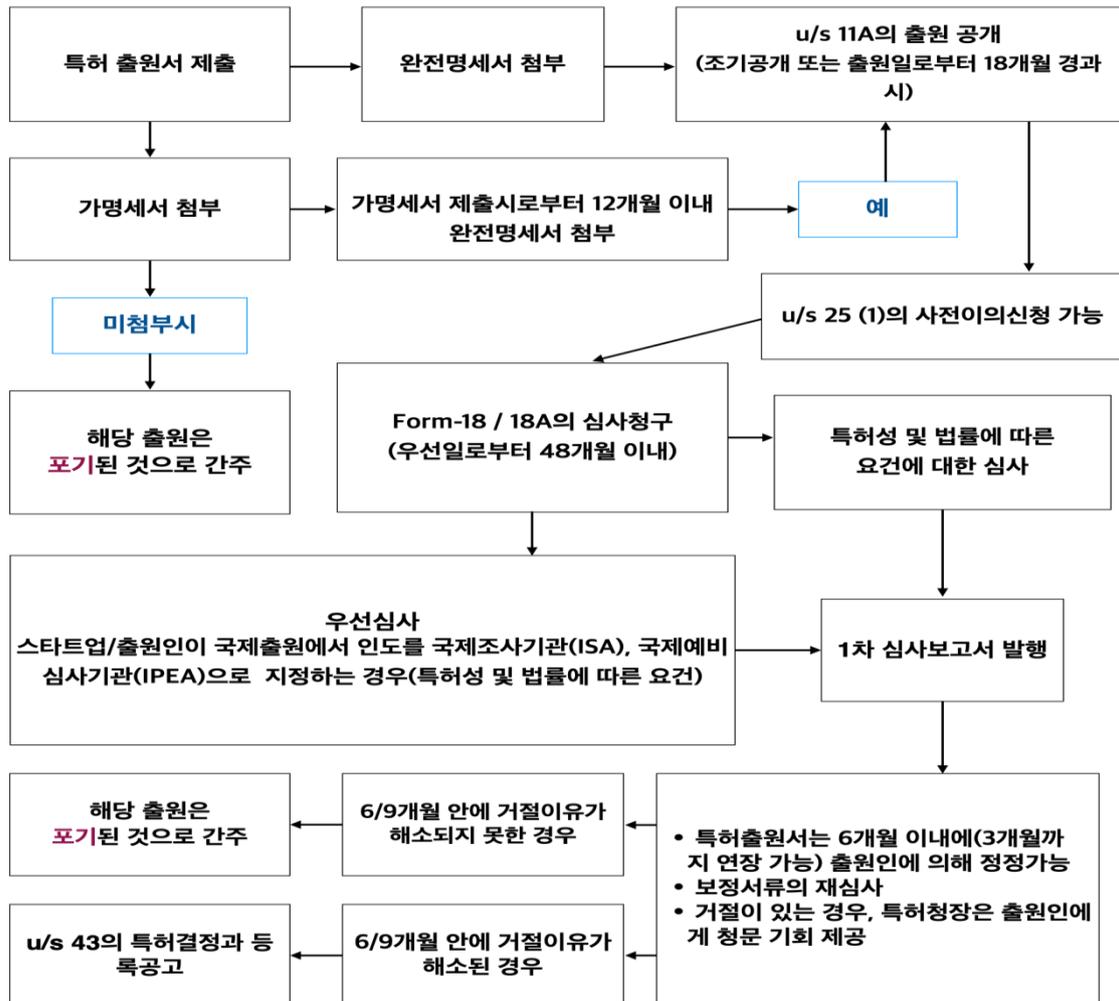
- **절차**

다음은 특허 출원 및 등록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낸 흐름도이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기존에는 통상 약 18-36개월까지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전자출원 등의 도입으로 기간이 많이 단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

<sup>206</sup> “53. Term of patent.—(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the term of every patent granted, after the commencement of the Patents (Amendment) Act, 2002, and the term of every patent which has not expired and has not ceased to have effect, on the date of such commencement, under this Act, shall be twenty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the patent”.

그림 3-9-3-4-1. 인도의 특허 출원 절차



자료원 :

[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Final\\_FREQUENTLY\\_ASKE\\_D\\_QUESTIONS\\_-PATENT.pdf](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Final_FREQUENTLY_ASKE_D_QUESTIONS_-PATENT.pdf)

출원 및 등록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특허 출원 및 등록은 특성상 절차가 매우 복잡하므로, 세부 절차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CGPDTM에서 안내하는 매뉴얼을 참조하는

것이바람직하다([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Manual\\_for\\_Patent\\_Office\\_Practice\\_and\\_Procedure\\_.pdf](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mages/pdf/Manual_for_Patent_Office_Practice_and_Procedure_.pdf)).

• 인도 내 대리인 선정

인도에서 특허사무소(Patent Office)는 콜카타, 델리, 첸나이, 뭄바이 네 곳에서 기능하며, 특허 출원은 상표와 마찬가지로 관할권이 있는 특허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특허 출원과 관련된 관할은 출원자의 거주지, 주소 또는 사업장 또는 발명이 실제로 시작된 장소 또는 출원인이 인도에 사업장이나 주소가 없는 경우 출원인이 제공한 인도 내 서비스 주소(송달주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도 내 사업장 또는 주소가 없는 우리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출원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조사**

동일한 발명이 이미 공시 또는 청구되었는지, 또는 기존에 존재하거나 만료된 특허의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 검색을 통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색은 웹사이트(<http://ipindiaservices.gov.in/publicsearch>)에서 가능하다.

- **출원**

등록되는 것과 유사한 특허 또는 발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양식을 도면 및 기타 명세서와 함께 제출한다.

특허 출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출원**

가출원은 발명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경우의 출원을 의미한다. 가명세서를 제출한 후에 12개월 이내에 완전명세서를 제출하면 가명세서의 발명에 대하여 해당 출원일을 인정해 준다. 출원의 상세내용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가출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출원 이후 12개월 이내에 완전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명세서를 작성하면 발명자가 발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으며, 발명자는 해당 발명에 대한 시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완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12개월의 시간을 갖게 된다.

- **일반 출원**

조약 체결 국가에서 어떠한 우선순위도 주장되지 않거나 특허청에서 진행중인 출원에 대한 언급 없이 특허청에 신청된 출원을 의미한다.

- **조약 출원**

하나 이상의 협약국에 접수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출원에 기초하여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는 출원을 의미한다. 출원인은 협약국에서 유사한 출원을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인도 특허청에 신청해야 한다.

- **PCT 국제 출원**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sup>207</sup>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의하여 인도에 신청된 출원은, 하나의 출원에 의하여 150개 국 이상에서 신청될 수 있는 국제 출원에 해당한다. 특허협력조약(PCT)은 150개 이상 국가가 가입되어 있는 국제 조약으로, PCT 국제출원을 위해서는 조약에서 정한 일정한 공식 요건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970년 개정 특허법 및 2016년 개정된 2003년 특허 규칙에 따라, PCT 국제 출원은 인도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내 단계 신청이 또한 이루어진 경우에도 신청된 것으로 간주한다.

- **PCT 국내 단계 출원**

인도를 지정하는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제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출원자는 국제출원일자 또는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 되는 날 중 이른 날까지 국내 단계 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추가 특허**

출원인은 특허가 이미 출원되어 있거나 특허를 획득한 기존 발명을 약간 수정 또는 개량하는 발명의 경우, 그 수정이 새로운 것에 해당한다면 추가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추가특허의 출원 시의 장점은 주 특허의 기간 중 추가특허에 대하여는 별도의 갱신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추가 특허는 주 특허와 함께 만료된다는 점이다.

- **분할 출원**

원출원으로부터 분할된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하는데, 출원의 청구범위가 두 개 이상의 발명 이상을 포함할 때, 출원인은 스스로 또는 다양한 사유의 공식 거절 이유의 충족 또는 구별되는 발명 등의 이유로 출원을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분할출원의 우선일은 원출원과 동일하다.

- **임시거절(절차적 이의제기)**

<sup>207</sup> [https://www.kipo.go.kr/kpo/BoardApp/UPctInfoApp?c=1001&contentID=info0111&catmenu=m08\\_01\\_01](https://www.kipo.go.kr/kpo/BoardApp/UPctInfoApp?c=1001&contentID=info0111&catmenu=m08_01_01)

특허청은 출원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임시 거절이유 통지(preliminary objection letter)를 발송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거절이유는 특허법의 발명의 정의에 따라 명세서 작성 요건 및 청구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 **공시**

거절 이유가 충족되면, 출원은 공보에 공개되고 신청서 제출일 또는 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된 때 중 이른 때에 공중에 공개된다.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기술의 공개를 통하여 산업에서의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일반 공중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아울러 이러한 출원이 등록되는데 이의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이에 대한 의견을 특허청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출원인은 이러한 공개일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사전 이의신청**

특허 공개일 또는 부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전에 누구든지 특정 사유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심사 청구**

특허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출원인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스타트업 등을 위한 우선 심사의 청구도 가능하다. 인도의 특허 제도는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한 심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1차 심사 보고서**

특허 심사관은 1차 심사보고서를 1개월 이내,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위 보고서에는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거절 이유가 제기될 수 있다.

- **거절 사유 소명**

출원인은 보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 출원의 승인을 위하여 거절 이유에 대하여 소명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야 한다. 보정된 문서의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다른 거절이유가 나타나는 경우 특허청장은 청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거절 이유가 규정된 기간 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등록과 부여**

출원인이 모든 거절 이유에 대하여 그 하자를 보완하는 경우 특허가 부여된다.

- **사후 이의신청**

특허 부여의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9-3-5. 특허의 양도 및 이전

발명에 대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권자는 해당 발명을 사용하여 직접 제품을 제조, 판매할 것인지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이전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특정 조건에 따라 특허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허가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본래의 특허권자로부터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되며, 특허권의 소유자에 의하여서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허에서 특허권의 양도, 공유, 저당권, 라이선스 기타 권리의 설정은 서면으로 작성되고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가 그들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정하는 모든 조건을 기재한 서류 형식으로 적법하게 행하여지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 3-9-3-6. 침해 시 대응방안

특허법은 특허 침해행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48조의 '특허권자의 권리'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질특허의 경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조, 사용, 판매 청탁, 판매, 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법특허의 경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제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사용, 판매 청탁, 판매, 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구제방법

##### ① 민사상 구제방법

특허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 금지 명령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와 더불어 침해를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압수, 수색, 폐기를 명령할 수도 있다.

##### ② 형사상 구제방법

특허법은 형사상 구제방법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 - 특허침해 물품 단속에 대한 제한>

인도 재무부는 최근 지식재산권 집행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orted Goods) Enforcement Amendment Rules, 2018) 특허 침해 사건에 관한 세관의 단속을 제한하였다. 즉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관한 세관의 집행 등 조치 등은 여러 지식재산권 중 '특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고, 세관은 특허 침해

관련 물품 등 통관 시에 검사 등 의무를 지지 않으며, 행정부의 직권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3-9-3-7. 주요사례

#### 최초의 특허침해 영구금지명령 : Merck v. Glenmark

그림 3-9-3-7-1.



- **Merck의 주장 및 청구내용**

- 주장 : Glenmark의 Sitagliptin 사용 제품이 Merck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음
- 청구내용 : 동 특허침해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공급, 광고, 수출 및 판촉 행위의 금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특허침해 제품 회수

- **Glenmark의 주장**

- Glenmark의 제품은 Merck 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 (본소), Merck 사의 특허의 무효성 주장 (반소)

- **델리 고등법원 합의부의 결정**

- 본소 : Glenmark 사의 특허 침해 인정
- 반소 - Merck 사의 특허 유효성 인정 (특허 무효 주장 배척)
- 영구적 금지 명령으로서 동 특허 침해 물품의 제조, 사용, 판매, 공급, 광고, 수출 및 판촉 행위 금지
- 실제 발생한 소송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 피고 Glenmark 사가 원고 Merck 사 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인도 국민들에게 동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 법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면서 공익이 특허 침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 **특허 침해 관련 시사점**

- 인도 특허법이 1970년 제정된 이후 최초로 특허권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특허침해에 대한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린 사건으로서, 이후 인도 특허 소송이 보다 본격적으로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후 Merck 사는 동일한 Sitagliptin 사용 제품에 대하여 Sanjeev Gupta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11월 델리 고등법원은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동 제품의 제조 및 수출을 금지하는 잠정적 구제 명령을 내린 바 있음(Merck Sharp & Dohme Corp & Anr v. Sanjeev Gupta & Ors.)

**특허 침해 물품 세관 단속 제한 : LG Electronics India v. Bharat Bhogilal Patel**

그림 3-9-3-7-2.



- **사실관계**

- Bharat은 수입되는 LG전자의 물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세관에 압수를 요청하였고, 세관은 Bharat의 요청대로 LG전자의 물품을 압수함
- 원고 LG전자는, Bharat의 특허권이 IPAB에서의 취소(revocation)절차로써 유효성이 다투어 지고 있으며, 세관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품을 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Bharat과 세관을 피고로 소를 제기함

- **델리 고등법원의 결정**

- 명시적으로 특허 침해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 저작권 등과 달리) 특허 침해를 이유로 세관이 물품을 압수할 수는 없음
- 즉, 세관은 특허 적격성(patent eligibility)을 조사할 권한이 없고, 해당 물품이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세관의 압수 조치는 부당함

- **특허 침해 물품 세관 단속 제한 : 지식재산권 집행 규칙의 개정 (2018. 6. 22)**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orted Goods) Enforcement Amendment Rules, 2018
- 특허침해 사건에 관한 세관의 단속을 제한, 즉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관한 세관의 조치는 '특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세관 당국은 특허 침해 관련 물품 등 통관 시에 검사 등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행정부의 직권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조치가 가능

### 3-9-4. 디자인

인도에서의 산업디자인의 등록과 보호는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과 디자인 규칙(The Designs Rules, 2001)에 근거한다. 디자인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하며, 로카르노 분류에 따라 국제 분류 시스템의 도입을 제공한다. 등록된 디자인의 소유자는 제3자의 무단복제 및 모방으로부터 디자인을 보호하고 제품의 상업적 가치 및 시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디자인은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위조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디자인 즉 제품의 모양과 느낌을 복제하여 시장 점유율을 얻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도 시장에서 디자인 출원등록을 통하여 이러한 무단복제를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 3-9-4-1. 정의 및 보호범위

디자인이란 수공예적, 기계적·화학적인지 여부 또는 분리·결합의 여하,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2차원 혹은 3차원 또는 그 쌍방의 형태를 불문하고, 물품에 적용되는 선의 구도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이며,

제품에 관하여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sup>208</sup> 다만 방식, 원리, 건축양식 또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기계 장치를 포함하지 않으며, 1958년 상표 및 상품법 제2조(1)(v)에 정의된 상표, 인도 형법(The Indian Penal Code, 1860) 제479조에 정의된 재산 표장 또는 저작권법 제2조(c)에 정의된 예술적 작품 또한 포함하지 않는다.

### 3-9-4-2. 요건

새로운 디자인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의 물품은 새롭고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전에 다른 국가 또는 인도에서 공지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전에 알려진 디자인(주지 디자인)이나 알려진 디자인(주지 디자인)의 조합과 현저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비방적이거나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 다만, 저작권법상의 미술저작물은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3-9-4-3. 출원 및 등록

- 기간

디자인법 제11조에서 디자인의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존속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와 같은 최초의 기간은 10년의 기간이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한 경우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디자인의 소유자는 디자인이 등록되는 즉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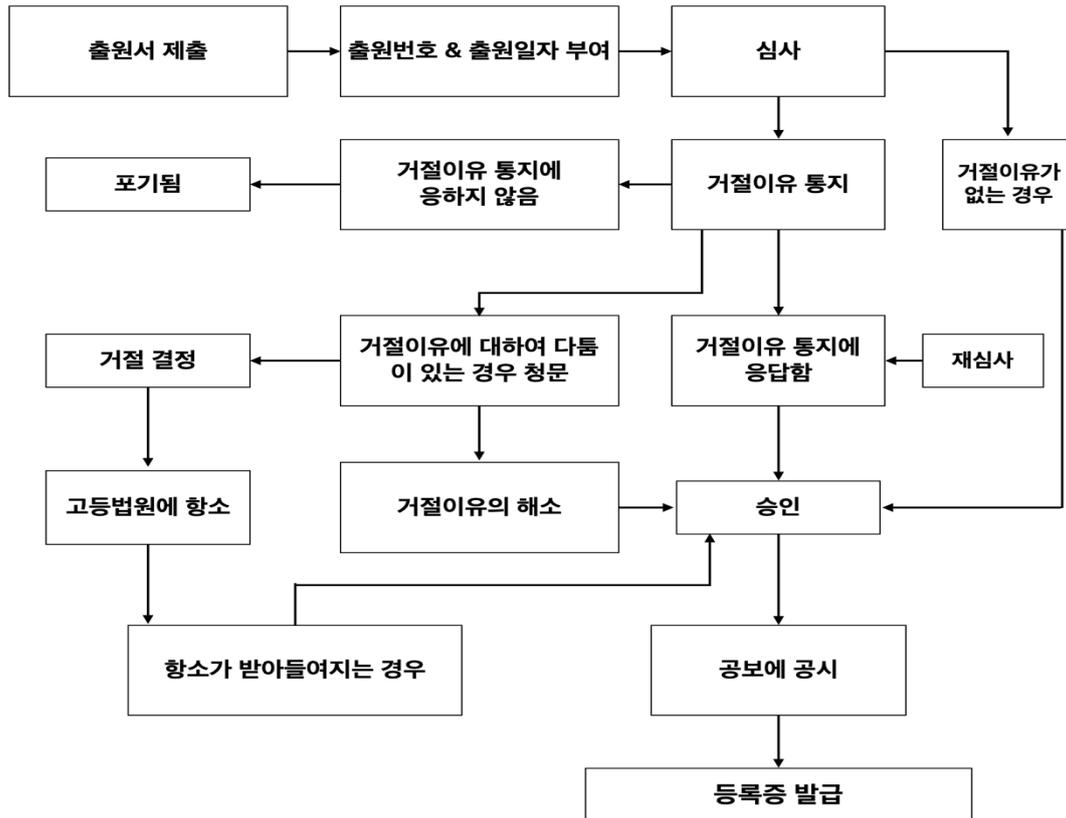
- 절차

디자인의 등록절차는 다음 흐름도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

#### 그림 3-9-4-3-1.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절차

---

<sup>208</sup>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 Designs, Office of the CGPDTM,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Government of India <http://www.ipindia.nic.in/faq-designs.htm>



자료원 : <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images/pdf/design-registration.pdf>

구체적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인도 내 대리인 선정

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표 또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인도 내 대리인 선정이 필요하다. 디자인법 제43조에서는 특허법 제125조에서 정한 특허 대리인 등록부에 등록된 대리인들이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과정을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인도 거주 대리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 ② 조사

기존의 디자인 등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을 통하여 출원 및 등록 여부의 검색이 가능하다(<http://ipindiaservices.gov.in/designsearch/>).

### ③ 출원

출원서는 디자인 표지사항의 복사본 4부와 수수료와 함께 관할에 따라 콜카타, 델리, 뭄바이 및 첸나이에 위치한 특허사무소에 제출된다. 델리, 뭄바이, 첸나이에 제출된 출원은 추가적인 처리를 위하여 콜카타 특허사무소(본부)로 이관될 수 있다. 전자출원

역시 가능하다(<https://ipindiaonline.gov.in/eDesign/goForLogin/doLogin>). 출원 제출 후, 출원인에게 영수증이 발급되고 번호가 부여된다.<sup>209</sup>

#### ④ 심사

출원서가 접수되면 출원 심사가 진행된다. 특허와 달리 별도의 심사청구 없이 출원 순서로 심사가 진행되며, 출원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출원인에게 통보하며, 이 경우 출원인은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출원서를 제출한다. 그럼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추가 심사 보고서가 발행되거나 거절이유를 제거하기 위한 청문 기회가 제공된다. 거절이유가 충족되는 경우 또는 거절이유가 없을 시에는, 출원절차는 공보에 공시된 후에 승인을 위해 진행된다.

#### ⑤ 승인 또는 거절

디자인 출원은 모든 공식 요건이 갖추어지고 거절이유가 충족된 경우 승인되며, 하자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된다. 또한 거절이유의 통지가 있고 출원인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⑥ 공시

등록된 디자인은 공시되고 공보에 공개된다.

#### ⑦ 등록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는 승인되고 등록증이 부여된다.

#### ⑧ 등록 취소

이해관계인은 등록 후 언제든지 등록 디자인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신청서에는 신청인의 해당 디자인에 대한 이해관계와 사실관계의 상세 내용과 그 근거에 관한 사항, 구하는 구제방안이 기재되어야 한다. 쌍방은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이 정해지면, 청문 후 디자인 등록을 취소할 것인지 취소 신청을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디자인법에 따른 청장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3-9-4-4. 침해 시 대응방안

#### • 침해행위(불법복제 행위)

디자인의 불법복제(Piracy)란 등록된 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해당 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디자인이 등록된 품목의 클래스에 속하는 제품에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적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sup>209</sup> [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POGuidelinesManuals/1\\_30\\_1\\_manual-designs-practice-and-procedure.pdf](https://ipindia.gov.in/writereaddata/Portal/IPOGuidelinesManuals/1_30_1_manual-designs-practice-and-procedure.pdf)

디자인법은 제22조에서 아래의 행위를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디자인권자의 허가 없이 판매를 목적으로 동 디자인 또는 모방디자인을 적용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행위
- 디자인권자의 허가 없이 판매를 목적으로 동 디자인 또는 모방디자인을 적용 또는 적용하고자 동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
- 등록된 디자인 또는 모방 디자인을 디자인권자의 허가 없이 제품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제품을 판매를 위하여 공개하거나 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 구제방법

- ① 통지서 발송

디자인권 불법복제의 경우에도,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Cease and Desist Notice (C&D)로 불리는 경고장을 침해가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송부하여 침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침해 구제 1단계 절차로서 가장 신속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며, 만약 상대측이 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계속한다면, 다음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민사상 구제방법

디자인법 제22조는 또한 불법복제 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방법으로 소송을 제기예 의한 잠정적 구제명령, 손해배상, 기타 침해품에 대한 구제조치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불법복제 행위에 대하여계약 채무로 징수할 수 있는 25,000 루피(INR)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등록디자인 소유자에게 배상하거나, 디자인 소유자가 위의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그 위반의 반복에 대한 금지명령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정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금지명령에 따라 금지할 수도 있다.

- ③ 형사상 구제방법

디자인법은 형사상 구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④ 세관의 단속

상표와 마찬가지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라 중앙 정부는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가진다.<sup>210</sup> 세부 사항은 3-8-2 상표법, 침해시 대응방안의 '세관의 단속'내용과 같다.

---

<sup>210</sup>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ppt-ipr-border-measures.pdf>

### 3-9-4-5. 주요사례

#### 선행 디자인과 다양성 : Crocs Inc. v. Bata India Limited

그림 3-9-4-5-1.



#### 델리 고등법원의 결정

원고 크록스는 전체적으로 구멍이 있는 형태의 자사의 독특한 신발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하였는데, 델리 고등법원은 이러한 디자인은 신규성(Novelty)이 없어 시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디자인 침해를 부정한 바 있다.

### 3-9-5. 저작권

인도에서 저작권은 저작권법(The Copyrights Act, 1957, 2012년 개정) 및 저작권 규칙(The Copyright Rules, 2013)에 따라 저작물의 무단 사용 또는 복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인도에서 저작권 등록, 보호 등과 관련된 지원은 저작권 사무소(Copyright Office)가 담당하고 있다.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극작가, 음악가, 건축가, 영화·녹음물·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제작자는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지식재산과 달리, 저작권의 취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형식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저작권 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copyright) 및 이에 기재된 항목들은 저작권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일단 유리한 증거(prima facie evidence,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단 충분하다고 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저작물이 등록되면 저작권과 관련된 정보들이 저작권 등록부에 공개되며, 대중은 이를 검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권 소유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무고한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저작권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저작권의 불법복제로 입을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일정 수준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도 시장 진출 시 저작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9-5-1. 정의 및 보호범위

저작권이란 문학, 극, 음악, 예술 작품의 창작자와 영화 제작자, 음향 기록물의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로, 복제권, 공중송신권, 작품의 각색 및 번역권 등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저자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창의성을 보호하고 보상하며, 작가, 예술가, 디자이너, 극작가, 음악가, 건축가 및 음향 기록물 제작자, 영화 제작자 등의 노력과 작품을 법적으로 보호한다.<sup>211</sup>

### 3-9-5-2. 저작자의 특별한 권리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자의 특별한 권리(Author's special rights)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저작인격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도 저작자에게 남아있게 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자는 동 권리에 의하여 자신의 저작물이 왜곡되는 등으로 자신의 명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9-5-3. 등록

- 기간

저작물 보호 기간은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저작권법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 사진, 영화, 사운드, 문학, 드라마, 음악 또는 예술 작품등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사후 6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자가 무명 또는 가명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표 후 60년 동안 보호받으며, 동 기간 만료 전 저작자의 신원이 밝혀진 경우에는 저작자 사망 후 60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저작자가 2인 이상인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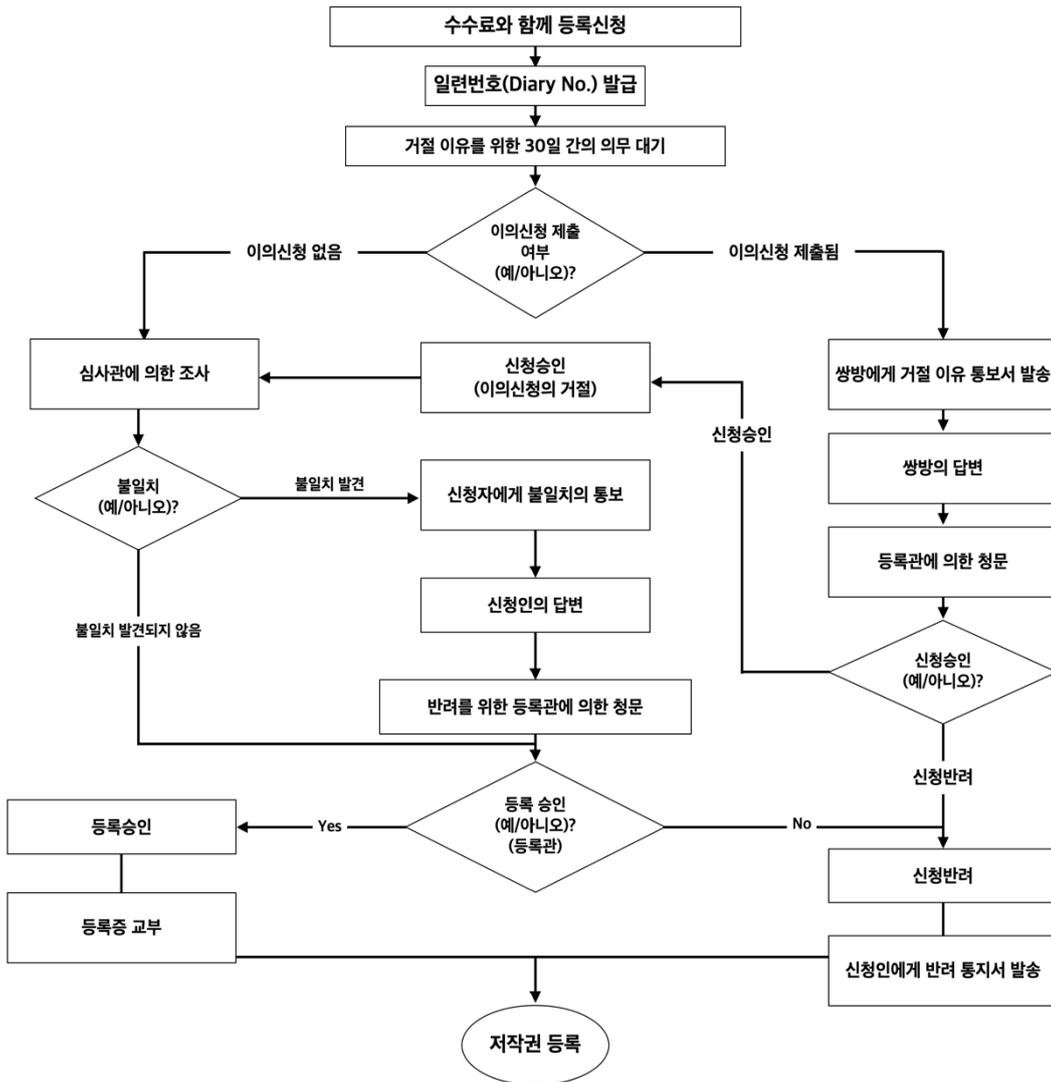
<sup>211</sup>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 Copyright Office, Government of India <http://copyright.gov.in/frmfaq.aspx>

나중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시부터 60년까지 보호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발행 후 60년 간 보호된다.

- 절차

저작권 등록 절차는 다음 흐름도에 나타나 있다.

그림 3-9-5-3-1. 저작권 등록 절차



자료원 : <https://copyright.gov.in/frmWorkFlow.aspx>

① 인도 내 대리인 선정

상표 출원 등과 마찬가지로 인도 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은 인도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접수

신청서는 저작권 사무소(Copyright office)에 직접 또는 저작권 등록 기관 웹 사이트의 전자 출원(e-filing) 모드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필요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은 등록이 접수되면 일련번호를 발급받게 되며, 이때부터 이의신청 및 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다른 저작물의 등록을 위해서는 각 다른 신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심사

등록관은 등록번호(Diary No.)를 발급한다. 이후 거절 이유를 받기까지 30일간의 의무적 대기기간이 있다. 저작권 청구에 반대되는 이의신청 있을 경우, 1개월이 더 소요되며 저작권 등록관은 양 측 당사자에게 청문의 기회를 준다. 소유권의 결정이 있는 후이거나 이의신청이 거절되면, 신청 건은 조사(scrutiny)로 나아가게 된다.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조사(scrutiny) 단계에서 신청에 문제되는 사항을 정정할 수 있다.

### ④ 등록

추가 문서 제출에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관이 완전히 만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청자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기재사항의 사본을 교부 받으면 등록이 완료된다.

#### 3-9-5-4. 저작권의 양도 및 이전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의 소유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이전할 때 발생한다.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체 기간 또는 일부 기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저작물의 잠재적 저작권 소유자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의 범위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3-9-5-5. 침해 시 대응방안

- 침해행위

저작권의 침해는 일반적으로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51조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 등록관(Registrar of Copyrights)에 의해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여된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라 관할 당국이 부당한 조건을 위반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부여된 배타적권리에 대한 행사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익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울러, 매매 또는 고용, 배포, 전시 또는 인도에 수입하는 행위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양태가 될 수 있다. 즉, 합법적인 라이선스 없이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구제방법**

인도에서 저작권 침해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조차 없는 불특정 다수에 의하여 쉽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보호에 대한 기대가 특히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 법제 및 재판부 또한 저작물을 권리의 대상으로서 보호하고 있으므로, 다음 절차 등을 통해 적절한 구제를 기대하여 볼 수 있겠다.

- ① **경고장 발송**

다른 지식재산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제조치 이전에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 ② **민사상 구제방법**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구제방법으로 다음의 절차가 있다.

- **잠정적 금지명령**

침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고, 구제에 대한 이익의 균형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이 없는 경우 회복할 수 있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잠정적 금지명령이 가능하다.

- **금전 손해배상**

침해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금전적 손해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기준으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저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금전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 **조사·압수 명령(Anton Piller order)**

동 명령으로서 저작권 침해 물품의 파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원고측 변호인이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 침해 물품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행위와 관련된 공급자 및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 **압류 명령(Mareva injunction)**

법원은 침해자로 하여금 법원의 최종 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침해자가 법원 판결의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 압류 명령이 있을 수 있다.

-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

법원은 불법 웹사이트의 미러링 사이트에 등에 대하여 다시 금지 명령을 받지 않고도 기존 금지명령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동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자의 거주지 또는 침해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소제기 기한은 침해일로부터 3년이다.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유가 반복적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그러한 마지막 침해 일로부터 3년의 제한 기간이 개시된다.

③ 형사상 구제방법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형사법적인 수색 및 압류 또한 가능하다.

저작권법에 따라 침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구금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동법 제63조), 최소 5만 루피에서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2회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누범은 제63A조에 따라 최소 1년에서 3년까지의 금고 또는 10만 루피에서 20만 루피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될 수 있다.

또한 제63B조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한 자 등에 대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데, 최소 7일에서 3년까지의 금고 또는 5만 루피에서 20만 루피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④ 세관의 단속

상표 및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라 중앙 정부는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할 권한을 가지며,<sup>212</sup> 지식재산권 집행규칙에 따라 집행된다. 세부 사항은 3-8-2 상표법, 침해시 대응방안의 '세관의 단속'내용과 같다.

저작권법은 제53조에서 세관의 단속에 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저작물의 권리자 또는 대리인은 자신이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세관에 침해 물품을 금제품을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물품은 압수 및 몰수될 수 있다.

<sup>212</sup> <https://www.cbic.gov.in/resources//htdocs-cbec/customs/ppt-ipr-border-measures.pdf>

### 3-9-5-6. 주요사례

#### 웹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사례 : 디즈니 사건과 동적 금지명령

그림 3-9-5-6-1.



#### 델리 고등법원의 결정

(COVID-19로 인하여 화상 심리로 진행) 만약 디즈니의 창작 콘텐츠가 보호되지 않을 경우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디즈니가 불법적인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는 디지털 불법 복제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볼수 있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그의 미러/리디렉션/알파뉴메릭 웹사이트들이 디즈니가 저작권을 보유한 콘텐츠, 프로그램 등을 호스팅, 스트리밍, 복제, 배포,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였다.

미러 웹사이트란,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컴퓨터 서버를 복사해 놓은 웹사이트를 지칭, 리디렉션 웹사이트란 특정 주소의 웹사이트로 접속하였을 때 자동으로 다른 주소의 웹사이트로 변경되어 접속되는 웹사이트를 지칭, 알파뉴메릭 웹사이트란 예를 들어 abcde.com와 abcde2.com의 경우와 같이 웹사이트 주소의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만을 바꾸어 동일한 내용을 표시하는 웹사이트를 지칭한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잠정적 구제조치가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의 형태로 승인되었는데, 이는 불법 복제 웹사이트가 내용 그대로 이름만을 달리하여 온라인에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며, 저작권자는 또 다른 침해 웹사이트 및 미러 웹사이트에 대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 대신 이미 승인된 침해 웹사이트에 대한 금지 명령을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미러/리디렉션/알파뉴메릭 웹사이트에까지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디즈니는 동적 금지 명령을 통하여 현재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들의 도메인 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 웹사이트들이 금지 명령을 피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활용하는 대체 도메인들까지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사례로서 시사점이 크다.

### 3-9-6. 인도진출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유의점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서의 사업 개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침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인도 시장에 진출 또는 투자하기 전에 유의할 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3-9-6-1. 시장 조사 및 분석

시장조사는 라이선싱, 기술이전 및 소송과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시장조사를 통하여 주요 경쟁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경쟁자, 특정 기술이 적용되는 시장 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시장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시장조사에는 고객, 제품, 경쟁업체 및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며, 침해의 위험을 파악 및 시장의 확장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 광고 및 재무계획의 개발 및 개선에 활용할 수도 있다.<sup>213</sup>

#### 3-9-6-2. 합작투자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일회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다른 회사에 속한 기술 또는 지식재산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협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협업에는 합작투자의 방법이 포함된다.

합작투자(Joint Venture)는 다수의 투자자가 특정기업체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 방식으로서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유권 또는 자산을 갖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이다. 공동소유의 대상은 무형고정자산인 지식재산권(특허권·의장권·상표권·영업권 등) 뿐만 아니라 주식 자본·채무·경영노하우·기술노하우·유형고정자산(기계·설비·투자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합작투자의 예로, 한 회사는 엔지니어링의 노하우를, 다른 회사는 마케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인도 진출 시 인도 기업과 JV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 우리 기업의

<sup>213</sup> <https://www.origiin.com/market-research/>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적절한 계약서 조항이 미비 되어 우리의 기술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점에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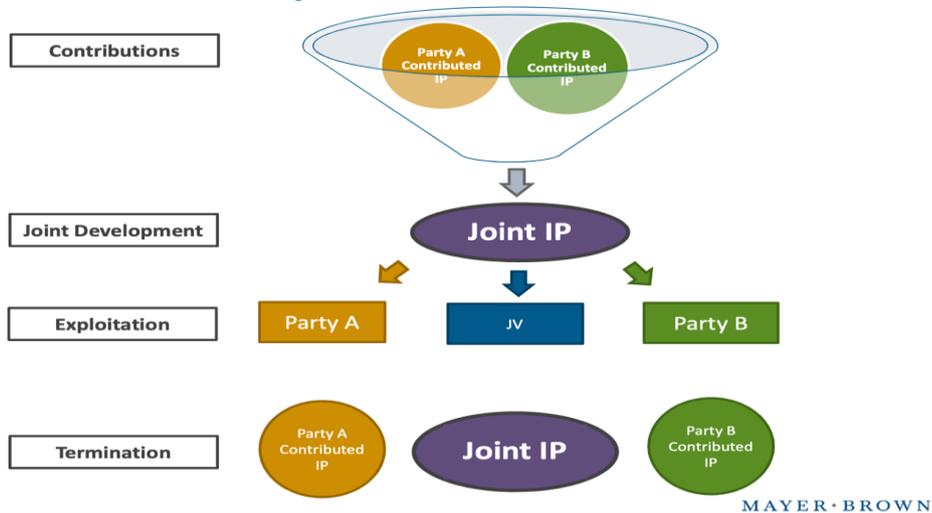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분쟁해결 등과 관련하여 주 계약 체결 전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작성하게 된다. 협상 중 일정한 정보가 공유되며, 일부 정보는 기밀로 유지하는 비밀유지약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당사자는 기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사 및 가치평가 기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으며, 기타 수행 계획의 작성이 필요하다.

합작투자의 단계는 다음 4단계로 세분화 할 수 있다.

- 계약 체결 이전(법적 문서 서명 전)
- 계약(계약서에 서명)
- 공동 개발(계약조건에 따른 실행 의무)
- 종료(계약의무 종료)

그림 3-9-6-2-1. 조인트벤처 Life Circle

**Life Cycle of Joint Venture IP**



자료원 : <https://www.mayerbrown.com/-/media/files/perspectives-events/events/2017/01/protecting-intellectual-property-rights-in-joint-v/files/presentation-slides/fileattachment/170125-chi-webinar-joint-ventures-ip-slides.pdf>

합작투자 계약의 시작 단계부터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식재산권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다음의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합작투자 계약에 간단하게 '각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도의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쪽 당사자가 중요한 발명품 또는 영업비밀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추후 제3자가 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해당 자산을 설명 및 명시하여야 한다.

모든 합작투자 계약에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발명 등을 설명하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중 또는 완료 후 제공되는 이러한 보고서는 수치를 기록한 표와 실험 목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의 발견 내용 설명 및 날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향후 발명의 기록 제공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명확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정한 방식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합작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인도 시장에 유리하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다만, 합작투자의 장점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대한 시장성 및 법적 쟁점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권리가 충분히 합작투자 계약 및 법인 설립시 정관 및 주주간 계약서 등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3-9-6-3. 실사(Due-Diligence)**

지식재산권은 영업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인수합병, 포트폴리오 투자와 같은 전략적 조치를 취하기 전 기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재산권 실사는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 평가뿐만 아니라 경쟁 및 대체 상품, 경쟁 업체의 포트폴리오, 시장의 요구, 가격 등의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고유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게 된다.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싱을 고려하는 기업 및 기관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의 이전과 관련된 가치 및 위험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련된 회사는 소송과정에서 각 단계에 따른 위험 및 예상되는 해당 수익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3-9-6-4. 지식재산 가치평가(Valuation)**

지식재산권의 평가는 비용 기반, 시장 기반, 또는 과거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추정치에 기반한 3 가지 방법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산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의 상황과 산업을 파악하여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 된 기술이 해당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평가는 특히 기술 이전/거래, 라이선싱, 인수합병, 기술 담보 및 투자 가치 산정에 있어 금액적인 가치부여 또는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수 있다.

### 3-9-6-5. 인도 특허청의 업무 지연 및 법령과 절차 변경

인도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슈 중 가장 심각했던 것 중 하나는 특허청 등 지식재산권 관련기관의 업무지연이었다. 지식재산권의 출원부터 등록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그 원인은 복잡한 출원 및 등록절차와 전문 인력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하여 최근 인도 정부는 절차의 자동화, 전자화 등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최근에는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인도에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절차의 처리 속도는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절차의 지연가능성 또한 늘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특허권, 저작권, 지리적 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 개정 및 절차 개선이 있었고, IPAB 가 폐지되는 등 지식재산 관련 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인도 진출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을 출원 및 등록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수립된 사업계획에 맞추어 충분한 기간을 두며, 현재 인도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바람직할 것이다.

## 3-10. 인도 내 CSR 및 ESG 관련 가이드

### 3-10-1. CSR 관련 준수사항

#### 3-10-1-1. 인도의CSR이란?

인도는 특이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을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나 노무 관련 이슈들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이 있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규정상 차이점만 알아 두면 쉽게 적응할 수 있으나, CSR 제도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각종 미등록 단체·종교시설 등이 법적인 CSR 규정을 빌미로 기부금 지출을 요구하고, CSR 규정에 어두운 한국 기업들은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나 해당 기부금이 세무상, 회사법 상 적법한 CSR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중으로 지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업의 실무자는 CSR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3-10-1-2. 인도 CSR규정의 법적 근거와 개정 과정

CSR 의무의 법적 근거는 2013년 신 회사법이 도입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법적인 의무로서 회사법(Companies Act, 2013) 135 조에 규정되었다. 해당 법조문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Compani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olicy) Rules, 2014에 각종 운영관련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회사법 별표 7(Schedule 7)에는 CSR 활동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이 정의되어 있다. 다만, 처음 법이 도입될 때에는 CSR 지출의무액을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소명할 경우 현금지출을 피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였다. 2019년 회사법 개정안에서 지출을 강제화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며, 2021년 1월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의 고시에 따라 20-21 회계연도부터 2019년 개정안의 지출의무 규정이 시행되게 되었다.

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참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1)의 기부금 관련 규정이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된 대로 회사법 상 CSR 규정과 세법상 기부금 관련 규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CSR 활동에 지출하더라도 세무상 손금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CSR 관련 담당자는 CSR 지출액의 세부담 최적화를 위해 세법규정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3-10-1-3. 회사법상 CSR 적용요건

회사법에서는 크게 다음의 2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CSR 위원회 설치요건
- CSR 지출의무요건

먼저 CSR 위원회 설치요건이 있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만 CSR 의무를 부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직전회계연도 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가 CSR 위원회 설치요건이 있는 회사이다.

1. 순자산 50 억 루피 이상
2. 매출 1 백억 루피 이상
3. 순이익 5 천만 루피 이상

CSR 위원회 구성은 1 인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3 인 이상의 등기이사를 두는 것이 원칙이나, private limited company 의 경우 적어도 2 인 이상의 등기이사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하기 CSR 지출의무액이 500 만 루피에 미달하는 회사의 경우 별도의 CSR 위원회 구성 없이 이사회로 대체 가능하다. 즉, CSR 지출의무액이 500 만 루피 이상인 기업만 CSR 위원회를 구성하면 된다.

### 3-10-1-4. CSR지출의무요건

상기 CSR 위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하는 회사 중 직전 3 개 회계연도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양수일 경우, 그 3 년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2%를 지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3-10-1-4-1. (예) FY20-21 기준 연도별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지출의무액

연도별 세전이익	A 사	B 사	C 사
FY18-19	-10	40	-10
FY19-20	-20	30	-20

FY20-21	30	-100	60
3년 평균	0	-10	10
지출의무액 (2%)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0.2

자료원 : 집필자 자체 구성

상기 표와 같은 상황일 경우, 최근 3년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양수인 C 사만이 CSR 지출의무가 존재한다. 반면 큰 폭으로 적자와 흑자가 반복되는 경우 3년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양수와 음수를 넘나들 수 있다.

**표 3-10-1-4-2. (예) 한 기업의 FY20-21 부터 22-23 까지 3년치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1)**

자료원 : 집필자 자체 구성

시점	2021	2022	2023
3년평균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	-20	30
지출의무액 (2%)	0.2	0	0.6

표 3-10-1-4-3. (예) 한 기업의 FY20-21 부터 22-23 까지 3 년치 평균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2)

회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
FY18-19	-10
FY19-20	-20
FY20-21	60
FY21-22	-100
FY22-23	130

자료원 : 집필자 자체 구성

상기 예시와 같이, 3 년간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양수와 음수를 넘나드는 경우, 전년도 금액과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3 년 평균치에 손익증감의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사용한 CSR 의무액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지정 은행의 미사용 CSR 계좌(Unsp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count)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후 3 년 이내에 그 계좌에 있는 금액을 CSR 활동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법적으로 지정된 기금에 귀속된다. 만일 회사가 해당 계좌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책임자<sup>214</sup>(every officer of the company who is in default)에게도 그 금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형사처벌규정도 존재하였으나 2020 년 회사법 개정시 삭제되었다.

<sup>214</sup> 회사의 책임자란 담당 등기이사 및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 3-10-1-5. CSR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회사법 별표 7(Schedule 7)에는 CSR 로 인정되는 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빈곤구호
- 2) 교육활동
- 3) 성평등 및 계층격차 해소
- 4) 환경보호
- 5) 문화재보호
- 6) 전역군인 및 전쟁유가족 구호활동
- 7) 아마추어 스포츠 지원
- 8) 시골 및 슬럼지역 개발
- 9) 재해구호
- 10) 법률 상 지정된 펀드 및 기관

비지정 항목에 지출하여 CSR 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기업의 책임이다. 따라서, 지출 전 반드시 CSR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외에 법령에 명시된 **CSR 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1) 회사의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 2) 인도 밖의 CSR 활동
- 3) 정치기부금
- 4)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
- 5) 기업홍보 목적의 스폰서십 활동
- 6) 기타 법적 의무 수행

단, 인도 국가대표 또는 주·연방행정구역 대표 스포츠 선수의 국외 훈련을 후원하는 행위는 인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도 CSR 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CSR 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백신, 치료제, 의료기기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은 20-21 회계연도부터 22-23 회계연도에 한정해서 CSR 비용으로 인정한다. 만일 관련 활동에 지출하였을 경우 반드시 회사의

CSR 보고서에 지출 및 활동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규제당국이 CSR 활동 인정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자문과 문서화를 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 3-10-1-6. CSR대상 항목으로 법률상 지정된 펀드 및 기관

앞서 살펴본 CSR 대상 활동 중 10 번 '법률 상 지정된 펀드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고유명사이므로 별도의 번역이 무의미해서 번역하지 않음)

CSR 로 인정되는 펀드

- Swach Bharat Kosh
- Clean Ganga Fund
- PM National relief fund
- PM CARES Fund

그 외 회사법 별표 7 (Schedule VII)에 명시된 대상기관들

- Contribution to incubators o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the field of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edicine, fund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State Government or Public Sector Undertaking or any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State Government; and
- Contributions to public funded Universities;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s); National Laboratories and autonomous bodies established under Department of Atomic Energy (DAE); Department of Biotechnology (DBT); Depart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DST); Department of Pharmaceuticals; Ministry of Ayurveda, Yoga and Naturopathy, Unani, Siddha and Homoeopathy (AYUSH); 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other bodies, namely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sation (DRDO); Indian Council of Agricultural Research (ICAR); 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 (ICMR) and Council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CSIR), engaged in conducting research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edicine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 3-10-2. CSR운영관리

### 3-10-2-1. CSR운영관련 제반규정

CSR 운영을 위해 법령상 규정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중요한 용어의 정의

- 행정 간접비(Administrative overheads): 기업의 CSR 기능과 관련한 행정비용이나 CSR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설계, 시행, 감독, 평가에 투입되지 않는 비용을 의미하며, 행정 간접비는 회계연도의 전체 CSR 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공익법인이나 펀드에 지출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펀드의 행정 간접비는 별도의 법인이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국제단체(International Organization): UN 법(United Nations (Privileges and Immunities) Act, 1947 (46 of 1947)) 제 3 조에 따라 연방정부가 고시한 리스트 상의 국제단체. 국제단체(International Organization) 및 그 구성원도 CSR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설계, 감독,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진행중인 프로젝트(Ongoing Project): 기업이 CSR 의무를 위해 실행하는 다년간의 프로젝트. 다만, 프로젝트의 기간은 프로젝트를 시작한 회계연도 포함 4 회계연도를 초과하면 안된다.
- CSR 정책(CSR Policy): 회사법 별표 7(Schedule 7)에 따라 수행하는 CSR 활동을 의미한다. 회사의 CSR 정책에는 회사가 수행하려고 하는 CSR 프로젝트의 리스트와 해당 프로젝트들의 관리감독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의 이사회는 수행하는 CSR 활동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CSR 활동인지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 CSR 활동을 위한 재단의 설립과 신고의무

기업이 CSR 활동을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회사법 상 공익법인인 'Section 8 company'를 설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보통 설립에는 모든 서류 및 절차가 잘 준비되어 있을 경우 약 1.5~2 개월정도가 소요된다. 재단을 통한 CSR 활동의 경우 장기간의 CSR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회사법 상 지출기한인 3년의 기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CSR 프로젝트를 수행이 더 유연해진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CSR 활동을 위한 외부 에이전시를 고용하지 않고 재단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재단 인력 최소화를 위해 외주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음) 반면, 해당 재단의 관리를 위한 각종 법규준수 및 행정비용 발생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컨소시엄형태의 재단의 경우 참여하는 각 기업이 각각 신고서와 행정절차를 챙겨야 할 수도 있다.

재단의 경우 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재단의 형태도 가능하나, 계열사·동종업종·한국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1년 CSR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CSR 수행을 위한 공익법인을 설치할 경우, CSR-1이라는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CSR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적법한 공익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CSR-1은 2021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므로 기존에 설립된 공익법인은 신고 대상이다.

현재 회사법 시행령에는 공익법인의 CSR-1 신고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기업의 CSR 활동을 돕는 에이전트의 경우 CSR-1 신고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나중에 법규준수여부에 관하여 관계당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에이전트 고용시 에이전트와 확인하여 CSR-1을 신고할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 3. CSR 활동에 대한 감독의무

회사의 이사회는 CSR 위원회가 CSR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승인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CFO 혹은 회사의 재경부문 책임자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이사회는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승인된 일정과 비용집행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년 확인하여야 하며, 진행중인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계획도 이사회가 승인하여야 한다.

### 4. CSR 보고서 작성의무 및 공시의무

매년 이사회의 결산보고서에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에 따라 CSR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이사회의 결산보고서(The Board's Report of a company)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CSR 위원회의 구성, 회사의 CSR 정책, 그리고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CSR 프로젝트를 회사의 웹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 5. 대규모 프로젝트의 영향분석 의무

최근 3년간 CSR 의무액이 연 1억루피 이상인 기업은 1천만 루피 이상인 CSR 프로젝트에 대해서 독립적인 제 3자를 통해 프로젝트 완료 후 1년 이내에 영향분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영향분석 결과는 매년 발행되는 CSR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영향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회계연도의 CSR 비용에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비용은 5 백만 루피 혹은 전체 CSR 지출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CSR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흑자(surplus) 및 적자(excess amount)의 처리

CSR 활동으로부터 흑자(은행이자 등)가 발생할 경우 해당 흑자는 회사의 영업이익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해당 흑자는 동일한 프로젝트에 지출되거나, 장부상 미사용 CSR 비용계정에 별도 관리하여 회계기간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CSR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CSR 활동으로부터 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로 사용된 비용은 이사회 승인의 하에 미래의 CSR 비용 사용 의무와 상계처리 가능하다. 다만, 다른 CSR 활동에서 발생한 흑자와 상계될 수 없다.

7. 자본재(Capital Assets)의 취득

CSR 지출을 통해 건물 등 자본재의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자산은 기업이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에는 CSR 재단, 공익법인 혹은 CSR 활동의 수혜를 받는 외부 단체나 공공기관이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3-10-2-2. CSR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법인세)**

원칙적으로 기부금 및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세무상 손금처리가 불가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표 3-10-2-2-1. CSR 방식에 따른 손금인정율**

방식	성격	사용처	손금인정율
기부금 방식	지정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ime Ministers Relief Fund</li> <li>- Prime Ministers Drought Relief</li> <li>- Jawaharlal Nehru memorial Fund</li> <li>- 그 외 소득세법 (Income tax act) Section 80G 에 열거된 펀드 및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한 CSR 재단 포함)</li> </ul>	펀드 종류에 따라 50% 혹은 100% <sup>21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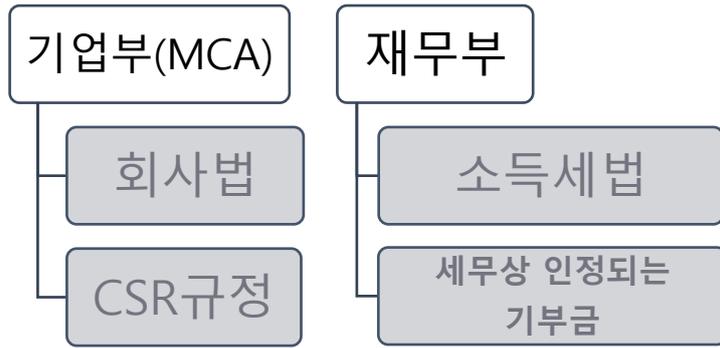
<sup>215</sup> 펀드 종류가 수십가지에 이르므로 손금 인정율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음. 상세한 내용은 Income Tax Act Section 80G를 참고 할 것.

	과학 기술개발 및	과학기술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교, 연구소	지출 총액의 100%
		사회 및 통계 리서치를 수행하는 대학교, 연구소	지출 총액의 100%
<b>프로젝트 지출 방식</b>	사회복지 프로그램	PSU(public sector undertaking), 지방정부 혹은 사회복지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Promotion of Social And Economic Welfare)가 승인한 프로젝트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	지출 총액의 100%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활동	국세청(CBDT)가 발표한 숙련향상프로젝트(skill development project)	지출 총액의 100%

자료원: 인도 소득세법(Income Tax Act)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세무상 인정되는 기부금이라도 하더라도 회사법 상 CSR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부처 간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도 정부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CSR 활동을 정의하는 법규는 회사법으로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의 소관이다. 반면 세법은 재무부가 담당부처이다. 따라서, 양자간 일관성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Chief Minister's Relief Fund, State Relief Fund for COVID-19 의 경우 세무상으로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이나, 기업부에서는 '회사법상 CSR 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회사법 및 세법 양쪽을 모두 검토하고 양쪽에서 모두 인정되는 펀드/CSR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3-10-2-2-2. CSR 활동 인정 여부 담당 기관



자료원 : 집필자 자체 구성

### 3-10-2-3. CSR지출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GST)

GST 법 상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ST 법에 따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선물로 재화를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된다. 뭄바이 CESTAT 판결에 따르면, GST 도입 전 구 간접세 체계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법 상 CSR 의무에 따른 재화의 소비는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던 바 있다. 또한, 최근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GST 사전해석기구(Authority for Advance Ruling)에서는 회사법 상 CSR 준수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CSR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화는 자발적 기부가 아닌 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보아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바 있다.

따라서, '회사법 상 CSR 의무'(최근 3년 평균 세전이익의 2%)에 해당하는 재화의 소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회사법 상 의무액을 초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로 보수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 3-10-2-4. 유형별 CSR형태 비교

각 유형별 CSR 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0-2-4-1. 유형별 CSR 형태 비교

구분	지정펀드 납입	CSR 활동 직접수행	공익법인 설립
----	---------	-------------	---------

<p>방식</p>	<p>법적으로 CSR 로 인정되는 지정펀드나 기관에 납입하는 방법</p>	<p>CSR 활동을 회사의 내부 CSR 담당팀을 통해서, 혹은 외부의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에이전트를 통해 CSR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방법</p>	<p>회사가 산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는 CSR 의무액은 해당 법인에 납입하고, 공익법인이 CSR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단독법인 및 컨소시엄 형태 가능)</p>
<p>장점</p>	<p>회사 입장에서 별도의 관리 노력이 가장 적게 소요됨.</p>	<p>직접적인 CSR 활동 수행을 통한 회사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p>	<p>CSR 지출 사용기한(3 년)에 구애받지 않고 공익법인에 한번 납입하면 해당 재정을 유연하게 사용 가능.  CSR-1 신고서가 도입되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의 경우 CSR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부를 피할 수 있게 되었음.</p>
<p>단점</p>	<p>CSR 활동을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 등</p>	<p>CSR 프로젝트 관리에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며,</p>	<p>공익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 필요성</p>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기 어려움.	납입 후 3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제약사항 때문에 지출관리가 엄격한 편	및 매년 회사법상 요구사항에 따른 공익법인 관련 신고의무 존재
비고	납입 시 해당 펀드가 CSR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세무상 손금인정이 되는 펀드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CSR 수행을 위한 별도의 관리인력 고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에이전트를 통해 외주 방식으로 CSR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음.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공익법인 운용의 방향성에 따른 의사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원 : 집필자 자체 구성

### 3-10-3. 인도 ESG경영

#### 3-10-3-1. ESG 경영이란?

ESG 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기업가치와 경영평가를 재무적인 평가에서 사회에 미치는 가치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2015 년 글로벌 기후변동협약 파리협정과 UN 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발표된 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힘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가 큰 화두가 되고 있고, 기업 역시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영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맞고 있다.

#### 3-10-3-2. 인도 회사법 상 ESG관련 규정

인도 회사법 상에서는 다음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다.

- 이사회 보고서 관련(Board's report): 이사회 보고서 발행 시 에너지 절감, 대체에너지의 활용, 에너지절감 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공시할 의무가 있다.
- 등기이사의 의무: 등기이사는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CSR 활동 관련: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활동을 CSR 활동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CSR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ESG 와 관련하여,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상기 수준의 원칙적인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10-3-3. 상장사 관련 규정

인도 법규상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ESG 와 관련하여 큰 규제는 없으나, 상장사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한다. 한국 기업과 당장은 큰 상관이 없으나 향후 비상장사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 이를 소개하자면, SEBI(인도 증권거래위원회)규정에 따르면, ESG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사업책임보고서(Business Responsibility Report)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근본이 되는 철학은 기업과 주주의 경영방향은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존 가이드라인들을 통합하여 2019 년 3 월 제정한 '책임있는 사업의 원칙에 관한 국가

가이드라인'(NGRBCs: National Guidelin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의 9 가지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정직하게 경영한다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한다.
- 가치사슬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한다.
-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여야 한다.
- 공공·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책임감 있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포괄적 성장과 공정한 개발을 추구하여야 한다.
-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비자와 협력하고 가치를 제공한다.

SEBI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전회계연도말(3 월말) 시가총액 기준 인도 내 상위 1,000 개 상장사의 사업책임보고서(Business Responsibility Report)의 발행이 의무화되었다. 해당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섹션 A – 회사의 일반적인 정보

섹션 B – 회사의 재무정보

섹션 C – 그 외 정보(보통 자회사 관련 사항들)

섹션 D – 사업책임성(Business responsibility)관련 사항

- 사업책임성을 담당하는 임원에 대한 정보
- '책임있는 사업의 원칙에 관한 국가 가이드라인'의 9 가지 원칙에 대한 회사의 정책과 그에 따른 경영사항.

구체적인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sebi.gov.in/sebi\\_data/attachdocs/1446638214636.pdf](https://www.sebi.gov.in/sebi_data/attachdocs/1446638214636.pdf)

SEBI 는 2021 년 3 월 25 일 회의를 통해 사업책임보고서(Business Responsibility Report)를 대체하는 사업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Business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Report)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직전회계연도말(3 월말) 시가총액 기준 인도 내 상위 1,000 개 상장사에게 적용되며, 2021-22 회계연도에는 자발적 적용, 2022-23 회계연도에는 적용이 의무화된다.

사업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SEBI | Consultation Paper on the format for Business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Reporting](#)

## 4.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은 효율성을 향상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주로 성장성이 부족한 사업부문을 매각, 축소 및 통폐합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을 말한다.

### 4-1. 사업양도

#### 4-1-1. 사업양도의 의미

기업은 해당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 사업양도는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의 개별적 이전, 사업의 포괄적 양도 또는 지분의 이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사업양수자가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계속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를 말한다.

인도소득세법은 이러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Slump sale 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 4-1-2. 인도소득세법 상 사업양도

소득세법은 사업양도(slump sale)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업을 그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자산과 부채의 개별금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이전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어떤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양도대가

대가를 수령하지 않는 무상이전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양도하는 대가로 유가증권 등 금전 이외의 대가를 수령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나 2021 년 세법개정을 통해 사업양도의 정의가 확대하였다. 따라서, FY2020-21 이후 발생한 현물대가 수령, 채권의 포기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사업이전은 사업양도에 포함된다.

##### ② 독립된 사업의 이전

양도의 대상은 독립적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부문, 단위 또는 활동의 전체의 이전을 말하며 독립적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집합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양수 이후 양도자가 수행하던 사업활동을 중단 및 제약없이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 종업원 및 관련 계약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 ③ 대가의 일괄수령

사업양도의 대가는 사업을 구성하는 개별자산과 부채에 개별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그 자체로 독립하여 수행될 수 있는 사업전체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되어야 한다.

## 4-1-3. 소득세법 상 사업양도 과세체계

사업목적 상 보유하는 상품 등의 재고자산의 일반적인 거래를 통한 판매, 개인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던 동산의 양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개별자산의 이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양도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이 36 개월 미만(금융상품과 부동산의 경우 12 개월 및 24 개월)인 경우 단기자산 양도소득, 이외의 경우 장기자산 양도소득으로 다시 구분된다. 동일한 자산이더라도 단기자산 양도소득 또는 장기자산 양도소득 분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장기자산 양도소득에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양도의 경우 사업의 수행기간이 36 개월을 초과할 경우 개별 자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양도거래 전체를 장기자산 양도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별 자산의 양도보다 사업양도의 세부담이 적다. 특히, 감가상각자산의 양도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단기자산의 양도로 간주되므로 고정자산의 비중이 높은 경우 이러한 차이는 보다 크게 나타난다.

표 4-1-3-1. 장·단기양도자산 구분기준

구분	장기양도자산 판단 기준
상장 유가증권, UTI, 뮤추얼펀드 및 제로쿠폰본드	12 개월 초과 보유
비상장주식, 부동산	24 개월 초과 보유
이외 자산	36 개월 초과 보유

#### **4-1-4. GST의 과세제외**

세법 상 사업양도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는 GST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수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수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 4-2. 주식의 양도

### 4-2-1. 주식양도거래의 소득세법 상 취급

구조조정 방법의 일환으로 주식양도 거래가 활용될 수 있다. 주식양도차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주식의 매매가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된다.

납세자는 12 개월을 초과하여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할지 여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한번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분류를 선택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주식의 양도가 회사의 경영권의 이전을 동반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소득의 분류를 결정한다.

### 4-2-2. 주식양도에 적용되는 세율

주식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거주자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표 4-2-2-1. 주식양도소득 세율

구분		거주자인 주주	비거주자인 주주
단기자산양도	상장주식	15%	15%
	비상장주식	30%	40%
장기자산양도	상장주식	20%(Indexation 적용)와 10% 중 유리한 방법 선택	10%
	비상장주식	10%(Indexation 적용)	10%

장기자산의 양도소득의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취득가액은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하게 되는데 이를 Indexation Benefit 이라 한다. 과거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낮은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도한 양도소득금액이 산출되지 않도록 취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는 Indexation Benefit 을 적용하지 않는다.

### **4-2-3. 주식양도의 GST상 취급**

주식 등 유가증권은 GST 상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식의 양도에는 GST 가 부과되지 않는다.

### 4-3. 회사의 청산

청산은 회사의 존속을 중단하고 회사에 속한 자산을 회수하여 채권자와 소유주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산이 개시되면 청산인이 선임되어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게 된다. 인도 법률 상 청산의 방식은 크게 법원에 의한 청산, 자발적 청산 및 등록말소 제도가 있다. 이하에서는 인도사업의 철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발적 청산과 등록말소 제도를 살펴본다.

#### 4-3-1. 자발적 청산

자발적 청산 (Voluntary Liquidation)은 도산법 (Insolvency and Bankruptcy Code, 2016)이 다루고 있는 제도이다. 자발적 청산은 회사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회사가 스스로 청산 개시를 원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사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에 대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 4-3-2. 자발적 청산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기업등록국 (Registrar of Companies)에 자발적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 (1) 이사회 결의

자발적 청산 개시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과반수 이상 이사의 서면동의 (Declaration of Solvency)가 있어야 한다.

- 변제할 채무가 없거나 회사에 속한 재산의 처분을 통해 모든 채무의 변제가 가능함
- 청산은 다른 누군가를 기망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님

##### (2) 감사보고서 등 구비

채무변제 능력에 대한 이사의 결의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직전 2개년 또는 회사의 존속 기간 중 짧은 기간에 대한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 감정인의 감정평가보고서

### (3) 주주총회 결의 및 채권자 승인

이사회 결의 후 4 주 이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자발적 청산 개시 및 청산인 선임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후 7 일 이내에 그러한 결의에 대한 회사 채권자 3 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3-3. 청산인

인도 도산위원회에 등록된 Insolvency professional 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청산인은 선임 후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대한 확인, 잔여재산의 관리, 처분 및 배분 등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청산인은 회사와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청산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을 대리하는 등 청산사무 집행에 부적임 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산사무를 지속할 수 없으며, 해당 사실을 즉시 기업등록국에 보고해야 한다.

### 4-3-4. 청산사무계좌

청산인은 청산사무에 사용될 별도의 회사명의 계좌 (Corporate Liquidation Account)를 개설해야 한다. 동 계좌는 청산사무가 진행되는 동안 자산의 회수, 변제 등의 지급 및 청구되지 않은 잔여배당금과 이와 관련된 이자 등의 예치에 사용된다.

### 4-3-5. 자발적 청산 절차

복잡한 이해관계나 소송 등이 없는 경우, 자발적 청산의 완료에는 일반적으로 8~14 개월이 소요된다.

### 표 4-3-5-1. 자발적 청산 절차

이사회 소집 및 채무변제에 대한 과반 이상의 이사 확인

---



자발적 청산의 개시 및 청산임 선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 *이사회 결의 후 4 주 이내*

---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 -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

---



기업등록국 및 인도 도산위원회 (IBBI) 신고 - *주주총회 결의 후 7 일*

---



청산개시 및 이해관계자의 청산절차 참여안내에 관한 신문공고 - *청산인 선임 후 5 일*

---



세무공무원에게 청산인 선임통지 - *청산인 선임 후 30 일*

---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대한 채권청구 - *청산개시 후 30 일*

---



청산인의 중간 보고서 작성 - *청산인 선임 후 45 일*

---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대한 확인 및 이해관계자 목록 작성 - *마지막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 일*

---



세무공무원의 청산인에 대한 납부세액 통지 - *청산인 선임 통지 후 3 개월*

---



이해관계자 채권 변제 - *자산처분 후 6 개월*

---

▼

청산인의 연차보고 및 청산최종보고, 기업재판소 (NCLT)에 대한 청산종료 신청

---

▼

기업등록국에 기업재판소의 청산승인 서류 제출 - 기업재판소의 승인 후 14 일

#### 4-3-6. 채권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순위

청산으로 배분되는 자산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4-3-6-1. 채권의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순위**

순위	잔여재산 구분
1	재산의 환가비용 등 청산과 관련된 비용
2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다음의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개시일 24개월 이전 발생한 근로자 (workmen)의 임금채권</li> <li>▪ 담보권자의 피담보채무</li> </ul>
3	청산개시일 12 개월 이전 발생한 근로자 (workmen)이외의 자에 대한 임금채권
4	담보되지 않은 일반 금융채무
5	동일한 우선순위를 갖는 다음의 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개시전 2년 이내 발생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한 채무</li> <li>▪ 담보권자의 채권 중 담보권 실행 후 잔여채권</li> </ul>
6	이외 일반 채무
7	우선주주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8	일반주주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 4-3-7. 등록말소

인도회사법은 설립 후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있는 권한을 기업등록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말소는 법인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의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는 자발적 청산에 비해 간소한 절차를 요구하며,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 상 Fast Trak Exit Mode 라고 한다.

#### 4-3-8.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설립 후 1년 이내 사업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② 직전 2개 년도 동안 사업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휴면회사 지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4-3-9. 등록말소 신청 제한

등록말소 신청 3개월 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회사는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 ① 상호 변경, 등록 주소지 변경
- ② 자산 또는 권리의 처분
- ③ 등록말소 신청을 위한 활동 또는 법률 상 의무사항 준수 이외 다른 사업활동
- ④ 법원을 통한 조정, 중재 등이 진행중인 경우
- ⑤ 회사법 또는 도산법에 의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4-3-10. 등록말소 신청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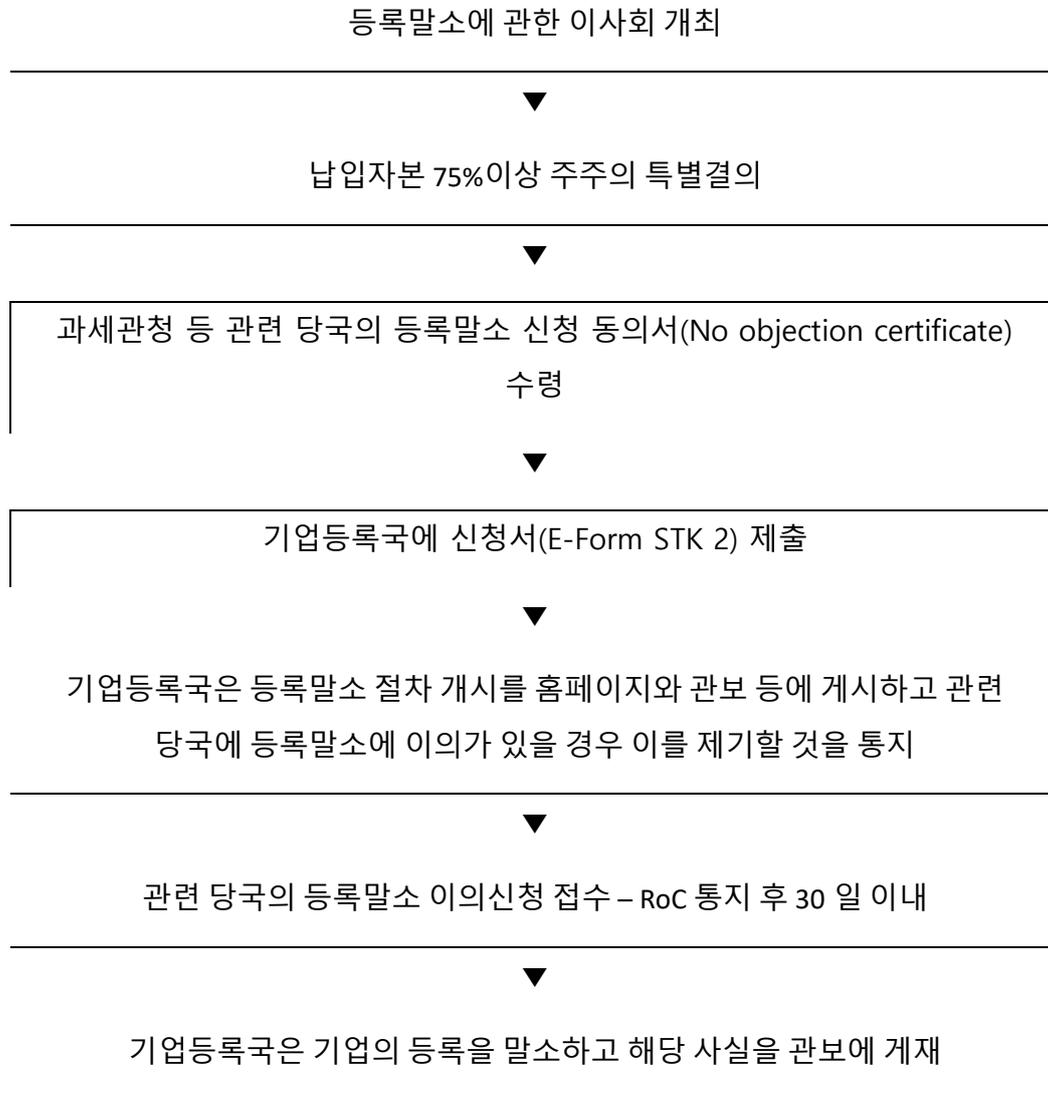
등록말소를 신청하려는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등록신청을 담당할 이사를 지명해야 하며 이사회 개최 이전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신청은 E-Form STK-2 양식과 채무 완납 확인, 손해배상책임 협약서 등 관련서류와 CA, CS 또는 CMA 의 인증서류를 첨부하여 전자방식으로 제출한다.

#### 4-3-11. 회사에 의한 등록 말소 절차

회사에 의한 등록 말소는 통상 3~6 개월이 소요된다.

##### 표 4-3-11-1. 회사에 의한 등록 말소 절차



#### 4-3-12.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

회사의 등록말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등록말소 후 3 년 이내(채권자, 회사의 임직원 등 당사자인 경우 20 년 이내)에 기업재판소에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재판소는 등록말소 처분의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 4-4. 휴면회사

인도 회사법 제 455 조는 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회사에게 휴면상태(Dormant Company)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사업재개를 예상하고 있는 경우에 휴면회사 지위 획득을 통하여 추후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 필수자산의 보유, 사업재개를 위한 시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 4-4-1. 휴면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는 경우 휴면회사 상태를 신청할 수 있다.

- ① 미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
- ② 지식재산권 등 자산의 보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 ③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 사업활동이 없는 비활성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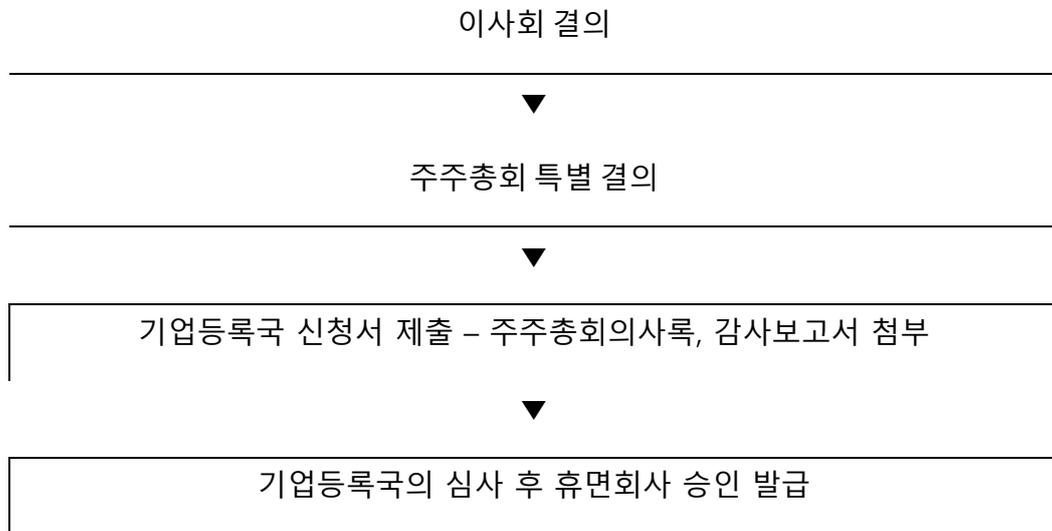
### 4-4-2. 휴면회사 신청 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면회사 신청을 할 수 없다.

- ① 소송 중에 있거나 관련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② 담보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상환해야할 채무를 보유한 경우
- ③ 회사의 경영 및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④ 인도 또는 인도 외 국가에 상장된 회사

### 4-4-3. 휴면회사 신청 절차

표 4-4-3-1. 휴면회사 신청 절차



### 4-4-4. 휴면회사의 이점

휴면회사 지위를 획득할 경우 활성회사에 비해 다음의 일부 법률 상 의무사항이 면제된다.

- ① 현금흐름표를 작성 의무면제.
- ② 연 2회의 이사회만이 요구됨 (활성회사의 경우 연 4회)
- ③ 감사인 의무 교체제도 적용 제외

### 4-4-5. 활성회사 전환 및 해산명령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개시하려는 휴면회사는 Form MSC-4 의 제출을 통해 활성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5 년간 휴면회사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기업등록국은 해당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